

별 책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연구 종합보고서 (2006년 ~ 2008년)

연구자 : 강문수(부연구위원)
Kang, Mun-Soo

2008. 10. 31.

국문 요약

행정처분기준이란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량준칙을 의미하며, 특히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영업정지, 인·허가·등록 취소, 과징금 (특히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경고, 시정명령 등)을 적용하는 집행공무원에게 재량권이 인정된 취지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매우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합목적적이고 구체적 타당성 있는 행정권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행정제재처분기준은 집행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재량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그리고 처분의 객체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보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종래 꾸준히 그 법리적·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 왔다. 특히 행정제재처분기준의 입법형식(대통령령 또는 부령의 형식)에 따른 법규성 인정여부는 우리나라 행정법학에 있어 중대한 논의대상으로서 자리매김 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실무에 있어서는 위에서 언급한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적 문제보다는 현행 규정상 운용에 관한 의문과 오해에 따른 국민의 권익 침해가 날로 증가하여 왔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 집행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행정처분기준의 규정화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목적과 수단 간 합리성의 요구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2006년부터 수립·보완되어온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은 2008년도에 실무에 있어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와 실무가의 자문을 거쳐 정립되었다.

2008년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은, 행정처분기준의 일반원칙을, “① 공무원과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비한다. ② 행정법상 일반원칙을 처분기준의 정비원칙으로 활용한다. 특히, 의무위반행위와 제재수단간 비례의 원칙과 법령간 유사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간 평등의 원칙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일반적인 행정처분기준의 근거조항은 법률에 두되,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적당치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한다. ④ 포괄적 행정처분기준의 반복을 금지하도록 정비한다. ⑤ 상습위반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반횟수에 따라 처분기준을 차등화 하도록 한다. ⑥ 처분기준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비한다. ⑦ 행정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논리적이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그리고 행정처분기준에 있어 일반기준에 관한 정비지침을, “① 행정처분기준이 재량준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속적 표현은 피하도록 정비한다. ②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가 합리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며, 최소한 동기 또는 의무위반횟수를 고려하여 규정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가중·감경기준은 2분의 1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무위반 행위와 제재내용 간의 비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는 가중·감경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의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사유는 영업정지처분사유와 일치시키도록 한다. ⑤ 영업활동에 따른 사소한 신고의무위반은 신고의 법리적 성격을 고려하여 허가취소사유로 하지 않는다. ⑥ 처분기준은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해서 정하되, 가급적 절대기준이 아닌 상한으로 제시하는 입법형식을 따른다. ⑦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기준이 아닌 직접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정비한다. ⑧ 행정쟁송결과 원고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그 처분이 과하다고 판결된 사건에 대하여 행정청이 당해 행정쟁송의 원인이 된 처분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일정한 정도 감하여 재처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정비한다.” 끝으로 개별기준을, “① 위반행위란과 근거 법령란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정비한다. 그리고 “위반행위” 와 “근거법령”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정비한다. ② 경고처분을 두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③ 위반주체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위반주체별로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④ 과징금 상한액을 다른 법령의 내용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정비 한다.”와 같이 수립되었다.

이와 같이 수립된 2008년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에 근거하여, 지침의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중심으로 개별기준에 있어 처분양정의 문제와 유사의무위반행위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제재적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213개의 하위법령의 시행령·시행규칙상 개별기준을 변경신고의무위반 등 15개 유사의무위반행위 (변경신고, 준수사항위반, 지정·허가·등록기준 위반, 등록 후 영업미개시 또는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명의대여, 일괄 하도급,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지정·허가·등록 결격사유, 금지행위위반, 기록보존의무 위반, 포괄금지조항, 관리기준위반, 표시기준위반, 출입·조사 방해 및 거부,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로 구분하여 각각의 법리적 문제점과 정비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아울러 행정처분기준상 일반기준의 규정내용에 관한 문제에 있어, 첫 번째로 가중·감경 등 규정상 미비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현행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213개의 하위법령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147개의 가중·감경기준이 미비한 법령 중 가중·감경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5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4조 관련) 등 76개의 법령에서는 신속히 가중·감경기준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 그 적용사유에 있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최소한 위반의 동기·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야 함을 규정하여 집행공무원의 법규적용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의무위반상황에 상응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배려가 필요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법령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일정기간”의 개념 비통일에 관한 문제에 있어 213개의 법령상 차수산정의 기간 규정이 결여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3]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허가취소등행정처분기준 등 총 27개의 법령에서는 신속히 이를 규정하여야 하며, 상이하게 규정된 기준은 위반의 실태와 의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최근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정비하여야 함을 제시하였으며,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의 제재기준 비 일원화 문제에 관하여 규정이 없는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의22관련) 등 총 26개 법령은 신속히 규정을 두도록 하여야 하며, 공통된 처분기준으로서 현행 과반수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입법자가 의도한 바와 같이, “보다 중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이상의 위반행위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다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의 1/2까지 가중”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변형된 과징금의 경우, 업무 정지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법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37개 법률), 제재 대상 업체의 규모나 매출액을 고려하지 않은 법률(『산업안전 보건법』등 24개 법률), 1990년대 이후 과징금액을 수정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 법률(『자동차관리법』등 35개 법률) 등으로 분류되어 질 수 있음을 제시하고 이와 같이 비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변형된 과징금제도의 개선을 위하여서는 과징금부과기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입법모

텔을 마련하는 것이며, 과징금 부과금액과 관련하여서는 본래의 제도 취지에 상응하여 영업정지 기간, 대상기관의 규모 또는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을 제시하여 보았다.

※ 키워드 : 행정처분기준, 재량행위의 투명화, 행정규칙의 법규성,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변형된 과징금

Abstract

Nowadays, the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 serve as an important legal means of achieving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and the protection of citizens' rights and interests. Constantly changing and developing administration like a living organism requires the contents of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such administration be changed accordingly. The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 supplementing such laws and regulations must reflect the trends of such change thoroughly in such a manner that does not conflict with the upper laws and regulations and serves to promote citizens' rights and interests in harmony with the public purpose of administration by properly adjusting the degree of administrative measures.

However, the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 set pursuant to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have various problems, which lead to many difficulties in administrative practices and the protection of citizens' rights and interests. So, new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 need to be established to solve such problems.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amines in detail the contents of the existing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presents the policy measures to establish new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 with a view to serving the security of transparency in the exercise of discretionary powers and promoting citizens' rights and interests.

To this end, this paper establishes a guideline for improving the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sets forth new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 according to such a guideline. Such new standards are based on the general principles for improving administrative operations.

※ Key words :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 transparency in the exercise of discretionary powers, Labor administration, Welfare administration,

목 차

국문요약	3
Abstract	9
제 1 편 행정처분기준의 이론	15
제 1 장 서 론	17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 2 절 연구내용과 방법	20
제 2 장 행정처분기준과 재량권	23
제 1 절 행정처분기준의 법리적 성격과 입법 형식상 문제점	23
I. 행정처분기준의 개념	23
II. 행정처분기준의 입법형식상 문제점	26
제 2 절 행정처분기준과 재량권	35
I. 재량권	35
II. 법치행정의 원칙과 재량권의 인정문제	36
III. 재량권과 헌법적 허용성	38
IV. 재량권의 한계	39
V. 사전 전 통제시스템으로서의 행정처분기준	40
제 3 절 요약 및 소결	42

제 3 장 주요국가의 행정처분기준 개관	45
제 1 절 독일	45
I. 서 론	45
II. 독일의 행정규칙 제정과 절차에 관한 규정	46
III. 독일의 각 행정영역별 행정처분기준의 운용례	51
제 2 절 일본	74
I. 서 론	74
II. 일본 「행정사건소송법」 제30조를 통한 법원의 심사	75
III. 일본의 각 행정영역별 행정처분기준의 운용례	80
제 3 절 미 국	111
I. 서 론	111
II. 미국의 재량통제의 방법으로서 처분기준을 통한 재량통제론	113
III. 미국의 각 행정영역별 행정처분기준의 운용례	117
제 4 절 요약 및 시사점 도출	146
제 4 장 행정처분기준의 정립과 전개	151
제 1 절 서 론	151
제 2 절 현행 행정처분기준의 설정 및 운용상 문제점	152
I. 행정처분기준의 설정상 문제점	152
II. 행정처분기준의 운용현황과 운용상 문제점	154
제 3 절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정립	162
I.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정립의 필요성	162

II. 행정제재처분기준의 합리화를 위한 입법적 전개	163
III.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연혁	167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217
제 1 장 서 론	219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221
제 1 절 일반기준상 가중·감경 등 규정상 미비	221
I. 가중·감경 규정의 미비	221
II. 법령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일정기간”의 개념 통일	222
III.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의 제재기준 일원화	222
제 2 절 개별기준에 있어 처분양정의 문제와 유사의무위반 행위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223
I. 변경신고의무 위반	224
II. 지정·허가·등록기준 위반(대물적)	247
III. 등록 후 영업 미개시 또는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88
IV. 명의대여	299
V. 일괄 하도급	310
VI.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313
VII. 지정·허가·등록 결격 사유(대인적)	340
VIII. 준수사항위반, 금지행위위반	374
IX. 기록보존의무 위반	397
X. 포괄금지조항	405
XI. 관리기준 위반	407

XII. 표시기준 위반	416
XIII. 출입·조사 방해 및 거부	428
XIV.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제출	442
제3 절 변형된 과징금제도의 문제점	455
제 3 장 요약 및 결론	459
제 3 편 결 론	463
붙 임 자 료	475
[붙임-1] 시행령·시행규칙 별표상 행정처분기준(일반기준) 주요내용 현황표	477
[붙임-2] 가중·감경기준 명시 대상 147개 법령 목록	509
[붙임-3] 법령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일정기간’의 개념 통일	523
[붙임-4]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의 제재기준 일원화	543
[붙임-5] 변형된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불합리한 법률	551
참 고 문 헌	559

제 1 편 행정처분기준의 이론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행정처분기준이란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량준칙을 말한다. 재량준칙이란 일반적으로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의 각종 인·허가나 제재적 행정처분(취소·철회·정지 등)에 있어서 법령이 부여한 재량권 행사의 일반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위통제규칙을 의미한다. 즉,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행정처분 기준으로서의 재량준칙은 행정청의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상하 행정청간 재량처분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어서, 공행정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은 물론, 재량권 행사에 대한 공무원의 법집행상의 어려움을 경감시켜주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가진다.

그러나, 현행법령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을 보면, 행정처분기준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①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경우, ②불명확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③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위배한 경우, ④상위법과 모순이 있는 경우, ⑤행정처분기준상 규정내용의 미비 등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 결과적으로 행정실무에서도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고 행정의 상대방인 국민 역시 이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어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현행 법령상 행정처분기준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새로이 체계화하여 재량권 행사의 투명성의 확보 및 향상, 국민의 권익을 도모하고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에 걸친 계속과제로서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1차년도인 2006년은 주로 “행정처분기준의 정

비지침”을 도출하는 작업에 그 주안점을 두고 행정처분기준의 정비에 있어서는 정비지침의 일반원칙에 따르고, 행정처분기준의 체계에 따라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나누어 지침을 설정한 바 있다. 또한 이를 경찰행정분야, 보건행정분야, 건축행정분야 등에 직접 적용하여 지침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도출하여 보았다. 이러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연구의 제2차년도인 2007년에는 주로 법제처 법제관 등의 자문 하에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보완하는 것을 연구목표 중의 하나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교육행정분야, 문화행정분야, 경제행정분야 및 환경행정분야의 행정처분기준에 적용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은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진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에 대한 집행 공무원의 실무상 적용에 있어 어려움과 학계에서의 법리적 문제점을 제기한 바, 연구 종결기인 3차년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실무상 효용성과 처분기준절차에 대한 법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2007년도의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을 새로이 보완·정립하여 2008년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2008년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은, 행정처분기준의 일반원칙을, “① 공무원과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비한다. ② 행정법상 일반원칙을 처분기준의 정비원칙으로 활용한다. 특히, 의무위반행위와 제재수단간 비례의 원칙과 법령간 유사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간 평등의 원칙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일반적인 행정처분기준의 근거조항은 법률에 두되,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적당치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한다. ④ 포괄적 행정처분기준의 반복을 금지하도록 정비한다. ⑤ 상습위반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반횟수에 따라 처분

기준을 차등화 하도록 한다. ⑥ 처분기준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비한다. ⑦ 행정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논리적이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그리고 행정처분기준에 있어 일반기준에 관한 정비지침을, “① 행정처분기준이 재량준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속적 표현은 피하도록 정비한다. ②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가 합리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며, 최소한 동기 또는 의무위반횟수를 고려하여 규정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가중·감경기준은 2분의 1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무위반 행위와 제재내용 간의 비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는 가중·감경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의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사유는 영업정지처분사유와 일치시키도록 한다. ⑤ 영업활동에 따른 사소한 신고의무위반은 신고의 법리적 성격을 고려하여 허가취소사유로 하지 않는다. ⑥ 처분기준은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해서 정하되, 가급적 절대기준이 아닌 상한으로 제시하는 입법형식을 따른다. ⑦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기준이 아닌 직접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정비한다. ⑧ 행정쟁송결과 원고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그 처분이 과하다고 판결된 사건에 대하여 행정청이 당해 행정쟁송의 원인이 된 처분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일정한 정도 감하여 재처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정비한다.” 끝으로 개별기준을, “① 위반행위란과 근거법령란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정비한다. 그리고 “위반행위”와 “근거법령”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정비한다. ② 경고처분을 두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③ 위반주체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위반주체별로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④ 과징금상한액을 다른 법령의 내용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정비 한다.” 는 내

용으로 지침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노동행정분야와 복지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에 직접 적용하여 그 개선안을 도출하여 본 바 있다.

이러한 3개년에 걸쳐 수행되고 축적된 연구결과물의 주요내용을 집대성하고 나아가 제재적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213개의 시행령·시행규칙상 규정된 행정처분기준의 입법형식과 문제점을 연구결과 정립된 정비지침을 바탕으로 행정처분기준과 관련한 법리적 문제는 물론 실무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지침의 확립을 도모함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제 2 절 연구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크게 3편으로 구성되어진다. 제1편에서는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법리적 성격에 근거한 법 이론적 연구와 주요국가의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법이론의 개관 및 현행 우리나라의 행정처분기준 운용현황과 문제점에 근거한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정립의 중요성을 그 주요 대상으로 한다. 제2편에서는 제1편에서 이해·정립된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을 바탕으로 실무상 운용되고 있는 213개의 하위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개선안을 도출한다. 제3편에서는 전체 요약 및 결론을 담는다.

제1편의 세부적 내용으로서는, 제2장에서 행정처분기준의 법리적 성격과 입법형식상의 문제점 및 사전적 통제시스템으로서 행정처분기준을 통한 재량행위투명화에 관하여 논하여 본다. 제3장은 주요국가 (독일, 일본, 미국)의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일반론과 건축-, 환경-, 경제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및 그 운용현황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현행 행정처분기준의 운용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을 위한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의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개관한다.

제2편에서는 제1편에서 논해진 현행 행정처분기준의 입법내용상 문제점에 관하여 먼저 일반기준에 있어 가중·감경기준의 유무 및 그 구체적사유의 범위를 중심으로 논하고, 개별기준에 있어 처분양정의 문제와 유사의무위반행위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변경신고 등 15개 유사의무위반 사유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별책부록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를 구성하여 보았으며, 이의 활용을 통하여 현행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의무위반과 제재수단에 관한 각 행정영역을 아우르는 객관적 비교는 물론 향후 입법정책적 자료로서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① 문헌·법령 조사연구, ② 비교법적 연구, ③ 입법정책적 연구, ④ 워크숍, 전문가 회의 및 연구자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중에서 연구의 실효성과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해 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하여 학계 및 법제처 법제관 등 정부부처 실무자는 물론 현장 집행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도모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행 우리나라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법이론적 측면과 실무상의 조화를 유도함은 물론, 실무에 있어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활용을 통한 집행공무원의 재량행위 투명화를 증대하여 종국적으로 국민의 각 생활영역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권익을 향상시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 2 장 행정처분기준과 재량권

제 1 절 행정처분기준의 법리적 성격과 입법 형식상 문제점

I. 행정처분기준의 개념

행정처분기준이란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량준칙을 말한다. 재량준칙이란 일반적으로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의 각종 인·허가나 제재적 행정처분(취소·철회·정지 등)에 있어서 법령이 부여한 재량권 행사의 일반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위통제규칙¹⁾을 의미한다. 즉,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²⁾ 행정처분 기준으로서의 재량준칙은 행정청의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상하 행정청간 재량처분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어서, 공행정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은 물론, 재량권 행사에 대한 공무원의 법집행상의 어려움을 경감시켜주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가진다.³⁾

과거에는 법률에 정한 범위내에서 어떤 처분을 하느냐는 행정청의 고유권한이고 행정조직 내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기준이 필요 없거나 필요하다 하더라도 행정청 소속 공무원들이 행정처분을 할 때 참고하여야 할 내부기준에 불과한 사항으로서 이는 행정조직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훈령이나 예규 등의 행정규칙에 정할 사항이지 법령에 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시각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행정처

-
- 1) 행위통제규칙이란 행정기관이 행하는 개별적 행위의 통일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칙으로서 특히 재량준칙이 주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대해서는 류지태, 『행정법신론』(신영사, 2006), 250면 참조.
 - 2) 박균성, 『행정법원론(상)』(박영사, 2006), 186면.
 - 3) 하용득, “법규형식을 취하는 재량준칙의 법적 성질” 『법제연구총서 법제개신자료2집』(법제처, 1995. 12), 22면.

분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는 행정처분기준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개폐가 용이하고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없는 행정규칙보다는 일반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제정 또는 개정안의 입법예고 시 의견제출 등의 참여가 보장되며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이 보장되는 법령에 행정처분기준을 정하려는 인식과 필요성이 널리 공감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가장 전형적인 공권력 처분인 영업정지 및 취소에 관한 처분기준부터 법제화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행정처분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처분기준에 대한 공무원의 자의적인 적용이 배제되고 투명화 되는 등 국민의 권리보호와 이익신장에 크게 기여하게 된 것으로 보여 진다.

1. 재량통제론과 행정규칙론의 교차영역의 행정처분기준

종래 재량통제의 측면은 물론 행정규칙의 측면 모두에 있어서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법적 판단은 원천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종래 행정처분기준들은 훈령·예규 등 전통적인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왔었는데, 학설과 판례는 행정규칙을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행정의 사무처리기준으로서 제정된 일반적·추상적 규범’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내부적 효력만 가지며, 국민과 법원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해오고 있다. 재량통제측면에서도 제한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즉, 재량이란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행정현실에 상응한 행정작용의 필요성에 따라, 입법자가 법률을 통해 행정작용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모든 경우에 일의적·확정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행정기관에게 일정한 범위의 판단 및 결정권한을 수권하여 개별적 정의를 추구하고 실현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설령 행정기관이 재량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을 그르치더라도 부당행위에 그치고 위법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직접적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종래의 행정법이론에

의하면 재량통제와 행정규칙의 문제에 대해서는 실체법적 문제해결방식만을 대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행정처분기준의 집행과 관련한 국민의 권리보호의 문제는 많은 경우 공백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 자연히 이러한 문제상황에 대해서는 절차법적 측면에 의한 보완의 문제가 검토되었다.

2. 투명성 및 신뢰보호원칙으로서의 행정처분기준

(1) 투명성 원칙의 구체화

행정절차법 제20조의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제도는 법 제5조에서 규정한 투명성의 원칙을 구체화한 대표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처분기준은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5조의 취지를 살려서 처분기준은 구체적일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 제20조 제3항에서는 처분기준에 대하여 국민에게는 설명·해석 요청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처분기준을 정한 행정청에게는 설명·해석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 신뢰보호원칙 기준으로서의 행정처분기준

처분기준을 설정하여 공표한 행정청은 처분기준에 구속되고 이를 준수할 의무가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행정청은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령등의 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설정·공표된 처분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분을 할 수 없다.

II. 행정처분기준의 입법형식상 문제점

행정처분기준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법리적(입법형식) 문제점은 무엇보다 그 입법형태에 있다. 즉, 과거 행정청은 제재처분의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정했었는데, 판례가 당해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행정청은 당해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을 그 형식만 바꾸어 법규명령(부령)으로 제정하였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을 그 형식만 바꾸어 법규명령으로 정한 점 및 당해 구체적인 제재처분의 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보아 구속력을 인정하게 되면 행정청의 재량권을 배제하게 되어 그 기준에 따른 제재처분을 재량처분으로 규정한 법률의 규정에 반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당해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이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런데 행정청은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에 구속력을 인정함으로써 처분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속하고 통일성있는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을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법률안을 만들때 법률자체에 제재처분의 기준을 부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이에 판례는 관련 법령 및 행위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을 단순히 법규명령으로 인정하기도 하고 법규명령으로 보면서도 제재처분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으로 본 것이다.⁴⁾

4) 박균성, 전게서, 198면

1. 학설의 전개

(1) 실질설

이 견해는 당해 규범의 실질을 중시하여 당해 규범이 일반국민을 구속한다고 보여지지 않고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무처리기준만을 정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규범을 행정규칙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 행정규칙의 실질을 갖는 행정입법이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행정규칙으로서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이렇게 보는 것이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가능하게 해준다. ③ 형식설을 취하면 법률에서 재량행위로 정한 것을 명령으로 기속행위로 바꾸게 되어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

(2) 형식설

이 견해는 규범의 형식을 중시하여 법규의 형식으로 제정된 이상 법규라고 보아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형식설이 다수설이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오늘날 법규개념은 형식적 개념으로 사용된다. 헌법이나 법률 등 법규범 중에는 구체성이 없는 일반적인 지침을 정하는 규정이 적지 않은데 그러한 규정도 법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법규형식은 매우 중요하고 엄숙한 행위형식이므로 그 형식자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③ 법규사항과 법규가 아닌 사항이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④ 최근 법률에서 처분의 기준을 법규명령의 형식(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상위법에서 법규명령의 형식에 의한 기준설정의 근거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 이에 근거한 기준설정은 위임입법에 해당하므로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⁵⁾

5) 김동희, 『행정법 I』(박영사, 2006), 155면

이에 대하여 법률이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재량권을 수권하면서 동시에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그 처분의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의 한도 내에서 재량권을 제한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으로 보고 입법자의 위임의사를 존중하여 당해 법규명령의 구속력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만일 하위법규명령이 위임의 한도를 넘어 모법에 의해 부여된 재량권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로 과도한 제한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한다면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는 위헌·위법의 법규명령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⁶⁾

형식설에 의하면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된 처분의 기준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형식설은 또한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하는 당해 법규명령의 대외적 구속력에 대하여는 엄격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견해와 신축적인 구속력만을 인정하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1) 엄격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견해와 그 문제점

형식설 중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하는 법규명령이 엄격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견해에 의하면 법률의 수권없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정한 것이면 당해 법규명령은 위법한 법규명령이 되고, 법률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도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법규명령이 재량의 여지없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종래 통상 이렇게 정하고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기준을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정하는 경우이다)에는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법규는 상위법령에서 재량행위로 규정한 사항을 기속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되어 상위법령에 반하는 위법한 법규명령이 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위법 여부는 상위법에의 위반 여부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⁷⁾

6) 홍준형, 『관례행정법』, 211면.

7) 박균성, 『행정법강의』(박영사, 2006), 180면.

최근에는 상위법령에서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많고, 이 위임에 따라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정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가중 또는 특히 감경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법규명령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 당해 법규명령은 문제가 없으나, 감경규정만을 둔 경우 당해 법규명령은 가중규정을 두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재량행위로 규정한 수권법률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⁸⁾

2) 신축적 구속력만을 인정하는 견해와 그 문제점

형식설을 취하면서도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법규명령에 신축적인 구속력만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는데, 이 견해는 형식설에 따라 재량준칙을 법규명령으로 보면서도 당해 재량준칙에 신축적인 구속력만을 인정함으로써 실질설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법규명령에서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지침 내지 기준의 효력만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를 무시한 것으로 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2. 판례의 동향

법규명령형식의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성질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문제된 행정입법의 형식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

(1)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정해진 경우

먼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총리령이나 부령에서 규정된 경우에 대하여는 그 기준의 형식은 총리령·부령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8) 박균성, 전거서, 180면.

행정규칙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관된 대법원의 태도이다. 즉, 예컨대 판례는 총리령인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⁹⁾을 비롯하여, 자동차용 휘발유에 경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자에게 1회 위반시 사업정지 3월, 2회 위반시 사업정지 6월, 3회 위반시 등록취소 등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별표1,¹⁰⁾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16,¹¹⁾ 음식점영업 등의 허가취소·정지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15,¹²⁾ 이·미용업 등의 허가취소·정지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7,¹³⁾ 자동차운수사업자의 허가취소·정지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에관한규칙(교통부령),¹⁴⁾ 건축사무소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을 정한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8조¹⁵⁾ 및 당구장 등 풍속영업의 허가취소·정지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표3¹⁶⁾ 등에 대하여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 기준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대표적인 판례에 따르면 규정형식상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

9) 대판 1992. 4. 14, 91누9954.

10) 대판 1991. 4. 9, 90누7074.

11) 대판 1990. 10. 16, 90누4297.

12) 대판 1994. 3. 8, 93누21958; 1993. 6. 29, 93누5635; 1995. 3. 28, 94누6925; 1996. 4. 12, 95누10396.

13) 대판 1990. 5. 22, 90누1571.

14) 대판 1990. 1. 25, 89누3564; 1990. 10. 12, 90누3546; 1991. 11. 8, 91누4973; 1996. 9. 6, 96누914.

15) 대판 1993. 10. 8, 93누15069.

16) 대판 1994. 4. 12, 94누651.

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고, 그 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또 당해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당해 규칙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계법령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¹⁷⁾ 이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비록 총리령·부령 등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정규칙에 해당하며, 대법원은 위와 같은 기준에 구속되어 판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서 학설상 실질설과 견해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

대법원은 총리령이나 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제재처분의 기준을 규정한 경우에 대하여는 당해 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다.

1) 절대적 구속력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은 1997년 12월 26일에 선고한 97누15418 판결에서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별표1은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제2항의 위임규정에 터잡은 규정형식상 대통령령이므로 그 성질이 부령인 시행규칙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과 같이 통상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처분의 근거법률인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제1항이 등록의 말소 등 제재처분을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다만,

17) 대판 1995. 10. 17, 94누14148.

동법률 제7조제2항은 등록 및 영업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으로 보이므로 법률에서 재량행위로 규정한 것을 시행령에서 기속행위로 바꾼 것을 인정할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

2) 최고한도를 정한 것으로 본 사례

2001년 3월 9일에 선고된 99두5207판결은 대통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처분의 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보면서 재량권 행사의 여지를 인정하기 위하여 처분기준(과징금 처분기준)을 최고한도(최고한도액)를 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구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같은 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별표6의 위반행위의 중별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보았다.

이 판결은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처분의 기준을 최고한도로 봄으로써 제재처분의 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봄으로써 야기되는 행정권 행사에 있어서의 구체적 타당성의 결여문제 및 당해 과징금부과처분을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률에의 위반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제재처분의 기준을 최고한도로 해석함으로써 해석의 한계를 넘는 문제가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최고한도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못하게 되어 이 한도 내에서는 상위법률에 반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행정을 막는 문제가 있다.

3. 평 가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문제가 제기되는 원인은, 학설에서 정확히 지적되는 바와 같이, 본래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정되어야 할 제재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하면서부터 야기

된 것이다. 이로부터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분에 관한 실무 및 이론상의 치열한 논쟁이 제기된 바 있다.

생각건대 지금까지의 주장되는 견해들을 살펴보면 크게 보아 형식설과 실질설로 나뉘어 있지만, 양자 중 어느 하나만을 절대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행정입법사항 중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분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독일에서도 실무상 항상 제기되는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일정한 실체적 규율은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효력으로서 법규명령으로 정해질 수도 있고, 행정규칙으로도 정해질 수 있어서, 일반구속적 외부법(법규명령)과 행정구속적 내부법(행정규칙)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란 매우 의문스러워졌기 때문이다. 물론 흔히 법규명령은 법률을 더욱 발전시키고 독자적인 추가적 규율로 보완하는 반면, 행정규칙은 단지 법률상의 규정의 구체화에 기여할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일반적인 경향일 뿐, 개별적인 경우에 양자를 구분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지는 못한다.¹⁸⁾

양자의 구분에 관한 형식적 기준과 실질적 기준에 관한 논거들을 검토해볼 때, 먼저 당연히 첫 번째 구별의 징표가 되는 것은 규정의 명칭일 것이다. 그러나 실무상 나타나는 현상들이 보여주듯이 규정의 명칭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또 우리나라의 다수견해가 지지하는 형식적 기준에 주안점을 두는 견해는 통상적으로 법규명령에 전형적인 수권근거, 규정형식, 공포절차 등의 요건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중시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법규명령의 적법성요건이지 행정규칙과의 성질을 구분해주는 징표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법규명령에 전형적인 형식요건이 결한 경우에는 위법한 법규명령이 될 뿐이다. 법규명령의 형식적 요건이 존재하면 사실상 법규명령이라고 일응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보다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행정규칙도 법

18) H.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3. Aufl., 2000, Rdnr. 37.

규명령과 마찬가지로 관보에 공고되기도 하며,¹⁹⁾ 당해 행정입법이 상위법령의 위임에 근거한 것인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논의하려는 것도, 이러한 위임의 근거유무는 행정조직 내부의 사정으로서 일반국민이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당사자의 권리보호에 영향을 받게 하여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형식적 기준은 따라서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징표적 가치를 가질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독일의 지배적인 견해가 그러하듯이 실질적 기준에 의하면 개별 규정의 수범자, 규율내용, 법효과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예컨대 실제적 규율내용은 법규명령에는 물론 행정규칙에도 나타날 수 있다. 실질적 기준 중 그나마 명확한 기준이 되는 것은 규정의 수범자와 의도된 법효과라고 할 수 있지만, 하급행정청에만 관련된 규정이라도 법규명령으로 제정될 수 있고, 행정규칙도 간접적이거나 대외적 효력을 발할 수 있음이 인정되고 있다. 결국 형식적 기준과 실질적 기준 모두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형식과 실질을 아우르는 다양한 관점들이 개별적으로 형량 및 판단되어야 한다. 다만 여러 가지 관점들 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은 최종적으로 수범자가 누구냐에 있다고 보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²⁰⁾

그러나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이 법규명령이냐 아니면 행정규칙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²¹⁾ 상위법에서 입

19) 행정규칙은 본래 공포라는 형식을 법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으나 고시와 훈령의 경우에는 대부분 관보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공포하고 있다. 또 처분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적용하게 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제정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20) 행정청을 수범자로 하는 경우는 행정규칙이라 할 것이고, 만인을 수범자로 하는 경우는 일응 법규명령이라 볼 수 있다. H.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3. Aufl., 2000, § 24 Rdnr. 37 ff.

21) 사실상 일선 행정공무원들은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이 훈령의 형식으로 있든, 시행규칙 별표의 형식으로 있든 집행상 하등의 차이를 느끼지는 못한다고 한다.

법자가 행정청에게 부여한 재량수권의 취지를 처분기준에서 몰각시켜서는 안 된다는 관점이다. 행정처분기준 자체에는 상위법에서의 재량수권의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기속적 처분양정만 두고서 당해 처분기준의 대외적 구속력을 고집하는 것은, 행정쟁송에서 패소하지 않으려는 행정일변도의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현행 처분기준들에서 상위법이 부여한 재량수권의 취지를 올바르게 살릴 수 있도록 관련규정들을 손질하고 개선하는 작업에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²²⁾

제 2 절 행정처분기준과 재량권

I. 재량권

재량문제는 국가권력이 법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하는 문제이며 특히 그것은 입법권과 행정권의 관계의 문제였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과 관련되는 행정의 행동기준이 입법자에 의하여 어떠한 범위에서 미리 결정되어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범위에서 행정이 스스로 자기의 행동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²³⁾

연혁적으로 보면 행정재판소가 설립됨과 동시에 모든 행정법이론은 행정행위 중심의 이론이 되고 재량론도 행정행위의 재량론에 국한되고 그것은 오로지 행정권과 사법권의 관계의 문제 즉 행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통제의 범위와 한계의 문제로서 논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공권력에 대한 권리보장이 헌법상 확립되어 있는 오늘날에는 권리보호의 문제로서의 재량문제는 행정재량은 물론 입법재량, 사법재량 등 국가권력 일반에까지 미치는 것이 되었고 행정에 관한 재량에 대해서

22) 박중수, 『약사법령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용역 보고서, 2002. 11, 65면.

23) 김재광 외,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지침 수립』, 한국법제연구원, 2004, 17면.

도 단지 법률요건과 법률효과로 된 법규의 해석·적용으로서의 행정행위에 관한 문제로서 뿐만 아니라 법의 실현 내지 법에 기초한 형성기능에 관한 문제로서 논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²⁴⁾ 여기에 행정재량이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배경이 있다.

우리의 행정현실은 복잡다기한 현대국가의 과제를 실현하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규가 그 요건에서는 이른바 불확정개념을 사용하여 행정청에게 구체적인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판단의 여지를 부여하며, 법률효과 면에서도 공권력 발동의 여부와 다양한 대안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한국사회에 특유한 다이내믹한 변화에 행정활동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입법자가 의식적으로 법규상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량은 행정청이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행위들 중의 한 가지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정의되고 있다.

II. 법치행정의 원칙과 재량권의 인정문제

현대국가에서의 입법의 특징은 한편에서의 법률규제의 양적 증대와 다른 한편에서의 법률의 내용적인 규제밀도의 부족 내지 법률의 불확정성의 증대라는 점에 있다. 현대행정의 광범한 영역에 걸친 활동범위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법률의 양적 증대를 수반하지만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법률의 규제밀도가 저하되고 법률망이 성기게 된다는 점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법률의 규제력의 약화는 특히 계획법적 성격을 갖는 법률 및 기술안전이나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현저하다. 이러한 법률규제의 질적 변화라는 상태 하에서는 실질적인

24) 宮田三郎, 『行政裁量とその統制密度』, 1994, 318면.

규제권한의 소재는 법률 차원으로부터 명령 또는 행정규칙의 차원으로 이행하고 있어 민주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보아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²⁵⁾

이러한 법치행정의 원칙하에서 행정의 법에 대한 종속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행정을 규율하는 법률을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규율하여 기계적으로 법률을 집행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행정에 있어서는 법치행정도 중요하지만 구체적 타당성(또는 합목적성) 또한 중요하다. 행정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행정현실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법에서 일률적으로 행정의 기준을 정한다면 합목적적인 행정이 행해질 수 없다. 따라서 법률은 행정을 규율함에 있어서 합목적적인 행정이 가능하도록 행정권의 행사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 내에서 선택의 자유, 즉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재량권의 인정을 법치행정의 원칙의 예외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재량권은 법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며 재량권에는 일정한 법적 한계가 인정되고 그 한도 내에서는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

한국의 행정실무와 행정법의 적용과정에서 특히 행정재량이 문제되는 것은 행정청이 법규상 재량권을 갖는 경우에는 민원인이나 기업 등 국민들이 그 재량행사의 기준이나 원칙을 제대로 알 수 없어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불투명한 행정은 법규가 행정청에 부여한 권한 이상의 “비공식적 재량”을 생성시키며 이것이 행정청과 관료의 부패를 촉발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행정재량 폭주현상에도 불구하고 결코 법치주의원칙은 행정청에게 백지수표를 발행한 것은 아니므로 행정청은 자신의 주도하에 임의적인 목적을 설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행정청은 법규가 부여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당해 법규의 목적과 취지를 최대한 고려하고 존중하여 일정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즉 행정청이 법

25) 김재광 외, 전계연구보고서, 18면.

규상 재량권을 보유하고 행사한다는 것은 법규에 의하여 의도된 목적과 방향성에 의하여 이미 한계 지워진 것으로서 이른바 “의도된 재량”(intendiertes Ermessen)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결국 행정재량권은 입법자가 의도하는 재량권 행사의 목적지향성과 사법부의 재량권 통제라는 두 개의 거대한 법치주의적 견제장치 안에서 존재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법적 의무에 합당한 재량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III. 재량권과 헌법적 허용성

오늘날의 법치국가는 사회적 법치주의를 표방하고 각종의 사회적 위협과 국민의 적극적인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과제를 수행하므로 행정의 전문성과 상황대처 능력을 강하게 요구한다. 그러므로 입법자가 법규의 효과규정을 통하여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²⁶⁾ 다만, 중요한 것은 행정청이 보유하고 행사하는 재량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나 권력분립 등과 같은 자유주의원칙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법치국가원리는 법규를 통하여 행정청에게 재량을 부여함에 있어서 그 내용, 대상, 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재량권에 의한 개인의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 충분히 사전적으로 이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은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한계를 상세히 규정하여 국민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행정부가 결정하지 않도록 입법적인 배려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결국 자유주의적 법원리인 권력분립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행정재량의 행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내용과 한계를 자칫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사항유

26) 김재광 외, 전계연구보고서, 19면.

보 또는 본질사항유보의 원칙에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하여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입법자가 스스로 정하여야 하며, 특히 침해적 행정작용의 영역에서는 더욱 엄격한 요건 하에 행정재량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에 비하여 개인의 기본권 실현과 밀접성이 완화된 영역, 예를 들어 단순한 예산상의 수권으로 국가행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규상 행정재량은 보다 덜 엄격한 요건 하에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IV. 재량권의 한계

행정재량의 법적 한계가 준수되었는가 하는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사법부에 주어진 몫이다. 일반적인 행정재량의 경우에는 재량권의 내부적 한계와 외부적 한계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문제가 된 재량권 행사의 남용 및 일탈 여부를 가려야 한다. 특히 이 경우에 사법심사의 초점은 재량의 본질에 대한 학설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재량통제에 임하는 사법부는 행위의 효과부분 뿐만 아니라 불확정개념에 따르는 판단여지의 경우에도 행정청의 사실판단에 대한 정확성과 타당성도 심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재량권의 행사가 한계를 넘지 않으면 재량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되지 않고, 법원에 의한 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게 되는 재량처분은 취소소송에 의해 취소된다. 재량권이 한계를 넘지 않았지만 재량권의 행사를 그르친 경우 당해 재량행위는 부당한 행위가 된다. 부당한 재량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행정심판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사법적 통제는 사후통제라는 한계를 항상 내포하고 있다. 행정행위의 결과는 행위 즉시 또는 비교적 단기간에 그 법적 효과를 발생한다. 따라서 행정청의 재량남용으로 인하여 행정객체가 입게 되는

침해는 사후구제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것이 일반적이다.

V. 사전 전 통제시스템으로서의 행정처분기준

종래의 사후적 사법적 통제시스템의 가동이 재량권 행사의 투명성 확보에 일정한 본질적인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재량권 행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강력히 요청되었다. 다시 말하면 재량에 대한 절차적 통제의 필요성이 요청되었고 여기에 부응한 것이 사전적 통제시스템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결국 행정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를 통한 새로운 방식의 채택으로 이어졌다. 즉,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제도”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재량과 행정규칙의 영역을 절차법적으로 접근했다는 점 및 기존의 행정규칙을 법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이었다는 점에 행정법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행정처분기준은 초기에는 행정제재처분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처분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최근에는 그 밖의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가능한 한 처분기준을 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20조에서는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여 모든 행정절차에 있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그 기준을 정하여 미리 공표하고 그에 따라 행정행위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1. 범 위

법에서는 처분기준을 설정·공표해야 하는 처분의 종류에 관하여 그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해석상 직권처분기준을 설정·공표해야 하는 처분이 직권처분에 한정할 것인

지, 또는 신청에 의한 처분을 포함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나,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²⁷⁾ 양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신청에 의한 처분의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민원사무편람의 ‘심사기준’을 행정절차법의 신청에 의한 처분의 처분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청은 신청에 의한 처분의 처분기준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원사무처리 편람을 작성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한 처분의 처분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같음하고, 나머지 직권처분의 처분기준을 설정하여 공표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법 제20조 제2항에서는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것을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준은 설정하되 공표대상에서는 제외할 수 있다는 의미로 제외 대상의 판단은 당사자들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부득이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제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처분기준 설정의 주체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처분기준을 정하는 주체는 처분을 행하는 당해 행정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 부령 및 법령소관 행정청의 행정규칙 등으로 구체적인 처분기준이 정해지는 체계로 보거나 법령에 기속되는 우리나라의 행정관행으로 볼 때 처분을 행하는 일선 행정청에서 처분기준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다만, 2003. 6월 개정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2조에서 편람을 만들어 비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처분을 행하는 행정청에 편람의 작성·비치·공표의 의

27) 오준근, 『행정절차법』(삼지원, 1998), 326면 이하.

무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공표방법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의 방법에 관한 사항도 처분기준의 설정주체와 마찬가지로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영제12조에서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방법을 당사자들이 알기 쉽도록 편람을 만들어 비치하거나 게시판·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소관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열거하고 있다.

제 3 절 요약 및 소결

행정처분기준이란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량준칙을 의미하며, 특히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영업정지, 인·허가·등록 취소, 과징금 (특히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경고, 시정명령 등)을 적용하는 집행공무원에게 재량권이 인정된 취지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매우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합목적적이고 구체적 타당성 있는 행정권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행정제재처분기준은 집행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재량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그리고 처분의 객체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보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종래 꾸준히 그 법리적·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 왔다. 특히 행정제재처분기준의 입법형식(대통령령 또는 부령의 형식)에 따른 법규성 인정여부는 우리나라 행정법학에 있어 중대한 논의대상으로서 자리매김 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이 법규명령이냐 아니면 행정규칙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서 입법자가 행정청에게 부여한 재량수권의 취지를 처분기준에서 몰각시

켜서는 안 된다는 관점이다. 행정처분기준 자체에는 상위법에서의 재량수권의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기속적 처분양정만 두고서 당해 처분기준의 대외적 구속력을 고집하는 것은, 행정쟁송에서 패소하지 않으려는 행정일변도의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현행 처분기준들에서 상위법이 부여한 재량수권의 취지를 올바르게 살릴 수 있도록 관련규정들을 손질하고 개선하는 작업에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제 3 장 주요국가의 행정처분기준 개관

제 1 절 독일

I. 서론

독일에 있어서도 행정처분기준이라 함은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량준칙(Ermessensrichtlinie)을 의미하며, 일부 학설에 의하면 재량준칙은 단지 행정내부의 실무만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해서도 재량행사의 적법성이 행정규칙에서 직접 나온다고 한다.²⁸⁾

그러나 독일의 통설에 의하면 재량준칙은 “법규범적 성격(Rechtscharakter)”을 가지지 않는다. 즉, 재량준칙에 있어서는 그 법적 대외적 효력은 행정의 자기구속을 매개로 하여 다만 간접적으로 발생한다. 재량영역에 있어서는 행정규칙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재량의 평등한 행사가 보장되도록 도와준다. 기본법 제3조 제1항(평등원칙)은 행정부가 그 재량을 평등원칙에 적합하게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²⁹⁾ 행정규칙에 미리 규정된 이 평등한 행정관행으로부터 행정부는 오직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벗어날 수 있다. 결국 재량준칙은 그것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외적으로 행정의 자기구속을 매개로 하여 법적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독일의 통설의 입장이라 하겠다. 독일에 있어 행정입법에 해당하는 법규형식으로서 법규명령, 조례 외에 행정

28) Beckmann, BVBl. 1987, 616; Ossebühl, AöR 92, 16 - 오셴빌 교수는 행정부도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며 법률유보의 대상이 아닌 영역 (전부유보설이 아닌 한 반드시 존재하는), 법률유보의 한계에 해당하는 영역 (규율밀도, 판단 수권 등에 비추어)에서는 행정부도 직접적·대외적 효력이 있는 법규범제정권 (행정규칙제정권)이 있게 된다고 하며, 특히 재량준칙,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관할권, 절차규정 등을 들고 있다.

29) S. Walter, Die Gleichheitsbindung an Verwaltungsvorschriften - BVerwGE 34, 278, in: JuS 1971, 184 - 188.

규칙이라 함은, “행정조직 내부의 일반 - 추상적 규정으로서 상급관청 또는 상급자가 하급관청 또는 하급자에게 발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조직과 활동을 규정한 법규정”이라 할 것이다. 이는 법령, 처분, 지침, 업무규정, 지시등의 용어로 사용되어 지고 있으며 이러한 용어의 혼용에 대한 통일적인 용어의 정립은 다양한 규정형식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나 이의 법실체적인 필요성은 적은 것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규칙은 기능적인 관점에서 크게, ①조직법적인 행정규칙(Organisatorische Verwaltungsvorschriften), ②행정작용적 행정규칙(verhaltenslenkenden Verwaltungsvorschriften)으로 구분되어지며, 후자의 경우 다시, 법률에 근거한 행정규칙(Gesetzesakzessorische Verwaltungsvorschriften)과 법률의 영역으로부터 자유로운 법률대위적 행정규칙(Gesetzesvertretende Verwaltungsvorschriften)으로 구분되어 진다.³⁰⁾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독일 행정규칙의 제정과 절차에 관한 규정과 각 개별 행정영역별 처분기준의 운용 현황을 검토하여 본다.

II. 독일의 행정규칙 제정과 절차에 관한 규정

독일의 경우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논의는 “현대적인 국가 - 현대적인 행정(moderner Staat - moderne Verwaltung)”이라는 행정개혁프로그램에 따라 입법과정에 있어 법률의 실효성과 수용의 향상(Höhere Wirksamkeit und Akzeptanz von Recht)을 모두로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행정처분기준의 실효성에 두고 전개되고 있다.³¹⁾ 이를 근거로 한 행정규칙의 제정과 절차에 관하여는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 연방정부직무규칙 그리고 연방의 행정규칙의 작성, 정리 및 심사를 위한 연방지침 등의

30) T. Sauerland, Die Verwaltungsvorschriften im System der Rechtsquellen, Berlin, S. 62 ff.

31) Die Bundesregierung, Moderner Staat - Moderne Verwaltung. Das Programm der Bundesregierung(<http://www.staat-modern.de/infos/daten/leitbild.pdf>); 정창화(역) Pitschas Rainer, “통일독일의 국가 및 행정현대화의 최근 경향” 『행정논총』(동국대 행정대학원) 제 28집, 2000, 159면 이하.

규정을 통하여 구체화 하고 있는 바,³²⁾ 이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

(Gemeinsame Geschäftsordnung der Bundesministerien - GGO) 제7절(행정규칙) 제69조에서 71조에 걸쳐 행정규칙의 행정규칙의 제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독일의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을 말하며, 이는 연방정부 각부서의 문서취급, 조직, 행정부내부의 협조, 행정부외의 기관의 협조, 정부제출법안의 입법절차등에 관하여 규율하는 직무규칙이다. 이 직무규칙의 근원은 독일공화국의 공과국각부공통직무규칙통칙(1926년 9월 2일 제정) 및 동 각칙(1924년 4월 1일 제정)이며, 이들은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연방공화국의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통칙(GGO I: 문서취급, 조직, 행정부내의 협조 등을 규정), 동 각칙(GGO II: 행정부외의 협조와 입법절차 등을 규정)으로 계승되어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어 온 것을 2000년 7월 26일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종래의 통칙과 각칙 등 2부로 된 규칙을 통합하여 전면개정 하였다.³³⁾ 따라서 현재 독일연방정부의 직무절차는 이 공통직무규칙과 연방수상, 연방장관, 각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연방정부직무규칙(Geschäftsordnung der Bundesregierung)으로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칙은 법규범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내부적 행정명령(interne Verwaltungsanordnung)에 불과하다.³⁴⁾

32) S. Rudolf, Handlungs- und Entscheidungsspielräume des Landes bei der Bundesauftragsverwaltung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Ausführung des Atomgesetzes, in: AöR 110 (1985), 419 - 446.

33) 상세한 것은 Birgitte Zypries/Cornelia Peters, Eine neue Gemeinsame Geschäftsordnung für die Bundesministerien, ZG 2000, S. 316 f. - 종래 GGO의 주요한 문제점으로는, 1. 행정부내의 컴퓨터 등 새로운 정보처리기술에 대응할 수 없었던 점, 2. 입법절차에 관한 규정이 불충분 하였던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대하여, 전자적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위한 권고 (GGO - IT)가 별도로 규정되었으며, 청색심사표 (Blauen Prüffragen) 으로 지칭되는 법률안 심사시의 체크리스트가 GGO 의 부록으로 규정되었으나 어느 것도 충분히 미비점을 보완하지는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4) 박영도, 『독일연방정부의 입법절차개혁 -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을 중심으로 -』, 한

GGO 제69조에서는 행정내부에서 구속력을 가지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을 포함하는 규칙은 제명에 “행정규칙(Verwaltungsvorschriften)”이라는 용어와 당해행정규칙의 제정과 관련되는 법률 및 그 내용을 나타내는 찾아보기의 주석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1항).

아울러 행정규칙의 준비에 관하여서는 연방내무부가 편집한 “법률 및 행정규칙기초입문서”를 활용하도록 하고, 행정규칙안의 입안에는 현행 행정규칙의 감소 및 간소화에 노력하고 있고, 신규 행정규칙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이유를 부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3항).

또한 행정규칙의 구조와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규칙안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또는 기타 유용한 경우에는 당해 안에 그 이유를 부기 하여야 한다(GGO 제70조 제1항).

기타의 경우 GGO 제44조(입법의 효과) 45조(연방정부내에 있어서의 관여), 47조(주, 지방단체의 중앙조직, 전문가집단 및 단체의 관여), 48조(기타 기관에 대한 통지), 49조(초안의 표시 및 송부), 51조(내각제출) 및 제61조(법률안 및 법률의 심사와 정정)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규칙안을 각의 또는 연방참의원에 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적 회계에 대한 영향에 관한 기재가 법률 또는 명령의 제안이유의 범주내에서 행해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행정규칙을 연방관보에 공시하여야 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행정규칙을 연방관보에 공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GGO 제67조 제2항,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GGO 제71조).

국법제연구원, 2003, 9면 이하.

2. 연방의 행정규칙의 작성, 정리 및 심사를 위한 연방지침

행정규칙의 입안과 관련하여 연방정부에서는 1989년 12월 20일 법정립 및 행정규칙의 개선을 위한 결정을 하여, “연방의 행정규칙의 작성, 정리 및 심사를 위한 연방지침”을 확정하였다. 이 지침은 전체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이 지침은 법과 행정의 간소화를 위한 연방독립위원회의 작업결과를 수용한 것으로서 주된 목적은, 행정규칙의 남용방지를 방지하고 행정규칙의 숫자를 가능한 한 줄이려는 것이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된 행정규칙을 현장 또는 당사자가 자유로이 사용하여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규칙에 관한 최저한의 요구가 구속력 있는 것으로서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이 지침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독일에서의 행정규칙의 현실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의무적인 필요성심사(지침 제2조)

연방의 행정규칙의 발포 전에 당해 행정규칙이 전체로서 또는 개별적인 규율에 있어서도 필요한가의 여부가 심사되어야 하며(제1항),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필요성 심사가 행해지도록 보증하여야 한다(제2항). 이것은 행정규칙의 경우에도 그 필요성이 집행의 통일성 및 계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연방장관은 그 사무의 범위내에서 상응하는 조직적 조취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 즉 연방정부는 개별 사안의 결정을 행하는 기관, 담당자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2) 명칭수의 삭감(지침 제3조)

연방의 행정규칙에는 금후 일반적 행정규칙(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en)이라는 명칭외에 행정규칙, 복무규정(Dienstvorschrift), 지침

또는 사무규칙(Anordnung)이라는 명칭은 부기를 붙인 것만 허용되나, 법률 또는 법규명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연방의 행정규칙을 위한 명칭은 변경을 받지 않는다. 행정규칙으로서 통용되고 있는 명칭의 숫자가 매우 많으므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칭을 주로 이용되는 것에 한정하도록 한 것이다.

(3) 규제와 정보의 분리(지침 제3조)

행정규칙이 간단한 정보 (Hinweis), 업무상의 조언 (Arbeitshilfe), 주석 (Erläuterung), 통지 및 유사한 정보와 결합하는 한에서 무엇이 행정규칙이며 무엇이 기타의 정보인지가 확실히 인식되어야 한다. 입안관계에 의하면 이 조항은 행정규칙의 현상분석의 결과 수범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어떠한 규제를 행하는 것이 아닌 순수한 단순정보가 규칙의 모습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처하는 규정이다.

(4)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지침 제4조)

(5) 다른 규정과의 관계 명확화(지침 제5조)

행정규칙은 같은 대상과 관련된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제1항). 행정규칙이 중요한 개별사안을 명확하게 발표하고, 그것이 일반화된 형태로 다른 행정기관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이 경우에는 이미 발표되어 있는 규칙과 같은 것을 규율하거나 같은 대상에 대하여 모순하는 규칙이 발생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기에 다른 규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6) 공시제도(지침 제6조)

행정규칙이 현실로 제3자(시민, 기업 등)에게 중요한 이해를 미치고 있는 이상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규칙은 통상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되어야 한다.

(7) 정리시스템과 정기적인 심사(지침 제7, 8조).

행정규칙의 인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행정규칙이 편집되어 있는 영역에서는 정리시스템이 구축적으로 도입된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도입은 동시에 연방의 행정규칙은 정기적으로 계속적 적용, 적용, 개선의 필요성에 관하여 심사되어야 한다는 규정과 연결되어 있다.

한편 주차원에서의 행정규칙에 관한 지침등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브레멘, 자르란트, 슐레스비히 - 홀슈타인주와 같이 행정규칙에 관한 규율이 없는 곳도 있으며 행정규칙에 관한 규율을 하더라도 그 정도는 매우 다양하다. 주목되는 것은 정보기술의 진전을 배경으로 1992년부터 니더작센주가 도입하고 있는 행정규칙 자동정보시스템(VORIS)이며, 이 시스템의 도입에 즈음하여 행정규칙의 자동실효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필요성 심사에 관하여는 Checkliste를 작성하는 주도 있으나 그 실효성은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헝트주에서는 행정규칙의 발포후 10년의 경과로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으며, 라인란트 - 팔츠주에서는 원칙적으로 행정규칙 공포 후 5년으로 효력이 상실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 5년의 연장이 가능하다.

Ⅲ. 독일의 각 행정영역별 행정처분기준의 운용례

1. 건축행정분야

독일은 건축행정에 관한 법체계를 공간계획(Raumplanung)과 건축법(Baurecht)으로 이분화하여 구성하고 있다. 이는 곧, 토지이용의 전반적인 계획과 건축에 관한 규정을 이분화하여 각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제고함은 물론, 이를 통하여 중국에는 환경과 인간적 삶의 요체로서의 건축물간 조화라는 건축행정의 목적 실현을 위한 법체계로서 이해

되어 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 건축계획에 관한 내용은 건축법전(Baugesetzbuch: BauGB)³⁵⁾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반하여, 건축질서법은 건축과 관련하여 주로 실체적인 건축물의 설치, 변경, 철거와 관련하여 허가와 절차 및 법령 위반의 경우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 건축법에 부속하고 있는 건축질서법에 있어서의 제재적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을 주요 검토대상으로 하고자 한다.³⁶⁾

(1) 독일 건축질서법상의 행정처분기준

독일의 건축질서법상의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우리의 경우와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각 주에게 그 제정 권한이 있는 주건축질서법(Landesbauordnung - LBO)의 제정에 관한 표본으로서, 중앙정부와 16개의 주 건설부장관 등이 협의를 거쳐 2002년 8월에 공포한 “표본건축규정(Musterbauordnung - MBO)”에 있어 특히 제84조(질서위반행위)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이 규정에서 질서위반행위로 규정한 내용에 관한 제재적 조치로서의 범칙금(Geldbuße)의 규정에 관한 질서위반법(Ordnungswidrigkeitgesetz - OWiG)³⁷⁾ 제19조(Tateinheit - 행위의 단일성)³⁸⁾ 및 제36조(Sachliche Zuständigkeit der Ver-

35)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23.9.2004 (BGBl. I S. 2414), zuletzt geändert durch Gesetz vom 5.9.2006 (BGBl. I S. 2098) m.W.v. 12.9.2006.

36)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위협을 방지하는, 이른바 경찰법 또는 질서행정법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각 주가 입법권한을 가진다. 이에 따라 독일의 경우 건축과 관련된 제재적 행정처분에 관해서는 각 주의 건축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독일 각 주의 건축법은, 예컨대 <http://www.bauordnungen.de/index.html> 에서 찾아볼 수 있다.

37) BGBl. I 1968, 481.

38) 질서위반법 제19조 (행위의 단일성) ① 동일한 행위로써 당해 행위를 질서위반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수개의 법률을 위반한 때, 혹은 그러한 법률을 수회에 걸쳐 위반한 때에는 단지 하나의 질서위반금이 확정된다.

② 수개의 법률위반에 있어서는 최고의 질서위반금액을 부과하고 있는 법률에 의하여 질서위반금을 정한다. 다른 법률에서 부대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선고할 수 있다.

waltungsbehörde - 행정관청의 사물관할)³⁹⁾의 적용기준에 관한 연구가 아울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아래에서는 먼저 “표본건축규정(Musterbauordnung -MBO)”에 있어 특히 제84조(질서위반행위)를 소개하고 독일의 각주 가운데 대표적으로 바덴 뷚르템 베르그와 베를린 주의 건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띠는 각종 명령(Anordnungen)권한에 관한 규정, 즉 일반적으로 건축 또는 철거중지, 철거 명령, 이용중지명령 등의 제재적 행정처분 규정에 관한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⁴⁰⁾

1) 표본건축규정 제84조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부과 금액
1. 법 제85조 제1항에서 제3항의 법규명령 또는 법 제86조 제1항과 제2항의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자	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최고 500,000 유로
2. 건축감독관청에 의해 성취되지질수 있는 지시사항을 위반한자	법 제84조 제1항 제2호	
3. 법 제59조 제1항의 건축허가, 법 제74조의 부분허가 또는 법 제67조의 회피규정 또는 법 제61조 제3항 2에서 5의 규정에 반하여 건축물을 철거한자	법 제84조 제1항 제3호	
4. 법 제62조 제3항 2에서 4까지의 규정		

39) 질서위반법 제36조 (행정관청의 사물관할) ① 사물관할은 1.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관청에, 2. 그러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a) 사항에 따라 관할을 가지는 최상급의 주행정관청에 또는 b) 법률이 연방관청에 의하여 집행되는 한에 있어서는 사항에 따라 관할을 가지는 연방정부부서에 있다.

② 주정부는 제1항 제2호 a)에 따른 관할을 법령에 의하여 다른 관청 등에 이전할 수 있다. 주정부는 그 권한을 최상급의 주행정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 b)에 따라 관할을 가지는 연방정부부서는 자신의 관할을 연방의회 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법령에 의하여 다른 관청 등에 이전할 수 있다.

40) Brohm, Öffentliches Baurecht, 1997, München, S. 433 ff. 참조 - 제재적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독일의 주 건축법(LBO)은 건축감독행정청의 사무와 권한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축질서상의 일반조항(Generalklausel)으로 이해되고 있다.

제 1 편 행정처분기준의 이론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부과 금액
에 반하여 건축계획을 실행한자		
5. 법 제76조 제2항에 반하여 이행허가 또는 표식, 검사없이 임시적인 건축행위를 한자	법 제84조 제1항 제4호 법 제84조 제1항 제5호	
6. 법 제72조 제6항에 반한 건축행위, 법 제61조 제3항의 6에 관련하여 설비를 철거한자, 법 제82조 제1항에 반하여 건축행위를 지속한자 또는 법 제82조 제2항 1과 2에 반하여 건축설비를 이용한 자	법 제84조 제1항 제6호	
7. 법 제72조 제8항에 반하여 건축개시 표식을 하지 않거나 또는 기간에 맞게 설치하지 않은자	법 제84조 제1항 제7호	
8. 법 제22조의 제4항의 조건규정에 반하여 U 표식을 사용한자		
9. 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에 반하여 U 표식이 없는 건축자재를 사용한자	법 제84조 제1항 제8호	
10. 법 제21조에 반하여 행한 건축영역	법 제84조 제1항 제9호	
11. 법 제53조 제1항, 법 제54조 제1항의 3, 법 제55조 제1항 또는 법 제56조 제1항의 건축관련자의 법적지위에 반하여 건축행위를 한자	법 제84조 제1항 제10호 법 제84조 제1항 제11호	

2) 바덴 뷔르템베르그와 베를린주의 건축법상 행정처분기준

독일 각 주의 건축법은 기본적으로 모범건축법에 기초하고 있음은 이미 밝힌 바 있다. 때문에 독일 각 주의 모든 건축법을 소개하고 우리의 경우와 비교함이 마땅하겠으나⁴¹⁾, 그 분량의 방대함으로 인해 아래에서는 바덴 뷔르템베르그와 베를린주의 건축법상의 제재적 행정

41) 독일 각 주의 건축법은, 예컨대 <http://www.bauordnungen.de/index.html>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처분에 관한 법규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가. 바덴 뷔르템베르그주⁴²⁾

§63 위법하게 표시된 건축생산품의 금지(Verbot unrechtmäßig gekennzeichnete Bauprodukte)

건축생산품이 제22조⁴³⁾의 규정에 반하여 Ü표(합치표시)가 표시된 경우, 건축법관청은 이 생산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그 표시의 가치를 소멸시키거나 그 표시를 제거할 수 있다.

§64 건축중지(Baueinstellung)

(1) 시설물이 공법상의 규정에 반하여 설치되거나 철거되는 경우에, 건축법관청은 건축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는 특히,

1.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계획,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교부받아야 하는 건축계획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계획의 시행이 제59의 규정⁴⁴⁾에 반하여 시작된 경우,
2. 건축계획이 필요한 건축검사(제67조) 또는 증명(제66조 제2항, 제4항)을 받지 아니하고 또는 일부건축허가(제61조)의 범위를 넘어서 수행된 경우,
3. 건축계획의 시행이, 이에 대하여 허가나 동의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급된 허가나 동의와 상위하는 경우,
4. 건축계획의 시행이 통지교부절차에 제출된 건축안에 상위한 것이 제50조⁴⁵⁾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건축안에 상위하는 경우,
5. 권한 없이 CE표(제17조 제1항 제2호)⁴⁶⁾이나 Ü표(제22조 제4항)가 표시된 건축생산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문서로 교부되거나 구두로 전달된 중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건축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건축법관청은 건축현장을 봉쇄하고 건축현장에 존재하는 건축자재, 건축물의 일부, 건축기구, 건축기계, 건축보조재료를 공공기관의 보관 하(in amtlichen Gewahrsam)에 둘 수 있다.

§65 철거명령과 이용금지(Abruchsanordnung und Nutzungsuntersagung)

공법상의 규정에 반하여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다른 방법으로는 적법상

42) Landesbauordnung für Baden - Württemberg(LBO), Fassung vom 8. August 1995 (GBl. S. 617),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14 des Gesetzes vom 14. Dezember 2004 (GBl. S 884).

태로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시설물이 공법상의 규정에 반하여 이용된 경우에는, 그 이용이 금지될 수 있다.

§75 규정위반(Ordnungswidrigkeiten)

(1) 고의 또는 과실로

1. 제2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건축생산품에 Ü-표를 표시한 자,
2.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반하여 Ü-표 없이 건축생산품을 사용한 자,
3. 제21조47)의 규정에 반하여 일반적인 건축승인, 일반적인 검사증 또는 구체적인 경우에 대한 동의 없이 건축양식을 사용한 자,
4. 건축주로서 제42조 제2항 제3문의 규정에 반하여 통지교부를 받아야하는 철거작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도록 한 자,
5. 계획설계자로서 제43조 제2항에 반하여 건축주에게 적합한 전문가를 주문해주도록 하지 아니한 자,
6. 사업자로서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건축현장이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고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배려하지 않거나, 필요한 증명을 제출하지 않거나 준비하지 않거나 또는 필요한 서류나 지시 없이 작업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도록 한 자,
7. 건축시공자로서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사업자의 안전한 작업협력을 주의하지 않은 자,
8. 건축주, 사업자 또는 건축시공자로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허가 없이 설치하거나, 또는 건축주로서, 이에 대하여 허가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급된 허가와 상위한 자,
9. 건축주 또는 건축시공자로서 통지교부절차에 제출된 건축안에 상위한 것이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건축안에 상위한 자,
10. 건축주, 시행사업자 또는 건축시공자로서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건축자유증(Baufreigabeschein)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계획의 시행을 시작한 자, 또는 건축주로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건축작업의 개시 또는 재개를 알리지 않았거나 또는 적시에 알리지 않았거나, 제59조 제 3, 4, 5항의 규정에 반하여 건축시행을 시작하였거나,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 반하여 사전적인 검사 없이 건축작업을 수행 또는 계속하였거나 또는 건축시설물을 사용하였거나, 제67조 제5항의 규정에 반하여 난방시설을 작동한 자는 규정에 위반하여 행위한 것이다.

(2) 이 법에 규정된 행정행위를 발급받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더 잘 알 수 있음에 반하여 부당하게 알리거나 또는 부당한 계획이나 자료를 제출한 자도 규

정에 위반하여 행위한 것이다.

(3) 나아가 고의 또는 과실로

1. 건축주 또는 시행사업자로서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가능한 처분에 위반한 자,
2. 이 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축규정이 이 별급규정에 대한 특정한 구성요건을 지시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규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축규정에 위반한 자도 규정에 위반하여 행위한 것이다.

(4)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10만 마르크까지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정위반에 관련된 대상물은 압수될 수 있다.

(6) 규정위반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행정청은 하급 건축법관청이다. 상급 또는 최상급의 주 관청이 강제집행가능한 행정행위를 발한 경우에는, 이 관청이 권한이 있다.

§76 현존하는 건축시설물(Bestehende bauliche Anlagen)

(1) 이 법에서 또는 이 법을 근거로 제정된 다른 규정에서 지금까지의 법에 의한 것과는 다른 요건이 요구되는 경우에, 생명 또는 건강이 위협되는 경우, 적법하게 또는 허가된 건축안에 따라 이미 시작된 시설물이 새로운 규정에 적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적법하게 현존하는 시설물이 근본적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1. 이 규정에 더 이상 상응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일부분이 의도하고 있는 건축계획과 구조적인 관계에 있는 경우 그리고
 2. 건축계획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일부분에 있어서 규정준수가 기대 가능하지 아니한 추가비용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일부분도 이 법 또는 이 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규정에 일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3) §22 Übereinstimmungsnachweis(합치증명).

44) §59 Baubeginn(건축개시).

45) §50 Verfahrensfreie Vorhaben(절차가 면제되는 건축계획).

46) Das Zeich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유럽공동체 표)(CE - Zeichen).

47) §21 Bauarten(건축양식).

나. 베를린주⁴⁸⁾

§77 위법하게 표시된 건축생산품의 금지(Verbot unrechtmäßig gekennzeichnete Bauprodukte)

건축생산품이 제22조⁴⁹⁾의 규정에 반하여 Ü표가 표시된 경우, 건축감독행정청은 이 생산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그 표시의 가치를 소멸시키거나 그 표시를 제거할 수 있다.

§78 작업의 중지(Einstellung von Arbeiten)

(1) 시설물이 공법상의 규정에 반하여 설치되거나 변경되거나 또는 제거된 경우에, 건축감독행정청은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는 또한,

1. 건축계획의 실행이 제71조⁵⁰⁾ 제6항, 제7항의 규정에 반하여 시작된 경우,
2.
 - a)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계획의 실행이 허가된 건축안과 상위한 경우,
 - b) 허가로부터 자유로운 건축계획의 실행이 제출된 자료와 상위한 경우,
3. 건축생산품이 제17조⁵¹⁾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CE-표 또는 Ü-표 없이 사용된 경우,
4. 정당한 권한 없이 CE-표(제17조 제1항 제1문 제2호) 또는 Ü-표(제22조 제4항)가 표시된 건축생산품이 사용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2) 문서로 교부되거나 구두로 전달된 중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허가되지 아니한 작업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건축감독행정청은 건축현장을 봉쇄하거나 건축현장에 존재하는 건축생산품, 건축기구, 기계, 건축보조재료를 공공기관의 보관하(in amtlichen Gewahrsam)에 둘 수 있다.

§79 시설물의 제거, 이용금지(Beseitigung von Anlagen, Nutzungsuntersagung)

시설물이 공법상의 규정에 반하여 설치되거나 변경된 경우, 다른 방법으로는 적법상태로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감독행정청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제거를 명할 수 있다. 시설물이 공법상의 규정에 반하여 이용된 경우에는, 그 이용이 금지될 수 있다.

§83 규정위반(Ordnungswidrigkeiten)

(1) 고의 또는 과실로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허용된 법규명령에 근거하여 발하여진 건축감독행정청의 강제집행가능한 문서형태의 명령이 이 벌금규정에 대하여 지시하

48) Bauordnung für Berlin(BauOBln) vom 29. September 2005 (GVBl. S. 495).

- 고 있는 한, 이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반하여 Ü-표 없이 건축생산품을 사용한 자,
 3. 제21조의 규정에 반하여 일반적인 건축감독상의 승인, 일반적인 건축감독상의 검사증 또는 구체적인 경우에 대한 동의 없이 건축양식을 사용한 자,
 4. 제2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건축생산품에 Ü-표를 표시한 자,
 5. 제39조 제4, 5항, 제50조 제1항 제1문, 제51조에 규정된 장애 없는 건축행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자,
 6. 건축주, 안설계자, 시행사업자, 건축시공자로서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문, 제56조 제1항 또는 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52)
 7. 필요한 건축허가(제60조 제1항), 일부건축허가(제73조) 또는 상위(제68조) 없이, 또는 이에 상위하여 건축시설물을 설치, 변경, 이용 또는 제62조 제3항 제2문에서 제5문의 규정에 반하여 제거한 자,
 8. 제71조 제7항의 규정에 반하여 건축작업을 시작한 자, 제62조 제3항 제5문의 규정에 반하여 시설물의 제거를 시작한 자,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건축작업을 계속하거나 또는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건축시설물을 이용한 자,
 9. 제63조 제3항 제2문에서 제4문의 규정에 반하여 건축계획의 시행을 시작한 자,
 10. 건축개시보고(제71조 제6항, 제63조 제5항)를 하지 않거나 또는 적기에 하지 않은 자,
 11. 이동건축물(Fliegende Bauten)을 시행허가(제75조 제2항) 없이 사용하거나 또는 보고 또는 검사(제75조 제6항) 없이 사용한 자,
 12. 제84조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라 제정된 법규명령이 이 벌금규정에 대한 특정한 구성요건을 지시하고 있는 경우, 이 법규명령에 위반한 자는 규정에 위반하여 행위한 것이다.
- 제1항 제8호에서 제10호에 의한 규정위반이 행하여진 경우, 규정위반에 관련된 대상물은 압수될 수 있다; 규정위반에 관한 법률 제19조53)가 적용된다.
- (2) 더 잘 알 수 있음에 반하여
1. 이 법에 규정된 행정행위를 발급받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알리거나 또는 부당한 계획이나 자료를 제출한 자,
 2. 검사기사로서 부당한 검사보고를 작성한 자는 규정에 위반하여 행위한 것이다.
- (3)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50만 유로까지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 (4) 규정위반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행정청은 제1항 제1문 제2호에서 제4호와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건축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중앙행정청(Senatsverwaltung)이고, 그 밖의 경우는 구역관청(Bezirksamter)이다.

§85 현존하는 건축시설물(Bestehende bauliche Anlagen)

- (1) 적법하게 현존하는 건축시설물은, 이 법의 규정 또는 이 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적어도 시설물의 설치시의 규정에 상응하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시설물은 시설물의 손상 및 도로-, 지역- 또는 교외경관에 대한 장애를 회피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제2문은 건축부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2) 이 법에서 또는 이 법을 근거로 제정된 다른 규정에서 지금까지의 법에 의한 것과는 다른 요건이 요구되는 경우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 특히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또는 허가된 건축안에 따라 이미 시작된 시설물이 새로운 규정에 적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지하에 있는 체류공간(Aufenthaltsräume)의 건축상태가 현재의 요구에 상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바닥이 연결되는 지면보다 1,5 m 또는 그 이하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 체류공간에 대해서도 이 법의 규정 또는 이 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3) 적법하게 현존하는 시설물이 근본적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더 이상 상응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일부분이 의도하고 있는 작업과 구조적인 관계에 있고 작업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일부분에 있어서 규정의 적용이 기대가능하지 아니한 추가비용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일부분도 이 법 또는 이 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규정에 일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4) 현대화계획(Modernisierungsvorhaben)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면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9) §22 Übereinstimmungsnachweis(합치증명).

50) §71 Baugenehmigung, Baubeginn(건축허가, 건축개시).

51) §17 Bauprodukte(건축생산물).

52) §54 Bauherrin oder Bauherr(건축주), §55 Entwurfsverfasserin oder Entwurfsverfasser (안설계자), §56 Unternehmerin oder Unternehmer(시행사업자), §57 Bauleiterin oder Bauleiter(건축시공자).

53) §19 Tateinheit(상상적 경합) OWiG.

(2) 우리나라와 독일의 건축법상 행정처분기준의 비교 및 분석

위에서 개괄하여본 독일의 건축법상의 행정처분기준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⁵⁴⁾

	바덴뷔르템베르그 건축법	베를린 건축법	우리나라 건축법
제 재 적 행 정 처 분	<p>§63 위법하게 표시된 건축생산품의 금지 건축생산품이 제22조의 규정에 반하여 Ü표가 표시된 경우, 건축법관청은 이 생산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그 표시의 가치를 소멸시키거나 그 표시를 제거할 수 있다.</p> <p>§64 건축중지 (1)시설물이 공법상의 규정에 반하여 설치되거나 철거되는 경우에, 건축법관청은 건축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는 특히, 1.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계획,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교부받아야 하는 건축계획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계획의 시행이 제59의 규정에 반하</p>	<p>§77 위법하게 표시된 건축생산품의 금지 건축생산품이 제22조의 규정에 반하여 Ü표가 표시된 경우, 건축감독행정은 이 생산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그 표시의 가치를 소멸시키거나 그 표시를 제거할 수 있다.</p> <p>§78 작업의 중지 (1) 시설물이 공법상의 규정에 반하여 설치되거나 변경되거나 또는 제거된 경우에, 건축감독행정청은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는 또한, 1. 건축계획의 실행이 제71조 제6항, 제7항의 규정에 반하여 시작된 경우, 2.</p>	<p>제69조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 ①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게</p>

54) 독일 건축법상의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는 김남철, “독일의 건축행정분야의 행정처분기준”, 『건축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자료집 (2006. 9. 28), 30면 이하 참조.

제 1 편 행정처분기준의 이론

바덴뷔르템베르크 건축법	베를린 건축법	우리나라 건축법
<p>여 시작된 경우,</p> <p>2. 건축계획이 필요한 건축검사(제67조) 또는 증명(제66조 제2항, 제4항)을 받지 아니하고 또는 일부 건축허가(제61조)의 범위를 넘어서 속행된 경우,</p> <p>3. 건축계획의 시행이, 이에 대하여 허가나 동의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급된 허가나 동의와 상 위하는 경우,</p> <p>4. 건축계획의 시행이 통지 교부절차에 제출된 건축안에 상위한 것이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건축안에 상위하는 경우,</p> <p>5. 권한 없이 CE표(제17조 제1항 제2호)이나 Ü표(제22조 제4항)가 표시된 건축생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p> <p>(2) 문서로 교부되거나 구두로 전달된 중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건축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건축법관청은 건축현장을 봉쇄하고 건축현장에 존재하는 건축</p>	<p>a)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계획의 실행이 허가된 건축안과 상위한 경우,</p> <p>b) 허가로부터 자유로운 건축계획의 실행이 제출된 자료와 상위한 경우,</p> <p>3. 건축생산품이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CE-표 또는 Ü-표 없이 사용된 경우,</p> <p>4. 정당한 권한 없이 CE-표(제17조 제1항 제1문 제2호) 또는 Ü-표(제22조 제4항)가 표시된 건축생산품이 사용된 경우에도 적용된다.</p> <p>(2) 문서로 교부되거나 구두로 전달된 중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허가되지 아니한 작업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건축감독행정청은 건축현장을 봉쇄하거나 건축현장에 존재하는 건축생산품, 건축기구, 기계, 건축보조재료를 공공기관의 보관 하에 둘 수 있다.</p>	<p>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④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p>

바덴뷔르템베르그 건축법	베를린 건축법	우리나라 건축법
<p>자재, 건축물의 일부, 건축기구, 건축기계, 건축보조 재료를 공공기관의 보관하에 둘 수 있다.</p> <p>§65 철거명령과 이용금지</p> <p>공법상의 규정에 반하여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다른 방법으로는 적법상태로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시설물이 공법상의 규정에 반하여 이용된 경우에는, 그 이용이 금지될 수 있다.</p> <p>§76 현존하는 건축시설물</p> <p>(1) 이 법에서 또는 이 법을 근거로 제정된 다른 규정에서 지금까지의 법에 의한 것과는 다른 요건이 요구되는 경우에, 생명 또는 건강이 위협되는 경우, 적법하게 또는 허가된 건축안에 따라 이미 시작된 시설물이 새로운 규정에 적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2) 적법하게 현존하는 시설물이 근본적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p>	<p>§79 시설물의 제거, 이용금지</p> <p>시설물이 공법상의 규정에 반하여 설치되거나 변경된 경우, 다른 방법으로는 적법상태로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감독행정청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제거를 명할 수 있다. 시설물이 공법상의 규정에 반하여 이용된 경우에는, 그 이용이 금지될 수 있다.</p> <p>§85 현존하는 건축시설물</p> <p>(1) 적법하게 현존하는 건축시설물은, 이 법의 규정 또는 이 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적어도 시설물의 설치시의 규정에 상응하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시설물은 시설물의 손상 및 도로-, 지역- 또는 교외경관에 대한 장애를 회피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제2문은 건축부지에 대해</p>	<p>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p> <p>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시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7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등)</p> <p>①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건축물이 국가보안상 또는 제4장(제30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함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②시장·군수·구청장</p>

바덴뷔르템베르크 건축법	베를린 건축법	우리나라 건축법
<p>1. 이 규정에 더 이상 상응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일부분이 의도하고 있는 건축계획과 구조적인 관계에 있는 경우 그리고</p> <p>2. 건축계획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일부분에 있어서 규정준수가 기대가능하지 아니한 추가비용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p> <p>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일부분도 이 법 또는 이 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규정에 일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서도 적용된다.</p> <p>(2) 이 법에서 또는 이 법을 근거로 제정된 다른 규정에서 지금까지의 법에 의한 것과는 다른 요건이 요구되는 경우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 특히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또는 허가된 건축안에 따라 이미 시작된 시설물이 새로운 규정에 적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지하에 있는 체류공간의 건축상태가 현재의 요구에 상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바닥이 연결되는 지면보다 1,5 m 또는 그 이하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 체류공간에 대해서도 이 법의 규정 또는 이 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p> <p>(3) 적법하게 현존하는 시설물이 근본적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더 이상 상응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일부분이 의도</p>	<p>은 미관지구 또는 풍치지구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 또는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p> <p>④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협회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철</p>

바덴뷔르템베르크 건축법	베를린 건축법	우리나라 건축법
	<p>하고 있는 작업과 구조적인 관계에 있고 작업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일부분에 있어서 규정의 적용이 기대가능하지 아니한 추가비용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일부분도 이 법 또는 이 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규정에 일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4) 현대화계획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면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p>	<p>거·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제69조의2 (이행강제금) ①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p> <p>1. 건축물이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p>

제 1 편 행정처분기준의 이론

	바덴뷔르템베르크 건축법	베를린 건축법	우리나라 건축법
			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이하 2. 건축물이 제1호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위에서의 비교표를 통하여,

- ① 독일의 경우에는 위법하게 표시된 각종 건축자재 및 용품에 대한 사용금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 우리나라 건축법은 건축설비의 기준(제55조)나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제도(제58조) 등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건축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들이 인증을 받은 것인지를 검사하고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한다면, 인증 받은 자재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거나 그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② 독일의 경우에는 제재적 처분으로 건축 중지, 철거명령, 이용금지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처분 이외에도 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 등 비교적 광범하게 제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되

어 있다. 더 나아가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고,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는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이른바 ‘인·허가의 제한’도 가능하다. 이러한 ‘인·허가의 제한’의 실무적인 운용에 있어 문제시 되는 점은 이와 같은 간접적인 제재조치가, 그 조치의 실효성에 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일단 비례원칙과 부당결부금지 등의 행정법상 일반원칙의 관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즉 위법한 건축물에 대해서 이 건축물을 이용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타인의 영업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와는 사물적인 관련성이 적은 다른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되어 위의 일반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⁵⁵⁾ 독일의 경우 이와 같은 수단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애초에 이와 같은 법리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도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인·허가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⁵⁶⁾

- ③ 우리나라 건축법 제69조의2는 이행강제금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이행강제금은 각 주의 건축법에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의 행정집행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집행법⁵⁷⁾에서 규정되고 있다. 예컨대 바덴 뷔르템베르그 주 강제집행법은 강제금, 강제구금, 대집행, 직접강제를 규정하고 있다.
- ④ 형벌의 부과액 및 유형구분의 문제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규정이 매우 단순하다. 즉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 범칙금의

55) 김성수, 전제서, 501면 참조.

56) 김동희, 전제서, 444면 이하 참조. 나아가 대형건축물의 경우 이와 같은 인허가제한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이 수단의 실용성에서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57) Verwaltungsvollstreckungsgesetz für Baden - Württemberg, Gesetz vom 12.3.1974 (GBl. S. 93), zuletzt geändert durch Gesetz vom 14.12.2004 (GBl. S. 895) m.W.v. 2.1.2005.

상한을 정하여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만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규정위반행위에 대해서 상한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벌이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까닭에, 형벌이 부과되는 구성요건이 구체적으로 세분되어 있고, 각 세분된 유형에 따라 차등적인 형벌이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내용적으로 다소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다.

2. 환경행정분야

(1) 독일 환경법령의 체계

독일기본법에는 환경기본권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단지 환경보호를 국가목적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독일기본법 제20조의a 참조). 한편, 독일에는 통일적인 환경법전이 존재하지 않고, 복수입법주의를 채택하여 개별분야별로 법령이 제정되어 있다. 다만, 1970년대 이후 통일된 환경법전(Umweltgesetzbuch)을 제정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예컨대 1990년 작성된 環境法典 教授草案(UGB-ProfE)⁵⁸과 1997년에 작성된 獨立專門家委員會案(UGB-KomE)이 마련된 바 있으며, 현재 독일 여·야의 大聯政(Große Koalition) 하에서도 통일된 환경법전의 제정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환경법전은 입법권한문제(연방과 란트 사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으나, 환경법전제정 프로젝트는 유럽통합의 영향으로 聯邦主義改革(Föderalismusreform I)과 연결되어 진행되고 있다.

58) 그 후 참여교수의 확대와 더불어 教授草案을 토대로 하여 1994년에 環境法典 各論(UGB-BT)이 만들어졌다(Entwurf von Kloepfer/Kunig/Papier/Peine/Rehbinder/Salzwedel/Schmidt-Aßmann, Umweltgesetzbuch - Besonderer Teil, 1994).

(2) 독일의 연방임밋시온방지법(Bundes-Immissionsschutzgesetz)상 행정처분기준

독일의 환경법령에는 대표적으로 연방임밋시온방지법(Bundes-Immissionsschutzgesetz)을 비롯하여 原子力法(Atomgesetz), 廢棄物法(Kreislaufwirtschafts-und Abfallgesetz), 水資源管理法(Wasserhaushaltsgesetz), 聯邦土壤環境保全法(Bundes-Bodenschutzgesetz), 聯邦自然環境保全法(Bundesnaturschutzgesetz),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주요법령을 중심으로 행정처분의 기준을 고찰하도록 한다.

연방임밋시온방지법 제43조 제1항 제1문 제3호에서는 연방정부가 건축시설에 있어서 소음에 의한 유해한 환경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騒音防止措置(Schallschutzmaßnahme)의 종류와 범위를 ‘法規命令’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수권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동법 제48조 제1문 제3호에는 임밋시온(Immission) 및 에밋시온(Emission)의 한계치, 임밋시온 및 에밋시온의 조사절차, 그리고 시설의 경우에 허가가 필요한 시설의 요건에 관한 법규명령(동법 제7조 제2항, 제3항)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에 대하여 연방정부가 ‘行政規則’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규정에 의해 발령된 騒音防止技術指針(TA Lärm: Technische Anleitung zum Schutz gegen Lärm), 大氣淨化技術指針(TA Luft: Technische Anleitung zur Reinhaltung der Luft)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지침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다.⁵⁹⁾ 다만, 이러한 행정규칙들을 “처분기준”에 관한 논의에 상응시키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방임밋시온방지법 제21조에는 시설허가의 철회(Widerruf)에 관해 규정하고 있

59) 독일의 판례는 騒音防止技術指針(TA Lärm: Technische Anleitung zum Schutz gegen Lärm), 大氣淨化技術指針(TA Luft: Technische Anleitung zur Reinhaltung der Luft) 대체로 制限된 外部效를 인정하고 있다. 상세는 Jarass,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Kommentar, § 48 Rdn. 19f.; ders., JuS 1999, S. 108f.; Kloeper, Umweltrecht, 2. Aufl., § 14 Rdn. 47ff.

다. 즉 적법하게 발급된 허가처분이 불가쟁력이 발생하더라도 동법 제12조 제2항 제2문 또는 제3항에서 철회가 유보된 경우, 허가에 부과된 負擔을 정해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분청이 사후에 발생한 사실에 의해 허가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되고 허가를 철회하지 않으면 공익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장래에 향하여 전부 또는 일부 철회될 수 있다. 요컨대 연방임및시온방지법 이외의 환경법령들에는 우리와 같은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罰則規程(Bußgeldvorschrift)’만 규율하고 있을 뿐이다.

예컨대 연방임및시온방지법 제62조는 질서위반내용을 제1항과 제2항에서 열거하고, 제1항의 질서위반에 대해서는 50,000유로(Euro)까지, 제2항의 질서위반에 대해서는 10,000유로(Euro)까지 罰金を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벌칙규정은 다른 환경법령에서도 마찬가지이다(수자원관리법 제41조, 연방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 연방자연환경보전법 제65조, 폐기물법 제61조 등). 요컨대 독일의 환경법령에는 벌칙규정 이외에 제재적 처분기준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경제행정분야

(1) 독일경제행정법령상 제재적 처분의 유형

1) 독점금지법상의 제재적 처분의 유형

독일의 독점규제 등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로는 경쟁제한방지법(GWB: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이 있다. 동법은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 사이의 합의, 기업합병의 결정 등 경쟁을 제한하거나 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57년 7월 27일 제정되어 195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즉 경쟁제한방지법은 카르텔금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및 합병 등 기업결합의 허

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⁶⁰⁾ 그러한 이유에서 동법은 소위 “카르텔(규제)법”(Kartellgesetz)이라고도 불린다. 동법의 집행은 연방경제기술부 산하의 독립된 연방최고행정기관인 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lamt)이 담당하고 있다. 舊 경쟁제한방지법은 동법을 위반하는 기업이나 기업합병 등에 대한 시정조치(Untersagung), 손해배상 및 부작위청구, 초과이득환수(Mehrerlösabschöpfung)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었으나(제32조 내지 제34조), 현행 경쟁제한방지법은 부작위 및 손해배상청구(경쟁제한방지법 제33조) 이외에 고의 또는 과실로 유럽공동체법을 위반하여 이익을 얻은 기업에 대하여 연방카르텔청 또는 단체나 기관 등을 통한(경제적) 利益還收(Vorteilabschöpfung)를 규정하고 있다(제34조, 제34조의a). 또한 연방카르텔청은 경쟁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의 위험이 존재하는 긴급한 경우에 직권으로 假命令(einstweilige Maßnahme)을 발할 수도 있다(제32조의a). 그 밖에 고의·과실로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벌금(Bußgeldvorschrift)을 부과할 수 있는 상세한 규정도 두고 있다(동법 제81조). 또한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불공정경쟁방지법(UWG: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이 제정되어 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경쟁제한방지법과 불공정경쟁방지법을 통합한 것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영업법상의 제재적 처분의 유형

영업법(GewO: Gewerbeordnung)은 특별경제행정법의 영역에 속한다. 영업의 자유의 원칙에 따라 규율되어 있는 영업법은 원칙적으로 영업의 개시 및 존속을 위해 필요한 행정상의 제한(예컨대 허가·의무)의 기속 없이도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의미하고, 영업활동의 제한은 단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협방지를 위해서 요청되는 경

60) 權五乘, 전게서, 120-122면 참조.

우에만 허용된다. 이러한 영업의 자유는 자유주의적 경제헌법의 주요한 원리이기도 하다.⁶¹⁾ 영업활동의 규율수단으로는 신고의무(제14조), 금지유보부 허가(제35조) 및 허가유보부 (예방적)금지(제55조의c) 등이 있다. 영업법 제144조 이하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허가가 필요한 영업, 여행업 및 영업행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한 행위를 한 경우(예컨대 무허가영업)에 질서위반으로 보고, 행정형벌(벌금포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영업의 개별분과들이 특별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접객업법(Gaststättengesetz)이나 수공업법(Handwerksordnung) 등이 그러하다. 그 중 접객업법에는 허가의 취소·철회, 금지 및 벌칙(5,000 Euro까지) 규정 등을 두고 있다(동법 제15조, 제20조 및 제28조 등). 또한 연방경제기술부장관은 동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연방참사원의 동의하에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29조).

그 밖의 특별경제행정법 분야에 속하는 에너지경제법(EnWG: Energiewirtschaftsgesetz)⁶²⁾, 여객운송법(PBefG: Personenbeförderungsgesetz) 등에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2) 처분기준의 유형

경제행정분야의 제재적 처분기준은 법률에서 직접 정하거나 위임에 의해 법규명령으로 정하는 것이 흔하지 않다. 또한 제재적 처분기준의 요건 및 대상에 대해서는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 등에서 상세히 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法效果法(Rechtsfolgerecht)에 해당하는 경제행정법령의 위반에 대한 제재(Sanktion)는 구체적인 행정상의 조치(Maßnahme)에 제한되지 않고, 질서위반법규(Ordnungswidrigkeitsrechtsnorm)이

61) P. Badura, in: Schmidt-Aßmann, Besonderes Verwaltungsrecht, 11. Aufl., S. 308.

62) 에너지경제법의 공식 법률명칭은 『전기 및 가스공급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Elektrizitäts- und Gasversorgung)이다.

나 형사법규(경제형벌)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경제행정분야에 있어서 제재적 처분기준도 법령에서 직접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행정규칙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행정규칙의 유형 중 재량지침적 행정규칙(ermessenslenkende Verwaltungsvorschrift) 또는 규범해석적 행정규칙(norminterpretierende oder gesetzesauslegende Verwaltungsvorschrift) 등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재량준칙은 특정한 방식으로 행정에게 부여된 재량(결정재량, 선택재량)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량행사에 있어서 행정 자신의 처분(결정)기준의 제시를 통해 법률의 구성요건을 불명확한 부분을 완성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정 자신의 처분(결정)기준은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비추어 법률의 목적을 지향하고 개별사례의 결정을 기초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재량준칙은 통일적이고 동등한 재량행사를 보장하는 임무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⁶³⁾ 다만, 경제법령에는 경제행정법규의 위반, 즉 경제행정불법(Wirtschaftsverwaltungsunrecht)에 해당하는 경우에 벌금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우 직접 법률에서 경제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벌금규정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벌금규정은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한다는 점에서 이를 요하지 않는 행정질서벌과 구별되고,⁶⁴⁾ 행정형벌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벌금은 특정한 경우에 질서위반으로 보고(경쟁제한방지법 제81조 제1항, 제2항), 경우에 따라 질서위반법(OwiG: Ordnungswidrigkeitengesetz)에 준용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다(경쟁제한방지법 제81조 제5항, 제10항 및 제82조 등 참조). 특히 경쟁제한방지법 제81조 제5항은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 질서위반법 제17조 제4항이 척도가 된

63) Thomas Sauerland, Die Verwaltungsvorschrift im System der Rechtsquellen, Berlin 2005, S. 65.

64) 대법원 1982. 7. 22. 선고 82마210 판결;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6949 판결.

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서위반법이 정한 벌금액의 상하한은 5유로(euro)에서 1,000유로에 이른다(질서위반법 제17조 제1항). 한편, 구 경쟁제한방지법 제34조의 초과이득환수(Mehrerlösabschöpfung) 또는 현행 경쟁제한방지법 제34조, 제 34조의a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제적) 이익환수(Vorteilabschöpfung) 규정은 부당이득금 박탈의 성격을 가지는 우리 ‘과징금’ 제도에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⁶⁵⁾

제 2 절 일 본

I. 서 론

일본의 경우 행정법적인 재량이론에 대한 논의보다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심사에 보다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때문에 행정재량이 긍정되는 경우라도 그 행사는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우선 법률에 의한 수권이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그 한도에서 사법심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처분기준설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는 달리 법률에서 처분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형식이 아닌 주로 중앙행정기관의 통달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심사기준·처분기준의 형식으로 설정하고 있다. 때문에 아래에서는 재량통제에 관하여 일본 행정사건소송법 제30조와 일본법상 행정처분기준의 심사기준에 관하여 먼저 개관하여 보고 이후, 각 행정영역별 행정처분기준의 운용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65) 과징금제도의 법적 의미에 대해서는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I□□, 제11판, 2007, 473면; 김동희, □□행정법 I□□, 제13판, 447-448면 참조.

II. 일본 「행정사건소송법」 제30조를 통한 법원의 심사

1. 행정사건소송법 제30조

행정사건소송법 30조는 “행정청의 재량처분에 관해서는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또는 그 남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효과재량의 재량통제의 척도로서는 목적위반, 비례원칙위반, 평등원칙위반이 있지만⁶⁶⁾ 법원은 그 심사에 즈음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는 정도의 심사에만 머물고 있다. 요건재량에 대해서도 재량이 주로 객관적 사실의 평가에 걸치는 경우 즉 정치적 정책적 재량의 경우에는 법원의 심사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는 정도에 그친다.

요건재량이 과학적 전문기술적 문제이며 그것이 사실의 인정 그 자체에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원의 심사는 미칠 수 없어야 한다는 견해도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것이 원자력발전시설과 같은 주민의 생명이나 건강에 커다란 피해를 가져오는 것일 때에는 이것을 들어 행정청의 판단에 맡겨 놓아도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 점에 관하여 최고재판소는 이방원자력발전소 원자로설치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안전성의 판단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전문기술적 판단에 재량을 인정한 다음 법원의 심리·판단은 원자력위원회 혹은 원자로안전전문심의회의 전문기술적인 조사심의 및 판단을 바탕으로 하여 행해진 피고 행정청의 판단에 불합리한 점이 있는가의 여부라는 관점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것을 부연하여 법원은 구

66)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연구(Ⅰ), 2006. 한국법제연구원, 32면 이하. - 일반적으로 일본의 재량통제 척도로서는 사실오인, 목적위반 내지 동기위반, 평등원칙위반, 비례원칙위반, 행정절차 위반 그리고 재량의 0으로의 수축 등으로 구분하여 논해지고 있다.

체적 심사기준의 불합리성, 원자력위원회 혹은 원자로안전전문위원회의 조사심의 및 판단과정의 간과하기 어려운 과오·결함의 심사를 행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⁶⁷⁾ 이 경우의 불합리성, 간과하기 어려운 과오·결함이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의 것을 말하는가는 반드시 명확하지 않고 더구나 사회통념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가능한 경우와는 달리 이점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해서 행하는가와 같은 문제는 별도로 하고라도 전문기술적 재량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적인 통제를 행한다는 것은 애당초 곤란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최고재판소도 재량통제를 재량권의 인정이라는 단계에서 결정조직의 통제라고 하는 형태로 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일본법상 처분기준의 의의 및 역할

(1) 처분기준의 의의

일본의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은 행정청에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준은 학설상 재량준칙이라 하는데, ‘행정절차법’은 재량준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기준’이라는 제도를 설정하고(동법 제5조), 불이익처분에 대해서 ‘처분기준’이라는 제도를 설정하고 있다(동법 제12조).⁶⁸⁾

우선, 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해 행정청은 심사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5조 제1항). 심사기준에 대해 ‘설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는 문언은 처분기준에 대해서는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문언과 비교해 보자면, 행정청에 심사기준의 설정을 원칙으로서 의무지우고 있는 것이라 이해된다. 그리고 이 심사기준은

67) 最裁 1992.10.29. 民集 46권 7호 1174면.

68) 다만, ① 두 기준 모두 행정의 내부기준이라는 점, ② 그 내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가능한 한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며(동법 제5조 제2항), “당해 신청을 접수하는 기관의 사무소에 비치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심사기준을 공표”(동법 제5조 제3항)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행정청은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도 처분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12조 제1항). 그 내용은 역시 ‘가능한 한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동법 제12조 제2항). 이러한 규정들로부터 심사기준의 설정·공표는 의무임에 반해, 처분기준의 설정·공표는 노력의무라고 해석된다.

(2) 지침에 의한 심사기준

일본법상 지침이란 상급행정청이 조직상의 감독권에 따라 소관의 하급기관에 대해 법률해석, 재량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하고, 행정상의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다.⁶⁹⁾

일본의 행정은 흔히 ‘법률에 의한 행정’이 아니라 ‘지침에 의한 행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을 정도로, 현실의 법집행에 있어서 지침은 법률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침은 행정조직 내부의 규범에 해당하여 행정조직 외부에 있는 국민에 대해 직접적인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즉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법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성질을 갖는 내부규범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지침에 위반하는 처분을 한다고 하여도 그 처분이 곧 바로 위법

69) 田中二郎, 新版行政法[上卷], 有斐閣, 1987, 164頁. - 지침이라는 용어는 통일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행정관청이 소관의 모든 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시달의 형식으로 이해한다. 아울러 행정의 일체성을 보유하고 국가의사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게 발하는 명령을 일반적으로 훈령이라 하고, 이들 가운데 서면에 의한 것을 특히 지침(通達)이라고 이해하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명령을 발하는 것을 훈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법령의 해석, 기타 사무처리의 기준 및 방침을 지시하는 구속력이 없는 시달을 지침이라고 구분하는 견해도 있다. (原田尙彦, 行政法要論, 学陽書房, 2004, 38頁.)

한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은 지침에 위반한 처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여도 지침의 위법성을 다툴 수가 없다.⁷⁰⁾ 그러나 현대의 행정현실은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중앙행정청에서 발하는 통달은 하급행정청에 대한 강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행정의 내용 자체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통달의 개정으로 인하여 법률해석과 행정재량의 지침이 바뀌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라 통달의 외부적 효과를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⁷¹⁾

(3) 심사기준의 역할과 구체성

1) 심사기준의 역할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인허가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구체화하여 설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행정청은 인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이다(기준으로의 자기구속). 기준을 준수할 의사가 없다면 기준을 설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기준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둘째, 행정청이 기준을 적용하여 인허가결정을 함으로써 행정청의 판단이 자의로부터 배제되고 그 합리성이 보장되게 된다.

70) 最判昭和43年12月24日民集22卷13号3147頁. “지침은 행정조직내부의 명령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국민은 직접적으로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지침의 내용이 법령의 해석이나 취급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하게 관련되는 것인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행정기관이 지침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을 한 경우라 해도 이를 이유로 그 처분의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또 법원이 지침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법령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지침에서 제시된 법령의 해석과는 다른 독자적 해석을 할 수 있고, 지침에서 정하는 취급이 법의 취지에 반하는 때에는 독자적으로 그 위법을 판정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여 지침의 대상적격을 부정했다.

71) 原田尙彦, 前掲書, 42-44頁.

셋째, 기준의 설정은 국민에 대해 인허가 결정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게 된다. 인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청준비를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넷째,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용이하지는 않지만,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가능성이 확장될 것이다.⁷²⁾

2) 처분기준의 구체성과 개별사정고려의 조화⁷³⁾

행정절차법에서는 심사기준·처분기준을 ‘가능한 한 구체적인 것’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5조 제2항). 이 ‘가능한 한 구체적인 것’이라고 하는 문언의 해석으로서는 ‘논리적이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구체적인 것으로 해야 하고, 재량적 판단의 여지를 의식적으로 남겨서는 안된다’고 하는 해석과 ‘완전하게 구체적인 것으로 하지 않아도 되고, 재량적 판단의 여지를 의식적으로 남기는 것도 처분의 성질에 따라서는 허용된다’고 하는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가능한 한 구체적인 것’이라고 하는 문언의 해석에 관해서는 어떤 견해도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와 같은 해석은 기준에 대한 행정청의 구속을 강화하고, 인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이 해석은 심사기준·처분기준의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법령으로 인정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고정화하는 것이고, ‘가능한 한 구체적인 것’에 대한 두 가지 해석가능성 중에서 어느 한쪽만을 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심사기준에 대해 요구되는 구체성의 정도는 처분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량으로 행해지는 처분이나 반복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구체성의 정

72) 芝池義一, 行政法總論講義[第4版], 有斐閣, 2002, 292-293頁

73) 芝池義一, 前掲書, 293-294頁.

도가 매우 강화되어야 하겠지만, 행정이 국민의 위험방지, 안전확보의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영역에서는 기준의 획일적인 적용보다도 그 당시의 최신의 지식이나 견해에 비추어 신중한 처리가 요청되게 될 것이다.⁷⁴⁾ 아울러 구체성이 높은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은 개별 신청을 심사함에 있어 개별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청은 처분의 단계에서도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공익을 배려해야 한다. 공익으로의 배려가 법령제정 단계나 기준의 제정단계에서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청이 부관을 붙여서 처분을 하는 것도 인정된다.

Ⅲ. 일본의 각 행정영역별 행정처분기준의 운용례

1. 건축행정분야

(1) 일본 건축행정에 있어서의 처분기준

일본의 건축행정분야에 있어서 처분기준의 설정은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지침에 의했으나, 지방분권의 실시 및 행정절차법의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건축행정분야의 처분기준을 설정하고 공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북해도의 건축사법에서의 처분순위(랭킹)제를 구체적인 예로 들면서, 일본의 건축행정처분기준 설정의 양태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일본 건축행정분야에 있어서의 처분순위제

1) 처분순위제의 도입목적과 운용

건설교통성은 1999년 12월 28일자로 ‘건축사의 처분 등에 대해(통지)’라고 하는 지침⁷⁵⁾을 발포했다(建設省住指発第784号). 이는 건축기

74) 阿部泰隆, 行政の法システム(下)[新版], 2002, 647-652頁.

75) 일본에서는 ‘通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본문에서는 ‘지침’으로 사용한다.

준법의 개정(99년 6월 12일), 건축물안전안심추진계획(平成11年4月6日建設省住指発第163号)에 따라 건축사의 징계처분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처분기준을 설정한 것이다(그리고 이에 따라, 종전의 지침(昭和59年12月13日建設省住指発第467号)는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건축행정분야에서의 처분기준의 설정양태로서 새로이 등장한 제도가 처분순위제라 하겠다.

처분기준은 2급건축사의 처분을 하는 도도부현의 담당자가 처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순위제’를 채용했다. 순위는 16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의 순위마다 ‘계고’, ‘업무정지1개월’이라고 하는 처분내용을 아래의 표와 같이 정하고 있다. 가장 중한 16순위는 면허의 취소이다.

또한 구체적인 위반행위에 대응한 징계처분 순위도 명확하게 했다. 예를 들면, 2급건축사가 본래는 할 수 없는 상가건물 등을 설계한 경우는 ‘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를 일탈’한 것에 해당되고, 처분순위는 6이다. 이를 아래의 처분구분표와 대조하자면 ‘3개월의 업무정지’라고 하는 처분이 된다.

<일본의 처분구분표>

랭킹	처분	랭킹	처분	랭킹	처분	랭킹	처분
1	문서주의	5	업무정지2월	9	업무정지6월	13	업무정지10월
2	계고	6	업무정지3월	10	업무정지7월	14	업무정지11월
3	업무정지1월미만	7	업무정지4월	11	업무정지8월	15	업무정지12월
4	업무정지1월	8	업무정지5월	12	업무정지9월	16	면허취소

<일본의 처분순위표>

		처분순위	
건축관련법령위반	건축사법 위반	중 · 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의 일탈	6
		중 · 업무정지처분위반	1 6
		· 지정시험기관의 비밀보존의무위반 (기관의 역직원등)	4
		중 · 위반설계	6
		중 · 법에 규정하는 공사감리자의 업무를 불이행 (공사감리불이행 · 공사감리불충분)	6
		· 무단설계변경	4
		· 설계도서의 기명날인불이행	4
		· 공사감리보고서의 미제출, 불충분한 기재 등	4
		· 건축설비자격자의 의견명시의무위반	4
		· 무등록업무	4
		· 허위 · 부정사무소등록	4
		· 사무소변경신고해태, 허위보고	4
		· 관리건축사부설치	4
		· 관리건축사사무소전임의무위반	4
		· 관리건축사전임의무위반	4
		· 사무소의 장부부작성, 불보존	4
		· 사무소표식비제시	4
		· 사업실적등의 서류의 비치, 열람의무위반, 허위기입	4
		· 업무위탁등의 서면의 교부의무위반	4
		중 · 사무소폐쇄처분위반	1 6
		· 사무소보고, 감사의무위반	4
		· 건축심의위원회의 부정행위	4
		중 · 건축사의 명칭사용, 명의차용	6
중 · 명의대여	6		
· 그외 타법령위반	4 - 1 6		
건축기준 법위반	중 · 설계, 공사감리규정위반	6	
	중 · 확인통지서등위조 및 동행사	6	
	중 · 무확인공사등	6	
	중 · 위반공사	6	
	· 무확인착공등용인	4	
	중 · 허위의 확인신청등	6	
	중 · 공사감리자란등허위기입	6	
	· 공사완료검사신청등해태	4	
	중 · 시정명령등위반	6	
	· 확인표시미계개	4	
· 그외 타법령위반	4 - 6		
상기이외의 건축관계 법령위반	· 확인대상법령위반	2 - 6	
	· 그외 타법령위반	"	

부성 실행 위 에 관 한 업 무	○현재의 건축기술수준에 비추어 부적당한 설계	1 - 4
	○의뢰자의 설계조건에 위반	
	○의뢰자의 지시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불교시	"
	○계약의 내용에 따르지 않은 업무시행	"
	○업무계약내용에 대한 설명부족	"
	○그외 부성실행위	"

처분순위표에서의 「중」은 중대한 위반으로 가장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나타내며, 상기에 기재가 없는 행위는 가장 유사한 위반행위의 예에 의한다. 위의 표에 있는 처분의 기준에 정상을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 감경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중대한 위반’에는 위반설계, 공사감리의 불이행, 명의대여, 확인통지서의 위조, 확인을 받지 않은 공사 등이 있다.

개별법적인 건축관련 법령의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으로서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가 건축기준법이나 건축사법 등의 건축관련의 법률, 조례에 위반한 때, 건설대신, 도도부현이 일정한 징계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처분에는 징계, 1년이내의 업무정지, 면허의 취소가 있다. 또한 건축사법에서는 법률에는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불성실한 행위’가 있다면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상주하면서 공사감리를 할 것으로 계약했음에도 최저한의 감리만이 이루어졌던 경우 등이다. 이러한 ‘불성실한 행위’에는 최대 1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2) 재범에게는 가중된 처분

두개 이상의 위반이 있었던 경우는 원칙적으로 무거운 처분을 내린다. 또 처분을 가중하거나 경감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 처분된 적이 있는 건축사는 아래표의 기준에 따라 새로운 위반행위의 처분랭킹이

가중되어 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다.

즉, 과거의 처분사유와 동일한 처분사유일 경우는 ()안의 처분이 된다. 다만, 과거의 처분사유가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 새로이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처분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면허취소를 한다. 또 과거에 2회 이상 처분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가중되는 순위는 그 각각의 합계에 새로운 처분사유의 순위를 합산하여 가중을 하게된다.

<과거에 처분 등을 받았던 경우>

과거행위	문서주의	계 고	업무정지	면허취소
문서주의에 상당하는 경우		+ 1 순위	(+ 2 순위)	
계고에 상당하는 경우		+ 3 순위	(+ 4 순위)	
업무정지에 상당하는 경우				
면허취소에 상당하는 경우		면허취소		

(3) 우리나라의 건축사법과 일본의 건축사법간의 처분기준 비교

일본의 처분구분표와 처분순위표에 따른 건축사법의 처분기준과 우리나라의 건축사법의 처분기준을 비교하여 개괄하면,

위반사항		처분기준		비고
우리나라	일 본	우리나라 (건축사법시행 령별표 1)	일 본 (처분순위표)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업 무신고 등을 한 사실이 판명된 때	허위·부정 사무소 등록	업무신고 효력상실	4 (업무정지 1월)	
2. 이 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의 이탈	업무정지 12월	(중) 6 (업무정지 3월)	
3. 업무정지명령을 받	- 업무정지처분 위반	업무신고	(중) 16	

위반사항		처분기준		비고
우리나라	일 본	우리나라 (건축사법시행 령별표 1)	일 본 (처분순위표)	
은 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사무소폐쇄처분위반	효력상실	(면허취소)	
4. 건축물의 구조상 의 안전에 관한 규 정에 위반하여 설 계 또는 공사감리 를 함으로써 공중 에 위해를 끼친 때		업무신고 효력상실		일본의 경 우 건축기 준법에 서 규정 -(중) 6
5. 연 2회 이상 건축 사의 업무정지명령 을 받은 경우 그 정 지기간이 통산하여 12월 이상이 된 때		업무신고 효력상실		
6. 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 에 관하여 불성실 한 행위를 한 때 가. 타인이 작성한 설 계도서에 서명 또 는 날인하여 건축 허가를 신청한 때 나. 『건축법』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지 아니하거나 감리 중간보고서 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다. 『건축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서면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때	공사감리보고서의 미제출, 불충분한 기재 사무소보고, 검사의무위반	업무정지 8월 업무정지 4월 업무정지 6월 시정명령	4 (업무정지 1월) 4 (업무정지 1월)	

제 1 편 행정처분기준의 이론

위반사항		처분기준		비고
우리나라	일 본	우리나라 (건축사법시행 령별표 1)	일 본 (처분순위표)	
라. 기 타				
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 무신고사항의 변경 등을 허위로 신고한 때	사무소 변경 신고해태, 허위보고	업무정지 6월	4 (업무정지 1월)	
8.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가.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4월		
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 또는『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가.『건축법』제21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건축법』제2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 때	법에 규정하는 공사감리자의 업무를 불이행 관리건축사 전임의무 위반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2월	(중) 6 (업무정지 3월) 4 (업무정지 1월)	

위반사항		처분기준		비고
우리나라	일 본	우리나라 (건축사법시행 령별표 1)	일 본 (처분순위표)	
	<p>다.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보고하거나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결과 건축물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때</p> <p>(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어 사망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p> <p>(2)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는 등 손괴를 가져오거나 위반사항의 시정을 위하여는 대수선의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p>	<p>업무신고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 12월</p> <p>업무정지 6월</p> <p>업무정지 3월</p> <p>업무정지 6월</p> <p>업무신고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 12월</p> <p>업무정지 6월</p>		(중) 6

제 1 편 행정처분기준의 이론

위반사항		처분기준		비고
우리나라	일 본	우리나라 (건축사법시행 령별표 1)	일 본 (처분순위표) (업무정지 3월)	
(3) 대수선의 규모 미만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라. 『건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현장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미흡으로 건축물의 붕괴등 손괴를 야기한 때 마. 『건축법』 제30조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 및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미흡의 원인이 설계자 또는 감리자에게 있는 경우 (1) 사망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 (2) 구조물이 붕괴되는 등 손괴를 가져오거나 당해 건축물 또는 인근시설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현저히 저	위반설계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4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위반사항		처분기준		비고
우리나라	일 본	우리나라 (건축사법시행 령별표 1)	일 본 (처분순위표)	
하시킨 때				
<p>(3) 당해 건축물 또는 인근시설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킨 때</p> <p>바. 『건축법』 제33조 내지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한 경우</p> <p>(1) 대수선의 규모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p> <p>(2) 대수선의 규모 미만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p> <p>사. 『건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내력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한 경우</p>		<p>업무신고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 12월 업무정지 4월</p> <p>업무정지 2월</p> <p>업무정지 4월</p> <p>업무정지 2월</p>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는 등 손				

제 1 편 행정처분기준의 이론

위반사항		처분기준		비고
우리나라	일 본	우리나라 (건축사법시행 령별표 1)	일 본 (처분순위표)	
<p>피를 가져오거나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현저히 저하시켜 대수선의 규모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p> <p>(2)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켜 대수선의 규모미만으로 건축물의 철거나 재시공이 필요한 때</p> <p>아. 『건축법』 제39조 내지 제41조 및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피난시설, 내화구조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한 경우</p>				
<p>(1) 사망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p> <p>(2) 대수선의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p>				

위반사항		처분기준		비고
우리나라	일 본	우리나라 (건축사법시행 령별표 1)	일 본 (처분순위표)	
<p>시 공 하 여 야 시정이 가능 한 때 (3) 대수선의 규 모 미 만 으 로 건축물을 철 거하거나 재 시 공 하 여 야 시정이 가능 한 때</p> <p>자.『건축법』제 44 조, 동법 제47조 내지 제49조, 동 법 제50조의2, 동법 제51조, 동 법 제53조 내지 제55조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 는 감리한 경우 (1) 대수선의 규 모 이상으로 건 축물을 철거하 거나 재시공하 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p>				
<p>(2) 대수선의 규 모 미 만 으 로 건축물을 철 거하거나 재 시 공 하 여 야 시정이 가능 한 때</p>				
10. 시정명령에 불응		업무정지 2월		일본의

제 1 편 행정처분기준의 이론

위반사항		처분기준		비고
우리나라	일 본	우리나라 (건축사법시행 령별표 1)	일 본 (처분순위표)	
한 때				경 우 건축기 준법에 서 규정 -(중) 6
11. 설계 또는 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건설공사 가 부실하게 될 우 려가 있거나 공중 에 위해를 끼칠 우 려가 있는 때		시정명령		
12. 기타 법 또는 법 에 의한 명령이나 『건축법』의 규정 에 위반한 때	그 외 타 법령 위반	시정명령	4 ~ 16 (영업정지 1월 ~ 면허취소)	

위에서와 같은 일본의 건축행정관련 행정처분기준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분석하여 본다면,

- ① 일본의 건축행정관련 각 실정법령은 별표의 형식으로 처분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정령이나 성령에 처분기준을 설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다는 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와 차이점이 있으며,
- ② 우리나라 건축행정관련법령의 처분기준은 행위에 대한 일률적 처분을 명시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처분기준의 다수는 법령의 조문에서 구체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은 통달과 같은 재량준칙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방분권개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는 권한에 대해 처분기준이 설정되고 있으나,

건축행정분야에 있어서는 처분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처분기준의 설정방식에 있어서는 건축사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처분순위제를 도입하여 경미한 처분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를 남기면서 개별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에 특색이 있다. 이러한 재량부여는 행정청의 공익적 판단을 허용하는 취지로 해석되어 질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건축관련법령의 행정처분기준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특히 제재적처분의 유형을 등급별로 순위화하여 수치적으로 비교하여 각 처분의 정합성을 도모하고자 함은 우리나라의 처분기준의 정비방안에 시사하는 바 있다 할 것이다.

2. 환경행정분야

(1) 일본의 산업폐기물처리행정상 처분기준

1) 폐기물처리법상의 원칙

가. 배출자책임의 원칙

동법 제11조는 산업폐기물에 대한 사업자의 ‘배출자책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동조의 내용을 보면, “사업자는 그 산업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제12조에는 “사업자는 스스로 그 산업폐기물의 운반 또는 처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정령에서 정하는 산업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분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여 폐기물처리기준은 정령에서 정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제11조 2호와 3호에는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가능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배출사업자가 폐기물처리허가업자에게 위탁해서 적정처리 하는 것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고, 위탁하여 처리할 수도 있음을 상정하고 있다(12조3항).⁷⁶⁾

나. 諸규제수단

이러한 폐기물의 규제수단으로서 수집운반처분업자의 허가제 외에,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당해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도지를 관할하는 都道府縣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처분장의 허가제(8조, 15조. 1991년 까지는 신고제)를 취하고 있다. 또한, 수집운반의 기준, 처분의 기준이 있다(6조의2, 12조).

1976년부터는 산업폐기물의 처리장도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산업폐기물의 중간처분의 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산업폐기물의 중간처분을 하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경사면에 잔토 등을 덮거나 흙으로 매우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곤란하게 한 행위는 매립처분을 한 것으로, 폐기물처리법 14조의2 제1항에 위반한다는 판례가 있다.⁷⁷⁾

2) 폐기물처리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

폐기물처리법상의 동법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내 용	법조문
1. 都道府縣지사는 특별관리 산업폐기물의 사업자, 운반수탁자 EH는 처분수탁자가 적절한 처리를 하도록 산업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勸告할 수 있다. 2. 위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자를 公表할 수 있다. 3. 공표에도 불구하고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권고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법 12조의6
都道府縣지사는 산업폐기물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산업폐기물처분업자가 위반행위 등을 했을 때에는 기	동법 14조의3

76) 山村恒年 □□環境法入門□□昭和堂、1999) 138頁.

77) 最決2002. 7. 15, 判例時報 1796号161頁.

내 용	법조문
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산폐처리업자가 폐기물처리법 또는 폐기물처리법에 근거한 처분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또는 기간을 정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명령을 할 수 있다.	
정상이 중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都道府縣지사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동법 14조의3의2
都道府縣 지사는 배출사업자 또는 산업폐기물처리업자가 폭력단원인 경우 등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동법 15조의3
‘산업폐기물처리기준’ 또는 ‘산업폐기물보관기준’이 적용되는 자가 당해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동법 19조의3
‘산업폐기물처리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처분이 행해지고, 생활환경상 지장이 생길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서 그 지장의 제거 또는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동법 19조의4

이처럼 동법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양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폭력단원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점은 특이한 점이라 하겠다.⁷⁸⁾

(2) 산업폐기물행정과 지방분권

일본에서는 지방분권개혁에 의해서 기관위임사무가 폐지되고 사무 그 자체의 폐지와 국가의 직접집행으로 된 사무 이외에는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로 나뉘었다.⁷⁹⁾ 폐기물처리법의 산업폐기물처리규제에 관

78) 이는 아마도 폐기물사업에 폭력단조직이 관여하여 불법투기 및 처분을 함으로써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 진다.

79) 이에 관해서는 줄저, 현대행정과 지방자치법, 세종출판사, 2002년, 83면 이하 참조.

한 사무는 기본적으로 기관위임사무였지만 나중에 상당수가 법정수탁 사무로 되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법의 2000년 개정 시에는 새롭게 몇 가지의 법정수탁사무가 생겼다.⁸⁰⁾ 환경성은 법정수탁사무로 된 사무의 몇 가지에 대해서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표시하였다. 환경성대신 관방폐물.리사이클대책부 산업폐기물과장 “행정처분의 지침에 대해서(통지)”가 바로 그것이다.⁸¹⁾

1) 지방분권을 통한 행정권한의 이양과 처분기준

가. 지방분권을 통한 행정권한의 이양

일본에서는 ‘헤이세이[平成]의 대개혁’의 일환으로 지방분권개혁이 있었고, 이러한 분권을 통해 각종 행정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이양되었다. 이로써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하고 이를 공표하게 되어 있다. 좀 오래된 조사이지만(2001년 12월 11일), 2000년 12월 31일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심사기준 및 처분기준의 설정에 관한 상황을 보면, 심사기준의 경우 1,453개의 처분 중에 1,185(81.6%)처분에 대해 심사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처분기준의 경우 1,237의 처분 중에 911(73.6%)의 처분에 대해 처분기준이 설정되어 있다.⁸²⁾

처분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는 첫째, 장래에 처분의 대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처분실적이 없어서 미리 처분기준을

80) 폐기물처리법에 규정된 법정수탁사무에 대해서는 동법 제24조의4에 한정열거되어 있다. 2000년 개정법에 대해서는 北村喜宣『廃棄物処理法2000年改正法の到達点』ジュリスト1184号(2000年)48頁以下.

81) 정식명칭은, 環廃産発第050812003号(2005年8月12日). 各都道府県・各政令市産業廃棄物行政主幹部(局)長앞으로 공시된 지침으로, “環境省大臣官房廃棄物・リサイクル対策部産業廃棄物課長”이름으로 되어 있다.

82) ‘행정절차법의 시행상황에 관한 조사결과-지방공공단체’(行政手続法の施行状況に関する調査結果-地方公共団体), http://www.soumu.go.jp/gyoukan/kanri/011211_1b.html참조.

정하기 곤란하고, 둘째, 사안별로 재량부분이 많아서 처분기준을 설정하기 곤란하고, 셋째, 과거에 신청실정이 있기는 하지만 장래에 신청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어, 그 기준을 설정할 실익이 없고, 넷째, 처분기준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다.

나. 행정처분의 지침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누차의 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및 처리시설의 허가의 취소 등의 요건이 강화됨과 함께, 조치명령의 대상이 확대되는 등, 큰 폭의 규제강화 조치가 강구되어지고,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의 지자체에 있어서는 自社處分이라고 칭해지는 무허가업자나 일부의 악질허가업자에 의한 부적정처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반복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사안이나, 부적정 처분을 행한 허가업자에 대해서 원상회복조치를 강구한 것을 이유로 계속해서 영업을 허용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이처럼 악질업자가 영업을 계속하는 것을 허용하고 단고한 자세로 법적효과를 동반하는 행정처분을 강구하지 않는 것이, 일련의 대규모불법투기를 발생시켜 폐기물처리 및 폐기물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러일으킨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都道府縣(정령에서 정하는 시를 포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가 계속해서 생활환경보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확보함과 함께 폐기물처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실시하기 바란다”고 하고 있다.

위 지침의 제정이유에서 명확히 하고 있는바와 같이, 지방분권에 의해 권한의 이양은 이루어 졌지만, 이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지침을 통해 과거와 같이 여전히 각 지자체를 통제 내지는 간섭하려고 하는 중앙행정청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

와 같이 폐기물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만큼 지자체 스스로의 반성도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2) 법정수탁사무와 처리기준

가. 산업폐기물행정과 법정수탁사무

산업폐기물규제에 관한 사무는 폐기물처리계획책정(동법 5조의3)과 같이, 자치사무로 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법정수탁사무로 되었다. 법정수탁사무란 ‘국가가 본래 해야 될 역할에 관한 사무로 국가에 있어서 그 적정한 처리를 특히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정령에 특히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지방자치법 제2조 9항). 요컨대 지자체의 사무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관심이 아주 강한 것으로 법령에 근거해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무를 말한다.

산업폐기물처리라고 하는 사무는 지역성이 강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국가의 경제정책과도 크게 관여하는 것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국가적 과제의 측면이 강하다고 인식되어져 있다.

나. 기술적 조연과 처리기준의 의미

기관위임사무가 있었던 시절, 후생성은 많은 ‘通達’을 내고 있었다. 통달이란, 상급행정기관인 장관(실제로는 과장이나 국장 등)이 하급행정기관인 지사나 시장 등에게 발하는 것이고, 국가와 지자체 사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통달은 기관위임사무 폐지와 함께 폐지되어졌다. 분권개혁에 있어서 국가와 지자체는 대등한 관계로 되어 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 법적구속력을 가진 명령이란 존재할 여유가 없게 되었다.

그렇지만 국가가 전혀 관여할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일본 지방자치법 제245조의4에 의해, 장관은 자치사무 및 법정수탁사

무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적인 조언’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245조의9에 의해, 법정수탁사무에 관해서는 ‘처분기준’을 낼 수 있다고 되어 있다.⁸³⁾

3) 사실인정의 객관성

가. 위반자의 주관적 의사의 불문

감독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률에 규정되어있는 처분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아닌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허가취소나 개선명령 등의 감독처분은 전제로 되어 있는 위반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것이므로 문제는 위반상태의 존재여부이지, 위반자 자신의 위반의사유무와는 관계가 없다. 이 점에서 ‘행정처분지침’은 주관적의사의 유무를 문제로 삼는 경향이 있는 이제까지의 都道府縣의 운용을 비판하고, 객관적 위반상태만을 고려해서 권한행사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객관성만을 문제로 삼아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지적이다. 다만, 행정현장에서는 객관적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허가취소나 개선명령 등에 있어서는 일본 행정절차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청문이나 변명기회의 제공을 함으로써 사실관계의 확인을 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자신 있는 사실인정이 가능하겠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하겠다.

나. 사실인정, 요건인정을 위한 조직과 제도

실정행정법의 전제로서의 행정은 폐기물행정에 있어서도 그 권한을

83) 이번에 나온 ‘행정처리지침’의 성격은 문면으로부터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각 都道府縣과 각 정령시의 산업폐기물행정주관부서 앞으로 나온, “環境省大臣官房廢棄物・리사이클 對策部 産業廢棄物 課長(2005년 8월 12일부)”의 지침인 점으로 보아, ‘지침의 법적성격’은 ‘처분기준의 조언 내지는 지도’라고 할 수 있다.

통달이라면 지 자체는 그 내용에 구속된다. 그러나 처리기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지만, 기술적 조언 내지는 지도는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이라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그것과 다른 법해석이나 대응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1) 이는 이전까지의 ‘통달’과는 다른 성격의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행사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태는 반드시 그렇지 않은 않다. 사실인정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처분을 회피한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한가지로 제3자적 기관을 설치해서, 당해사례에서의 사실인정을 구하고 그 의견을 밝아 처분의 판단을 한다고 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행정의 전문성’을 수정한 조치이다. 이 조직은 ‘행정처분지침’이 대상으로 하는 처분의 요건의 충족여부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부속기관적 조직을 만드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처분자에 의한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 배출사업자에 대한 조치명령은, 배출사업자가 ‘적절한 대가를 부담하지 않는 때’에 나올 수 있다. 행정처분지침에 의하면 이는 ‘부적정 처분된 산업폐기물을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처리요금으로부터 보아 명백하게 저렴한 요금으로 위탁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이러한 인정은 아주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자의적인 인정이 아니라고 여겨지기 위해서는 형식적일 수는 있지만 제3자적 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일 수 있다. 또한 무엇이 적정한 대가인가를 개별케이스별로 판단하는 것은 곤란한 작업이다. 거기에서 과거에 행해진 ‘보통의 처리계약’ 등을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처분지침은 ‘합리적 근거 없이 그 권한의 행사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위법이 될 여지가 있다’고 한다. 부작위가 위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국가배상책임을 상기시키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都道府縣에 대한 국가의 관여이다.

즉 지방자치법 제245조의7에 의하면 ‘都道府縣의 법정수탁사무의 처리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都道府縣에 대해서 당해 법정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위반의 시정 또는 개선을 위해 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

고 있다. 그 외에, 지방자치법 제245조의8은, ‘법정수탁사무의 관리 혹은 집행을 태만히 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정의 절차를 취한 뒤, 장관이 대집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⁸⁴⁾ 이는 都道府縣측을 견제하고 있는 조문이다.

다. 임검검사

현장검사를 규정하는 폐기물처리법 제19조에 대해서는 불법투기지에 대한 출입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것과 관할구역 외의 사업장에 대한 출입권한의 유무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고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⁸⁵⁾

확실히 ‘業으로서’라고 하는 경우에는 반복해서 계속 행할 의사가 있으면 된다. 그러나 무허가 업자의 불법투기지를 ‘사업소’에 포함시킨다고 하는 해석은 조금 무리가 있는 듯 하다. 일회성 불법투기라고 한다면, 그 장소에 관한 반복계속성은 없고, 별도로 토지소유자가 있는 곳을 ‘무허가업자의 사업소’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구역외 사업소에 대한 출입권한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해석으로서는 미묘한 것이지만, 이웃 현의 배출사업자가 자기 현에서 불법투기를 한 경우, 자기 현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이웃 현 사업소에의 출입도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검사기피 등은 벌을 받게 된다(30조6호).

라. 원상회복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고발조치를 지침은 권하고 있다. 즉 ‘정상참작을 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을 피하는 사례도 볼 수 있다’고 한

84) 국가의 관여에 대해서는, 成田頼明(監修) 『地方自治法改正のポイント；地方分権に向けた地方自治法抜本改正』(第一法規、1999年) 39-63頁.

85) 北村喜宣『えっ、入っちゃだめなの？；不法投棄現場への行政立ち入り権限』自治実務セミナー39卷2号(2000年) 63頁.

다. 거의 완전히 원상회복이 된다면 그에 대한 압력이라는 의미에서 고발은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불완전한 원상회복이 정상참작요인으로 된 경우가 문제이다. 벌금은 국고로 귀속되고, 그것은 당해 불법투기 등의 원상회복에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의 원상회복을 하고 벌금도 지불한다면, 남은 불법투기물에 대해서는 산업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적립된 기금으로부터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으면 된다(13조의13 제5호, 19조의8 제1호).⁸⁶⁾ 그러나 불완전한 원상회복에 의해서 생활환경보전의 지장이 아주 커지 않다면, 조치명령은 효과가 반감한다.

또 사법절차로 금전을 징수하는 구조에서는, ‘조직적인 범죄 및 범죄수익의 규제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수익몰수’의 절차가 있다. 폐기물불법투기에도 적용이 있다(동법 별표42). 원상회복과 사법절차를 통한 금전징수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는 폐기물처리법만의 문제는 아니고, 법정책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된다 하겠다.

4) 사후의 집행

‘행정처분지침’은 행정지도에 과잉 의존하는 소극적인 현장실무의 자세를 완전히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처분주체인 都道府縣의 문제라고 하겠다.

가. 위반처리규정의 시정

첫째는 매뉴얼의 시정이다. 위반대응을 함에 있어서, ‘위반처리규정’을 책정하고 있는 것에 의한다면 그 내용을 ‘행정처분지침’을 근거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적혀있는 사항은 법정수탁사무이고, 따라서 지자체의 사무이기 때문에 지침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86) 이 기금에 대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朝日新聞、2001年6月13日夕刊1面参照.

그 내용을 검토한 뒤, 스스로의 책임아래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침이 필요하고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따라서 都道府縣 독자의 해석에 의한 세부지침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자체는 행정절차법 제12조에 근거하여 허가취소나 조치명령 등의 불이익처분에 관한 기분을 책정하고 있을 것이다. 예외적이지만, 산업폐기물행정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동경도는 이를 공표하고 있다.

나. 정보공개

두 번째는 정보공개이다. 행정이 현장에서 인정한 위반사안에 관한 정보, 그리고 그에 대한 행정조치의 상황과 그 효과의 평가 및 금후의 예상을 공개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시민, 사업자의 코멘트 제출을 인정하고 행정의 회답을 의무지우는 것이다. 설명의무를 제도화할 필요도 있다. 신뢰성이 높은 환경행정의 실현은 환경기본조례가 요구하는 바이기도 하다.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그 만큼 이유가 있을지 모르나 그렇더라도 이를 설명할 의무를 지울 필요가 있다.

(3) 환경처분기준과 요강행정

1)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에 있어서의 要綱

환경행정의 영역에 있어서 지자체가 근거로 하는 법적규범은 법률이나 조례이지만, 그 이외에도 지자체는 요강에 근거하여 구체적 활동을 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본고의 말미에 있는 자료 “동경도 산업폐기물처리에 관한 행정처분요강”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要綱이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청 상호간의 협조에 의해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오직 행정지도라고 하는 비권력적 수단을 사용하여 시민의 행동을 규율하는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다.

요강행정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가진 구체적인 법규범이 없지

만, 그 유사한 지도기준에 근거하여 여러 종류의 행정지도가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요강이라고 하는 형식은 존재하지 않지만 행정관행에 의해서 일정한 사항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도 요강행정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종의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법적구속력은 없고 복종 의무는 없지만 그 준수를 기대하고 또 통일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기대되는 것으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또 강제성을 지니는 경우에는 ‘행정지도’의 성격을 벗어난 구속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하겠다.

2) 환경보전요강의 내용과 특징

환경에 관한 요강의 내용은 그 정책분야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의해 어떻게 시민을 컨트롤해 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몇 가지의 공통점을 지적할 수 있다.⁸⁷⁾

첫째, 사실상의 의무부과이다. 요강은 위에서 본 것처럼 조례는 아니기 때문에 법적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지만, 요강을 통하여 일률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나가와현의 ‘악취방지대책에 관한 지도요강’(1982년 제정)은 공장, 사업장의 설치, 관리자에 대해서 인접지의 택지경계선에 소정의 악취농도를 준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두 번째, 사실상의 의무부과와 비슷한 것이지만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행정지도준수의 사실상의 의무부과이다. 권고나 지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많은 요강에 자주 활용되어진다.

이상에서와 같이 일본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중앙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실무를 통한 감독과 요강 등을 통하여 환

87) 北村喜宣 □□自治体環境行政法□□(良書普及会、1997) 33頁以下.

경행정분야의 제재적 행정처분이 운용되어 지고 있다.

3. 경제행정분야

(1) 독점금지법상 과징금제도

일본의 과징금은 우리법상의 과징금과 거의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977년에 과징금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도입당시의 취지는 형사벌, 손해배상청구제도 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카르텔을 통해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카르텔 참여사업자가 취득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고자 한 것이었다. 즉, 카르텔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국가가 징수하는 것에 의해 위반자가 그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i)사회적 공정을 확보하는(공정성 확보) 동시에, (ii)위반행위를 억지하고(위반행위 억지), (iii)카르텔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카르텔 금지규정의 실효성 확보) 위한 행정상의 조치로서 도입된 것이다.⁸⁸⁾

심결취소소송의 관례에서는 과징금제도의 법적 성격에 대해 「과징금제도는 카르텔행위를 억지하는 일정한 효과가 있고, 사회적으로 봐서 일종의 제재(制裁)⁸⁹⁾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과징금제도의 기본적인 성격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공정의 확보를 위하여 카르텔행위에 의해 취득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부당이득의 박탈)에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형사벌과는 그 취지, 목적, 성질등을 달리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1991년 과징금액을 인상함에 따라 제재적 성격도 가미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⁹⁰⁾

88) 장교식, “일본의 경제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연구(II)』, (한국법제연구원, 2007. 6. 22), 19면.

89) 형벌이 아니라 이른바 sanction으로서 넓은 의미의 불이익처분

90) 和田健天, “獨禁法違反と課徴金・刑事制裁”, 『經濟法講座3』 (2002), 320-321頁

(2) 2005년 독금법의 개정

일본의 과징금제도는 2005년 독점금지법개정을 통해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동 개정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따라서 동 개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항을 바꾸어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과징금산정율의 인상 및 가산제도의 도입

가. 과징금산정율의 인상

과징금의 카르텔 억지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일본에서 검토된 것은 다음의 2가지이다.⁹¹⁾

(i) 제1방안은, 현행의 과징금제도를 폐지하고 이른바 □□제재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여기서 말하는 □□제재금제도□□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의 악질성, 유책성 등을 고려하여 재량적으로 금액(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재금제도하에서는 상한금액의 수준을, 위반행위에 의한 손실이나 위반행위의 적발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함으로써 카르텔에 대해 충분한 억제력을 갖도록 할 수 있다.⁹²⁾

(ii) 제2방안은 기존의 과징금제도를 보완·개선하는 방안이다. 즉 현행의 과징금제도의 기본골격⁹³⁾은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전통적인

91) 獨占禁止法研究會, “獨占禁止法研究會報告書”(2003) 15면 이하 참조

92) 경제학적으로는 위반적발률을 기준으로 하여 제재금을 설정함으로써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 이 방식에 의하면 제재금은 부당이익금액에 위반적발률의 역수를 곱한 금액(위반적발율은 성당하 낮은 수치(10-30%))이 되며, 현재의 과징금보다는 상당히 고액이 됨.

93) 즉,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을 배제하고 금지규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행정상의

입장이었던, 부당이득박탈이라는 관점에서 부당이득으로 의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금액을 징수한다는 태도를 바꾸어, 위반행위로 인해 수요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을 부담 또는 보상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위반행위에 의해 수요자가 입은 손실이라고 의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위반행위자로부터 과징금을 징수하는 방안이다.

제2방안과 기존방식의 차이는, 현행 방식이 위반행위자를 기준으로 「위반행위자가 부당이득한 금액」⁹⁴⁾을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것임에 반해, 제2의 방식은 위반행위로 인해 「수요자가 입은 손해로 의제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방식인데, 제2방식의 근거로는 (i)위반행위에 의해 위반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부당이득)은 현행과징금의 수준보다도 높을 수 있다는 점, (ii)위반행위에 의해 수요자가 입은 손실은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구입하게 된 것에 의한 손실(위반자의 입장에서는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입은 손실⁹⁵⁾도 포함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위 방안 중 일본에서 선택한 최종 방안은 (ii)의 방안, 즉 현행과징금제도를 보완·개선하는 방식이었다. 그 이유는 먼저 (i)의 방안(제재금제도)은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한다고 하는 관점에서는 타당하지만 다음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i)의 방안은 ①제제금이 지나치게 고액이 되어 죄형균형의 원칙에 반할 염려가 있으며, ②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관점에서 양형이 결정되면 형사벌과의 기능분화가 불명확하게 되고, ③제제금으로 보는 경우 그 법적성격으로 인해 위반행위의 고의, 과실 등의

조치로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일률적으로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식.

94)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부당이득한 것으로 의제할 수 있는 금액”.

95) 위반행위에 의해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수요자가 예산상의 제약 등에 의해 당해 상품이나 노무를 구입할 수 없게 된 것에 따른 손실이나 인접시장의 가격상승에 의해 수요자가 입게 된 손실 등도 포함된 개념임.

요건이 요구되는데, 이 경우 사건처리 절차가 번잡해 질 수 있으며, 그리고 ④형사벌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ii)의 방안에 대해서는 형사벌과의 기능분담이나 카르텔금지규정의 실효성확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반사업자에 대해 위반행위로 인해 수요자가 입은 손실로 의제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조치라면, 그 위반행위로 인해 사회가 입은 경제·후생적 손실을 부담 또는 보상하게 하는 범위내의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실을 발생시킨 자에게 당해 손실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환경법제등에서 이른바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이미 일반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수준의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한다고 하여도 이를 행정상 조치라고 보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둘째, 물론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불이익의 수준이 부당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점에서 과징금제도의 성격이 바뀌었고, 제재적 기능이 강화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제재로서의 기능은 위반행위를 개시한 날로부터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에 대해 일정비율의 금액을 기계적으로 징수하고, 위반행위가 종료하면 그 날 이후에는 징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디까지나 장래를 향하여 위반행위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고 또한 사회적 공정의 확보라는 행정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으므로 과거의 위반사실의 범정(犯情), 범행후의 정황 등을 평가하여 과하는 형사벌과는 그 취지나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

셋째, 과징금제도는 위반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실의 범위 내에서 경제적 불이익을 과하는 행정상 조치이며, 또한 여기서 말하는 손실이

란 민법상의 부당이득이나 손해의 개념과 같은 개별적으로 입증되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점에서 민사손해배상제도와도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가산제도의 도입

일본의 경우 이러한 점을 고려하는 한편, 카르텔 금지규정의 실효성 확보의 관점에서 이른바 □□가산제도□□ 즉, 과징금제도에 대해 행정상의 조치로서의 성격은 현재와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의 범위내에서 “과징금산정시 적용되는 기존의 비율”(과징금산정비율)을 상향조정함과 동시에, 위반행위의 빈도 등 일정한 객관적 요건을 마련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과징금산정비율에 일정비율을 가산하는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가산제도를 도입할 경우 가산요건을 어떻게 정하느냐, 즉 가산요건의 설정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2가지가 그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i) 첫째는, 과징금제도가 카르텔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의 가산요건은 행정의 투명성, 사업자의 예견가능성을 제고하면서도 - 위반행위의 악질성·유책성이 라는 주관적 요소를 배제한 보다 - 객관적인 요건으로서 과징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ii) 둘째는, 사건심사에 있어서 실무상 인정(認定)의 용이함이나 심판절차에 있어서 심사관과 피심인 쌍방의 절차상 부담 등을 고려하면 가산요건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가산의 요건으로서는 기본적으로 (i)위반횟수 (ii) 위반기간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iii)위반의 주체가 누구인가, 즉 대규모사업자에 의한 위반여부, (iv)위반사업자의 임원의 관여정도 도 가산요건으로서 중요한 검토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2) 과징금감면제도

□□과징금감면제도□□란 일정한 요건하에 과징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카르텔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⁹⁶⁾

과징금감면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제도가 카르텔금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상의 조치로서 도입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감면의 요건·수준을 법률로서 규정하고, 당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감면하는 형태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 감면의 요건·정도

카르텔금지규정의 실효성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감면의 요건은 (i)첫째, 위반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위반행위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유인(인센티브)을 제공하고, (ii)둘째, 사건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그리고 (iii)위반행위를 자발적으로 중단하려는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감면의 요건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위반사업자가 스스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필요하고 충분한 정보제공 등을 할 것

둘째, 자발적으로 위반행위를 중지할 것

그 대신에 다른 사업자에 대해 카르텔에의 참가를 강요한 사업자등에 대해서는 감면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면수준은 자발적인 신청을 유도한다는, 즉 자발적인 신청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첫 번째 신고자에 대해서는 전액을

96) 2005년 독점금지법개정에서는 카르텔에 관해 위반사업자가 스스로 위반사실을 신고하면 3번째까지의 신고자에 한해 과징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이를 두고 말함.

면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나. 감면대상자의 형사고발의 취급

형사고발사안에서 과징금감면대상자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때에는 당해 감면대상자의 형사고발은 하지 않는 쪽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과징금감면제도의 적용을 받더라도 형사고발은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 동제도를 이용할 인센티브를 갖기 어렵고, 그 결과 동제도는 무기능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징금감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정한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감면요건의 설정에는 (i)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정보제공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요건을 설정하고, (ii) 위반사업자를 고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예컨대 감면제도의 감면요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최초로 정보제공등을 한 자라고 정한다면, 정보제공자를 독점금지법위반죄의 고발권자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수를 한 자로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 형사법제상의 기준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고발하지 않는다는 제도설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 3 절 미 국

I. 서 론

우리의 경우 행정청은 사인이 법령 또는 처분에 의해 부과된 법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다양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 행정의 자력집행력으로 포괄되는 강제집행권한 외에 과징금, 행정상 공표 등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들에 관한 권한들이 그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사인이 법령 또는 처분에 의해 부과된 법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다양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경우와는 달리, 행정청은 사인과 마찬가지로 자력집행력이 인정되지 않는 결과, 사인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의무의 강제집행은 행정청이 법원에 법집행에 관한 소송(law enforcement lawsuit)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왔다. 따라서 환경행정에 있어서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는 배출허용기준 등의 상세화를 위한 행정입법(rule-making)은 우리와 유사하게 존재하나, 제재처분의 기준은 법원의 판결에 필요한 양형기준으로 존재할 수는 있으나, 우리와 같이 직접 처분의 기준으로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고려되어 진다. 그러나 행정 실무에 있어서는 처분의 기준에 관한 몇 가지 범주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주내서 운용되어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범주의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광범한 영역에서 대량의 집행이 요구되는 환경행정에 있어서 법원의 판결을 통한 집행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입법자가 행정청이 일정한 범위 내의 금전적 제재 등을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결과, 형성된 행정제재(administrative penalty)의 영역이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제재처분의 기준과 유사한 행정제재기준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
- ② 행정청이 법원에 법집행소송을 제기할 때 어느 정도의 제재를 구형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광범한 영역에서 대량의 소제기가 있을 것이므로 각급 사건에서 구형할 형량이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필요에 따라 EPA는 소송 제기 시 구형할

벌금액 등을 산출할 때 적용할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 ③ 법집행소송의 제기를 전후하여 환경행정청과 피규제자가 제재 등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므로, 그 합의가 자의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등이며, 이와 같은 범주를 통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이 운용되어 지고 있는 것이다.⁹⁷⁾

아래에서는 이러한 재량통제의 방법으로서 처분기준을 운용하고 있는 미국의 재량통제론을 개관하고 각 행정영역별 행정처분기준의 운용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II. 미국의 재량통제의 방법으로서 처분기준을 통한 재량통제론

1. 데이비스교수의 처분기준을 통한 재량통제

데이비스교수는 재량통제에서 처분기준의 설정과 더불어 공개와 견제를 중시하였다. 재량한정적인 처분기준이 형성되면 그 다음문제는 이 처분기준을 공개함으로써 재량을 구조화하고 이에 대한 통제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는 이를 재량의 구조화 및 재량의 견제라고 부르고 있다.⁹⁸⁾ 데이비스는 공개는 자의에 대한 본성적인 적이고, 부정의에 대한 투쟁에서 동지라고 표현할 정도로 공개를 중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계획, 정책, 규칙들이 비밀로 되어 있으면 당사자는 계획, 정책, 규칙들로부터의 자의적인 또는 의도하지 않은 일탈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데이비스는 헌법상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이론을 재량행사에도 적용한다. 즉 재량행사에서 견제원리는 자의에 대한 보호로

97) 이희정,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연구(II), 제5차 워크숍』”, 한국법제연구원, 2007. 5. 25., 5면 이하 참조.

98) Kenneth Culp Davis, *Discretionary Justice : A Preliminary Inquiry*, Louisiana State Univ. Press 1969, p. 97.

서 한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을 반드시 견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통상적인 견제권자는 재량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의 상급공무원일 것이다. 그리고 그 상급공무원도 차례로 직급조직에 따라 보다 상위의 공무원에 의해 견제된다.

데이비스교수의 규칙제정(처분기준 설정)과 공개를 통한 재량통제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실제적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없이 철저히 형식적·절차적인 면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행정자율적 통제를 중시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연방대법원이나 학자들로부터 적지않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행정규칙을 통한 재량통제라는 데이비스교수의 주장은 하급심판결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으나⁹⁹⁾ 연방대법원은 재량통제를 중시하지만 데이비스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¹⁰⁰⁾

2. 연방 및 주법률상 재량준칙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의 실태

미국의 연방 및 주 법률에서 재량행위와 관련하여 규정된 법문언을 분석하여 보면 크게 4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는 행정권에게 재량행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규정이고, 둘째는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를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적 규정이고, 셋째는 재량권행사를 위하여 행정권이 준칙이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이고, 네 번째는 재량준칙이나 기준이 법규명령을 대신할 수 없다는 주의적 규정이다. 전통적으로 미국 행정법은 행정권의 재량권행사는 입법과 사법의 본질적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권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전제한 다음, 이러한 재

99) 주요 판결로는 *Hoimes v. 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398 F. 2d 262(2d Cir. 1968) ; *Environmental Defence Fund v. Ruckelhaus*, 439 F. 2d 584(D.C., Cir. 198) ; *White v. Roughton*, 530 F. 2d 750(7th. Cir. 1976) 등이 있다.

100) 대표적인 사례가 *Morton v. Ruiz*, 415 U.S. 199(1974)를 들 수 있다.

량권의 행사가 독단적이고 남용된 경우에 구체적 사건성과 성숙성이 충족된 사건을 사법적으로 사후통제하는 시스템을 견지해 왔으나, 최근에는 사전적으로 준칙이나 기준의 마련을 강제하는 입법적 규정을 정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연방 및 주 법률(Statutes)상 재량준칙 및 기준에 관한 규정실태¹⁰¹⁾>

구 분		규정 조항 수
연방법률(U.S.C.)		1322
주 법률	Alabama	82
	Alaska	13
	Arkansas	88
	California	490
	Colorado	153
	Connecticut	103
	Delaware	44
	Washington D.C.	57
	Florida	340
	Georgia	143
	Hawaii	43
	Idaho	52
	Illinois	230
	Indiana	174
	Iowa	130
	Kansas	79
	Kentucky	106
	Louisiana	325
Maine	63	
Maryland	120	
Massachusetts	141	

101) <http://www.westlaw.com> - “discretionary directives /s guidelines” of Federal and States Statutes 검색자료.

제 1 편 행정처분기준의 이론

구 분	규정 조항 수
Michigan	222
Minnesota	186
Mississippi	129
Missouri	117
Montana	109
Nebraska	18
Nevada	21
New Hampshire	34
New Jersey	204
New Mexico	71
New York	409
North Carolina	136
North Dakota	33
Ohio	325
Oklahoma	128
Oregon	137
Pennsylvania	237
Rhode Island	35
South Carolina	73
South Dakota	41
Tennessee	134
Texas	255
Utah	36
Virginia	125
Vermont	50
Washington	152
West Virginia	110
Wisconsin	96
Wyoming	29
소 계	1,028

구 분	규정 조항 수
계	7950

이상의 표를 분석해 보면, 연방 법률뿐만 아니라 주 법률에서 재량 행위의 준칙이나 기준을 마련하여 재량권 행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미국의 각 행정영역별 행정처분기준의 운용례

1. 환경행정분야

(1) 미국의 연방대기오염방지법 (Clean Air Act)¹⁰²⁾ 상 행정처분기준

미국의 대기오염방지법 제7413조는 연방차원에서의 배출허용기준의 준수를 확보(enforcement)하기 위해 행정정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권한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1) 행정처분기준의 근거조항

가. (a)항 총칙

(가) SIP준수명령(Order to comply with SIP)

EPA의 장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관련되는 실행 계획 또는 허가상의 작위·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자가 있음을 안 경우, 그 위반자 및 관계 주정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언제라도 (A) 그 자에게 위반사항의 준수명령을 발하거나, (B) 제7413조 (1)(d)에 근거한 행정제재부과명령(administrative pe-

102) 동법의 별칭은 ‘Clean Air Act’이지만, 동법이 속한 법전의 장의 명칭이 CHAPTER 85 -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이므로, 그 실질에 맞게 ‘대기오염방지법’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nalty order)를 발하거나, 또는 (C) 본조 (b)에 따라 민사소송(civil action)을 제기할 수 있다.

(나) 주의 위반행위

한편 특정 주에 이러한 위반행위가 만연해 있어서 이것이 주정부가 위반된 실행계획이나 허가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EPA의 장은 주에 이를 통지하고, 고지 후 30일 이상 그러한 실패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공표(public notice)하여야 한다. 그 공표시점부터 주정부가 다시 당해 실행계획이나 허가제를 실효성있게 실행하고 있음을 입증하여 공표가 종료하는 시점 사이에(이를 ‘연방이 법집행책임을 맡는 기간(period of federally assumed enforcement)’이라 한다) EPA의 장은 그러한 실행계획이나 허가제 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누구에게나 위와 같은 세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의무 위반

위의 실행계획이나 허가제 이외의 의무 또는 금지 위반행위¹⁰³⁾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EPA의 장은 위의 (A)(B)(C) 또는 (D)법무장관에게 본조 (c)에 근거하여 형사소추를 개시하도록 요구(request)할 수 있다.

(라) 명령의 효력발생요건

위 각조에 근거한 명령은 명령을 받은 자가 EPA의 장과 협의(confer

103) “...any person has violated, or is in violation of, any other requirement or prohibition of this subchapter, section 7603 of this title, subchapter IV-A, subchapter V, or subchapter VI of this chapter,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requirement or prohibition of any rule, plan, order, waiver, or permit promulgated, issued, or approved under those provisions or subchapters, or for the payment of any fee owed to the United States under this chapter (other than subchapter II of this chapter) ...”

with)할 기회를 가진 후에야 효력을 발생한다. 명령의 사본을 위반 행위가 발생한 주의 대기오염관할청에 보내야 한다. 본조에 근거하여 발하여지는 모든 명령은 위반행위의 내용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특정하여야 하고, EPA의 장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하는 이행기한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반의 심각성 및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모든 선의의 노력을 고려하여야 한다.¹⁰⁴⁾ 명령이 회사(corporation)에 대해 발해지는 경우 그 명령의 사본은 적절한 회사 임원에게 발해져야 한다. 본조에 근거한 명령을 받은 자는 실제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발령일로부터 1년 이상 의무가 지속되지는 않는다.

나. (b)항 민사소송에 의한 법집행(Civil judicial enforcement)

EPA의 장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위반자가 영향받는 오염원, 주요 배출시설 또는 주요 점오염원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shall), 그리고 그 밖의 자일 경우에는 선택적으로(may)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적 또는 잠정적인 금지명령(permanent or temporary injunction), 각 위반행위별로 1일당 20,000 달러 이하의 범위내에서 민사제재금(civil penalty)의 부과, 또는 양자를 동시에 소구할 수 있다. ...

본 조에 근거한 민사소송은 위반행위가 일어난 장소 또는 피고의 주된 사업지를 관할하는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될 수 있으며, 그 법원은 그러한 위반행위의 제한, 준수명령, 민사벌금의 부과(assess), 그리고 본 법에 근거하여 국가에 납부할 수수료 및 기준위반으로 인한 민사제재금 및 납부불이행으로 인한 벌금을 징수할 권한 및 기타 적절한 구제수단을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104) Any order issued under this subsection shall state with reasonable specificity the nature of the violation and specify a time for compliance which the Administrator determines is reasonable, taking into account the seriousness of the violation and any good faith efforts to comply with applicable requirements.

다. (c)항 형사제재(Criminal Penalties)

고의로 동법상의 특정한 의무들을 위반한 자는 유죄판결을 통해 제 18편에 따른 벌금(fine) 또는 5년 이하의 구금(imprisonment) 또는 양자 모두 병과된다. 재범인 자는 벌금과 징역 양자 모두 2배로 가중된다.

고의로 보고의무 위반 등은 제18편에 따른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구금, 고의로 수수료를 미납한 경우는 제18편에 따른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을 과실로 방출한 자 또는 과실로 타인을 생명 또는 신체의 심각한 손상에 대한 급박한 위협을 초래한 자는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는 벌금과 15년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이 때 위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마다 1,000,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라. (d)항 민사제재금의 행정적 부과(Administrative assessment of civil penalties)

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방행정청인 EPA의 장이 민사제재금을 부과할 권한이 발생하는 것도 위 (a)1)에서 본 바와 같이 위반자에게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30일이 지난 후 및 연방이 주의 법집행권한을 대신 맡는 기간에 한해서이다. 행정청이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민사행정제재금(civil administrative penalties)은 기준을 위반한 1일 당 25,000달러를 상한으로 한다. EPA의 장의 이러한 권한은 총 제재금액이 200,000달러를 넘지 않고, 위반행위가 있었던 첫 날로 주장되는 날이 당해 행정처분을 받기 최소 12개월 이전이어야 한다. 다만 법무장관이 EPA 장과 공동으로 그 이상의 금액이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제재금처분이 적절하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PA의 장과 법무장관의 그러한 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EPA의 장은 위 제재금을 APA 554 및 556조에 따른 정식청문절차를 거친 후 명령으로 발해야 한다. EPA의 장은 이를 위한 증거조사절차(discovery) 및 기타 청문을 위한 합리적인 규칙을 발하여야 한다.(rule-making의 위임) 그러한 명령을 발하기 전, EPA의 장은 상대방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청문을 요구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EPA의 장은 본 조에 근거한 행정제재금에 대해 조건과 함께 또는 조건없이 타협, 수정 또는 감면할 수 있다.
- ③ EPA의 장은 법무장관 및 주정부와 협의하여 규칙(regulation)으로 ‘현장범칙금부과제도(field citation program)’를 도입할 수 있다. EPA의 장이 지정한 공직자 또는 사용인들은 이를 통해서 위반행위를 한 1일 단 5,000달러를 넘지 않는 민사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field citation을 발부받는 자는 EPA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거나 이에 대한 청문을 요구해야 한다. 당해 규칙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청문을 요구하지 않으면, 당해 field citation에 의해 부과되는 제재금은 최종적인 것으로 확정된다. 여기에서의 청문은 APA 554, 556조에 의한 청문이 아니라, 그냥 의견을 듣고 증거를 제출할 합리적인 기회에 해당한다.
- ④ 민사행정제재부과처분(order)을 받은 자 또는 현장범칙금을 부과(assess)받은 자는 D.C.연방지방법원, 기타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 등에 그러한 처분의 사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제재금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EPA의 장 및 법무장관에게 그 소장의 사본을 동시에 송부함으로써 제기되어야 한다. 송부 후 30일 이내에 EPA의 장은 동 법원에 행정제재부과처분이 발령된 근거가 된 기록의 사본 또는 그 목록(certified copy or certified index)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은 기록의 전 취지로 보아 위반행위를 인정할 실질적 증거(substantial evidence)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행정처분이 재량의 남용(abuse of discretion)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처분을 취소(set aside)하거나 환송(remand)하여서는 안 된다. 이 처분은 본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위 소송절차에서 미국정부는 부과된 제재금의 강제집행(recover)을 구할 수 있다.

- ⑤ 처분이 확정된 후, 또는 위 소송에서 EPA가 승소한 후 민사제재금의 납부 또는 행정제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EPA의 장은 법무장관에게 당해 명령을 강제집행하거나 제재금을 징수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관할법원에 제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 강제집행을 위한 소송에서는 그러한 명령이나 부과된 유효성, 금액 및 적절성(appropriateness)은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 부과된 민사제재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는 누구나 그 제재금과 지연이자 및 변호사 비용과 징수비용을 포함한 (그러나 이에 한하지 않는) 강제집행비용, 그리고 제재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의 매 사분기마다 부과되는 가산금(nonpayment penalty)의 납부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한 가산금은 미납된 제재금과 당해 사분기의 시작 시점까지 발생한 가산금 총액의 10%에 해당한다.

마. (e)항 제재금 부과 기준(Penalty assessment criteria)

본 조에 근거하여 민사제재금의 금액을 결정할 때 EPA의 장 또는 법원은 사업의 규모, 제재금 부과가 당해 사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위반자의 과거 의무준수의 내력, 준수를 위한 선의의 노력, 신뢰할 수 있는 증거(적용되는 실험방법 이외의 증거를 포함)에 의해 입증되는 위반의 기간, 과거에 위반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해 부과받았던 제재금의 금액, 기준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 및 위반행위의 심각성 (정의(justice)의 요청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밖의 요소들에 더하여)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바. (g)항 화해; 일반국민의 참여

본 법 하에서 미국 정부가 일방당사자가 되어 어떤 유형의 동의명령 또는 화해계약(enforcement action 제외)이 확정되거나 법원에 제출되기 최소 30일 이전에 EPA의 장은 연방관보를 통해 소송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EPA의 장 또는 법무장관은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을 신속히 고려하여, 그 의견을 통해 그러한 동의가 부적절하거나 동법상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음을 알려주는 새로운 사실 또는 고려할 사항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동의명령 또는 화해계약에 대한 그의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2) 제재기준의 규정방식과 내용

EPA는 법률(대기오염방지법) 및 1980. 7. 8 발령된 Civil Penalty Policy 상의 지침(guidance)에 규정된 고려요소들에 기초하여 민사소송으로 소구할 민사제재금을 산정하였다. 1984. 2. 16 EPA는 Policy on Civil Penalties(GM21)와 Framework for Statute-Specific Approaches to Penalty Assessments(GM22)를 발령하였다. 그 Policies는 제재금제도의 배경에 있는 일반적 철학에 초점을 맞추었다. Framework는 (오염)매체별 제재금 지침을 개발하는 프로그램 각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대기오염방지법 집행 프로그램은 그 Policy와 Framework를 따라 Clean Air Act Stationary Source Civil Penalty Policy를 기초하여 1984.9.12 발령하고, 1987. 3. 25 이를 개정하였다. 1991.10.25 그동안 EPA가 제재금의 계산 및 협상에서 축적한 경험을 반영하여 재개정되었다. 이하에서는 그 중 고정오염원에서의 대기오염방지법 위반행위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 Clean Air Act Stationary Source Civil Penalty Policy의 내용에 대해 개관해 보기로 한다.

소송 제기 시 청구할 제재금 산정은,
첫째, 기준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과,
둘째, 위반행위의 심각성(gravity)이라는 구성요소를 성립가능한(supportable) 가장 공격적인 가정(most aggressive assumptions supportable)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경제적 이익에 대한 부분은 100%가 포함되고, 심각성을 반영한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감경될 수 없지만, 오직 ‘당사자의 협력 정도’만을 근거로 하여 10%까지 감경될 수 있다. 이 요소는 본 정책의 지침(II.B.4.b.)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 화해에 의한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성실히 준수하려는 노력하였음을 근거로 한 총액 감경은 30%를 넘을 수 없다. 제재금을 가중하는 조정요소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핵심적인 회계 또는 비용의 수치가 이용가능하지 않으면, 성립가능한(supportable) 수치가 이용되어야 한다.

이 지침은 소장에서 청구한 금액이 이후 보다 상세한 정보에 기초하여 계산된 수정금액보다 낮지 않도록 함을 목표로 한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오염원 측에서 소송팀에게 보다 정확한 비용 또는 재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을 제공한다. 그렇게 하면 제재금은 협상 과정에서 모든 적절한 조정요소들을 반영하여 이 지침상 정당화될 수 있는 금액으로 재계산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사건에서는 제재금이 협상과정 또는 본안전 증거교환(prehearing exchange) 절차에서 받는 정보에 기초하여 재계산되는 바, 그 사건이 본안심리절차로 간다면 행정부의 소장은 그 새로운 금액을 반영하여 수정되어야 한다. 이로써 소장상의 금액은 정부가 본안심리에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을 반영하도록 확보할 수 있다. 청구금액에 대한 이러한 정책은 또한 모든 행정부의 청구(administrative complaints)는 “청구된 제재금의 근거를 설명하는 이유제시가 함께 되어야 한다는 40 C.F.R. 22.14(a)(5)의 의무를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이 지침은 또한 동법 제13조에서 열거한 법원 또는 EPA의 장이 제

제재금의 결정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반영한다. 이에는 사업의 규모, 제재금의 부과가 당해 사업에 미치는 영향, 위반자의 과거 기준준수의 경력, 준수를 위한 성실한 노력, 위반 기간,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거에 부과되었던 제재금, 기타 정의(justice)의 요청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소들이 포함된다.

이 지침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기준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제거하고 위반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제재금을 부과함으로써 어떻게 기준위반의 억지(deterrence)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를 기술한다. 둘째, 제재금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도록 하기 위해(fair and equitable penalty) 적용하여야 할 조정요소들에 대한 부분이다. 소송팀¹⁰⁵⁾은 전체 경제적 이익과 심각성 요소를 계산한 후 각 요소에 적용할 수 있는 조정요소가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그 결과 얻은 최종 금액은 이 지침에 따라 소송위험과 지불능력의 부재를 포함하는 모든 적절한 조정요소들을 다 고려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합의에는 이 제재금원칙에 따라 납부된 제재금은 연방세법상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억지효과를 위한 금액 산정

1984 . 2. 16 지침은 ‘위반행위의 억지’를 민사제재금 부과와 주요한 목적으로 삼고, 구체적으로는 모든 제재금은 기준 불준수로 인한 모든 중요한 경제적 이익을 제거하고, 이에 그 위반의 심각성을 반영하기 위한 금액을 더한다. 그 결과로 나온 금액이 ‘가억지금액(preliminary

105) 민사소송절차의 경우에는 Assistant Regional Counsel, the Office of Enforcement attorney, the Assistant United States Attorney, the Department of Justice attorney from the Environmental Enforcement Section, and EPA technical professional이 소송팀에 배정된다.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EPA technical professional 과 Assistant Regional Counsel이 그 사건에 배정된다. 소송팀의 권고는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야 한다.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위로 올라가서 EPA와 법무부의 magager 단계에서 합의되어야 한다.

deterrence amount)’이다. 이하에서는 그 구체적 산정기준과 각 요소에 대한 조정요소를 개관한다.

(가) 기준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제거

가) 차후로 지출이 미루어진 법준수비용으로 인한 이익

대다수의 경우, 기준 불준수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이를 준수하기 위해 지출하였어야 할 비용의 지출을 지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예컨대 오염방지설비의 설치비용 지출을 EPA의 법집행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연기함으로써 얻는 이익이다.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배출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설치 불이행
- 오염감축을 위해 필요한 공정변경의 실시를 불이행
- 테스트가 행해져야 하는 경우에 테스트 불실시
- 의무적인 모니터링 장치 설치 불이행

나) 회피된 비용으로 인한 이익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위반자는 그 준수비용을 영구적으로 회피할 수 있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 기존의 오염통제장치의 불가동 또는 적절한 운영·유지의 불이행
- 적절히 훈련된 인력을 충분히 고용하지 않는 행위
- 행정규제 또는 허가에서 요구하는 사전배려적인 조치의 불이행
- 오염시설의 제거로 인해 그 절차, 운영 또는 보존과 관련한 비용의 절감
-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테스트의 불실시
- 감시설비의 불가동 또는 적절한 운영·유지의 불이행
- 위반자가 설치하지 않은 시설의 운영·유지비

위 지연이익과 회피이익의 계산은 “Methodology for Computing the

Economic Benefit of Noncompliance”¹⁰⁶⁾에 의한다. 이는 상세한 경제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불이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BEN은 지역에서 동 분석을 실시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BEN 프로그램에 의하면 실제 이익을 포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EPA가 BEN과 다른 방식으로 제재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경제적 이익의 조정요소

만약 법집행절차 중에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화해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미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EPA나 주정부가 법집행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기다리는 편을 택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조정하거나 감가하지 않는 것이 일반 원칙이다. 그러나 이를 감경할 수 있는 3가지 경우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송무팀은 그 화해계약문서에 그 이유를 상세히 적시하여야 한다. 3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경제적 이익이 소액일 경우

경제적 이익의 부과 및 이후의 협상절차를 수행하는 데 상당한 자원이 투하되므로, 만약 경제적 이익이 그리 크지 않아 해당 위반사업자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의미가 없다. 따라서 소송팀은 경제적 이익이 5,000달러 미만일 때 경제적 이익을 구하지 않을 재량권을 가진다. 그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 위반자에 대한 영향력: 경제적 이익의 징수가 위반자의 경쟁적 지위 또는 총이윤에 뚜렷한 영향을 줄 개연성이 없어 보이면 이는 청구되지 않아야 한다.

¹⁰⁶⁾ Technical Appendix A of the BEN User's Manual

- 심각성요소의 정도 : 심각성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으면 그 자체 만으로는 충분한 억지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재금액을 충분한 금액으로 산정하기 위해 경제적 이익요소를 그 자체로서는 금액이 적더라도 산입해야 한다.

(나) 공익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그 사건을 소송절차로 가져가서는 달성할 수 없는 공익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화해성립을 위해 경제적 이익 요소의 감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한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 경제적 이익을 회수하면 당해 공장이 폐쇄 또는 파산되거나, 기타 극심한 재정적 부담이 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업이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공익에 기여하는 것일 때 이를 감경할 수 있다. 단, 이를 감경하기 전에 이자부 분할납부와 같은 대안적 납부계획(alternative payment plans)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면제는 그 공장이 다른 사유로 인해 어차피 폐쇄될 상황이거나 유해한 기준위반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경제적 이익요소는 지방자치체와 공익산업체 등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그 경제적 이익에 기초한 제재금 부과 시 필수적인 공익서비스의 계속적 공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제120조의 행정소송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연방행정청이 제113(b)에 의한 민사소송으로 제재금 부과를 구하는 경우(civil judicial action), 제113(d)에 의해 EPA의 장이 이를 부과하는 경우 (civil administrative action)와 별도로 제120조에 의해 주정부 또는 연방행정청이 기준 위반자에게 위반사실을 고지하면 위반사업자가 스

스로 EPA의 규칙에 따라 계산한 제재금 및 그 납부일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기오염방지법은 양자의 병과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각각 계산하면 되나, 혹 제120조에 의한 경제적 이익을 감경한 제재금도 충분한 저지효과를 가진다고 판단되면 감경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심각성

법률 제113조(e)에 열거된 다양한 고려사항들이 심각성 요소에 포함된다. 위반행위의 심각성을 금전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요소들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러한 객관적인 요소들과 위반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금전적 지표를 연결시켜 두면 유사한 정도의 위반행위를 한 자를 유사하게 취급할 수 있다.

(가) 고려할 객관적 요소

- ① 실제의 또는 가능한 위해: 이 요소는 피고의 행위가 주의 환경법 실행계획, 연방정부의 규제 또는 허가에서 허용하는 배출기준을 위반하여 결과적으로 오염원을 배출하는 데 이르렀는지 여부 및 그 정도에 초점을 맞춘다.
- ② 규제체계에 있어서 중요성: 대기오염방지법 및 그 실행을 위한 행정입법 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위반된 기준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다.
- ③ 위반자의 규모: 위반자의 사업규모에 비례하여 심각성의 요소는 가중되어야 한다.
- ④ 오염물질의 양: 배출된 오염물질의 양에 기초하여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⑤ 환경의 민감성: 어디에서 위반이 일어났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대기오염방지법상 대기질 수준이 이미 기준에 적합한 지역에서

과도한 배출이 일어난 경우보다 심각성이 크다.

- ⑥ 오염물질의 독성: 공기오염유해물질방출기준(National Emissions Standard for Hazardous Air Pollutants(NESHAP) 상 열거된 독성 오염물질과 관련
- ⑦ 위반 기간: 통상 위반기간이 길수록, 위험이 더 크다.
- ⑧ 위반자의 사업규모

(나) 객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

- ① 위반의 정도

배출기준을 상회하는 정도	재제금액의 기준
1 - 30 %	\$ 5,000
31 - 60 %	10,000
61 - 90 %	15,000
91 -120 %	20,000
...	...
271- 300 %	50,000
300% 이상	50,000 + 기준의 30% 이상 초과마다 \$ 5,000 추가

- ② 오염물질의 독성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NESHAP 배출기준의 위반 시에는 각 유해공기오염물질 당 \$15,000 가 부과된다.

- ③ 환경의 민감성

- 대기질 기준에 못 미치는 지역

i . Ozone

Extreme	\$ 18,000
Severe	16,000
Serious	14,000
Moderate	12,000
Marginal	10,000

ii. Carbon Monoxide and Particulate Matter

Serious	\$ 14,000
Moderate	12,000

- 대기질 기준을 넘는 지역 PSD Class I : \$ 10,000
- 대기질 기준을 넘는 지역 PSD Class II or III : \$ 5,000

④ 위반 기간

위반기간은 처음 위반하였다고 추정되는 날짜부터 기준 준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인 날까지 계속하여 위반상태에 있었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오염원이 계속적인 배출모니터링 데이터 등을 통해 위반상태가 계속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적극적 증거를 제시한다면, 그에 따라 적절히 기간이 수정되어야 한다. 이 기간은 위반사항 하나하나마다 별도로 평가된다. 예컨대 한 오염원이 배출기준, 시험의무,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면, 각각에 대해 별도의 기간이 산정된다.

Months	Dollars
0-1	\$ 5,000
2-3	8,000
4-6	12,000
... 55-60	... 55,000

- 규제체계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중요성
- 작업 기준 위반 \$ 10,000-15,000
- 보고 및 고지 의무 위반

제 1 편 행정처분기준의 이론

보고 또는 고지 불이행	\$ 15,000
늦은 보고 또는 고지	\$ 5,000
불성실한 보고 또는 고지	\$ 5,000 - 15,000

- 시험의무 위반

시험의무 불이행 또는 부적당한 시험방법의 이용	\$ 15,000
늦은 시험 의무 이행 또는 부적절한 절차의 이용	\$ 5,000

- 배출통제시설 관련 위반

배출통제시설의 운영·유지 불이행	\$ 15,000
부적절한 운영·유지	\$ 5,000 - 15,000

- 위반자의 사업규모

기업순가치 또는 순유동자산	금액
Under \$ 100,000	\$ 2,000
\$ 100,001 - 1,000,000	5,000
\$ 1,000,001 - 5,000,000	10,000
... over 100,000,000	70,000 + 매\$ 30,000,000 당 \$25,000 증가

(다) 위반행위의 심각성의 조정요소

지침의 두 번째 목적은 피규제기업들을 형평에 맞게 처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재금 산정체계는 각 사건의 독특한 사실관계들을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탄력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유사한 상황에 있는 위반자들을 유사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일관성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사건들 간의 정당한 차이점들 중 다수의 요소를 인식하고 그러한 요소들이 있을 때 심각성 요소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정해 둬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협상 전에 심각성의 요소에 이러한

조정을 하여 협상 시 제시할 최소 금액을 산출한다. 그리고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 새로이 취득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추가로 조정을 하게 된다. 그러한 요소들로는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협력의 정도, 과거의 위반경력, 환경과피의 영향이 있다. 이 조정요소는 심각성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경제적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이 요소는 오직 제재금의 가중을 위해서만 고려될 수 있다. 대기오염방지법은 민사소송단계에 있어서는 엄격책임원칙을 적용하는 법률이므로, 고의 또는 그 흠결은 법적 책임의 결정과 관련이 없다. 그러나 이것이 그 금액의 산정에 있어 아무런 차이도 가져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고의적인 위반은 형사책임을 야기할 수 있고, 아무런 과실 또는 고의가 없는 경우 이는 이 요소에 기초한 더 이상의 가중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 두 극단 가운데 지점에서는 제재금의 금액에 고의나 과실의 요소가 반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위반자가 그 위반행위에 대해 가지는 통제권의 정도

나) 협력 정도

이 요소는 가중 또는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사업자가 전혀 준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행정청과 불성실하게 협상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가중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오염원이 보고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불준수함을 신속히 보고한 경우, 환경문제를 신속히 교정한 경우, EPA가 당해 오염원의 준수 여부를 사전조사 과정에서 사업자가 적극 협력한 경우에는 이는 감경사유가 될 수 있다.

다) 과거의 위반 전력

이 요소는 가중 사유로만 활용된다. 당해 위반자가 과거에도 환경법 위반경력이 있었다는 점은 과거의 제재가 억지력을 발생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소송팀은 위반자의 모든 과거의 환경법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위반행위가 있으면 가중하여야 한다.

이 조정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소송팀은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 과거 위반행위와 현재 위반행위의 유사성
- 과거 위반행위 이후 경과된 시간
- 과거 위반행위의 횟수
- 과거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자가 과거의 문제를 교정하거나 장래 위반을 피하려는 노력
- 반복된 범위반으로 인해 심각성 요소가 이미 증가된 정도
행위의 유사성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 동일한 허가의 위반
- 동일한 배출기준의 위반
- 오염원의 공정 중에서 동일한 지점에서의 위반
- 동일한 법률 또는 규칙 규정의 위반
- 유사한 작위 또는 부작위

라) 환경에 미치는 손해

심각성 요소에는 이미 환경에 대한 손상의 정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소송팀은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더 가중할 수 있다. 인구가 집중된 지역에 독성이 있는 대기오염물질이 심각한 정도로 배출된 경우 등이 그러한 예이다.

3) 제재기준의 적용범위와 효력

이 지침은 대부분의 대기오염방지법 위반에 대해 적용되지만, 그 성질 상 이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의 기준이 적용된다. 예컨대, 비닐 클로라이드 NESHAP 위반 시의 심각성 요소, 석면 NESHAP demolition and renovation 위반 시의 경제적 이익 및 심각성 요소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존재한다. 그러나 제재금의 가중 또는 감경을 포함하는 조정요소는 이 일반지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990. 11. 15 대기오염방지법의 개정 시, EPA는 소송에 의하지 않고, 직접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행정청이 제재금을 직접 부과할 경우 위반일 당 제재금 부과액은 민사소송으로 소구할 때와 동일하나, 총액에 대해 제한이 있고, 위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시간적 제한이 있는 점이 다르다. 이렇게 직접 부과할 경우에도 소송에 의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의 Penalty Policy상의 지침에 따라 제재금을 계산하며, 또한 동 지침은 소송수행 중 화해를 하는 경우에 적용할 화해 최소금액의 산정에도 이용될 것이다.

이 지침은 기존의 화해명령판결(consent decree)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에서 청구되는 제재금액 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EPA는 통상 당해 화해명령판결에 명시된 제재금액을 청구하고, 만약 명시된 금액이 없는 경우 case development team이 적절한 금액을 제시할 것이다. 소송에서 이 지침은 법집행소송의 본안전 화해(pre-trial settlement)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사실심 단계에서는 정부측 변호사는 이 지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청구할 제재금액 산정에 참고할 관련 있고 유용한 자료로 이용할 수는 있으나, 통상은 이 지침에 따라 산정된 최소화해금액보다는 더 높은 금액을 청구할 것이다.

이 지침에 명시된 절차들은 오직 정부공무원에 대해 지침을 주기 위한 목적만으로 규정된 것이다. 이는 누구라도 미국과의 소송을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실체적 또는 절차적 권리를 창설하는 근거로 의도되지 않았고, 근거가 될 수도 없다. EPA는 이 지침과 달리 행

동할 권한 및 일반 국민에게 고지하지 않고(public notice) 언제라도 이를 변경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2. 경제행정분야

(1) 미시간주 법률위반 행정처분 현황

연방국가인 미국의 경제행정법령에 관한 행정처분기준관련 조사는 미시간주를 표본모델로 하여 행정처분현황과 그 가운데 경제관련 의 무위반이 가장 많은 보험업법 관련 내용을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미시간 주 노동·경제발전분과(Department of Labor & Economic Growth)에서는 2006년 3/4분기 해당 경제관련 행정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보험(insurance)관련 위반사항이 15건으로 3/4분기 전체 위반사항의 57.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주식(securities)관련 위반사항은 7건(26.92%), 저당(mortgage)관련 위반은 4건(15.39%)로 각각 조사되었다. 각 항목별 자세한 법률위반사항과 그에 해당하는 행정조치는 아래의 표에 재구성하였다.

<법률위반 행정처분 현황(2006년 7~9월)>

해당법률	위반사항(107)	행정조치	건수(108)
보험법, MCL 500장	402조, 무면허 활동	중지명령	1
	438조 3항, 응답불응	\$1,000 과태료	2
	1201조 (a)항, 무면허 활동	중지명령	1
	1204조, 응시료 미납부	중지명령	2
	1207조, 대리인의 위	\$350 배상명령	1

해당법률	위반사항 ¹⁰⁷⁾	행정조치	건수 ¹⁰⁸⁾
	법행위		
	1207조 3항, 선물제공	면허취소	1
	1232조, 무면허 행위	\$350 배상명령	1
	1236조, 서면계약	\$350 배상명령	1
	1239조, 불법영업	면허취소	7
	1239조, 불법영업	\$3,000 과태료	1
	1239조, 불법영업	\$1,000 과태료 및 면허 취소	1
	2005조, 허위진술	\$350 배상명령	1
	2018조, 허위정보	\$3,000 과태료	1
	4503조, 사기보험행위	중지명령	1
주식·부동산·부채 (debt)법 MCL 451장	411조, 비보호	중지명령	1
	501조, 위법행위	면허취소	1
	501조, 위법행위	중지명령	2
	604조, 응답불응	\$1,000 과태료	2
	701조, 무면허 활동	중지명령	2
저당법, MCL 445장	1652조, 무면허 활동	\$1,000 과태료	3
	1672조 (b)항, 허위정보	중지명령	1

위의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관련 법률위반에 의한 행정처분은 보험관련 사항이 가장 많고 그 중 500장 438조의 (3)항 위반과 1239조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대한 행정조치로는

107) 자세한 법 조항은 아래의 “3-2. 경제관련 행정처분” 단락 참조.

108) 몇몇 위반사항은 해당 법조항에 따라 다수의 행정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총 건수의 합이 전체 사건수와 동일하지 않음.

\$1,000의 과태료 또는 면허 취소(license revoked)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 단락에서는 미시간 주법 중 경제관련 행정처분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2) 경제관련 행정처분 현황

1) MCL 429. 상표, 레이블, 상표 관련 법과 MCL 442. 판매 관련 법
가. MCL 429. 상표, 레이블, 상표 관련 법(Brands, Labels, and Trademarks)

제113조 1-3항. 액화석유가스(LPG)와 탄소가스(Carbonic gas) 보관용기에 관리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경범죄로 간주하여 처벌한다. 만약 보관 소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피해 금액 또는 \$2,000 중 큰 금액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133조. 육군(army)이나 해군(navy)의 군수품을 불법적으로 판매 혹은 유통시킨 소매업자나 도매업자는 경범죄를 간주하여 처벌 받는다.

나. MCL 442. 판매 관련 법 (Sales)

제219조. 판매 관련 면허를 취득할 목적으로 신청서 작성 시 허위정보를 입력할 경우에는 위증죄(perjury)로 간주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3조. 개인이 이 섹션의 규정에 반하여 보험, 부도, 저당, 파산 등의 대상인 상품이나 화재, 수재, 연기 또는 다른 물질에 의하여 손상된 상품을 광고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경범죄로 간주하여 \$100 이상 \$500 미만의 벌금, 10일 이상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벌금 및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
제224조. 개인이 이 섹션의 규정에 반하여 보험, 부도, 저당, 파산 등의 대상인 상품이나 화재, 수재, 연기 또는 다른 물질에 의하여 손상된 상품을 보관, 운송하는 경우에는 경범죄로 간주하여 \$100 이상 \$500 미만의 벌금, 10일 이상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벌금 및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

다. 특 징

MCL 429장과 442장은 상표 또는 상품 판매와 관련된 법조항이다.

위에서 살펴본 다른 법률조항과 마찬가지로 벌금 등의 금전적 행정처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면허취득과 관련하여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할 시에는 경범죄가 아닌 위증죄로 분류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분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MCL 445. 무역과 상업 관련 법(Trade and Commerce)¹⁰⁹⁾

제 5 조. 개인이 가명(assumed or fictitious name)으로 사업을 소유 또는 수행하는 경우에는 경범죄로 간주하여 \$25 이상 \$100 미만의 벌금, 30일 미만의 구금 또는 벌금 및 구금을 부과한다. <후략>

제69조. 개인이 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identity theft)한 경우에는 중범죄로 간주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5,000미만의 벌금 또는 벌금 및 징역에 처한다.

제71조 2항. 개인이 정보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에 대한 신용카드의 한도액을 낮추거나 신용카드를 취소하는 등과 같은 행위를 고의적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경범죄로 간주하여 30일 미만의 징역이나 \$1,000 미만의 벌금 또는 벌금 및 징역에 처한다.

제72b조 2항. 개인은 이 섹션(과장광고)을 위반하였을 경우 경범죄로 간주하여 30일 미만의 징역이나 \$1,000 미만의 벌금 또는 벌금 및 징역에 처한다.

제86조. 직원, 학생, 또는 타인의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의 사용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93일 이하의 징역이나 \$1,000 미만의 벌금 또는 벌금 및 징역에 처한다.

제111c조. 전화 판매원 등이 잘못된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실제 피해액 또는 \$250불 중 큰 금액과 관련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법적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제141조, 제142조. 신용거래를 통해 거래된 물건이 신용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잔액 환불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경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부과한다.

제305조. 기금(poultry)과 관련한 이 섹션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경범죄로 간주하며 \$100 미만의 벌금이나 90일 이하의 징역을 부여한다.

제359조. 개인이 고의적으로 소비자 품목에 대한 가격과 광고에 관한 금지명령

109) 이 법은 범위가 매우 넓고 내용이 방대함으로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injunction), 명령, 법령(decree) 또는 판결(judgement issued)을 위반하였을 때는 초범일 경우 \$1,000 미만, 재범일 경우 \$5,000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제377조 1-2항. 개인이 숙박업(transient merchants)에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법원비용과 더불어 \$1,000의 벌금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압류 재산의 10%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 받는다. 숙박업자는 보석금 \$1,000을 법원에 지불하고 압류재산을 환수 할 수 있다.

제408조 1항.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중고(second hand)와 폐물(junk) 취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6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 이상 \$1,000 미만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08조 2-3항. 중고 혹은 폐물거래업자가 장물임을 인지하고 고철(scrap metal)을 고의적으로 매입 혹은 매각하였을 경우 해당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 미만의 벌금 또는 징역 및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고철의 출처가 통신회사, 정부, 전기회사의 소유인 전신주일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0 미만의 벌금 또는 징역 및 벌금에 처한다.

제408조 4항. 개인, 상사, 공동연합, 또는 회사가 이 섹션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면허를 취소하고 향후 1년 동안 중고 및 폐물 사업을 할 수 없다.

제487조 1-2항. 판매자, 판매자의 대리인, 또는 직원이 고의로 귀금속(precious metal) 거래에 관한 기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범죄로 간주하여 1년 미만의 징역이나 \$1,000 미만의 벌금 또는 징역 및 벌금을 부과한다. 재범일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징역이나 \$5,000 미만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04조. 개인, 회사, 상사, 또는 주식회사가 면허 없이 중고자동차 거래장을 운영하거나 중고자동차 거래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범죄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벌된다.

제555조. 개인이 중고시계(secondhand watches)거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범죄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벌된다.

제574조. 개인, 판매자, 유통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음료수 용기(beverage containers)에 관한 조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 이상 \$1,000 미만의 금액과 법원비용을 벌금으로 부과 받는다.

제574a조 1항. 개인의 다음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료수 용기를 판매자에게 반납하지 않아야 한다.

(a) 개인이 타주에서 구입한 반납 가능한 음료수 용기

(b) 구입 시 보증금(deposit)을 지불하지 않은 음료수 용기

제574a조 2항. 개인이 25이상 100 미만의 반납이 가능하지 않은 용기를 반납한 경우에는 경범죄로 간주하여 \$10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00 이상의

<p>반납이 가능하지 않은 용기를 반납한 경우에는 경범죄로 간주하여 \$500 이하의 벌금이나 93일 미만의 징역 또는 벌금 및 징역이 부과된다.</p> <p>제603조. 주주, 직원, 대리인 또는 타인이 이 법(사업장 불법방치)의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 미만의 벌금 또는 징역 및 벌금을 부과한다. 상사 또는 회사가 이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사업장을 정리할 때 까지 일일 벌금 \$1,000 부과한다.</p> <p>제779조. 개인이 독점(antitrust)과 전매(monopoly)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자가 개인(individual)일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0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 및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 아닌 단체(상사, 회사 등)일 경우에는 \$1,000,00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후략></p> <p>제814조 5항. 개인이 고의적으로 광고에 관한 금지명령(injunction), 명령, 법령(decree) 또는 판결(judgement issued)을 위반하였을 때는 초범일 경우 \$200 미만, 재범일 경우 \$1,000 이하의 금액을 민사처벌(civil penalty)의 수단으로 주에 납부한다.</p> <p>제815조. 이법의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는 실 손해액 또는 \$50(1일 기준) 중 큰 금액과 \$300 미만의 소송관련 비용을 포함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p> <p>제837조. 개인은 가전제품수리에 관한 법(Joe Gagnon appliance repair act)의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담당지역 법원에 실 손해액 또는 \$250 중 큰 금액과 소송관련 비용을 포함한 금전적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p> <p>제903c조. 개인이 전화를 통한 광고 시 소비자를 속일 목적으로 허위 사업장 정보를 사용한 경우에는 \$100 이상 \$10,000 미만의 벌금을 부과한다.</p> <p>제907조. 개인이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기밀(confidential)로 분류된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경범죄로 간주하여 \$2,500 미만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및 징역을 부과한다.</p> <p>제908조 2항. 개인이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를 할 경우에는 \$5,000 미만의 벌금을 부과한다(소비자보호법관련 조사에 관한 사항).</p> <p>(a)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p> <p>(b) 고의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 또는 관련 정보를 제거하는 경우</p> <p>(c) 고의적으로 관련 정보를 은닉하는 경우</p> <p>제959조 4항. 개인이 고의적으로 임대·구매 계약(rental-purchase agreement)에 관한 금지명령(injunction), 명령, 법령(decree) 또는 판결(judgement issued)을 위반하였을 때는 \$5,000 미만의 벌금을 부과한다.</p> <p>제1668d조. 현직 혹은 전직 행정공무원, 지도자(director), 대리인 또는 담당자가 저당관련 사기 등의 불법행위에 관여한 경우에는 경범죄로 간주하여 \$5,</p>

000 미만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07조 1-2항. 개인이 요구받지 않는 전자메일(스팸메일)을 발송해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0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 및 벌금에 처한다. 개인이 불법적 수단(3자의 이메일 도용)으로 스팸메일을 발송한 경우에는 중범죄로 간주하여 4년 이하의 징역이나 \$25,000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 및 벌금을 부과한다.

가. 특 징

MCL 445장 무역과 상업 관련법은 단순한 상거래에 관한 규정에서부터 스팸메일에 대한 규정까지 그 범위가 매우 방대하다. 위에서 살펴본 다른 법들과 마찬가지로 이 법 또한 관련 규정에 위반에 따라 고액의 벌금과 장기간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2507조의 스팸메일을 원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법적으로 발송하는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달러 미만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자의 이메일 도용이나 도메인 도용 같은 불법 수단을 통한 스팸메일 발송은 중범죄로 분류하여 4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MCL 446. 경매업자, 전당업자, 상인 관련 법과 MCL 451. 주식, 부동산, 또는 부채관리법

가. MCL 446. 경매업자, 전당업자, 상인 관련 법(Auctioneers, Pawnbrokers, and Vendors)

제35조. 개인이 경매업자로 상품이나 재산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이법에서 정하는 소정의 보증금(bond)을 해당지역 재무부(treasurer)에 기탁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500 미만의 벌금을 경매업자에게 부과한다.
제60조. 개인, 회사, 혹은 상사가 공개경매(public auction)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밝혀질 경우에는 경범죄로 간주하여 \$100 미만의 벌금이나 90일 이하의 구금 또는 벌금 및 구금을 부여한다.
제218조, 제219조. 전당포의 소유자, 사무원, 대리인, 종사자 또는 직원의 여하

를 불문하고 전당업자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경범죄로 간주하여 \$25 이상 \$100 미만의 벌금이나 10일 이상 3월 미만의 구금 또는 벌금 및 구금에 처한다. 이와 더불어 전당업 관련 면허를 취소하며 면허 취득 시 납부된 각종 수수료는 환급해 주지 않는다. 면허 취소 후 1년간은 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없다.

나. MCL 451. 주식, 부동산, 또는 부채관리법(Securities, Real estate, and Debt management)

제319조. 보호위원회(protective committee) 위원의 자격, 임무 등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500 이상 \$5,000 미만의 벌금과 함께 기소관련 비용을 부담하거나 6월 이상 2년 미만의 징역에 처한다(Ionia에 위치한 미시간 교정시설, 주립 교도소). 또한, 해당 법원의 재량 하에 벌금과 징역을 함께 부여할 수도 있다.

제433조 2항. 개인이 고의적으로 부채관리에 대한 (부당행위) 최종 정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을 위반하도록 허락, 교사한 경우나 정지명령의 세부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범죄로 간주하여 \$5,000 미만의 벌금이나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벌금 및 징역에 처한다.

제808조. 행정담당자(administrator)는 주식법(Uniform Securities Act)에 의거하여 구제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제3자에 의해 본 규정이 위반될 가능성과 현재 구제책을 심사숙고하여 공공의 잠재적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행정담당자는 \$1,000 이상 \$10,000 미만의 금액을 민사처벌로 부과할 수 있다.

다. 특 징

경매업자 등에 관한 법률과 주식, 부동산, 부채관련 법을 살펴보았다. 교육, 문화 관련 행정처분과 마찬가지로 벌금과 징역과 같은 형사적 처벌로서의 행정처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MCL 500. 보험 관련 법(Insurance Code)¹¹⁰⁾

제150조. <전략> 위원장(commissioner)이 보험법을 위반한 개인에게 아래와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a) 위반사항 당 \$500 미만의 민사상 벌금을 부과한다. 단, 위반자가 법규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500 미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b) 해당인의 면허 또는 자격증(certificate of authority)을 취소, 정지, 또는 제약할 수 있다.

제226조.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고용인이나 대리인은 조사 또는 심사의 과정을 통해 얻어진 기밀 정보를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경범죄로 간주하여 \$1,000 미만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및 징역에 처한다.

제438조. 인증된 보험업자(authorized insurer)가 이 섹션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간 보고서(annual statement)를 작성, 배포하지 않을 경우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30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0 이상 \$5,000 미만의 민사처벌을 부과하고 연간보고서를 작성 또는 위원자의 요구에 답변하는 날까지 \$50(1일 기준)씩 추가 징수한다.

제1239조. 위원장은 보험제공업자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당업자의 면허를 취소, 정지 또는 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상응하는 민사상의 벌금(civil fine)을 부여할 수 있다.

(a) 면허지원서에 부정확(incorrect, misleading, incomplete)하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기재한 경우

(b) 보험법, 보험관련 법규, 소환장 또는 위원장이나 타주의 위원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c) 사기 또는 허위진술을 통하여 면허증을 획득하거나 획득하려고 한 경우

(d) 보험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나 재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e) 고의적으로 보험 지원서 또는 계약서에 잘못된 정보를 기재한 경우

(f) 중범죄로 기소가 된 경우

110) 이 법은 범위가 매우 넓고 내용이 방대함으로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p>(g) 불공정 거래 또는 사기의 전과가 있을 경우</p> <p>(h) 사기, 폭력, 불신 등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경제적 무책임, 무능력, 신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p> <p>(i) 취소, 정지 또는 거절된 면허증이나 이와 동일한 자격증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경우</p> <p>(k) 면허증의 심사를 위해 부적절한 노트와 참고문헌을 사용하는 경우</p> <p>(l) 보험이 없는 자에게 고의적으로 보험을 가입시키는 행위</p> <p>(m) 행정 또는 사법기관의 아동지원 의무(child support obligation)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p> <p>(n) 사업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사업세 납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p> <p>제1371조 1항. 보험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보고서(registration statement)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와 심사과정 후부터 등록보고서가 제출될 때까지 하루에 \$1,000의 벌금을 최대 \$50,000까지 징수한다. <후략></p> <p>제1371조 4항. <전략> 보험회사가 보험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50,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개인이 고의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p> <p>제1371조 5항. 보험회사의 직원, 관리자, 또는 종업원이 위원장을 속일 목적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0 이하의 벌금 또는 벌금 및 징역에 처한다. 벌금은 직원, 관리자 혹은 종업원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1505조 1-2항. 위원장은 보험투자회사(premium finance company)의 면허를 아래와 같은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위원장은 면허취소 전에 심사를 거쳐 해당회사의 영업행위가 공익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사료 될 경우에는 해당회사에 \$200 이상 \$1,000 미만의 벌금을 면허취소를 대신하여 부과할 수 있다.</p> <p>(a) 해당회사가 부정수단으로 취득한 면허를 사용할 경우</p> <p>(b) 면허지원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p> <p>(c) 보험가입자가 회사의 사업방식이 무능력하고 신뢰감이 없다고 신고한 경우</p> <p>(d) 회사가 이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을 위반한 경우</p> <p>(e) 회사가 보험대리인, 보험대리인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자회사의 보험상품을 가입시킬 명목으로 보상을 해 줄 경우 (단, 보험대리인의 보험투자계약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는 보험투자회사는 \$2 미만의 수수료를 대신 지불할 수 있다)</p>
--

제1627조 2항. 보험업자 또는 보험제공자가 이 섹션(채권관련 보험, creditor-placed insurance)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원장은 위반행위 중단명령을 해당업자에게 내릴 수 있고 이와 더불어 민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제1631조. 보험업자가 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처벌을 부여할 수 있다.

(a) 각 위반사항에 대해 \$1,000 미만의 금전적 처벌 (총합 \$100,000 미만)을 부과한다. 만약 보험업자가 위법사항을 인지한 상태에서 극악무도(flagrant)하게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대해 \$25,000 이상 \$250,000 미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b) 면허 정지 혹은 취소

제2006조. (7)항(건강보험)과 (11)항(차별적 처우, discrimination)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원장은 \$1,000 이상 \$10,000 미만의 민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가. 특 징

보험관련 법의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은 형사적 의미로서의 처분보다 민사적 행정처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즉, 소수 항목(제226조)을 제외하곤 대부분이 벌금과 면허취소, 면허정지, 자격상실 등의 실질적 의미에서의 행정처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위반자의 고의 여부에 따라 벌금 금액이 차등으로 적용되는 것도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이다. 물론, 이러한 고의 여부의 판단을 어떠한 기준으로 할 것 인가하는 근본적 문제가 있지만 향후 행정처분 조항과 기준을 신설하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 4 절 요약 및 시사점 도출

이상에서 독일, 일본, 미국의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일반론과 아울러 각 국의 건축-, 환경-, 경제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의 내용을 개관해 보았다. 독일에 있어서도 행정처분기준이라 함은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량준칙(Ermessensrichtlinie)을 의미하

며, 일부 학설에 의하면 재량준칙은 단지 행정내부의 실무만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해서도 재량행사의 적법성이 행정규칙에서 직접 나온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의 통설에 의하면 재량준칙은 “법규범적 성격 (Rechtscharakter)”을 가지지 않는다. 즉, 재량준칙에 있어서는 그 법적 대외적 효력은 행정의 자기구속을 매개로 하여 다만 간접적으로 발생한다. 재량영역에 있어서는 행정규칙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재량의 평등한 행사가 보장되도록 도와준다. 기본법 제3조 제1항 (평등원칙)은 행정부가 그 재량을 평등원칙에 적합하게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 행정규칙에 미리 규정된 이 평등한 행정관행으로부터 행정부는 오직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벗어날 수 있다. 결국 재량준칙은 그것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외적으로 행정의 자기구속을 매개로 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독일의 통설의 입장이라 하겠다.

독일에 있어 행정입법에 해당하는 법규형식으로서 법규명령, 조례 외에 행정규칙이라 함은, “행정조직 내부의 일반·추상적 규정으로서 상급관청 또는 상급자가 하급관청 또는 하급자에게 발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조직과 활동을 규정한 법규정”이라 할 것이다. 이는 법령, 처분, 지침, 업무규정, 지시등의 용어로 사용되어 지고 있으며 이러한 용어의 혼용에 대한 통일적인 용어의 정립은 다양한 규정형식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나 이의 법실체적인 필요성은 적은 것으로 이해되어 지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규칙은 기능적인 관점에서 크게, ①조직법적인 행정규칙(Organisatorische Verwaltungsvorschriften), ②행정작용적 행정규칙(verhaltenslenkenden Verwaltungsvorschriften)으로 구분되어지며, 후자의 경우 다시, 법률에 근거한 행정규칙(Gesetzesakzessorische Verwaltungsvorschriften)과 법률의 영역으로부터 자유로운 법률대위적 행정규칙(Gesetzesvertretende Verwaltungsvorschriften)으로 구분되어 진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독일 행정규칙의 제정과 절차에 관한 규정과 각

개별 행정영역별 처분기준의 운용 현황을 검토하여 본다.

일본의 경우 행정법적인 재량이론에 대한 논의보다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심사에 보다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때문에 행정재량이 긍정되는 경우라도 그 행사는 무제약적인 것은 아니다. 우선 법률에 의한 수권이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그 한도에서 사법심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처분기준설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는 달리 법률에서 처분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형식이 아닌 주로 중앙행정기관의 통달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심사기준·처분기준의 형식으로 설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사인이 법령 또는 처분에 의해 부과된 법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다양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경우와는 달리, 행정청은 사인과 마찬가지로 자력집행력이 인정되지 않는 결과, 사인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의무의 강제집행은 행정청이 법원에 법집행에 관한 소송(law enforcement lawsuit)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왔다. 따라서 환경행정에 있어서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는 배출허용기준 등의 상세화를 위한 행정입법(rule-making)은 우리와 유사하게 존재하나, 제재처분의 기준은 법원의 판결에 필요한 양형기준으로 존재할 수는 있으나, 우리와 같이 직접 처분의 기준으로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고려되어 진다. 그러나 행정 실무에 있어서는 처분의 기준에 관한 몇 가지 범주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주내서 운용되어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범주의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광범한 영역에서 대량의 집행이 요구되는 환경행정에 있어서 법원의 판결을 통한 집행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입법자가 행정청이 일정한 범위 내의 금전적 제재 등을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결과, 형성된 행정제재 (administrative penalty)의 영역이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제재처분의 기준과 유사한 행정제재기준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

- ② 행정청이 법원에 법집행소송을 제기할 때 어느 정도의 제재를 구형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광범한 영역에서 대량의 소제기가 있을 것이므로 각급 사건에서 구형할 형량이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필요에 따라 EPA는 소송 제기 시 구형할 벌금액 등을 산출할 때 적용할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 ③ 법집행소송의 제기를 전후하여 환경행정청과 피규제자가 제재 등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므로, 그 합의가 자의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등이며, 이와 같은 범주를 통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이 운용되어 지고 있는 것이다.

제 4 장 행정처분기준의 정립과 전개

제 1 절 서 론

행정처분기준이란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량준칙을 의미하며, 특히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영업정지, 인·허가·등록 취소, 과징금(특히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경고, 시정명령 등)을 적용하는 집행공무원에게 재량권이 인정된 취지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매우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합목적적이고 구체적 타당성 있는 행정권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행정제재처분기준은 집행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재량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그리고 처분의 객체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보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종래 꾸준히 그 법리적·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 왔다. 특히 행정제재처분기준의 입법형식(대통령령 또는 부령의 형식)에 따른 법규성 인정여부는 우리나라 행정법학에 있어 중대한 논의대상으로서 자리매김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적 문제보다는 현행 규정상 운용에 관한 의문과 오해에 따른 국민의 권익 침해가 날로 증가하여 왔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 집행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행정처분기준의 규정화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목적과 수단 간 합리성의 요구로 나타나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처분기준의 정립을 위한 필요성에 관하여 먼저, 현행 우리나라의 행정처분기준의 현황을 개관한다. 그리고 행정처분기준에 있어 설정상의 문제와 운용상의 문제점을 구분하여

제시하여 보고 특히, 운용상의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되어져 온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수립의 연혁과 그 주요내용 및 적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제 2 절 현행 행정처분기준의 설정 및 운용상 문제점

I. 행정처분기준의 설정상 문제점

1. 처분기준을 설정·공표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

처분기준제도는 재량과 행정규칙에 관한 종래의 실체법적 접근방법과는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서, 재량통제에 관한 종래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의미가 부여된다. 그러나 처분기준 자체가 처분전에 설정되지 않거나 설정되더라도 공표되지 않은 경우, 당해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가 행정절차법 제20조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일본행정절차법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처분기준의 설정·공표를 강하게 의무지우지 않는 관계로 사실상 위법사유로 보는 입장, 위법사유로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 및 위법성이 추정된다는 절충적인 입장 등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¹¹¹⁾

그러나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제20조는 문언 자체가 “...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히 의무지우고 있어서 일본행정절차법에서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이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당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행정청은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111) 임재홍, 전계논문, 77면 참조.

는 반드시 처분기준을 설정·공표하여야 한다. 처분의 성질상 처분기준의 설정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고,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처분기준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처분기준이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공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국민이 사전에 적절히 대비할 수 없는 경우, 처분기준이 사전에 설정·공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되어 있어 없는 것이나 동일한 경우 등의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행정절차법은 설정된 처분기준의 공표의무에 대한 예외를 추상적인 기준하에 넓게 인정하고 있어 현행법 아래에서는 처분기준의 공표가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하에 행해질 우려가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은 당사자 등에게 처분기준의 설정청구권 또는 구체화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입법의 불비일 수 있다.

2. 행정처분 관련 규정의 다원화문제

일례로 현행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은 도로교통법령 이외에 경찰청 행정규칙인 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지침 및 모범운전자선발 및운영지침 등에 산재되어 있어 행정처분 규정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극히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일선 경찰공무원이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못하는 사례를 초래하기도 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 또는 동법시행령에, 일반적인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각각 규정하여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Ⅱ. 행정처분기준의 운용현황과 운용상 문제점

1. 현행 행정제재처분기준의 운용현황

현대 국가는 곧 행정국가로 정의되어질 만큼 국가의 행정활동은 날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때문에 국민의 일상생활에 있어 국가적인 사회·경제 질서유지를 위한 각 행정영역별 조정과 통제작용은 더불어 증대화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행정질서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은 증가하고 있는 경향에 있으며, 의무위반행위의 성질에 따라 다양한 제재수단으로 제재 되어 지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행정영역 가운데 식품·의약품 및 환경분야에 한정하여 행정제재처분 건수를 표본 조사하여 본 결과 최근 5년간 약 200만건 정도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행정영역의 각 특성 및 의무위반행위의 성격에 따라서도 상이한 제재수단별 발생건수를 파악할 수 있었다.

즉, 식품·의약품에 관한 행정영역의 특성에 따라 경미하거나 단기간에 시정이 가능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즉각적인 영업정지 또는 인·허가를 취소하기 보다는 사업자에게 자정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시정명령이 다른 제재수단에 비해 많은 수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환경보전을 국가적 중심 책무로 인식하고 있는 현대국가에 있어 환경질서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는 행정벌에 대표적인 과태료를 통한 처분으로서 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02~'06) 행정제재 처분 현황>

분 야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과징금	시정명령	과태료	기 타	계
식품 의약품 (비중 %)	73,816 (16.8)	77,156 (17.6)	18,214 (4.2)	135,274 (30.9)	29,736 (6.8)	104,024 (23.7)	438,220 (100.0)
환경 (비중 %)	10,589 (0.7)	2,628 (0.2)	0 (0)	217,297 (15.2)	1,183,714 (82.6)	18,978 (1.3)	1,432,363 (100.0)

* 2003~2007 각 년도, 환경통계연감 (환경부) 및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식약청)

2. 행정처분기준의 운용현황과 운용상 문제점

(1)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이원화된 입법형식의 문제점

현행 개별법령상 행정처분의 기준은 크게 관련법의 시행령(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경우와 시행규칙(부령)에서 규정하는 경우 또는 별도의 부령에서 규정하는 경우 등 법제화 형식에 있어 통일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부령형식의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으로 보고 대통령령형식의 처분기준은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어서 행정처분기준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법규명령형식의 행정처분기준의 성질을 행정규칙으로 보든 법규명령으로 보든, 부령의 형식과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이원화되고 그 법적 성격도 달리 파악된다는 것은 국민의 예측가능성의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처분기준의 제정형식은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참고로 법제처의 행정처분기준 심사기준에 의하면 판례

가 부령형식과는 달리 대통령령 형식의 처분기준의 법규성을 긍정하
는 이론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에서 개별법령상의 처분기준은 가능
한한 부령의 형식으로 제정되도록 심사과정에서 유도한다는 방침을
정한 적도 있었으나, 최근의 각 부처의 입장은 대법원 판례의 영향을
받아 행정처분기준을 입법할 경우 법률에서 행정처분기준을 대통령령
에 위임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처분기준을 정하려는 경향이 강하
게 나타나고 있다.

(2) 행정처분기준의 비 합리화

2008년 6월 30일에서 2008년 7월 2일까지 300개 사업자 대상으로 하여
종래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한 대한상공회의소
가 행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조사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설문주요요지	설문 주요 응답	비 중 (%)	기 타	계
의무위반행위에 대한처분의 정도	현행의 제재 처분이 과도하다	57.9	42.1	100
처분양정	위반사유와 상황등을 고려하지 않고 처분이 이루어진다	46.1	53.9	100
관련 권리구제 제도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사후 권리구제 제도가 형식적이다	51.3	48.7	100

이를 분석하여 본다면,

1) 일반기준상 가중·감경 등 규정상 미비

가. 가중·감경 규정의 미비

현행 우리나라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전형적인 입법형식은 각 개
별 법률에서 처분의 위임근거를 규정하고 하위법령(대통령령, 부령)에

서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처분기준의 유형과 상한 및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처분의 경감 (대표적으로 제재적 처분기준의 1/2 범위내)등의 규정을 두어 집행공무원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재량권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 있어서는 가중·감경규정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명시적이지 않고 추상적이거나 선언적 규정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집행공무원이 적용상 어려움이 있어 그 실효성이 문제시 되고 있다는 것이다. ([붙임- 1] 참조)

나. 법령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일정기간”의 개념 통일

행정제재처분기준상 일반기준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하면 가중처분을 하는 차수산정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을 두는 이유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의무위반행위의 반복에 대한 가중처분을 함으로 인해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을 증대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시정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고려되어진다. 그러나 아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에 있었던 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다르게 처벌

- 3년간 3차례 동일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삼아 가중처벌 (『축산법』관련) 가축의 수정란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정액등처리업자 갑은 축사소독 시설의 미비 사유로 3년간 3차례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됨.
- 3년간 3차례 동일위반행위를 하였으나 가중처분 산정기준이 1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가중처벌 미부과 (『축산물가공처리법』관련) 축산물판매업에 종사하는 을은 축산물 판매를 위한 냉장·냉동시설 등을 가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거 3년간 3차례 단속되었으나, 과거 2차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과거 1년보다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최근 1년 이내 처음 위반한 것이 되어 가중처분을 면제받음

행정제재처분기준상 일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기간이 법령에 따라 상이하어 유사한 시점에 위반행위를 반복하더라도 업종에 따라 가중처벌 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과도하게 오래전에 있었던 의무위반행위까지 적용되어 특히 국민의 경제활동에 지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다.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의 제재기준 일원화

아울러 행정제재처분기준상 일반기준에서는 같은 시기에 2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보다 중한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2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각각 다른 처분기준으로 처벌

- 위반행위마다 각각 처분을 받은 사례 (『대기환경보전법』관련)
A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갑은 배출시설 고장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게 됨. A시는 갑에게 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배출사유로 조업정지 10일,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조업정지 3개월을 각각 부과
- 위반행위 중 보다 무거운 행위만 처분받은 사례 (『전염병예방법』관련)
B시에서 소독업에 종사하는 을은 소독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소독실시 사항도 기록-보관하지 않음(3차위반). B시는 을에게 소독기준에 따르지 않고 소독을 한 사유는 영업정지 1개월, 소독 기록-보관의무 불이행 사유는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하지만 이중 보다 중한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영업정지 3개월만 부과.

개별 법률에 따라서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재처분을 하거나,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제재처분을 하는 등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법적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 개별기준에 있어 처분양정의 문제와 유사의무위반행위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먼저 단순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서 행정제재처분절차상 제 1차 처분 시 부터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와 같은 과중한 처분을 함으로 인해 사업자의 경우 심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행정제재처분을 받게 되는 의무위반자가 자진 시정기회도 갖지 못한 채 과중한 처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행정제재처분에 대한 불복제기 건수의 증가현상을 통하여 반증되고 있으며,

<행정제재 처분에 대한 불복 증가 건수>

불복제기에 대한 권리구제 제도	건수 (년도)		
	행정심판	17,638 (2003)	26,107 (2005)
행정소송	22,840 (2003)	26,634 (2005)	30,240 (2007)

아울러 각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제재 처분기준 중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은 15개로 조사되어 졌다.

<15개 유사 위반행위 유형목록>

1. 변경신고
2. 준수사항위반
3. 지정·허가·등록기준 위반
4. 등록후 영업미개시 또는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5. 명의대여
6. 일괄하도급

7.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8. 지정·허가·등록 결격사유
9. 금지행위위반
10. 기록보존의무 위반
11. 포괄금지조항
12. 관리기준위반
13. 표시기준위반.
14. 출입·조사 방해 및 거부
15.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이와 같은 유사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서는 유사한 제재가 부과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법률에 따라 제재수준이 지나치게 상이한 경우가 있어 행정제재처분을 받게 되는 의무위반자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3) 변형된 과징금제도의 문제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수의 개별법률 등에서는 변형된 과징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과 같이,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사유를 한정하고 있고 그 밖의 법률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통하여 명시하고 있는 법률은 소수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 내용을 두고 있지 않은 다른 법률의 경우, 과징금처분은 처분청 소속 공무원의 재량권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과징금제도의 도입목적이 공익적 필요성에 의하여 도입되었고 다른 법률에서도의 과징금처분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영업정지처분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에 한하여 과징금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개별 법률에서 과징금부과사유가 규정여부에 관계없이 과징금부과처분은 영업정지처분이 이용자의 불편이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일선 공무원에게는 법률에 단순히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마치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이 담당 공무원의 재량으로 인정되어 양 처분 중 어느 하나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비추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실상영업정지와 과징금처분이 특별한 기준 없이 담당공무원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다른 법률에서도 과징금부과사유를 공중위생관리법처럼 명시할 필요성은 항시 존재한다.

또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하는 경우”라는 과징금부과사유는 너무 추상적, 포괄적인 기준이다. 처분청이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영업정지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지, 그 밖에 공익을 해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이에 해당되어야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이 이에 관한 기준을 훈령이나 예규로 정한 경우가 거의 없고, 처분청의 일선 공무원들이 과징금처분을 할 때 개별적으로 공익적 요건을 심사하여 처분하리라는 것도 기대하기 힘들며 설사 공익적 요건을 심사하고 싶어도 정하여진 세부기준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징금 금액산정에 있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경우 과징금 금액은 그 정지 기간 중에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같거나 또는 그 이상 (정지되어 문 닫게 되면 고객에 대한 신뢰도 타격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므로 이런 사정도 고려)이 되어야 실익도 있고 형평에도 맞을 것이나, 현행 법제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고려가 미비한 것이다.

제 3 절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정립

I.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정립의 필요성

행정처분기준이란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량준칙을 의미하며, 특히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영업정지, 인·허가·등록 취소, 과징금(특히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경고, 시정명령 등)을 적용하는 집행공무원에게 재량권이 인정된 취지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매우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합목적적이고 구체적 타당성 있는 행정권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행정제재처분기준은 집행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재량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그리고 처분의 객체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보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종래 꾸준히 그 법리적·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 왔다. 특히 행정제재처분기준의 입법형식(대통령령 또는 부령의 형식)에 따른 법규성 인정여부는 우리나라 행정법학에 있어 중대한 논의대상으로서 자리매김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적 문제보다는 현행 규정상 운용에 관한 의문과 오해에 따른 국민의 권익 침해가 날로 증가하여 왔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 집행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행정처분기준의 규정화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목적과 수단 간 합리성의 요구로 나타나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지금까지 행정제재처분의 입법형식에 따른 법규성 여부에 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져 오던 처분기준의 개선안 제시

를 위한 연구에서 탈피하여 먼저, 행정제재처분을 하는 집행공무원의 재량과 관련, 그 처분기준과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양정을 고려하여 전개되어 온 그간의 입법적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현행 행정처분기준상 제 문제에 대한 개선안으로서 2006년부터 2008년에 걸쳐 정립된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에 근거한 행정처분기준의 운용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행정제재처분기준의 합리화를 위한 입법적 전개

행정청에 의한 인허가처분이 있을 후 그 처분상대방에게 법령위반 등의 행위가 있을 때 그 인허가처분의 효력을 상실 내지 정지시키는 처분을 함으로써 인허가처분의 사후관리에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인허가처분의 효력을 상실 내지 정지시키는 처분을 강화상으로는 행정행위의 철회 내지 정지라고 부르며 그 성질은 불이익 처분 내지 제재적 처분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부분의 법령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이에 의거한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그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 안에서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간단한 규정만을 두고 있다. 이 경우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 등의 의무위반행위의 형태 및 정도를 추상적·포괄적으로 묶어 규정함과 아울러 제재의 정도 역시 처분청의 폭넓은 재량에 맡겨버리는 경향을 보여 왔다.¹¹²⁾ 이러한 행정처분은 불이익처분이기 때문에 그 처분기준을 객관적으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행정처분은 법령에 대한 조예가 부족한 일선공무원이 일반 행정절차에 의하여 집행하기 때문에 처분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입법단계에서부터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¹¹³⁾

112) 유상현, “행정처분기준의 법규성” 『공법연구』 제31집제1호, 515면.

113) 유상현, 전제논문, 516면.

이 문제는 주지하다시피 행정행위의 재량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인허가처분의 취소 내지 정지에 있어서도 일선공무원의 재량의 여지를 합리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강구되었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행정규칙에 근거한 행정처분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연혁적으로 고찰해 본다면, 1984년 국무총리의 「행정처분기준의법제화를위한특별지시」¹¹⁴⁾에서 처음으로 법령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취소 또는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의 범위를 축소하고, 위반사안의 정도에 따라 균형있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시 따라야 할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부령 또는 훈령으로 마련하도록 한 바 있었고, 1994년에 제정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제11조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처분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적용되게 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고 한다)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 후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과 함께 폐지되었고, 민원사무에 관한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은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제11조와 같은 심사기준의 설정·공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1984년 국무총리의 「행정처분기준의법제화를위한특별지시」에 따르면,

- ① 예상할 수 있는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종류별로 세분하고, 다시 그 종류마다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상응한 제재수단을 정하도록 하며,
- ② 위반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행위인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제재도가 약한 불이익처분부터 강한 불이익처분으로 순차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1차 위반의 경우에는 단순한 경고를 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114) 국무총리 훈령 제196호.

- ③ 정지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일정기간이 넘으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기계 등의 효용이 현저히 감소되거나 효용을 잃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도록 하고,
- ④ 행정처분기준을 아무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하여도 모든 사태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게 하여 융통성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도록 하며,
- ⑤ 법률에서 처분 전에 청문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령이나 훈령에서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처분 전에 상대방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부방침이 나간 후 각 부처에서는 부령 등의 형식을 기피하고 훈령·예규 등으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는데, 이는 부령 등 법규로 할 경우 법제처심사 등 입법절차상 번잡이 따르고 법규는 공포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행정처분기준을 공개하는 결과가 되어 일선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이 따르는 등의 여러 가지 행정실무적 관점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처분기준이 훈령·예규로 마련됨에 따라 행정기관 내부에서는 보다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처분을 기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이러한 행정처분기준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대하여서는 이러한 행정처분기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물론 법원에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을 모두 배척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하여 훈령·예규 등에 기속당한 것으로 볼 수는 없었다. 특히 각 부처에서 시간에 쫓기면서 마련한 행정처분기준에 불합리한 점도 많았고 법원은 권리구제기관으로서 처분정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행정부가 마련한 훈령·예규 등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¹⁵⁾

115) 유상현, 전제논문, 517면 참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각 부처에서는 행정처분기준의 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개별 법률에서 “행정처분기준을 부령으로 발령할 수 있다”¹¹⁶⁾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이에 기하여 종전의 훈령·예규들을 부령으로 격상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행정실무에서 보면, 모법상 인허가 취소·정지처분의 근거조문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행정처분기준을 부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부령에 별표를 두어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훈령·예규로 되어 있던 종전의 기준이 안고 있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원의 재판기준을 참작하여 좀 더 완화된 내용으로 하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대부분의 경우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경향을 보여주었고, 바로 이 점이 그 후 법원으로부터 부령으로 된 행정처분기준의 법규성을 부인당하는 큰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¹¹⁷⁾

그리고 과태료와 과징금의 경우에는 위 국무총리훈령 제196호에서 언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들도 행정처분과 유사하기 때문에 부과처분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생겼다. 과태료와 과징금의 경우에는 법제처에서 마련한 『법령입안심사기준』에 입법모델이 설정되어 있고 행정부와 국회는 이 기준에 따라 입법을 하고 있다. 특히 과징금의 경우 모법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116) 예컨대, 대기환경보전법의 관련규정을 보자. 제51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17) 유상현, 전계논문, 518면.

Ⅲ.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연혁

1. 2006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정립

행정처분기준의 정비를 위한 지침 설정에 있어서는 정비지침의 일반원칙에 따르고, 행정처분기준의 체계에 따라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나누어 지침을 설정하였다.¹¹⁸⁾

(1)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일반원칙

정비지침의 일반원칙
① 제재처분에 한정하여 정비한다.
② 행정처분기준의 근거조항은 법률에 두되, 원칙적으로 부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한다.
③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 행정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정비한다.
④ 포괄적 행정처분기준의 반복을 금지하도록 정비한다.
⑤ 처분기준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비한다.
⑥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도록 정비한다.
⑦ 공무원과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비한다.
⑧ 행정처분기준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⑨ 공표된 것과 다른 기준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18) 김재광·최철호·강문수,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연구(Ⅰ)』(한국법제연구원, 2006), 137면 이하 참조.

(2) 행정처분기준의 일반기준의 정비지침

일반기준의 정비지침
① 행정처분기준이 재량준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속적 표현은 피하도록 정비한다.
② 가중·감경 재량처분의 근거는 그대로 존치한다. 다만, 허용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③ 과징금 부과대상에서의 제외 여부는 과징금 처분기준에서 정하도록 정비한다.
④ 신고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종국적으로 허가취소가 아니라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정비한다. 그리고 신고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에는 반드시 금액의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정비한다.
⑤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기준이 아닌 직접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정비한다.
⑥ 행정쟁송결과 원고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그 처분이 과하다고 판결된 사건에 대하여 행정청이 당해 행정쟁송의 원인이 된 처분을 일정한 정도 감하여 재처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정비한다.

(3) 행정처분기준의 개별기준의 정비지침

개별기준의 정비지침
① 위반행위란과 근거법령란을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정비한다.
② 경고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정비한다.
③ 의무위반자별로 개별화하여 정비한다.
④ 과징금 상한액을 실효성있게 정비한다.

(4) 2006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적용과 평가

1) 적용범위

정비지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찰·보건·건축 행정분야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처분기준을 종합적·체계적·통일적으로 정비하였다.

먼저 경찰행정분야의 경우 경찰청 소관법률 중 경비업법, 도로교통법,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등 형식적으로 행정처분 규정을 두고 있는 5개 법률과, 보건행정분야의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법률 중 식품위생법과 건축행정분야의 다수의 개별법령 가운데 건축행정법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법과 실무에 있어 빈번히 적용되어지는 건설기술관리법,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우선적으로 정비대상 법령으로 선정하여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2) 각 행정분야별 구체적 적용결과 개요¹¹⁹⁾

가. 경찰행정분야

경찰행정분야를 보면, 경찰청 소관 20개 법률 중 행정처분 규정을 두고 있는 5개 법률과 그 하위 명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기준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물론 서론에서도 밝혔지만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과 이번 검토의 대상분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극히 제한적이었으나 경찰청 소관 행정처분기준을 두고 있는 5개 법령을 검토한 결과는 조금 당혹스럽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몇 가지 문제점 내지 미비점을 살펴보면, 우선, 도로교통법령을

119) 각 행정분야별 적용결과에 대해서는 김재광·최철호·강문수, 전개연구보고서, 663면-668면 참조.

제외한 4개 법령의 행정처분 기준은 사문화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이외에 '05년도 행정처분 실적을 살펴보면 경비업자에 대한 처분실적이 연간 95건,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을 적용한 처분실적이 연간 9,054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렇듯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한 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고, 그에 따라 행정처분기준도 현실의 반영 등 행정여건을 고려하거나 규정상 미비점 및 오류 등을 개정·보완하기 보다는 단지 규정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정하는 사행업의 허가조건이 공공복리의 증진, 상품의 판매선전 또는 관광진흥과 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이를 적용할 경우 사행업의 허가가 불가능하며 현실적으로도 동 법률을 적용하여 사행업을 허가한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현행 복권 및 경정·경륜 등 사행업은 다른 부처 소관인 「복권및복권기금법」, 「관광진흥법」, 「경륜·경정법」 등 특별법에 의하여 허가 및 행정처분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더욱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의 사문화를 촉진한다고 하겠다.

둘째, 당해 법령 내에서의 문제점 내지 미비점 이외에 경찰법령 전체의 입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경찰법령에서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찰서장 등 감독청의 지도·감독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감독규정을 위반한 경우 경비업자에게는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경비지도사에게는 자격정지처분을, 자동차운전면허전문학원 등에게는 운영정지처분을, 사행행위 관련 허가에서는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는 경고·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처분을 두는 등 제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비록 자격의 종류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경찰법령 내의 동종 또는 유사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할 분야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일부 법령의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를 자세하게 규정하여 처분의 신뢰성 및 행정의 당사자 등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제공하고 있으나 고용된 자의 복장 및 자격증 부착 등 사업주가 판단할 분야까지 행정청이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분야는 사적 영역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위반사항을 지나치게 다양하게 규정하여 일선에서 직접 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혼란하게 하기보다는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는 법령별로 주요위반행위 위주로 최소화하고 처분기준을 강화하여 실효성있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범칙금 내지 과태료·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행정환경 및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한다.

경찰행정분야는 규제행정의 대표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민들로부터 환영받기 보다는 기피의 대상이 되는 행정이 경찰행정인 셈이다. 따라서 원칙에 입각한 행정 이외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와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 보건행정분야

보건행정분야를 보면, 보건행정분야의 각종 인허가사업을 영위하는 국민이 법령상의 준수사항이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이 당해 영업활동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그러한 제재적 처분행위는 재량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행정청이 재량행사를 함에 있어서는 하급관

청이나 관계공무원이 통일적인 재량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재량준칙을 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별·구체적인 재량처분의 발령행위를 개별적 재량행사라 한다면 이러한 재량준칙제정행위는 일반적 재량행사라 부를 수 있다.

이러한 재량준칙은 본래 행정공무원의 재량권행사의 통일성·일관성의 유지, 자의적인 재량권행사의 방지 그리고 공무원의 부담경감을 위해 제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에 대해 사무처리준칙이나 행정업무지침의 성격을 가지는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정되면 충분하다. 이는 이미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별표 15]로 정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대법원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행정법령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 위생, 그리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러한 위해를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주체에게 규제를 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현행의 보건행정법령은 그러한 규제적 처분-제재적 처분-의 발동근거는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처분양정의 기준은 재량준칙으로서 성질을 가지지만 형식상 법규명령의 한 종류인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형식적으로는 대외적 법규성이 있는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만 그 실질적인 면에서는 대외적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는 재량준칙의 법적 성격이 재량준칙의 이중적 지위의 문제와 결부되어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보건행정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이나 각 개별법령-시행규칙 포함-에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기준이나 제재적 처분으로서의 과징금부과기준에 대하여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중심으로 한 학설과 판례의 견해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보건행정과 관련한 행정처분기준의 운용현황과 문제점 및 그 정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비방안을 통하여 행정처분기준으로 위반사항을 지나치게 다양하게 규정하여 행정집행 일선에서 직접 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

을 혼란하게 하기 보다는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는 법령별로 주요 위반행위 위주로 최소화하고 처분기준을 강화하여 실효성있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범칙금 내지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정책이 고려되어야 현재의 행정환경 및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다. 건축행정분야

건축행정분야를 보면, 현행 우리 건축법제와 관련하여서는 타 행정분야에 비해 건축행정이 갖는 현실상응을 위한 다변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실제 관련법규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건축 관련 종사자들 간에도 특히 제재적 행정처분과 관련한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 업무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많은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왔다. 이와 같은 제재적 처분행위는 재량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행정청이 재량행사를 함에 있어서는 하급관청이나 관계공무원이 통일적인 재량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재량준칙을 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행정처분기준은 상위법률의 재량규범에 일치하게 정하여져야 하나, 때로는 그 기준이 비 탄력적으로 정해져 재량을 부여한 본래 입법목적과 동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일반적 재량행사도 재량권을 부여한 법률의 수권목적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비전형적인 사실관계에 직면해서 관계공무원은 재량준칙으로부터 벗어나 구체적 - 개별적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재량행사의 특이성과 함께 종래 건축행정관련 행정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관계 행정청과 건축 관련 실무자간의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건축행정분야의 다수의 개별법령 가운데 건축행정법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법과 실무에 있어 빈번히 적용되

어지는 건설기술관리법,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우선적으로 정비대상으로 선정 - 정비안을 도출해 보았다.

건축법령에 있어서는 특히, 타 행정분야는 물론 건축관련법령에서도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운용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에 있어서의 행정법상 일반원칙인 비례 - 평등원칙과의 정합성의 여부와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에서의 이행강제금 부과요건을 형식적불법과 실질적불법으로 구별하여 법리적인 모순을 제시하고 이의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행정처분기준의 논의에 있어 항시 대두되는 입법형식의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건설교통부령으로 입법되어 있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적 처분으로서의 등록취소 -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양정이 과연 건설기술관리법이 의도하고자 하는 법익에 상응하는지를 처분양정의 경중을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타 건축 관련법령에 비하여 빈번히 나타나는 소위 “포괄적 행정처분기준의 반복금지”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령의 별표의 정비를 통한 정비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의 강화라는 정비지침에 의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 제7호의 처분내용을 신설하였다.

(5) 2006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일반원칙의 문제점

① 제재처분에 한정하여 정비한다.	
1. 걱정	
2. 부적정	이유: 제재처분보다는 제재적 행정처분이 용어상으로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있음
3. 부적정시 대안	① 제재적 행정처분에 한정하여 정비한다.
4. 수용여부	수용

② 행정처분기준의 근거조항은 법률에 두되, 원칙적으로 부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한다.	
1. 걱정	
2. 부적정	이유: 과징금의 부과기준도 본 정비지침에서 통일적으로 정bih할 필요가 있음
3. 부적정시 대안	② 일반적인 행정처분기준의 근거조항은 법률에 두되,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부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한다. 다만,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한다.
4. 수용여부	수용

⑨ 공표된 것과 다른 기준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걱정	
2. 부적정	이유: 공표된 것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이는 어떤 의미로는 새로운 처분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새로운 공표절차를 거쳐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3. 부적정시 대안	
4. 수용여부	현행 유지

2) 행정처분기준의 “일반기준”의 정비지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② 가중·감경 재량처분의 근거는 그대로 존치한다. 다만, 허용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1. 걱정	
2. 부적정	이유: 가중감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필수적 절차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소관 행정청마다 가중감경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입법례로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3. 부적정시 대안	②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도록 한다.
4. 수용여부	수용함

③ 과징금 부과대상에서의 제외 여부는 과징금 처분기준에서 정하도록 정비한다.	
1. 걱정	
2. 부적정	이유: 과징금 부과대상에서의 제외여부는 법률 규정사항으로 보아야 하며, 과징금 처분기준(대통령령)에서 정할 사항은 아님
3. 부적정시 대안	③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대상 및 내용은 법률에서 그 대체적 내용을 규정하되, 필요할 경우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처분기준에서 정하도록 한다.
4. 수용여부	수용함

2. 2007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정립

(1)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일반원칙

<p>① 제재적 행정처분에 한정하여 정비한다.</p> <p>② 일반적인 행정처분기준의 근거조항은 법률에 두되,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부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한다. 다만, 과징금의 부과기준은</p>
--

-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한다.
- ③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 행정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정비한다.
 - ④ 포괄적 행정처분기준의 반복을 금지하도록 정비한다.
 - ⑤ 처분기준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비한다.
 - ⑥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도록 정비한다.
 - ⑦ 공무원과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비한다.
 - ⑧ 행정처분기준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 ⑨ 공표된 것과 다른 기준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행정처분기준의 일반기준의 정비지침

- ① 행정처분기준이 재량준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속적 표현은 피하도록 정비한다.
- ②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도록 한다.
- ③ 가중·감경기준이 획일적으로 2분의 1 이하의 범위 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중·감경한 행위의 정도에 따라 3분의 1 또는 그 이하로도 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대상 및 내용은 법률에서 그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되, 필요할 경우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처분기준에서 정하도록 한다.
- ⑤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의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사유는 영업정지처분사유와 일치시키도록 한다.
- ⑥ 영업신고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종국적으로 허가취소가 아니라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정비한다.
- ⑦ 신고 등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에는 반드시 금액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과태료금액을 위반행위에 비례하도록 세분화하여 정비한다.
- ⑧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기준이 아닌 직접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정비한다.
- ⑨ 행정쟁송결과 원고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그 처분이 과하다고 판결된 사건에 대하여 행정청이 당해 행정쟁송의 원인이 된 처분을 일정한 정도 감하여 재처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정비한다.

(3) 행정처분기준의 개별기준의 정비지침

- ① 위반행위란과 근거법령란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정비한다. 그리고 “위반행위”와“근거법령”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정비한다.
- ② 경고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정비한다.
- ③ 의무위반자주체별로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 ④ 과징금 상한액을 실효성있게 정비한다.

(4) 2006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적용과 평가

1) 적용범위

2차년도인 2007년도에는 법제처 법제관, 실무자, 대학교수 등의 자문 하에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보완하는 것을 연구목표 중의 하나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교육행정분야, 문화행정분야, 경제행정분야 및 환경행정분야의 행정처분기준의 정비에 도입·적용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은 바 있다.

2) 각 행정분야별 구체적 적용결과 개요

가. 문화행정분야

문화예술분야에 속하는 「영화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행정처분기준을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문화관광부령에서 행정처분기준의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령에서 규정하는 행정처분기준의 전형적인 방식에 따르면,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서 위반행위를 한 자가 일정기간내에 동일한 내용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차수가 증가할 때마다

가중처분을 하도록 하였는바, 그 기준표에서는 일반기준항목과 개별 기준항목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반기준의 항목에서는 개별 기준에서 규정하려는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적용기준을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행정처분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과 1차위반행위 후 동일한 위반행위를 했을 때의 차수 적용기준일을 1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연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고, 2 이상의 동일위반행위(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인 때에 추가로 동일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했을 때의 병합처분과 이에 대한 가중처분에 관한 사항, 경미한 위반행위를 하거나 모범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의 감경처분과 그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개별기준의 항목에서는 법률 위반행위를 법률의 조문별, 또는 보다 세분된 행위의 유형 별로 구분하고 각 위반행위 별로 1차부터 3차까지 또는 1차부터 4차까지 등의 각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을 정하여 차수가 많아질 때마다 가중하여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예술분야에서는 대부분의 법률이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9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은 본질적으로 영업정지처분이 공익에 반할 때 그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다. 그러나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의 영업정지처분은 공익에 반하게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예상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공익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화예술분야의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제도의 도입이유를 감안할 때 공익적인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공익적인 이유가 있을 때만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시각이 있고, 법률에 그러한 요건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 중 하나를 마음

대로 선택하여 처분할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공익적 사유가 있을 때만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르면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 영업정지처분이 공익에 반하는 사유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할 때 과징금부과처분을 받는 자가 한사람도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어 과징금부과제도를 규정한 법률의 취지에 반할 것이다. 반면 공익적인 사유가 아닌 다른 어떤 사유를 정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한다는 것도 법률에 맞지 아니하다. 그렇다고 하여 행정청이 마음대로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분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실무에서는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처분의 선택에 따른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처분당사자 즉 처분을 받을 자에게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하고 있다. 과징금처분제도는 당초의 도입동기를 벗어나 상당히 왜곡되어 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과징금미납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문제가 있다.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미납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 과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무관서도 아닌 행정청이 이러한 업무를 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관서 등에 협조요청을 해도 국세 등을 징수하기에 바쁜 세무공무원 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가능성도 적다. 그 결과 과징금미납자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과징금미납자는 결과적으로 위반행위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과징금미납자에 대하여는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하는 입법례가 생기게 되었다.

현재까지는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 과징금미납자에 대한 과징금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한 입법례는 없다. 그러나 보

건복지분야의 입법례에 이러한 제도가 입법되자 문화예술분야에서도 이러한 입법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바, 앞으로 이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나. 경제행정분야

현재 수많은 경제행정법령에서 과징금 조항을 두고 있으나, 상당수의 법률이 “변형된 과징금”으로 운용되고 있어 제도의 타당성 여부와 함께 적정한 과징금의 집행수준과 실제운용에 있어서의 합리성 내지 투명성 등과 관련하여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현행 과징금제도가 부당이득의 환수와 위반행위의 억제라고 하는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현행 과징금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현행 기준의 적정성 여부 및 과징금 부과 및 산정기준, 가중감경 절차 및 정도 등에 관하여 기준이 결여되어 있거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다.

과징금제도와 관련하여 실무계에서 갖는 가장 큰 불만은 그 금액의 과중함에 있다 할 것이다. 학설 및 판례가 과징금의 주요 기능을 억지기능으로 보고 있음에도 지나치게 과다한 과징금을 부과하여 실제로 보복기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 법은 과징금과 별도로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도 규정을 하고 있어, 하나의 위반행위로 과징금,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어 이중처벌을 금지한 헌법에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과징금 운용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는 과징금의 본래적 목적과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과징금은 장래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장래위반행위를 억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과징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과징금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들의 운용목적은 장래위반행위의 억지라고 할 수 있다. 특

히, 최근 일본의 논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과징금의 산정비율이 인상됨에 따라 외형만 보면 과징금의 제재적 성격이 강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지만 결론은 종전과 같이 부당이득환수가 주된 목적이며 제재적 성격은 부수적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제재적 측면은 형사벌로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과징금은 과거의 위반행위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위반자를 포함한 모든 시장참여자가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과징금의 산정은 일본의 경우와 같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의 환수에 당해 행위로 인한 사회적 후생감소를 고려한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과거 위반행위가 존재하였다고 그 사실만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응징은 형사적 처벌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징금의 부과는 과거 위반행위보다는 현재 기업의 상태 및 장래 위반가능성을 고려하여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경제행정법령상의 행정처분기준 분석과 관련해서는 첫째, 경제행정분야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다수의 부처에 걸쳐져 있고 관련법령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것만 해도 상당하기 때문에 연구범위의 한정 내지 명확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여 연구범위 설정에 대해 서술하였고, 둘째, 현행 경제행정법령상의 행정처분과 처분기준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였다. 경제행정법령상에서는 주로 과징금이 문제되는 것을 감안하여 행정처분기준으로서의 과징금의 산정기준에 대해 고찰하였다. 과징금 상한액문제 및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고시에 위임하는 사례 등의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다. 환경행정분야

현행 환경행정 관련 법률 115개에 관한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규정을 전수조사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이를 통하여 환경행정분야에 있어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개괄적인 분석을 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 ① 입법형식상에 있어서 타 행정분야에 비해 보다 정치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고려되어 진다. 즉, 종래 행정처분기준과 관련하여 문제시 되어온 대통령령 내지 부령형식 가운데 어떠한 형식을 취함이 바람직 할 것인가의 문제는 환경행정분야에 있어 대다수의 규정이 부령으로 규정되어지고, 과징금 내지 과태료와 같은 경제적 제재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점은 환경행정분야에 있어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상위법령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되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도 불비적인 요소는 발견되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위반행위란과 근거법령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 용어역시 통일적이지 않음은 문제시 된다.
- ② 환경행정분야에 있어 특성이라 할 수 있는 기술관련성, 즉 다수의 제재적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에서 처분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의 근거에는 무엇보다 과학기술상의 수치와 관련 형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단지 제재적 행정처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수익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하겠다.
- ③ 환경행정분야에 있어서는 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영업정지-취소, 경고, 명령 등의 타 행정분야와는 비견되어질 만큼의 다양한 제재적 수단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환경이라고 하는 법적개념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선결적 요건으로 이해되어지는 환경에 대한 침익적 행위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며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함은 물론 가능한 한 미연에 방

지하고자 하는 입법적 견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고려되어 진다.

- ④ 환경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상 다른 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에 비하여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한 규정이라 하겠다. 종래의 이와 같은 반복위반행위에 대한 기준과는 달리 보다 경한 제재적 수단, 즉 경고등을 주로 1차위반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환경 폐기물관련 업체 등에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폐기물 사업의 공적인 요소를 인정하고 가능한 한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복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수단의 단계별 규정이 과연 비례의 원칙에 상응하고 있는지는 각 개별법령의 입법목적과 운용양태에 따라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때문에 법리상 사실행위적 성격을 가지는 경고처분이 제재적 수단으로서 그 타당성과 실효성을 가지는지에 관하여서는 좀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 하겠다.
- ⑤ 환경행정분야의 행정처분기준에 있어서의 과징금은 종래 법리상 전개되고 일반화된, 소위 변형된 과징금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과징금액과 위반행위와의 비례 원칙은 어느 정도 타당하게 운용되어 지고 있다고 사료된다.
- ⑥ 환경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에 있어서의 가중내지 감경에 관한 재량처분은 다른 행정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과연 1/2 감경이라고 하는 규정의 운용에 있어서의 재량적 요소에 관한 문제라 할 것이다.
- ⑦ 환경행정분야에 있어 종래 권리-의무관계에 있어 문제시 되어 온 승계에 관한 문제, 즉,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기준이 아닌 직접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환경행정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법률에서 상세히 규정화하고 있는 바, 문제시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⑧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본다면, 각 국의 환경에 대한 관념상의 차이, 그리고 재량행위라고 하는 법리적 문제에 대한 성립역사와

양태의 상이함으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하겠다. 다만,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환경 침해에 대한 제재의 모습, 미국의 보다 구체화된 기준의 설정, 독일과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서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입법례와 운용현황을 통한 시사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라. 교육행정분야

주요비교대상국가 (독일, 일본, 미국, 프랑스)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교육행정과 직접 관련한 법령상의 행정처분기준은 없다. 다시 말하면, 교육행정과 관련한 처분기준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다 할 구체적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원인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교육행정분야가 그 특성상 정형적인 처분기준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는 데에 있다.

교육행정법령의 주요한 특징은 행·재정제재의 포괄적인 기준조차도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아닌 훈령의 형식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규율할 경우 현재 훈령의 경우보다 구체적으로 사유를 열거하고 그 처분기준도 별표 등의 형식으로 만드는 등 구체화 작업이 필수적일 것이므로 다양한 위반행위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 언론 등의 공격을 피할 수 없는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쉽사리 바꿀 수 없다는 점에 교육인적자원부의 고민이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훈령의 형식을 합리화하기 어려운 이상 법을 개정하여 고시에 이를 위임하거나, 훈령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수용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교육행정은 교육에 관한 행정이라는 측면에서 다각적인 이해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교육행정이라고 하여

학사 등의 행정사항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한정되기는 하더라도 학교보건, 학교환경, 학교급식, 학교시설 등 모든 부처의 행정작용을 종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인적자원부의 행정작용은 언론에 끊임없이 오르내리고 이에 대한 대응만으로도 역량이 모자랄 지경인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 또한 법치행정의 원칙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기준의 법률유보, 처분기준의 명확화는 교육행정분야의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법제처와의 협조를 통하여 이러한 재량행위의 투명화 작업, 처분기준의 구체화 작업을 할 예정이고 실제로 최근 개정법령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염두에 두고 처분기준을 구체화, 명확화하려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교육행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행정처분기준을 정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확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교육행정의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교육행정 가운데서도 중요사항, 특히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되는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법률의 수권을 받은 명령으로 처분기준을 설정하여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는 교육행정에게 재량의 여지를 부여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5) 2007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일반원칙의 문제점

① 제재적 행정처분에 한정하여 정비한다.	
1. 평가 내용	- 제재적 행정처분을 주된 정비대상으로 하되, 수익적 행정처분의 일반기준도 부수적으로 제시함. - 이는 본 연구의 범위이므로 연구목적에서 밝힐 사항이지, 정비지침의 원칙으로 할 사항이 아님.
2. 개선안	- 삭제.
3. 비고	

<p>② 일반적인 행정처분기준의 근거조항은 법률에 두되,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부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한다. 다만,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한다.</p>	
<p>1. 평가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이 부령으로 정한 제재처분기준의 일반적인 성격을 행정규칙으로 계속 규정한다 하더라도 기준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이에 따른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령에 대해 법규성을 인정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됨. 그렇다면, 과연 과징금에 대해서는 꼭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함. 제재처분의 경중(과징금보다 영업허가취소 등이 경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고), 통일성(부과대상 사업의 영역이나 위반행위의 영역에 따라 기준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등 어떤 필요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함. 또한 법률에서 부령에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임 형식이 ‘... 장관이 정한다’고만 되었을 경우 등에는 다시 고시 등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보이는데, 위임 형식 자체를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다른 처분기준과는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 인지 궁금함.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경우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은 부령에,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규정되는 불합리가 생기게 됨. - 제재적 행정처분 중 왜 과징금 부과기준만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명이 불분명함.
<p>2. 개선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기준의 근거조항은 법률에 두되,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원칙적으로 부령으로 정한다. - 일반적인 행정처분기준의 근거조항은 법률에 두되,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적당치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한다.
<p>3. 비고</p>	

제 1 편 행정처분기준의 이론

③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 행정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정비한다.	
1. 평가내용	- 극히 당연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너무 이론적이어서 보다 구체적인 원칙이 제시되지 않는 한 실무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
2. 개선안	-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 행정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정비한다.
3. 비고	-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처분기준의 정비원칙으로 활용한다.

④ 포괄적 행정처분기준의 반복을 금지하도록 정비한다.	
1. 평가내용	- 결과적으로 “⑦ 공무원과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비한다” 와 같은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닌지?
2. 개선안	- 포괄적 행정처분기준의 반복을 금지하도록 정비한다.
3. 비고	

⑤ 처분기준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비한다.	
1. 평가내용	- 지극히 당연한 사항이어서 별도의 지침으로서의 의의가 별로 없음.
2. 개선안	- 처분기준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비한다.
3. 비고	

⑥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도록 정비한다.	
1. 평가내용	- 모든 경우에 상습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하는 것은 아님. 상습위반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으로 제재할 수 있음. 다만,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으로는 상습위반자에 대한 제재로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예 위반횟

	수에 따라 처분기준을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개선안	- 상습위반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기준을 차등화하도록 한다.
3. 비고	

⑦ 공무원과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비한다.	
1. 평가내용	- 연구의 종국적인 목적으로서 굳이 일반원칙으로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시됨.
2. 개선안	- 공무원과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비한다.
3. 비고	

⑧ 행정처분기준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1. 평가내용	<p>- 행정처분기준은 경우에 따라 세분화되거나 구체화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제재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단순화하거나 포괄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행정처분기준은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제재의 실효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단순화할 것인지 세분화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 원칙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재적 처분과 같은 침익적 처분의 경우 기준이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됨. 그러나 제재를 가하여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준이 구체적일 필요도 있지만, 제재의 효율을 생각해 보면, 반대로 기준이 추상적인 경우가 더 타당한 경우도 있을 것임. 따라서 침익적 처분의 경우 법치국가원리상 처분기준이 명확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됨. 경우에 따라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다양한 경우의 수를 따져 구체화하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p>

제 1 편 행정처분기준의 이론

	<p>하기도 함. 따라서 제재의 목적과 공익실현의 목적 등을 고려해서 기준을 구체화할 것인지 아니면 추상적인 기준을 통하여 규제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p> <p>- 정비대상이 행정처분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과 유사한 근거에서, 정비지침의 ‘원칙’이나 ‘지침’의 표현을 좀더 구체화하고 세부적 기준을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고려됨. 원칙이나 지침의 내용이 너무 간결하고 추상적이어서 정비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공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음. 예컨대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따라 정비한다는 기준의 경우, 어떤 요소에 비례할 것인지, 어떤 요소를 근거로 평등을 판단할 것인지의 근거를 적시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그 기준의 실질적 의미가 반감될 것임. 따라서 비례원칙에 따라 정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지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됨. 또한 ‘행정처분기준의 구체적 설정’이라는 정비지침에 관하여도 제재대상행위의 세부유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예시적인 것으로 할지, 한정적인 것으로 할지, 세부유형을 실제 위반사례를 수집하여 유형화할 것인지 추상적인 기준으로 유형화할 것인지 등에 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됨.</p>
2. 개선안	- 행정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논리적이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3. 비고	

⑨ 공표된 것과 다른 기준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평가내용	- 공표된 기준과 달리 처분하는 것은 위법·부당함.
2. 개선안	- 삭제
3. 비고	- 처분기준의 합리성이 상시적으로 재검토 및 개정될 수 있도록 한다.

2) 행정처분기준의 “일반기준”의 정비지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① 행정처분기준이 재량준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속적 표현은 피하도록 정비한다.	
1. 평가내용	- 재량준칙은 재량행위에 대한 일정한 처리기준을 규정해 놓은 행정규칙을 의미하는데, 법령에 규정된 행정처분기준이, 법령에 규정된 이상, 행정규칙은 아니므로, 재량준칙이라는 표현은 배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개선안	- 행정처분기준이 재량준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제재적 행정처분은 일반적으로 재량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기속적 표현은 피하도록 정비한다.
3. 비고	

②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도록 한다.	
1. 평가내용	-
2. 개선안	-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가 합리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도록 한다.
3. 비고	

③ 가중·감경기준이 확일적으로 2분의 1 이하의 범위 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중·경미한 행위의 정도에 따라 3분의 1 또는 그 이하로도 할 수 있도록 한다.	
1. 평가내용	- “3분의 1 또는 그 이하”라는 표현 보다는 “확대 또는 축소”라는 표현이 자연스러움. 그리고 “3분의 1 또는 그 이하”는 가중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좋은 시도임. 결국 이는 3분의 1 등의 한계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음. 따라서 오히려 상한기준설의

제 1 편 행정처분기준의 이론

	<p>입장에서 처분기준을 정하도록 접근함이 타당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간의 행정규칙의 법규성 논란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바, 최근 판례의 상한기준설 입장에서 볼 때, 판례의 입장에 부응하는 차원에서도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 다만, “3분의 1 또는 그 이하로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 보다는 판례의 취지대로 법문 자체에서도 ‘상한기준’으로 보도록 하는 입법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함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물론 이 경우에도 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한 세부적인 처분기준의 설정이 있어야 할 것임.
2. 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중·감경기준은 2분의 1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가중·감경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한다. - 가중·감경기준이 획일적으로 2분의 1 이하의 범위 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행위와 제재내용간의 비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3. 비고	

④ 과징금 부과대상에서의 제외 여부는 과징금 처분기준에서 정하도록 정비한다.	
1.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무 당연한 사항이어서 지침으로서의 가치가 없음. - 과징금 부과대상에서의 제외 여부가 과징금부과대상으로부터의 면제라면, 이는 단순히 처분기준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에서 정할 것이 아니라, 면제해 줄 수 있는 권한의 근거 및 그 권한의 귀속자 등이 법률에서 정해져야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사료됨.
2. 개선안	- 삭제
3. 비고	

⑤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의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사유는 영업정지처분사유와 일치시키도록 한다.	
1.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도 이미 그렇게 해석되고 있다고 판단됨. 즉, 과징금 부과사유는 곧 그에 갈음한 영업정지처분사유와 동일한 것임. 따라서 굳이 이를 정비지침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임. - 이것은 현재 도입이 검토되기는 어렵겠지만, 만약 이윤이 큰 영업정지를 피하고 과징금을 부여받음으로써, 위반행위를 하면서 영업을 하겠다는 동기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감안하면, 영업정지를 하고 그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명령을 발하는 것과 같은 외국입법례도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참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 개선안	-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의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사유는 영업정지처분사유와 일치시키도록 한다.
3. 비고	

⑥ 영업신고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종국적으로 허가취소가 아니라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정비한다.	
1.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정지”가 아닌 “영업소폐쇄”가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음. - 영업신고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신고의무 위반을 대상으로 하는지 그 대상을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개선안	- 영업활동에 따른 사소한 신고의무위반은 허가취소사유로 하지 않는다.
3. 비고	

⑦ 신고 등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에는 반드시 금액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과태료금액을 위반행위에 비례하도록 세분화하여 정비한다.	
1.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기준은 과태료 외의 제재처분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할 것임. - ‘신고 등’이라 하여 그 원인행위를 불문하고 모든 과태료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의문시 됨. - “위반행위의 정도”로 함이 타당함.

제 1 편 행정처분기준의 이론

	- “최대한 세분화”로 함이 좋을 듯함.
2. 개선안	- 처분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해서 정하되, 가급적 절대기준이 아닌 상한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한다.
3. 비고	

⑧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기준이 아닌 직접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정비한다.

1. 평가내용	-
2. 개선안	-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기준이 아닌 직접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정비한다.
3. 비고	

⑨ 행정쟁송결과 원고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그 처분이 과하다고 판결된 사건에 대하여 행정청이 당해 행정쟁송의 원인이 된 처분을 일정한 정도 감하여 재처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정비한다.

1. 평가내용	- 행정쟁송은 심판과 소송을 포함하는바, “과하다고 판결된” 부분을 “과한 것으로 종결된”으로 함으로써 양자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함이 보다 타당하지 않을까 사료됨. - 행정쟁송결과 처분이 과하여 취소된 경우 이러한 인용판결의 기속력으로 인하여 행정청은 재처분을 하게 되고, 이 경우 처분이 과하여 패소하게 된 것이므로,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약한 정도의 처분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둘 실익은 없다고 생각한다.
2. 개선안	- 행정쟁송결과 원고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그 처분이 과하다고 판결된 사건에 대하여 행정청이 당해 행정쟁송의 원인이 된 처분을 일정한 정도 감하여 재처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정비한다. - 행정쟁송결과 원고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그 처분이 과하다고

	판결된 사건에 대하여 행정청이 당해 행정쟁송의 원인이 된 처분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일정한 정도 감하여 처처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정비한다.
3. 비고	

3) 행정처분기준의 개별기준의 정비지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② 경고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정비한다.	
1.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조치나 경고조치”는 행정상의 조치이긴 하나 쟁송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관례의 입장으로 알고 있음. 경고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임. 그러나 그 법적 근거를 두고자 한다면 이와 함께 ‘법적 효과’에 대한 근거규정도 함께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위반시 후속 조치 포함). - 불문경고의 처분성 등에 관한 대법원 관례 등이 배경이 된 것이라면, 장래 다른 불이익처분과 관련되지 않은 경고처분에 대해서도 굳이 법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2. 개선안	- 경고처분을 두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3. 비고	

③ 의무위반주체별로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1. 평가내용	-
2. 개선안	- 위반주체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위반주체별로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3. 비고	

④ 과징금 상한액을 실효성있게 정비한다.	
1. 평가내용	- 맞는 말이지만 실무자에게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음.
2. 개선안	- 과징금 상한액을 다른 법령의 내용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정비 한다.
3. 비고	

3. 2008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안의 수립

이상에서와 같은 연구진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행정 처분기준 정비지침에 대한 집행 공무원의 실무상 적용에 있어 어려움 과 학계에서의 법리적 문제점을 제기한 바, 연구 종결기인 3차년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실무상 효용성과 처분기 준절차에 대한 법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2007년도의 행정처분기준 정 비지침을 새로이 보완·정립하고자 하였다.

(1) 행정처분기준의 일반원칙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이 확정한다.

<p>① 공무원과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비한다.</p> <p>② 행정법상 일반원칙을 처분기준의 정비원칙으로 활용한다. 특히, 의무위반 행위와 제재수단간 비례의 원칙과 법령간 유사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 단간 평등의 원칙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p> <p>③ 일반적인 행정처분기준의 근거조항은 법률에 두되,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을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적당치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령에 위임하 는 형식으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 통령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한다.</p>
--

- ④ 포괄적 행정처분기준의 반복을 금지하도록 정비한다.
- ⑤ 상습위반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반횟수에 따라 처분기준을 차등화 하도록 한다.
- ⑥ 처분기준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비한다.
- ⑦ 행정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논리적이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2) 행정처분기준 일반기준의 정비지침

행정처분기준의 “일반기준”의 정비지침은 다음과 같이 확정한다.

- ① 행정처분기준이 재량준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속적 표현은 피하도록 정비한다.
- ②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가 합리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며, 최소한 동기 또는 의무위반횟수를 고려하여 규정 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가중·감경기준은 2분의 1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무위반 행위와 제재내용 간의 비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는 가중·감경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의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사유는 영업정지 처분사유와 일치시키도록 한다.
- ⑤ 영업활동에 따른 사소한 신고의무위반은 신고의 법리적 성격을 고려하여 허가취소사유로 하지 않는다.

- ⑥ 처분기준은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해서 정하되, 가급적 절대 기준이 아닌 상한으로 제시하는 입법형식을 따른다.
- ⑦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기준이 아닌 직접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정비한다.
- ⑧ 행정쟁송결과 원고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그 처분이 과하다고 판결된 사건에 대하여 행정청이 당해 행정쟁송의 원인이 된 처분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일정한 정도 감하여 재처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정비한다.

(3) 행정처분기준 개별기준의 정비지침

- ① 위반행위란과 근거법령란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정비한다. 그리고 “위반행위”와 “근거법령”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정비한다.
- ② 경고처분을 두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 ③ 위반주체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위반주체별로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④ 과징금 상한액을 다른 법령의 내용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정비 한다.

(4) 정비지침의 주요내용

1) 정비지침의 일반원칙

- ① 공무원과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비한다.

행정처분기준은 성질상 재량준칙이므로 집행 공무원의 적용관점과 아울러 실질적인 처분기준의 적용 대상인 국민의 입장에서 자신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명확한 제재처분기준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이는 곧 행정청은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의 취지에 맞추어 처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고 당사자 등에게 예측가능성이 보장되도록 정비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② 행정법상 일반원칙을 처분기준의 정비원칙으로 활용한다. 특히, 의무위반행위와 제재수단간 비례의 원칙과 법령간 유사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간 평등의 원칙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행정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 위배여부를 감안하여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평등원칙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함은 물론,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법령간 비교를 통하여 적절한 제재처분기준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비례의 원칙의 적용이란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목적과 행정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의무위반행위와 제재처분 간 형량의 적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들 헌법적 효력을 가진 원칙들에 반하는 행정권 행사는 위법하고, 그 법령은 위헌·무효가 된다. 행정처분기준을 분석해 보면, 행정목적과 행정수단이 비례하지 않는 사례가 동일한 행정처분기준에도 있고, 동일부처의 행정처분기준 간에도 발견되고 있다. 이것은 처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는 만큼 정비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③ 일반적인 행정처분기준의 근거조항은 법률에 두되,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적당치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한다.

대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총리령이나 부령에서 규정된 경우에 대하여는 그 기준의 형식은 총리령·부령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행정규칙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관된 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관된 입장과는 달리 대법원은 총리령이나 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제재처분의 기준을 규정한 경우에 대하여는 당해 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다.

최근의 일부 부처의 입장은 대법원의 판례의 영향을 받아 행정처분 기준을 입법할 경우 법률에서 행정처분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처분기준을 정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행정처분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상향조정하는 입법경향은 대다수 입법례에서 부령에 행정처분기준을 두고 있는 법현실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기준을 원칙적으로 부령으로 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행정처분 기준의 근거규정은 법률에 두되, 법률에서 원칙적으로 부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과징금의 경우에는 각 부처 통일성의 차원에서 처분기준을 대통령령에 규정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④ 포괄적 행정처분기준의 반복을 금지하도록 정비한다.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다수의 법령에서 행정처분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이다. 즉, 법률(행정처분)에서 법규위반에 대한 취소사유를 정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규정하고 이의 세부적인 처분 기준을 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의 세부적인 사항을 허가된 영업의 종류별로 위반행위를 구분하여 처분기준을 규정하면서, 특정영업 등의 처분기준 말미에서 또 다시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지시·명령에 위반한 때”의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서 규정한 포괄적 규제규정을 반복하여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있고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이라는 표현 중 “...이 법에 의한 명령”이 법률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하위법령을 뜻하는지, 시정명령 등 행정청의 구체적 명령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다.

⑤ 상습위반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반횟수에 따라 처분기준을 차등화 하도록 한다.

동일한 위반행위라 할지라도 위반횟수에 따라 처분기준을 달리함으로써 상습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다수의 위반항목에 대한 상습범 처분기준을 2회 이상인 경우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습범 사이에 처분의 차별성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은 위반횟수에 따라 그 처분기준에 차이를 두고 최종적으로는 허가를 취소하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상습위반자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행정제재처분의 절차(1차-,2차-,3차-,4차 처분)는 선행 처분시보다 중한 처분규정을 두도록 하며, 경고-경고의 경우 경고-시정명령 또는 경고-영업(업무)정지 -개월의 형식에 따른다. 영업(업무)정지의 경우 일반적인 입법 규정형식에 따라 선행 처분(제2차)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규정을 두도록 조정한다(1-,3-,6개월).

⑥ 처분기준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비한다.

행정처분기준 중 복수의 법조문을 각각 인용하여 서로 다른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용한 법조문이 당해 조항에서 규정하는 취지와 전혀 무관한 사항인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오류가 분명하고 일선에서의 혼란이 예상되므로 즉시 개정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⑦ 행정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논리적이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현행법은 설정된 처분기준의 공표의무에 대한 예외를 추상적인 기준 아래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예외기준을 구체화하고 엄격하게 인정하도록 법령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절차법 제20조제1항이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질”에 국한하여 예외사유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여기서 ‘가능한 한 구체적인 것’이라고 하는 문언의 해석으로서는 ‘논리적이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구체적인 것’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2) 일반기준의 정비지침

① 행정처분기준이 재량준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속적 표현은 피하도록 정비한다.

행정처분기준 중 행정청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가중처분하도록 하여 마치 행정처분이 행정청의 기속행위로 보게 할 우려가 있어 문제이다. 행정처분기준 자체의 성격은 재량준칙으로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있으며 당사자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개입하거나 본질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당해 영업에서) 배제시켜야 할 사안이 아닌 이상 정지처분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표현보다는 “...할 수 있다”는 재량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시: 2분의 1까지 합산·가중한다 → 2분의 1까지 합산·가중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처분기준이 처분청 소속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취지로서 감경이나 가중처분의 요소가 없을 경우 그 기준대로 처분하라는 것이고 당해 처분이 나중에 부당한 처분으로서 사법적 판단에 따라 그 처분을 기준과 다르게 감경해야 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할 수 있다”고 할 경우 처분을 담당할 일선 공무원들에게 또 다른 재량의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행과 같이 “...한다”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¹²⁰⁾ 다만, 대통령령이나 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 법령의 행정처분기준이 법률의 규정을 그대로 되풀이하여 규정한 경우가 많은 바, 법률의 규정은 추상적, 일반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를 세분화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②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가 합리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며, 최소한 동기 또는 의무위반횟수를 고려하여 규정 할 수 있도록 한다.

120) 박 인, “우리나라 보건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의 특징과 문제점”, 『보건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자료집(2006. 5. 19), 26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반드시 법률주의를 전제하여야 한다. 처분권자의 재량의 여지를 남겨둘 경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려 그 실효를 거둘 수 없을 뿐 아니라 처분권자의 부조리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규정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최소한 가중, 감경의 경우 동기 또는 의무위반횟수를 고려한 입법형식을 취하도록 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의무위반사안에 있어 국민의 실질적인 권익보장을 향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③ 가중·감경기준은 2분의 1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무위반 행위와 제재내용 간의 비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는 가중·감경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에는 행정제재처분기준을 정할 때 경미한 행위를 한 경우 반드시 감경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두어 처분기준이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경기준이 획일적으로 2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여전히 문제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경미한 행위를 하였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경사유를 보다 세부화하고 정밀하게 정하도록 노력함은 물론, 의무위반 행위와 제재내용 간의 비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는 가중·감경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④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의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사유는 영업정지처분사유와 일치시키도록 한다.

중전의 법령상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부과의 세부기준은 ① 양자를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한 입법례(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② 영업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부령에, 과징금부과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한 입법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7조), ③ 영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과 과징금부과의 세부기준을 모두 부령에 위임한 입법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제83조) 등이 있다.

과징금처분이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는 처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의 세부기준은 동일한 법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과징금부과처분은 금전적인 부담을 가하는 것이라는 점과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다른 과징금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소관부처가 단독으로 정하는 부령으로 정하기보다는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¹²¹⁾

⑤ 영업활동에 따른 사소한 신고의무위반은 신고의 법리적 성격을 고려하여 허가취소사유로 하지 않는다.

신고영업자의 법령준수의무 또는 성실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개별 행정법규에서는 신고영업자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행정제재로는 통상적으로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명령, 과징금, 과태료, 위반시설·설비·물품 등의 철거·폐기처분, 품목의 제조정지·금지명령 등의 수단이 사용되고 있다.

상당수의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은 허가제로, 일정한 사항은 신고제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은 대부분 허가제 일변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1차 처분과 2차 처분의 영업정지에 이어 3차

121) 법제처, 『법령입안기준』(2007), 162-163면 참조.

처분에서 대부분 허가취소를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신고영업은 허가와는 전혀 상이한 영업규제제도로서 허가취소가 맞지 아니하다. 따라서 신고영업을 중국적으로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허가취소가 아니라, 제조소 폐쇄나 수입금지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⑥ 처분기준은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해서 정하되, 가급적 절대 기준이 아닌 상한으로 제시하는 입법형식을 따른다.

특히, 등록·신고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에는 반드시 금액의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정비한다.

⑦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기준이 아닌 직접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정비한다.

행정처분기준 속에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는 입법례는 관광진흥법시행령 별표2,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3,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7,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1,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별표23, 안마사에관한규칙 별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2 등 다수가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여부를 재량준칙인 행정처분기준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입법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본래 행정처분에 의한 지위의 승계(특정승계·포괄승계)를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 인정한다면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당해 행정처분이 어떠한 요건을 판단하여 부여된 것인

가에 따라 결정된다. 즉, 물적 요소만을 판단하여 부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효과의 승계를 비교적 용이하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인적 요소를 판단하여 부여한 행정처분이라면 그 일신전속성으로 말미암아 행정처분효과의 승계를 자유롭게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승계를 어느 범위에서 어떤 절차에 따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당해 처분의 내용에 상응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당해 행정처분이 대물적 요소 외에 대인적 요소도 고려한 혼합적 성격의 것이라면 일률적으로 처분승계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한 입법방식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재량준칙으로서의 행정처분기준의 법규성 문제에 대해서도 찬반양론이 있음을 고려하면 재판규범으로서 기능될 가능성도 쉽게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기준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⑧ 행정쟁송결과 원고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그 처분이 과하다고 판결된 사건에 대하여 행정청이 당해 행정쟁송의 원인이 된 처분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일정한 정도 감하여 재처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정비한다.

행정실무에서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사례에서 대부분의 판결은 행정처분기준에 의거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과하다고 하여 행정청이 패소하는 사례가 많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외에도 일반적으로 행정소송 사례 중에 원고의 위법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처분이 과하다 하여 법원이 행정청의 일부패소를 선언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확정된 경우와는 달리 행정청에게 당해 사안에 대하여 새로이 처분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법령을 위반한 원고의 위법성은 상존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의 재처분에 관해서는 당해 법령에 마땅한 근거 법령이 없고, 감경하여 재처분하는 경우 어느 정도나 감경하여 처분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행정청으로서 그 동안 처분을 유보하거나 일률적으로 포기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행정소송 결과 원고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그 처분이 과하다고 판결된 사건에 대하여 행정청이 당해 행정소송의 원인이 된 처분을 일정한 정도 감하여 재처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당해 법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에 서서 당초의 처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재처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일부 견해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까지 처분기준에 두어야 할지 의문인 바, 행정청은 행정소송 등에서 당초 처분이 부당한 처분으로 판시되었다면 당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하고, 이 경우 처분기준은 당해 판결의 취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반드시 2분의 1을 감경하여 재처분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¹²²⁾ 그리고 일률적으로 2분의 1로 감경하여 처분하도록 하는 것은 논리적인 근거가 박약하고 자칫 다시금 경직된 행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다.¹²³⁾

3) 개별기준의 정비지침

① 위반행위란과 근거법령란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정비한다. 그리고 “위반행위”와 “근거법령”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정비한다.

122) 박 인, 전계발표문, 26면.

123) 박중수, “우리나라 보건의정분야 행정처분기준의 특징과 문제점”, 『보건의정분야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자료집 토론문(2006. 5. 19), 41면.

행정처분기준에서는 위반행위,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 및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히 적시하여야 하는데, 현행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에서는 위반행위의 근거조항과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조항이 제대로 명시되지 못하거나 혼동하여 적시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곧 근거조항이 미비된 행정처분을 양산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처분기준표의 위반사항란에는 의무부과에 관한 실체적 조항을 명시하고, 근거법령란에서는 행정처분의 직접적 근거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경고처분을 두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제재처분의 일종으로서의 경고처분은 그 성격이 강학상의 사실행위라 할지라도 실무에 있어서는 구체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사인 바, 강학상의 경고와 성격을 달리하는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상위법인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현행법에는 경고처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있는 규정들이 다수 있다. 물론 행정법규들에서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종류로서 경고처분을 업무정지나 허가취소 등과 같이 규정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다. 행정처분기준에 제1차 처분으로서 경고처분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③ 위반주체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위반주체별로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행정처분기준은 의무위반주체별로 처분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각 법령에는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있고 이들에 대해서 당해 법령에서 그에 특유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행정처분기준은 이들 주체 각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법령은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하나의 틀 속에서 여러 의무주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기준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 아래에서는 그때그때 법 개정이 있을 때마다 필요에 따라 처분기준들을 덧붙여야 하기 때문에 집행하는 실무공무원들에게 있어서도 집행상의 비효율을 야기할 것이 예상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처분기준의 규율방식을 의무위반주체별로 나누어 규율하는 새로운 체계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의무주체별 체계화 정비방안은 현행 행정처분기준을 현대화하고 개선·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당해 법령에 의한 의무주체가 되는 상대방은 이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일층 확보할 수 있고, 행정주체로서도 처분기준을 근거법령과 정확히 부합시킬 수 있는 장점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④ 과징금 상한액을 다른 법령의 내용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정비 한다.

과징금은 행정처분기준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징금이 현행법상 법령 위반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위반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이른바 변형된 과징금 중 행정처분갈음형 과징금).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과징금처분은 대체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첫째,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의 기간에 합리적으로 부합하여야 하며, 둘째,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익의 박탈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물가 등 외부적 경제상황이 변화하면 이를 반영하여 위반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수단이 될 수 있도록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곧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입법례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상한액을 정비할

것이 요청된다.

과징금의 상한액(최고한도액)이 가지는 의미는 영업정지 등의 최장기간을 정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며 위반행위별 금액 등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일선공무원들에게 집행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처분 상대방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과징금은 원래 상한액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도액의 결정은 당해 행정법규의 입법목적의 실효성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기 마련인데, 탄력적인 운용 없이 동일한 금액을 수년간 고수하는 것은 실효적인 과징금제도의 운용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적정한 과징금 상한은 과징금제도의 행정제재로서의 본래 성격을 회복하고, 단순히 금전으로 때운다는 발상에 따끔한 경종을 울리는 방법이어야 할 것이다.

(5) 2008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적용과 평가

1) 적용범위

3차년도인 2008년도에는 법제처 법제관, 실무자, 대학교수 등의 자문 하에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 노동행정분야, 복지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의 정비에 도입·적용하여 보았다.

2) 각 행정분야별 구체적 적용결과 개요

가. 노동행정분야

노동행정과 관련된 법령은 대체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대부분이므로 노동행정작용은 주로 국가(행정청)가 사용자에 대해 발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처분의 기준은 허가기준과 같이 수익적 처분인 경우도 있으나,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기준과 같이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경우도 많다. 후자의 경우에는 대체로 법규명령(특히 대통령령)의 형식을 띠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노동행정에 있어서 과태료부과처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처럼 그 보다 중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는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는 시행규칙(부령)에 정하기도 하는 등 처분기준의 법형식을 원칙 없이 정하는 사례가 많아 행정처분기준의 입법형식에 관한 문제는 노동행정분야에 있어서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노동행정분야에 있어서는 종래 선행되어 연구되어진 다른 행정분야와는 상이하게 대다수의 제재적 수단이 행정형벌(징역, 벌금)로 구성되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행정분야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을 열거하여 본다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 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Zwangsgeld)을 부과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또한 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 참조). 또는 업무정지를 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소위 '변형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5조의3). 이 경우 과징금부과처분의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노동행정분야에 있어 대표적 행정처분기준으로서의 과태료를 들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행위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대해서도 행정벌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이 적지 않다(근로기준법 제115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최저임금법 제30조, 고용보험법 제118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등 참조).

2008년 행정처분기준 지침의 노동행정분야의 적용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침을 적용하여 보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 무엇보다 영업정지사유와 이에 해당하는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별표 20(행정처분기준)의 규정내용 가운데 단순하고 경미한 인적·물적요건의 미달 또는 장부의 미비치로 인하여 제1차 처분에 있어 즉각적인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은 처분양정에 있어 문제시 되며, 이러한 경우 제1차 처분 시 “경고” 또는 “시정명령”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이 타당할 것이며, 처분절차에 있어서는 제1차에 경고 또는 시정명령, 제2차 처분 시 영업정지 3개월 그리고 제3차 처분에 있어 영업정지 6개월 또는 지정취소 등의 중대한 처분을 규정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시행규칙 별표 20의 제8호 카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 행정처분기준의 삭제에 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법 제 39조의 과태료 규정에 있어 유사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간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보았으며, 개별기준에 있어 위반행위란과 근거 법령란에 관한 통일성을 유지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나. 복지행정분야

복지행정법과 관련하여 법원리의 적용영역을 논하자면 단순히 급부행정법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법·규제법의 원리도 병행해서 적용되는 관계로 그러한 경찰규제법의 행정목적의 달성수단인 행정행위가 급부행정의 영역에서도 통용된다고 하겠다.

복지행정분야의 입법형식상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시행규칙에서 창설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위임입법의 한계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모자보건법 제15조는 산후조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면

서,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고 하고 있다. 물론 법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산후조리원의 명칭, 산후조리원의 소재지, 산후조리원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 한함), 신고한 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이상의 증강으로 열거하고 있다(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이면서 동시에 시행규칙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내용도 아닌 이러한 정도의 내용을 굳이 시행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은 보이지 않는다. 다른 한편,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6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입법형식은 아동복지법의 위임도 없이 제정된 것이고, 그 행정처분이 지정취소라고 하는 중대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입법의 형식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복지행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유형은 크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 준법률적 행정행위로서의 각종 행정행위들로 나눌 수 있다. 그 유형으로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폐쇄, 비용 징수, 조세 및 공과금의 감면 등이 행정처분으로서 나타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급부행정으로서 급여내용과 관련한 급여의 종류, 결정, 개시시기, 변경, 취소, 반환, 급여비용 징수 등이 행정처분으로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복지법상의 정지처분행위에 있어서 일반 행정처분의 기준으로서 등장하는 정지기간이나 시설의 보완조치에 대한 유예 내지 시정명령이 없고 시설기준 미달 등에 경우에 곧장 사업정지나 시설의 폐쇄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제21조), 다른 법령상의 행정처분행위와 비교할 때에(예, 모자보건법 제15조의8, 시정명령)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행정처분행위에 있어서는, 비용징수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면 주

로 급부행정이기 때문에 영업정지, 과태료, 과징금과 같은 행정처분행위는 문제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2008년 행정처분기준 지침의 복지행정분야의 적용에 있어 『모자보건법』과 『영유아보육법』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침을 적용하여 보았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의 과태료금액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하여 그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금액에 대한 비교형량의 원칙을 적용하여 문제점을 제시하여 보았으며, 아울러 이와 같은 유사의무위반에 관하여 해당행정영역에 한정하여 검토할 것이 아니라 행정영역에서 유사한 의무위반사항에 관하여 비교·검토하여 상응하는 과태료 금액과 위반사유에 관한 개선안을 도출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입법형식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과징금과 같은 금전적 제재가 아닌 시정명령, 시설폐쇄와 같은 경우 역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시 되며, 가중·감경의 기준과 관련하여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의 경우, 법 제15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비치·기록·관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만원의 과태료를,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00만원의 과태료를, 법 제15조의10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에게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에 대한 개선안으로서 지침은 고려되어야 함을 논했다. 아울러 개별기준에 있어 위반행위란과 근거법령란을 정확히 명시하고 위반행위와 근거법령으로의 통일을 위하여 시행령 별표 1과 3에서의 위반사항, 해당법조문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하여 보았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9의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서는, 입법상 특징과 그 내용에 있어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것과 거짓으로 한 경우를 구분하여 상이한 처분기준을 규정할 것과 신고의무위반에 관한 제재적 처분으로서 제1차에서 곧바로 시설폐쇄를 규정한 내용에 관하여 신고의 법리적 성격을 논거로 정비의 필요성에 관하여 논해보았

다. 또한 상습위반자에 관한 상이한 제재적 처분절차에 있어 선행처분과 종국적 처분 간 입법형식에 따른 정비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일반기준에 관하여 현행 규정은 단지 차수규정과 2이상의 위반행위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기준의 내용적 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가중·감면규정의 신설과 구체적 사유의 명시를 정비안으로 제시하여 보았다. 끝으로 시행령 별표 2와 별표 9상의 위반사항, 해당법조문의 용어를 일반적 형식에 따른 위반행위와 근거법령으로 정비할 것을 제시하여 보았다.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제 1 장 서 론

행정처분기준이라 함은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량준칙을 의미한다.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영업정지, 인·허가·등록 취소, 과징금 (특히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경고, 시정명령 등)을 적용하는 집행공무원에게 재량권이 인정된 취지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매우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합목적적이고 구체적 타당성 있는 행정권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현행 우리나라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전형적인 입법형식은 각 개별 법률에서 처분의 위임근거를 규정하고 하위 법령(대통령령, 부령)에서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처분기준의 유형과 상한 및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처분의 경감(대표적으로 제재적 처분기준의 1/2 범위내)등의 규정을 두어 집행공무원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재량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무에 있어 이와 같은 본래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집행공무원이 개별 구체적인 의무위반행위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하위법령상 상한 규정에 따른 기계적인 처분만을 행사하여 기속행위화하거나 이와는 반대로 재량을 행사하고자 할지라도 행정처분기준상 일반기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고 있을지라도 경감 등의 규정에 있어 비구체적·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시 되고 있다.

또한 개별기준에 있어서도 의무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행정제재처분 (영업정지, 인·허가·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등)이 의무위반자에게 자신의 의무위반에 대한 자발적인 시정 기회조차 없이 곧바로 행사됨으로 인한 문제점과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각 개별법상의 지나치게 상이한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은 국민의 실질적 권익보장을 무엇보다 우선시 하는 법치국가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은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등 행정집행비용과 불복절차에 대한 수행비용 등 간접손실을, 직접적으로는 영업손실과 자원낭비 및 종사자의 일시적 실업이라는 직접손실을 초래하여 경제적 위축을 야기하는 국가경제적 측면의 어려움은 물론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제의지를 좌절시키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손상과 행정의 수용가능성 저하라는 국가사회적인 측면에 있어 큰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업무정지를 마땅히 부과 하여야 의무위반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의 정지로 인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공익 또는 사회경제질서에 미치게 될 피해를 우선시 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으로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대체하고자 하는 소위 변형된 과징금제도가 90년대 이후 광범위하게 현행 법제에 도입되고 있으나, 그 부과기준에 있어 영업정지처분을 대체한다는 취지에 상응하지 않게 규정되어 있어 또한 문제시 되고 있다.

때문에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의 개선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을 적용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 지침의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 시켜 보고자 한다.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제 1 절 일반기준상 가중·감경 등 규정상 미비

I. 가중·감경 규정의 미비

행정제재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213개의 하위법령 중 가중·감경기준이 미비한 법령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상담소등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등 총 147개 법령으로 조사되어 졌다([붙임-2] 가중·감경기준 명시 대상 147개 법령 목록 참조).

<가중·감경기준이 미비한 법령 현황>

구 분	가중·감경기준을 규정한 법령		가중·감경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법령	총 계
	①	②		
건 수	66	71	76	213

※ ① : 법령에서 가중·감경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와 범위를 적시하거나, 그 위반의 동기·내용·횟수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② : 법령에서 가중·감경기준에 범위를 결하고 있거나,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에서 조사된 147개의 가중·감경기준이 미비한 법령 중 가중·감경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5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4조 관련) 등 76개의 법령에서는 신속히 가중·감경기준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그 적용사유에 있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최소**

한 위반의 동기·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야 함을 규정하여 집행공무원의 법규적용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의무위반상황에 상응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Ⅱ. 법령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일정기간”의 개념 통일

차수산정기간에 따른 현행 법제현황은 ([붙임-3] 법령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일정기간’의 개념 통일),

<위반행위 차수 산정기준 법제현황>

구 분	일정기간=1년	일정기간=2년	일정기간=3년	기 타	규정없음	총 계
법령 건수	100	63	22	1	27	213

※ 기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별표 7] 등록취소등의 처분기준- “최근 5년간”

따라서 조사된 213개의 법령상 차수산정의 기간규정이 결여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3]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허가취소 등행정처분기준 등 총 27개의 법령에서는 신속히 이를 규정하여야 하며, 상이하게 규정된 기준은 위반의 실태와 의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최근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고려된다.

Ⅲ.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의 제재기준 일원화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 관한 현행 법령현황은,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에 관한 법령현황>

구 분	각 위반행위마다 처벌	중한 위반행위만 처벌	가중처분	정의없음	총 계
법령 건수	41	14	132	26	213

따라서 규정이 없는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의22관련) 등 총 26개 법령은 신속히 규정을 두도록 하여야 하며, 공통된 처분기준으로서 현행 과반수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입법자가 의도한 바와 같이,

“보다 중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이상의 위반행위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다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의 1/2까지 가중”하는 방향으로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고려된다([붙임-4]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의 제재 기준 일원화).

제 2 절 개별기준에 있어 처분양정의 문제와 유사의무위반행위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유사의무위반행위별 분류에 따른 행정제재처분기준의 상이한 모습을 통하여 알 수 있듯 유사의무위반행위로 인해 제재처분을 받게 되는 위반행위자 간의 형평성은 유지 및 관련 법령간 체계성을 도모하기 위해 서라도 유사 의무위반행위별 공통의 처분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개별 법률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법익의 특수성은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다음에서는 15개 유사 의무위반사유별로 현행 법령상 행정제재처분기준을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별책 부록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참조).

I. 변경신고의무 위반

1. 현행 규정 예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p>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p> <p>제21조 (영업의 허가 등) ①먹는샘물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수처리제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③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p>	법 제48조제1항제4 호	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④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제43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검사를 받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6	5.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휴업·재개업·폐업의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경고 등록취소 (폐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영업 정지 7일	영업 정지 15일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1의2	<p>8. 제32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한 때</p> <p>제32조 (골재의 선별·세척등의 신고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p>	법 제19조제1항제10호의3	영업 정지 2개월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골재채취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1의3	<p>1.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경우</p> <p>제25조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법 제31조제1항제1의2호	채취 중지 4개월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0	3.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29조 제3호	업무 정지 30일	업무 정지 90일	업무 정지 1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8) 변경허가를 받지 아	가) 변경허가를	법 제32조제1항제8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허가 취소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나 하 거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받지 아니한 경우	호	1개월	3개월	6개월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8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제12조 (감리법인의 등록) ①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재정능력 그 밖에 정보시스템 감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1) 등록기준 외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업무정지 10일			
		(2)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업무정지 1개월			
		(3)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업무정지 3개월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수 있는 자는 법인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하 “감리법인”이라 한다)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않는 범위 내의 자본금의 변동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5) 법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5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제21조 (영업의 허가 등) ①먹는샘물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수처리제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③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④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제43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검사를 받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7	(2) 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3조	경고	사용 중지 명령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	(4)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소재지·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 제3호의2	경고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3월	지정 취소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4	(다)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34조 (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이하 “저수조청소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경고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0일	사업장 폐쇄 명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 제5항	경고	사용 중지 명령	
		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 제5항	경고	경고	사용 중지 명령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1.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때		경 고	사업 정지 1월	사업 정지 2월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0	(4)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때		경 고	영업 정지 1월	허가 취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8. 법 제5조·법 제8조·이 규칙 제10조 및 이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사항 또는 승인사항이 변경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활동등을 계속한 때	법 제13조	경고	정지 30일	정지 60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차. 법 제2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26조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①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에 해당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법 제35조제2항제4 호	경고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1월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아니 된다.</p> <p>②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p> <p>③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문화</p>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하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p>	<p>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p> <p>제6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p>	<p>법 제67조제1항제3호</p>	경고	<p>영업 정지 10일</p>	<p>영업 정지 20일</p>	<p>영업 정지 1월</p>
<p>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p>	<p>라.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p> <p>제21조 (신고 또는 등</p>	<p>법 제27조 제1항제4호</p>	경고	<p>영업 정지 10일</p>	<p>영업 정지 20일</p>	<p>영업 정지 1월</p>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록사항의 변경) ①제 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p> <p>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p>					
<p>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p>	<p>(3) 법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위반 (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경우</p> <p>제20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p>		경고	영업 정지 3일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때에도 또한 같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별표2]	3.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3조제5항 및 법 제64조제1항제5호	경고 또는 시정 명령	영업 정지 1개월 이하	영업 정지 2~3 개월	폐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2) 법 제23조제2항 또는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 제36조	경 고	경 고	조업 정지 5일	조업 정지 10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3) 법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제2항 제1호	경고	경고	조업 정지 5일	조업 정지 10일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1	7)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 8 조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법 제17조	경고	경고	조업 정지 5일	조업 정지 10일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를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10)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제36조제8호	경고	경고	경고	영업정지 15일

2. 정비사유

신고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단체에 법률사실이나 어떤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하며, 실무상 신고라는 용어 대신 ‘보고’나 ‘명세서’ 등의 형식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신고를 하고자 하는 국민의 서류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업무는 수리이며 이는 준 법률적 행위이다. 국민의 정부시절 규제개혁의 관점에서 종전의 허가 또는 등록의 대상들이던 규정들이 다수 신고로 전환되어진 바 있으나, 단순히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중한 처분을 받거나 또는 그 의무위반에 대한 법적효과에 있어 변함없이 허가 등록규정 의무위반과 동일한 행정처분기준으로 처벌되어지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의무위반의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적인 허위·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와 단순 변경신고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제재처분의 양정을 달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단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주소지의 변경 등과 같이 단순한 신고의무가 아닌 영업행위를 지속하거나 또는 물품의 제조 시에는 고의·과실적인 제재처분에 준하여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적 처분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리적으로 성격이 상이한 신고-, 등록-, 허가·의무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을 달리 정비하여 법리적으로도 합당하게 행정 제재처분절차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3. 정비 지침안

- 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는 이를 구분 하여 규정하도록 하며 이때 일반적 법형식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보다 중한 제재처분을 규정한다. 또한 주소지 이전 등의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무 위반의 경우와 변경신고 없이 영업행위를 지속하거나 또는 물품을 제조하는 등의 의무위반행위는 달리 규정하도록 한다.

<정비 고려 대상법령 예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7	(2) 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13조	경고	사용 중지 명령		

② 변경신고의무위반에 대한 제1차 처분 시 즉각적인 과도한 처분(영업정지, 등록·허가의 취소, 폐쇄 등)은 의무위반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야기하는 바, 자기시정의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기 위한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우선적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이때 의무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제1차 처분이 영업정지1개월 미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그 이상인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규정하도록 한다. 다만,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공중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비 고려 대상법령 예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	법 제48조제1항 제4호	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과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경우</p> <p>제21조 (영업의 허가 등) ①먹는샘물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수처리제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③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④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제43조</p>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검사를 받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6	5.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휴업·재개업·폐업의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경고 등록 취소 (폐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영업 정지 7일	영업 정지 15일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1의2	8. 제32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한 때 제32조 (골재의 선별·세척등의 신고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	법 제19조제1항 제10호의3	영업 정지 2개월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골재채취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1의3</p>	<p>1.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경우 제25조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p>	<p>법 제31조제1항 제1의2호</p>	<p>채취 중지 4개월</p>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0	3.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29조 제3호	업무 정지 30일	업무 정지 90일	업무 정지 1년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5) 법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 (영업의 허가 등) ①먹는샘물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수처리제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법 제48조제1항 제5호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③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④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제43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검사를 받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③ 개업-, 폐업-,변경신고를 동일한 행정제재처분기준으로 규정하지 않고, 이를 개업-, 폐업신고와 변경신고로 구분하여 처분기준을 규정하도록 한다. 이때 영업권의 시작과 종결을 의미하는 개·폐업신고와 달리 영업자의 영업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경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보다 중한 처분을 규정하도록 한다.

<정비 고려 대상법령 예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6	5. 법 제15조제4 항에 따른 휴 업·재개업·폐 업의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지 아 니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경고 등록 취소 (폐업인 경우 에만 해당 한다)	영업 정지 7일	영업 정지 15일	

④ 행정제재처분의 절차(1차-,2차-,3차-,4차 처분)는 선행 처분시보다 중한 처분규정을 두도록 하며, 경고- 경고의 경우 경고- 시정명령 또는 경고- 영업(업무)정지 -개월의 형식에 따른다. 영업(업무)정지의 경우 일반적인 입법 규정형식에 따라 선행 처분(제2차)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규정을 두도록 조정 한다 (1-,3-,6개월). 또한 경고와 시정명령은 비록 실무상에 있어 사실적 구속력이 있는 동일한 처분기준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나, 양자는 법리적으로 명백히 구분되는 것인 바, 이를 동일처분기준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정비 고려 대상법령 예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안마사에 관한 규칙[별표2]	3. 변경신고를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3조제5항 및 법	경고 또는 시정 명령	영업 정지 1개월 이하	영업 정지 2~3개월	폐쇄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제64조제1항 제5호				
대기환경보 전법 시행규칙 별표36	2) 법 제23조제2항 또는 법 제23조제3 항을 위반하여 변 경신고를 하지 아 니한 경우 제23조 ②제1항에 따 라 허가를 받은 자 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 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 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 고를 한 자가 신고 한 사항을 변경하 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 제36조	경 고	경 고	조업 정지 5일	조업 정지 10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3) 법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 한 경우	법 제42조제2항 제1호	경고	경고	조업 정지 5일	조업 정지 10일
소음·진동	7)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변경	법 제17조	경고	경고	조업 정지	조업 정지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1	<p>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제 8 조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를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5일	10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10)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 제36조제8호	경고	경고	경고	영업 정지 15일

II. 지정·허가·등록기준 위반(대물적)

1. 현행 규정 예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p>라. 중·묘생산업자가 중·묘생산업의 등록을 한 후 법 제16조제1항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p> <p>제16조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①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접순·귀꽃이순 및 버섯종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법 제16조제3항 제4호	영업 정지 1년	등록 취소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p>4)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요건에</p> <p>가) 기술능력·시설 또는</p>	법 제17조 제1항제4호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미달하게 된 경우	장비가 전 혀 없 는 경우					
	제15조 (환경영향 조사 대 행 자 의 등 록) 환 경 영 향 조 사 의 실 시 를 대 행 하 려 는 자 는 환 경 부 령 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기술능력, 시설 장 비 를 갖추 어 환 경 부 장 관 에 게 등 록 하 여 야 한다. 등 록 한 사 항 중 환 경 부 령 으 로 정 하 는 중 요 한 사 항 을 변 경 하 려 는 때 에 도 또 한 같다.	나) 기술 능력 · 시 설 또 는 장 비 가 부 족 한 경 우	법 제17조 제1항제4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별표0	2 법 제17 조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 달하게 된 경우	가. 선박이 영 별표 1에 따 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 게 된 경우	법 제20조	영업 정지 180일	등록 취소		
		나. 기술 인력이 영 별 표 1에 따 른 등록기 준 에 미달하 게 된 경우	법 제20조	영업 정지 90일	영업 정지 180일	등록 취소	
		다. 자본 금 이 영 별 표 1에 따 른 등록기 준 에 미달하 게 된 경우	법 제20조	영업 정지 90일	영업 정지 180일	등록 취소	
		라. 시 설·장 비 가 영 별 표 1에 따 른 등록기	법 제20조	영업 정지 30일	영업 정지 90일	영업 정지 180일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준 에 미달하 게 된 경우					
건설산업기 본법 시행령 별표6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83조제2호	영업 정지 6월			
산업표준화 법 시행규칙 별표2	다. 제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1) 제4조에 따른 제3호에 따른 지방사무소를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3호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2) 제4조 제4호에 따른 인증사원을 확보하	법 제14조 제1항제3호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산업표준심의회(이하 “ 심 의 회 ” 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지식경제부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제5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적부(適否)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지 않은 경우 3) 제4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3. 제15조에 따른 광공업 품의 지 정에 관 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서비 스의 지정 에 관한 사항 5. 제23조 에 따른 광공업 품 및 그 부품 등의 통 일화· 단순화 명령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표 준에 관 련된 사 향으로 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통령령으 로 정한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1의2	1. 골재채취업의 등 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19조제1항 제4호	영업 정지 4개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2. 법 제7조제4항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3개월 이내 에 그 기준을 충족 시킨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 7 조 (복합물류터 미널사업의 등록)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는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야 한다. 1. 복합물류터미널 이 해당 지역 운 송망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계될 것 2. 부지 면적이 3 만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3.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추는 것 가. 주차장 나. 화물취급장 다. 창고 또는 배 송센터 4. 물류시설개발종	법 제17조제1항 제3호	사업 정지 60일	등록 취소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합계획 및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의 국가물류기본계획상의 물류터미널의 개발 및 정비계획 등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2)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 한 때 제10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석유제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13조제3항 제2호	사업 정지 3월	사업 정지 6월	등록 취소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4	다. 법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법 제30조제1항 제3호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지정 취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5조제2항 제2호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15.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소의 시설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법 제31조, 시설기준령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가. 작업소 또는 시험실이 없거나 제조 또는 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가 전부 없는 때	업무정지 3개월	허가 취소		
			나. 분리 또는 구획대상 제제 또는 제형별 작업소가 각각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지 아니한 때	당해 제제 또는 제형 업무정지 1개월	당해 제제 또는 제형 업무정지 3개월	당해 제제 또는 제형 제조품목 허가 취소	
			다. 해당 품목의 제조 또는 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중	해당 품목 업무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허가 취소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또는 일 부가 없 거나 있 더라도 사용이 불가능 한 때					
	라. 작업 소의 환 경 관리 를 위한 공기조 화장치 가 없거 나 가동 되지 아 니한 때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마. 동물 용 의 약 품 등의 종 류 , 제 조 방 법 및 제 조 시 설에 따 라 필요 한 작업 실이 없 는 때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바. 그 밖 에 시설 기준령 제4조부 터 제12 조에 위 반한 때		경고	업무 정지 15일	업무 정지 1개월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43. 동물 용의료 기 기 제조업 자, 수 입 자 및 수 리업자 가 시 설 및 품질관 리체계 를 갖 추 지 아니하 거나 위 반한 때	『의료기기법』 제6조, 제14조 및 제15조까지, 규칙 제13조의2제2 항 및 제22조	당해 품목 업무 정지 1개월	당해 업무 정지 3개월	당해 업무 정지 6개월	
			당해 품목 업무 정지 15일	당해 품목 업무 정지1 개월	당해 품목 업무 정지 3개월	
			전품목 수입 금지 3개월	허가 취소		
			해당 품목 수입	해당 품목 수입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에 당해의 료 기기의 취급에 필요한 보관시설		금지 3개월	금지 6개월		
	마. 수리업자가 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수리업의 시설 및 품질 관리 체계 기준을 위반한 때		전수리 업무 정지 2개월	전수 리업 무 정지 5개월		
	바. 그 밖의 시설 및 품질 관리 기준을 위반한 때		당해 품목 업무 정지 15일	당해 품목 업무 정지 1개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제26조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개정 2007.1.19>) ①일반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	법 제35조제2항 제3호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허가 취소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에 해당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5) 법 제68조제4항 및 이 규칙 제99조에 따른 시설·장비에 미달하는 경우	법 제69조 제3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4	나.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14조 제2항제2호	정지 1월	정지 3월	정지 6월	지정 취소
기상법 시행규칙 별표1	4.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26조 (기상사업의 등록)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상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별표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춘 상근자 2인 이상을 확보할 것 2. 대통령이 정하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	법 제28조	사업 정지 1월	사업 정지 2월	등록 취소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삭도·케도 법 시행규칙 별표1	1. 허가	나.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법 제16조제1항 제2호	사업 정지 30일	사업 정지 90일	허가 취소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3. 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23조제2호 및 제5호	영업의 전부 정지 1월	등록 취소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3. 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23조제2호 및 제5호	영업의 전부 정지 1월	등록 취소		
수산물품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다. 등록기준에 위반한 때		법 제20조제1항 제3호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30일	등록 취소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4.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 3 조 ③ 안전인증 기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과 공장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지식경제부령으로		법 제4조 제1항제4호	업무 일부 정지 1월	업무 일부 정지 3월	업무 전부 정지 6월	지정 취소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다. 법 제 1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법 제27조 제1항제3호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영업 폐쇄 등록 취소
	제 18 조 (노래연습장업 등록) ①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	2) 마이 크 시 설 이 시설 기준에 위반한 때	법 제27조 제1항제3호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1월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등록 하 여 야 한다. <개정 2008.2. 29> ②제1항 의 규 정 에 따 른 등 록 의 절 차 · 방 법 및 영 등 에 관 여 필 요 한 사 항 은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령 으 로 정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아. 법 제58조에 따 른 시설기준을 갖 추지 못한 때 제58조 (비디오물시 청제공업의 등록) ①비디오물시청제 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 육관광부령이 정하	법 제67조제2항 제3호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영업 폐쇄 등록 취소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는 경우</p> <p>2.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p>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28.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및 동물약국이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법 제20조·제45조, 시설기준령 제3조 및 제16조	업무 정지 7일	업무 정지 15일	업무 정지 1개월	
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4.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염 전에서 천일염이나 그 밖의 염의	법 제23조제3호	허가 취소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시 설 기 준 에 미 달 하 게 된 경우	제조					
		친일식 기 계 제 법 을 이 용 한 결 정 체 염 의 제조	법 제23조제3호	시정 명령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유해화학물 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11) 법 제20 조제1 항 본문 또는 제34 조제1 항 본문 의 규정 에 따른 취급 시설 요건 이 등록 또는 허가 기준 에 미달 된 경우	(가) 유독 물을 취 급 하는 시 설 · 장 비 가 노 후 화 되 어 유 독 물 이 누 출 된 경우	법 제27조 제8호 · 제36조 제8호	개선 명령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6월
		(나) 유독물 을 취급 하는 시 설 · 장 비 가 노 후 화 되 어 유독물이 누 출 될 우 려 가 있는 경우	법 제27조 제8호 · 제36조 제8호	개선 명령	개선 명령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6월
		(다) 그 밖 에 시 설 · 장 비 등이 노 후화 또 는 미달 되 거 나 요 건 에 맞지 아	법 제27조 제8호 · 제36조 제8호	개선 명령	개선 명령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월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니한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2)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4호	경고	허가 취소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2	13. 동물병원이 시설 기준에 미달한 때	법 제33조제4호	경고	시설 보완 시까지 업무 정지	업무 정지 12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1. 법 제6조제3항 또는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 6 조 (지원시설의 설치) ③지원시설의 설치기준·신고 절차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20조제1항 제1호	경고	업무 정지 1월	시설 또는 상담소 폐쇄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표3	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第12條 (人蔘類製造	법 제16조 제1항제1호	경고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또는 영업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業 및 人蔘留製品類製造의 신고 등 <개정 2001.1.26> ①人蔘類製造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製造場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人蔘耕作者가 자가 生産한 水蔘을 原料로 하여 自家製造한 紅蔘·太極蔘 또는 白蔘을 輸出 또는 都賣의 目的으로 蒐集하는 者(이하 “蒐集者”라 한다)에게 販賣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6, 2003.12.11, 2007.7.13, 2008.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紅蔘 또는 太極蔘의 製造業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농림수산식품</p>				폐쇄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부령이 정하는 施設基準을 갖추어야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9	다. 『수상레저안전법』 또는 동법에 다른 명령이나 지정조건에 위반한 때	법 제38조 제2항제3호	경고	정지 3월	정지 6월	지정 취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1. 법 제8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1호	경고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승인) 취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1. 법 제8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1호	경고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승인) 취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17. 유독가스 처리에 필요한 시설이 없을 때(제조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제제의 제조시설에만 해당한다)	법 제31조, 시설기준령 제5조 및 제12조	경고	제조 정지 7일	제조 정지 15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18. 동물용의약품의 제조등에 필요한 용수시설이 없을 때	법 제31조, 시설기준령 제5조 및 제12조	경고	제조 정지 7일	제조 정지 15일	
동물용 의약품등	19. 원료, 제품 및 자재 보관소가 위생	법 제31조, 시설기준령	경고	제조 정지	제조 정지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취급규칙 별표3	적이고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때	제10조 및 제12조		15일	1개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20. 시험시설 및 기구가 없어 품질검사가 곤란한 때	법 제31조, 시설기준령 제11조 및 제12조	경고	제조 정지 7일	제조 정지 15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21. 작업실에 작업대를 두지 아니한 때. 다만, 자동시설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법 제31조, 시설기준령 제5조 및 제12조	경고	제조 정지 7일	제조 정지 15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22. 작업소의 출입구 및 창이 밀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원료의 칭량, 동물용의약품의 조제·충진 및 마개를 막거나 밀봉하는 작업실(무균제제 및 생물학적제제는 제외한다)이 기준에 미달한 때	법 제31조, 시설기준령 제6조	경고	제조 정지 7일	제조 정지 15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23. 건조설비의 가열장치가 자동온도조절이 기능이 없거나 가동되지 아니한 때	법 제31조, 시설기준령 제5조 및 제12조	경고	제조 정지 7일	제조 정지 1개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24. 가루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을 때(가루가 날리는 체제를 취급하는	법 제31조, 시설기준령 제5조 및 제12조	경고	제조 정지 7일	제조 정지 1개월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때에만 해당한다)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25. 무균제제 제조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법 제31조, 시설기준령 제7조	경고	제조 정지 7일	제조 정지 1개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26. 생물학적 제제의 제조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법 제31조, 시설기준령 제8조	경고	제조 정지 7일	제조 정지 1개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27. 각 제제 또는 제형별 제조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법 제31조, 시설기준령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	경고	제조 정지 7일	제조 정지 1개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2.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25조 (보호시설의 설치) ③보호시설의 설치기준과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29조제1호	경고	경고	보호 시설 폐쇄	

2. 정비사유

행정법상 지정이란 행정청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정을 조사한 다음 어떠한 자격을 주는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등록이란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등록은 어떤 사실이나 법률

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공시 또는 증명하는 공증행위이다.

허가란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의 경우에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실무상 지정, 허가, 등록은 행정청이 행정목적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전통제적 개입수단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규에 의하여 사전에 제한(예방적 금지)하는 것이므로 그 제한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 것이다. 지정, 허가, 등록의 위와 같은 법리적 성격에 반하여 다수의 법령에서 그 기준의 내용과 보완여부에 관계없이 기준에 미달한다 하여 과도한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하고 문제시 되는 것이다.

국민의 실질적인 권익보장과 경제활동 활성화의 제고를 위하여 기준에 미달한다 하여 행정제재절차상 1차처분에서 즉시 취소, 정지 등의 과도한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미달하는 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3. 정비 지침안

- ① 지정·허가·등록기준 미달 사유가 이의 충족을 통하여 행하고자 하는 업무에 있어 본질적인 요소(사업장 또는 시설의 전무 등)가 아닌 부수적 시설의 손실 또는 하자일 경우, 제1차 처분시 곧바로 취소나 영업정지를 규정하기 보다는 시정과 보완의 기회를 의무위반자에게 주기 위하여 기준미달의 경·중에 따라 우선적으로 경고나 시정명령을 규정하도록 한다.

<정비 고려 대상법령 예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라. 종·묘생산업자가 종·묘생산업의 등록을 한 후 법 제	법 제16조제3항 제4호	영업 정지 1년	등록 취소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법률 시행규칙 별표7	16조제1항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16조 (종묘생산업 자의 등록) ① 산 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접순·끼꽃이 순 및 버섯종균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와 산림용 묘목 을 판매할 목적으 로 생산하려는 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 추어 시·도지사 에게 등록하여야 한 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						
먹는물관리 법 시행규칙 별표9	4) 법 제 15조에 따른 등 록요건 에 미달 하게 된 경우	가) 기술 능력· 시 설 또 는 장비가 전 혀 없 는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4호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제15조 (환경영 향조사 대행자 의 등 록) 환	나) 기술 능력· 시 설 또 는 장비가 부족한	법 제17조 제1항제4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경 영 향 조 사 의 실 시 를 대 행 하 려 는 자 는 환 경 부 령 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기 술 능 력, 시 설, 장 비 를 갖 추 어 환 경 부 장 관 에 게 등 록 하 여 야 한 다 . 등 록 한 사 항 중 환 경 부 령 으 로 정 하 는 중 요 한 사 항 을 변 경 하 려 는 때 에 도 또 한 같 다.	경우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별표0	2. 법 제 17조제1 항에 따 른 등 록 기 준 에 미 달 하	가. 선박 이 영 별표 1 에 따른 등 록 기 준 에	법 제20조	영업 정지 180일	등록 취소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미달하게 된 경우					
	계 된 경우	나. 기술 인력이 영 별 표 1에 따 른 등록기 준 에 미달하 게 된 경우	법 제20조	영업 정지 90일	영업 정지 180일	등록 취소	
		다. 자본 금 이 영 별 표 1에 따 른 등록기 준 에 미달하 게 된 경우	법 제20조	영업 정지 90일	영업 정지 180일	등록 취소	
		라. 시 설·장 비 가 영 별 표 1에 따 른 등록기 준 에 미달하 게 된 경우	법 제20조	영업 정지 30일	영업 정지 90일	영업 정지 180일	
건설산업기 본법 시행령		1. 법 제10조의 규정 에 의한 건설업의	법 제83조제2호	영업 정지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별표6	<p>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p> <p>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6월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1의2	1.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19조제1항 제4호	영업 정지 4개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p>2. 법 제7조제4항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 7 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p>1. 복합물류터미널이 해당 지역 운송망의 중심지에</p>	법 제17조제1항 제3호	사업 정지 60일	등록 취소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위치하여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계될 것</p> <p>2. 부지 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p> <p>3.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p> <p>가. 주차장</p> <p>나. 화물취급장</p> <p>다. 창고 또는 배송센터</p> <p>4. 물류시설개발중합계획 및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의 국가물류기본계획상의 물류터미널의 개발 및 정비계획 등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p>					
<p>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p>	<p>(2)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 한 때</p> <p>제10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석유제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p>	<p>법 제13조제3항 제2호</p>	<p>사업 정지 3월</p>	<p>사업 정지 6월</p>	<p>등록 취소</p>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4	다. 법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법 제30조제1항 제3호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지정 취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5조제2항 제2호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15.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소의 시설 다 음 각 목 의 어 느 하 나 에 해당한 때	가. 작업소 또는 시험실이 없거나 제조 또는 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가 전부 없는 때	법 제31조, 시설기준령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업무 정지 3개월	허가 취소	
						나. 분리 또는 구획대상 제제 또는 제형별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작업소 각각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지 아니한 때		1개월	3개월	허가 취소	
	다. 해당 품목의 제조 또는 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구중부 또는 일부가 없거나 있더라도 사용 불가능한 때		해당 품목 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허가 취소	
	라. 작업소의 환경관리 위한 공기조화장치가 없거나 가동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되지 아니한 때					
		마. 동물용의약품 등의 종류, 제조방법 및 제조시설에 따라 필요한 작업실이 없는 때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바. 그 밖에 시설기준령 제4조부터 제12조에 위반한 때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별표3	43.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및 수리업자가 시설 및 품질관	가. 해당 품목의 제조, 수입 또는 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중 부	『의료기기법』 제6조, 제14조 및 제15조까지, 규칙 제13조의2제2항 및 제22조	당해 품목 업무정지 1개월	당해 업무정지 3개월	당해 업무정지 6개월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리체계 를 갖 추 아 니 하 거 나 위 반 한 때	또 는 일 부 가 없 거 나 있 더 라 도 사 용 할 수 없 는 상 태				
나. 제 품 의 종 류 제 조 방 법 제 조 시 설 에 따 라 필 요 한 작 업 실 이 없 는 때		당 해 품 목 업 무 정 지 15 일	당 해 품 목 업 무 정 지 1 개 월	당 해 품 목 업 무 정 지 3 개 월		
다. 수 입 업 체 의 영 업 소 또 는 보 관 소 가 없 는 때		전 품 목 수 입 금 지 3 개 월	허 가 취 소			
라. 수 입 업 체 의 보 관 소 에 당 해 의 료 기 기 의 취 급 에 필 요 한 보 관 시 설		해 당 품 목 수 입 금 지 3 개 월	해 당 품 목 수 입 금 지 6 개 월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마. 수리업자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수리업의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위반한 때</p> <p>바. 그 밖의 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을 위반한 때</p>		<p>전수리업무 정지 2개월</p>	<p>전수리업무 정지 5개월</p>		
				<p>당해 품목 업무 정지 15일</p>	<p>당해 품목 업무 정지 1개월</p>		
<p>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p>	<p>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p> <p>제26조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개정 2007.1.19>) ①일반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p>	<p>법 제35조제2항 제3호</p>	<p>영업 정지 1월</p>	<p>영업 정지 3월</p>	<p>허가 취소</p>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의 판매시설에 해당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5) 법 제68조제4항 및 이 규칙 제99조에 따른 시설·장비에 미달하는 경우	법 제69조 제3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4	나.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14조 제2항제2호	정지 1월	정지 3월	정지 6월	지정 취소
기상법 시행규칙 별표1	4.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26조 (기상사업의 등록)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상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별표에 따른 인력 기준을 갖춘 상근자 2인 이상을 확보할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법 제28조	사업 정지 1월	사업 정지 2월	등록 취소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삭도·궤도 법 시행규칙 별표1	1. 허가	나. 허가의 조건을 위 반한 때	법 제16조제1항 제2호	사업 정지 30일	사업 정지 90일	허가 취소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3. 법 제8조의 규정 에 위반한 때	가. 등록기준에 미달 하게 된 때	법 제23조제2호 및 제5호	영업 의 전부 정지 1월	등록 취소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3. 법 제8조의 규정 에 위반한 때	가. 등록기준에 미달 하게 된 때	법 제23조제2호 및 제5호	영업 의 전부 정지 1월	등록 취소		
수산물품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다. 등록기준에 위반 한 때		법 제20조제1항 제3호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30일	등록 취소
전기용품안 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4. 법 제3조제4항의 규 정에 의한 지정기준 에 적합하지 아니하 게 된 때	제 3 조 ③ 안전인증기 관은 지식경제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안전인증대상전 기용품에 관한 안전 기준과 공장심사기 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 9>	법 제4조 제1항제4호	업무 일부 정지 1월	업무 일부 정지 3월	업무 전부 정지 6월	지정 취소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 증을 하는 경우 지식 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다. 법 제 1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법 제27조 제1항제3호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영업 폐쇄 등록 취소
	제18조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 마이크 시설이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법 제27조 제1항제3호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1월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2008.2.29> ②제1항 의 규 정 에 따 른 등 록 의 절 차 · 방 법 및 운 영 등 에 관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은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령 으 로 정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아.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제58조 (비디오물시 청제공업의 등록) ①비디오물시청제 공업을 영위하고 자 하는 자는 문 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 추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 록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법 제67조제2항 제3호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영업 폐쇄 등록 취소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는 경우</p> <p>2.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p>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28.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및 동물약국이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법 제20조·제45조, 시설기준령 제3조 및 제16조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② 행정제재처분의 절차(1차-,2차-,3차-,4차 처분)는 선행 처분시보다 중한 처분규정을 두도록 하며, 경고- 경고의 경우 경고 - 시정명령 또는 경고- 영업(업무)정지 - 개월의 형식에 따른다. 영업(업무)정지의 경우 제3차 처분 시에도 동일하게 영업(업무)정지를 규정하고자 할 경우, 일반적인 입법 규정형식에 따라 선행 처분(제2차)

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규정을 두도록 조정 한다(1-,3-,6개월).

<정비 고려 대상법령 예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23. 건조설비의 가열 장치가 자동온도조절이 기능이 없거나 가동되지 아니한 때	법 제31조, 시설기준령 제5조 및 제12조	경고	제조 정지 7일	제조 정지 1개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24. 가루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을 때(가루가 날리는 체제를 취급하는 때에만 해당한다)	법 제31조, 시설기준령 제5조 및 제12조	경고	제조 정지 7일	제조 정지 1개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25. 무균체제 제조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법 제31조, 시설기준령 제7조	경고	제조 정지 7일	제조 정지 1개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26. 생물학적 체제의 제조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법 제31조, 시설기준령 제8조	경고	제조 정지 7일	제조 정지 1개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27. 각 체제 또는 제형별 제조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법 제31조, 시설기준령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	경고	제조 정지 7일	제조 정지 1개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2.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25조 (보호시설의 설치) ③보호시설	법 제29조제1호	경고	경고	보호 시설 폐쇄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의 설치기준과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11) 법 제 20 조 제 1 항 본 문 또 는 제 34 조 제 1 항 본 문 의 규 정 에 따 른 취 급 시 요 이 록 는 가 준 미 달 된 경 우	(가) 유독물을 취급하는 시설·장비가 노후화되어 유독물이 누출된 경우	법 제27조 제8호·제36조 제8호	개선 명령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6월
		(나) 유독물을 취급하는 시설·장비가 노후화되어 유독물이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제27조 제8호·제36조 제8호	개선 명령	개선 명령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6월
		(다) 그 밖에 시설·장비 등이 노후화 또는 미달되거나 요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 제8호·제36조 제8호	개선 명령	개선 명령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월

Ⅲ. 등록 후 영업 미개시 또는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1. 현행 규정 예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21)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법 제48조제3항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1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법 제42조제1항 제2호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2)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 제2호	허가 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6)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 제5호	등록 취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14)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법 제25조제1항 제3호	허가 취소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사유없이 계속하여 1 년 이상 휴업한 때					
대기환경보 전법 시행규칙 별표36	6) 등록 후 2년 이내에 검사대행업무를 시작하 지 아니하거나 계속하 여 2년 이상 검사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73조	등록 취소			
전기공사업 법 시행규칙 별표1	7. 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 사업을 휴업한 때	법 제28조제1항 제7호	등록 취소			
총포·도검 · 화약류등 단속법 시행규칙 별표17	10.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 상 휴업	법 제45조	취소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0	4)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 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 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 제3호	허가 취소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5	4) 등록을 한 후 1년 이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 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 제3호	등록 취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 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5) 정당한 사유없이 제 12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기간 이내에 그 사 업을 개시하지 아니하 거나 사업개시후 1년	법 제13조제1항 제5호	등록 취소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상 계속하여 석유정제업을 하지 아니한 때 제12조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6	3. 등록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3호	등록 취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7) 등록 또는 허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27조제7호·제36조제7호	등록 또는 허가 취소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다.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3호	등록 취소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별표6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법 제30조제1항제4호	등록 취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5	6. 정당한 사유없이 개원 예	학원	법 제113조 제1항제3호	등록 취소		
		전문학원	법 제113조	지정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정일부터 2월이 지 날 때까 지 개원 하지 아 니한 때		제1항제3호	취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21) 최근 1년동안 직업 소개실적이 없는 때		법 제36조 제1항	유료:등 록취소 무료:사 업정지 6월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라. 지정 후 1년 이내에 관리대행업무를 개시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 하여 1년 이상 관리대 행실적이 없는 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 제4호	지정 취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등 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 지 아니하거나 1년 이 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법 제16조제3항 제3호	영업 정지 1년	등록 취소		
건설산업기 본법 시행령 별표6	2.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 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 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법 제83조제8호	영업 정지 6월			
총포·도검 · 화약류등 단속법 시행규칙 별표17	9. 지정기간 내 사업 미 개시		법 제45조	효력 정지 1달	효력 정지 6달	취소	
환경·교통 · 재해 등에	(10) 등록한 후 2년 이내 에 영향평가 대행업무		법 제12조제1항	경고	등록 취소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2	를 개시하지 아니하거 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향평가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제7호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나. 등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영업을 개 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20조제1항 제2호	경고	등록 취소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0	6. 개설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개시 하지 아니한 때	법 제29조 제6호	경고	업무 정지 180 일	업무 정지 1년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2	10. 동물병원이 개설신고 를 한 날부터 3월 이내 에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 한 때	법 제33조제1호	경고	업무 정지 6월	업무 정지 12월	
수상레저안 전법 시행규칙 별표11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 이 없는 때	법 제46조 제4항제4호	경고	정지 3월	정지 6월	인증 취소
수상레저안 전법 시행규칙 별표12	다.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 이 없는 경우	법 제46조 제5항제3호	경고	정지 3월	정지 6월	승인 취소
먹는물관리 법 시행규칙 별표9	7) 등록된 후 5년 이내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업 무를 시작하지 아니하 거나 계속해서 5년 이 상 환경영향조사 대행 업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7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토양환경보 전법 시행규칙 별표12	(2) 토양정화업자가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 속하여 2년 이상 영 업실적이 없는 때	법 제23조의10 제3항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9. 어업권을 취득하여 면허어업을 하는 자가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휴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면허어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	경고	경고	취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	1) 지정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14조 제1항	경고	경고	지정 취소	

2. 정비사유

영업의 개시를 위한 등록은 권리발생의 요건이며,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등록을 하면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므로, 등록 후 영업의 미개시 또는 영업실적이 없다 하여 행정제재절차상 1차 처분에 거의 모든 관련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취소규정을 두는 것은 문제라 할 것이다. 때문에 권리취득자의 권리행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을 우선 규정하도록 고려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정비 지침안

- ① 개별 법률에서 제1차 처분 시 곧바로 허가-, 지정-,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관련 하위법령상 일반기준에서 집행 행정기관장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의무이행을

독촉하는 권고규정을 명시하도록 하거나 또는 제1차적 처분에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우선적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정비 고려 대상법령 예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21)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법 제48조제3항	허가 · 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1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법 제42조제1항 제2호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2)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 제2호	허가 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6)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 제5호	등록 취소			
건설	(14) 허가를 받은 후 1년	법	허가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제25조제1항 제3호	취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6) 등록 후 2년 이내에 검사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검사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73조	등록 취소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7. 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한 때	법 제28조제1항 제7호	등록 취소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시행규칙 별표17	10.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휴업	법 제45조	취소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0	4)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 제3호	허가 취소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5	4)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 제3호	등록 취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5)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3조제1항 제5호	등록 취소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별표1	사업개시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정제업을 하지 아니한 때 제12조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6	3. 등록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3호	등록 취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7) 등록 또는 허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27조제7호 · 제36조제7호	등록 또는 허가 취소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다.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 제3호	등록 취소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별표6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법 제30조제1항 제4호	등록 취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 113조 제1항제3호	등록 취소			
	학원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별표35	개원 예정 일부부터 2 월이 지날 때까지 개 원하지 아 니한 때	전문학원	법 제113조 제1항제3호	지정 취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21) 최근 1년동안 직업 소개실적이 없는 때		법 제36조 제1항	유료: 등록 취소 무료: 사업 정지 6월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라. 지정 후 1년 이내에 관리대행업무를 개시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 하여 1년 이상 관리대 행실적이 없는 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 제4호	지정 취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등 록을 한 날부터 1년 이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법 제16조제3항 제3호	영업 정지 1년	등록 취소		
건설산업기 본법 시행령 별표6	2.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 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 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법 제83조제8호	영업 정지 6월			
총포·도검 ·화약류등 단속법 시행규칙 별표17	9. 지정기간 내 사업 미 개시		법 제45조	효력 정지 1달	효력 정지 6달	취소	

② 제1차 처분에서 경고를 규정한 경우, 이의 불이행시 제2차 처분에서 취소 규정을 두거나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6개월을 규정하고 취소규정을 두도록 하고, 제1차 처분에서 시정명령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2차 처분에서 곧바로 취소규정을 두도록 하여 행정청과 처분대상자간의 불안정한 법률관계를 신속히 개선하도록 한다.

<정비 고려 대상법령 예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0	6. 개설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29조 제6호	경고	업무 정지 180일	업무 정지 1년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2	10. 동물병원이 개설신고를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33조 제1호	경고	업무 정지 6월	업무 정지 12월	
수상레저안 전법 시행규칙 별표11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때	법 제46조 제4항제4호	경고	정지 3월	정지 6월	인증 취소
수상레저안 전법 시행규칙 별표12	다.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46조 제5항제3호	경고	정지 3월	정지 6월	승인 취소
먹는물관리 법 시행규칙 별표9	7) 등록된 후 5년 이내에 환경영향조사 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5년 이상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의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7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2	(2) 토양정화업자가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때	법 제23조의10 제3항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9. 어업권을 취득하여 면허어업을 하는 자가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휴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면허어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	경고	경고	취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	1) 지정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14조 제1항	경고	경고	지정 취소	

IV. 명의대여

1. 현행 규정 예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73조	등록 취소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별표36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3)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명의대여등을 한 때	법 제36조 제1항	등록 취소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별표6	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등록증을 부여한 때	법 제30조제1항 제2호	등록 취소			
환경·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2	(7)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 른 사람에게 등록증 이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4호	등록 취소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0	(11) 법 제15조의 규정 을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때		허가 취소			
국가기술자 격법 시행규칙 별표18	5. 국가 기술자 격증을 타인에 게 대 여하거 나 이 중취업 (사실상 대여에 해당하 는 경 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 2회 이상 대여 또는 이중취업 한 경우 나. 1회 대여 또는 이중취 업한 경우 다. 자격증 대 여로 인하 여 타인에 게 손해를 가한 경우	자격 취소			
			자격 정지 3년			
			자격 취소			
		법 제16조제1항 제3호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한 경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11	5. 인증심사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대여한 경우	가. 2회 사용 또는 대여한 경우	법 제18조제3항 제5호	자격 취소			
		나. 1회 사용 또는 대여한 경우		자격 정지 6개월			
		다. 인증심사원증 대여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 취소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5	4. 정수 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가. 2회 이상 대여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4호	자격 취소			
		나. 1회 대여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4호	자격 정지 3년			
		다. 자격증 대여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4호	자격 취소			
안마사에 관한 규칙[별표2]	10. 안마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5조제1항 제5호	자격 취소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2	1. 산림기술자가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30조제4항	자격 취소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0	2. 자신의 관리자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법 제28조 제1항제2호	면허 정지 1년	면허 취소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2	3. 수의사가 자신의 수의사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법 제32조제1항 제4호	면허 효력 정지 12월	면허 취소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1의2	3. 법 제18조를 위반한 때 제18조 (등록명의대여의 금지등) 골재채취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19조제1항 제6호	영업 정지 6개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방지사설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18조제5항	영업 정지 6월	등록 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법 제32조제1항 제10호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시행규칙 별표5	나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8)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법 제35조제1항 제7호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0	7) 법 제45조제7항을 위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 명을 사용하여 분뇨수 집·운반업을 하게 하 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 제7호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5	5)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 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54조제1항 제4호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2	3. 법 제22조를 위반하 여 면허증 또는 승무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 게 대여하거나 부당하 게 행사한 때 제22조 (면허증 등의 부 당행사 금지) 해기사 또는 제10조의2의 규 정에 의하여 승무자 격인정을 받은 자는 면허증 또는 승무자 격증을 다른 사람에 게 대여하거나 부당 하게 행사하여서는	법 제9조제1항 제2호의2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1년	면허 취소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아니된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2	(10) 법 제23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법 제23조의6 제2항제2호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10)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제21조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법 제25조제1항 제6호	영업 정지 3월	영업 정지 6월	허가 취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자격 정지 3개월	자격 정지 6개 월	자격 취소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별표12	④환경측정분석사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4.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제 9 조 (명의 대여의 금지) 결혼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법 제18조 제1항제4호	국내: 영업정지 1월 국제: 등록취소	국내 : 영업정지 2월	국내 : 영업정지 3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4)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27조제4호 · 제36조제4호	영업정지 1월	등록 또는 허가취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3)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영업활동에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1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수산관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12.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해당 면허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경우	제34조	경고	취소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13. 어업권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제35조	경고	취소		

2. 정비사유

명의대여란 자기의 명의(성명, 상호 등)를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위하여 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명의대여는 크게 경제적 신용이 있는 자가 타인에게 자기 명의의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와 면허를 가진 자가 그 면허가 없는 자에게 그 면허의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입법자가 입법당시 고려한 허가·특허·인가 등의 면허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규제목적은 회피하여 주로 금전적 이익을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다수의 행정법규에 그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위반된 명의대여는 사법상 무효이고 행정법상 그 면허가 취소·정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명의대여를 통해 명의를 대여해준 자의 권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취소 등)의 경우, 이를 1차적으로 반성할 수 있는 기

회를 주어 면허의 취득을 통한 사회적 기여 및 자아실현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3. 정비 지침안

- ① 명의대여로 인한 제1차 처분이 자격취소인 경우, 의무위반의 횟수(대여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정도를 달리 규정하여 자격취소에 선행하여 입법목적과 의무위반행위간의 형량을 통한 일정기간의 자격정지규정을 두도록 한다.

<정비 고려 대상법령 예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안마사에 관한 규칙[별표2]	10. 안마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5조제1항 제5호	자격취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2	1. 산림기술자가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30조제4항	자격취소			

- ② 명의대여로 인한 제1차 처분이 허가-, 등록-, 지정취소인 경우, 취소에 선행하여 입법목적과 의무위반행위간의 형량을 통한 일정기간의 영업정지규정을 두도록 한다.

<정비 고려 대상법령 예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대기환경보 전법 시행규칙 별표36	3) 다른 사람에게 등록 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73조	등록 취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3) 유료직업소개사업자 가 법 제21조를 위반하 여 명의대여등을 한 때	법 제36조 제1항	등록 취소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별표6	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의 등록증을 부여한 때	법 제30조제1항 제2호	등록 취소			
환경·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2	(7)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4호	등록 취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0	(11) 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 한 때		허가 취소			

③ 명의대여를 받은 자의 영업행위의 유형이 유사한 경우, 개별법상
의 처분양정을 동일하게 조정하도록 한다.

<정비 고려 대상법령 예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0	7) 법 제45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 제7호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건설폐기물 의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10)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제21조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법 제25조제1항 제6호	영업 정지 3월	영업 정지 6월	허가 취소	

V. 일괄 하도급

1. 현행 규정 예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	(5) 도급받은 방지사설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법 제18조제5항	등록 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3)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 제3호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3)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 제3호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5	6)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부실하게 설계·시공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 제5호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 대	법 제17조 제1항제3호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별표9	행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2	라.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 제4호	업무정지 6월	등록 취소		
도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2	(6) 법 제23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때 ②토양정화업자는 도급받은 토양정화를 위한 공사(이하 “토양정화공사”라 한다)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23조의10 제2항제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 취소

2. 정비사유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 자체는 반드시 수급인 자신의 노무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에게 맡겨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도급은 도급계약에 의해 건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이나 운송업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용일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한 수급인은 하도급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도급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도급계약이므로 하수급인의 행위에 관해서까지 모든 책임을 져야 하지만,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월등한 경제적·기술적 지위로 인해 경우에 따라 하수급인이 수급인이 져야할 책임까지 떠 앉는 경우가 있어 문제시 되어 왔

다.(일괄 하도급). 때문에 다수의 법규에서는 이를 금지하여 과중한 처분(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일괄하도급의 문제는 주로 건설업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일괄하도급을 금지하는 주요내용이 중소기업의 붕괴방지와 설계 등의 중요부분에 대한 대기업의 책임감 유지에 있다면, 이러한 중요사항과 거리가 있는 업무대행 또는 단순 공사의 시행 등의 경우 과중한 처분보다는 단계적인 제재적 처분 절차를 규정함이 합리적일 것이다.

3. 정비 지침안

- ① 일괄하도급을 금지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목적과 거리가 있는 업무의 대행 또는 단순 공사의 시행인 경우, 일률적인 행정제재처분 절차(취소 또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가 아닌, 건설업자의 권익보장을 위한 단계적 제재처분 절차(영업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취소)를 규정하도록 한다.

<정비 고려 대상법령 예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대행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3호	업무정지 6개월	등록 취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2	라.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 제4호	업무정지 6월	등록 취소		

VI.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1. 현행 규정 예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비파괴검사 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7.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3조 (비파괴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 ①사업자는 비파괴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검사계획서를 작성하고, 검사가 끝난 때에는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비파괴검사를 의뢰한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서에는 검사를 실시한 자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자가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업무 정지 6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0	7. 작업환경 측정기관 (법 제42조 관련)	마. 작업환경 측정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1) 수치를 조작한 때 (2) 측정대상을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지정 취소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한 때	누 락 한 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8]	1. 응급의료종사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응급의료 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 사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한 때		법 제55조 제1항제1 호	면허 또는 자격 정지 2월	면허 또는 자격 정지 3월	면허 또는 자격 취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5. 법 제10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①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 목적으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법 제18조 제1항제5 호	영업 정지 1월	국내: 영업 정지 2월 국제: 등록 취소	국내: 영업 정지 3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3. 법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 7 조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법 제42조 제4항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영업 정지 6월	영업 정지 12월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①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방문판매원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다만, 방문판매업자등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재화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4.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5. 재화등의 공급 방법 및 시기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 행사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7. 재화등의 교환· 반품· 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8. 전자매체로 공급이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가능한 재화등의 설치·전송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p> <p>9. 소비자피해보상·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p> <p>10. 거래에 관한 약관</p> <p>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p> <p>②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③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계약을 미성년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p>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11. 법 제21조제1항 위반 가.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때 제21조 (자가품질검사의 의무)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검사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법 제32조 및 법 제33조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2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7.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약철회등과 청약철회 등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지 아니한 자 제12조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 처리 등) ①방문판매자 등은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중에도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업무와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에 따른 업무를	법 제42조 제4항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영업 정지 6월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계속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2	6. 사업에 관한 보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41조 제1항·제2항	사업 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30일)	허가 취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3.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제35조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①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37조 제1항제3호	경고	지정 취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1]	7. 비용의 수납 위반 가.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용을 수납한 경우	법 제46조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	경고	사업 정지 5일	사업 정지 10일	사업 폐지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나.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용을 수납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 폐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1. 사회복지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개선 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법 제40조 제1항제2호	시설 폐쇄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법 제40조 제1항제3호	시설 폐쇄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의2	개선 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나. 회계장부를		개선		시설장	시설장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발견된 때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명령	교체	교체	
		다. 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한 때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된 때	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때	법 제40조 제1항제4호	개선명령	시설폐쇄		
		나.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때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다.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에 의한 명령 에 위반된 때					
생명윤리안 전에 관한법 률시행규칙[별표4]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	법 제41조 제1항제1호	경고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3월		
	2.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때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6월	취소		
	3.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위원회의 구성 요건이 맞지 아니한 때		경고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3월		
	4.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하여는 위원이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한 때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5.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체세포복제 배아를 인간의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한 때		취소				
	6.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간의		취소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배아를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동물의 배아를 인간의 자궁에 착상시킨 때					
	7.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취소			
	8.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생성한 것을 인간 또는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킨 때		취소			
	9.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신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한 때		취소			
	10. 법 제13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취소			
	11.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이용하거나 또는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한 때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6월	취소	
	1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한 때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6월	취소	
	13.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에게 충분히 설명하		경고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3월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지 아니한 때					
	14.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배아를 폐기하지 아니한 때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15.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아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때		경고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3월	
	16. 법 제17조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난 이후에 잔여배아를 연구한 때 또는 법 제17조 각 호외의 목적으로 잔여배아를 이용한 때		취소			
	17. 법 제17조 단서 규정을 위반하여 새로이 동의를 받지 아니한 때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18.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아연구계획서를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연구한 때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6월	취소	
	19. 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잔여배아의 보관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보관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때		경고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6월	
	20. 법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		취소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외에 체세포 핵이식행위를 한 때					
	21.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경고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3월	
	22.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경고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3월	
	23. 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를 한 때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24. 법 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가. 법 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기관등이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하기 전에 검사대상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때, 검사대상자가 미성년자·심신박약자 또는 심신상실자인 경우 본인의 동의 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때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나. 법 제26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면 동의를 받기 전에 유전자검사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때		경고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3월	
		25.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사대상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자에게 검사 대상물을 제공한 때, 유전자검사기관 또는 검사대상물을 제공받은 자가 검사대상물에 개인 정보를 포함시킨 때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26.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대상물의 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때		경고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3월	
	27. 법 제2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가. 법 제2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기관 등이 보존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검사대상물을 폐기하지 아니한 때, 검		경고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3월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때	사 대상 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때					
		나. 법 제28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대상물 보관 중 검사대상자로부터 검사대상물 폐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때, 검사대상물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 처리 또는 이관하지 아니한 때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28.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서 등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동의서등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요구를 응하지 아니한 때	경고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3월		
		29. 법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경고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3월		
		30.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계	업무 정지	업무 정지	업무 정지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획서에 대하여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때		1월	3월	6월	
	31.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정보등의 제공 여부에 대한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때		경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32. 법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정보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6월	취소	
	33.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 치료를 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6월	취소	
	34.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자·난자·배아 또는 태아에 대하여 유전자치료를 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6월	취소	
	35. 법 제37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경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36.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 치료를 하고자 하는 환자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37. 법 제21조, 제30조 또	법	업무	업무	업무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41조 제1항 제2호	정지 1월	정지 3월	정지 6월	
	38. 법 제38조제1항, 제39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41조 제1항제3호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6월	취소	
	39.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검사·질문·수거에 불응한 때		법 제41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6월	취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1	바. 수상레저기구를 부실하게 제조 또는 정비한 때		법 제46조 제4항제6호	정지 1월	정지 3월	정지 6월	인증 취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0	8. 건강진단기관(법제43조관련)	라. 건강진단검사 항목을 빠뜨린 때	(1) 검사 항목을 빠뜨린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2) 실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3) 검사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마. 건강진단 비용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지정 취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1 2) 유·무 료 직 업 소 개 사 업 자 가 법 제 41 조 (보 고 및 검 사) 를 위 반 한 때	(가) 유·무료직 업소개사업자 가 직업인정 기관의 장 또 는 시장·군 수·구청장의 보 고 명 령 을 이행하지 아 니하거나 허 위의 보고를 한 때	법 제36조 제1항	사업 정지 10일	사업 정지 1월	사업 정지 3월	
		(나) 유료직업 소개사업자가 제27조에 따 른 보고를 하 지 아니하거 나 허위의 보 고를 한 때		사업 정지 10일	사업 정지 2월	사업 정지 3월	
		(다)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자가 관계공 무원의 출 입·검사·질 문등의 업무 를 거부·기 피하거나 방 해한 때		사업 정지 1월	사업 정지 2월	유료: 등록 취소 무료: 사업 정지 6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가. 법 제6조제1항 각 호 에서 정한 법률의 규 정에 따라 기록·제출 또는 공표하여야 하는	법 제20조 제1항	경고	자격 정지 3개월	자격 정지 6개월	자격 취소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시행규칙 별표12	<p>환경오염도의 측정분석 업무를 거짓으로 하거나 측정기록부를 조작한 경우</p> <p>제 6 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분석·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규격에 따른다. <개정 2007.1.26, 2007.5.17, 2007.5.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및 제1호의2의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2.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제1호의 소음 및 제2호의 진동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오염물질</p> <p>4.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p> <p>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폐수 및 같은 조 제7호의 수질오염물질</p> <p>6.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p> <p>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p> <p>8.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p> <p>9.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p> <p>1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p>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p>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의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p> <p>제11조 (감독) ①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p>	법 제12조 제3호	경고	업무 정지 3월	상담소·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육훈련시설의 장애인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취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0	(15)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10.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가		경고	사업정지 1월	허가 취소				
	가						경고	사업정지 1월	허가 취소
	1 조의 2 를 위반한 때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3월	허가 취소
토양환경보전법	(2) 법 제11조제4항, 법 제14조제2항 및 법 제	법 제23조의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시행규칙 별표12	15조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니한 때	6 제3항제3 호		10일	20일	30일

2. 정비사유

업무처리기준과 업무처리절차를 다수의 법규에서 규정하는 이유는 행정목적의 보다 신속하고 명확한 실현을 위한 입법자의 고려에 따른 결과이다. 때문에 이러한 기준과 절차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전체적인 과정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처리기준과 절차가 입법자가 고려한 범위를 넘어 그 위반사항이 심히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개별 법률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닌 한, 제재보다는 보완이라는 측면을 우선시하여 과도한 제재처분을 규정하기 보다는 개선명령 또는 경고등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정비 지침안

- ① 업무처리기준과 절차 위반사유가 국민의 신체, 건강 등 권익에 직접적으로 침해를 야기하는 결과를 낳지 않는 단순 영업상 업무처리기준과 절차인 경우, 제1차 처분에서 곧바로 영업정지규정을 두지 않고 경고 (영업정지 1개월 미만)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3개월)을 규정하도록 한다.

<정비 고려 대상법률 예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0	7. 작업환경측정기관(법제42조관련)	마. 작업환경측정관련서류를허위로작성한때	(1) 수치를 조작한 때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2) 측정대상항목을누락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5. 법 제10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①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법 제18조 제1항 제5호	영업정지 1월	국내: 영업정지 2월 국제: 등록취소	국내: 영업정지 3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3. 법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2조 제4항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12월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제 7 조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p> <p>①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방문판매원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다만, 방문판매업자등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재화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4.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5. 재화등의 공급 방법 및 시기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 행사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등의 권리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행사에 필요한 서식</p> <p>7. 재화등의 교환·반품·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p> <p>8.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재화등의 설치·전송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p> <p>9. 소비자피해보상·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p> <p>10. 거래에 관한 약관</p> <p>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p> <p>②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③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계약을 미성년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p>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11. 법 제21조제1항 위반가.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때 제21조 (자가품질검사의 의무)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검사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법 제32조 및 법 제33조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2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7.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약철회등과 청약철회 등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지 아니한 자 제12조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 처리 등) ①방문판매자 등은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중에도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법 제42조 제4항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영업 정지 6월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등의 업무와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2	6. 사업에 관한 보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41조 제1항·제2항	사업 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30일)	허가 취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1	바. 수상레저기구를 부실하게 제조 또는 정비한 때			법 제46조 제4항 제6호	정지 1월	정지 3월	정지 6월	인증 취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0	8. 건강진단기관(법 제43조 관련)	라.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빠뜨리거나 노동부장관이 정한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1) 검사항목을 빠뜨린 때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2) 실질적 차를 수하지 아니한 때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3)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마. 건강진단 비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지정 취소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12) 유·무 료직업 소개사 업자가 법 제 41조 (보고 및 검 사)를 위반한 때	(가) 유·무료직 업소개사업자 가 직업인정기 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보고 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법 제36조 제1항	사업 정지 10일	사업 정지 1월	사업 정지 3월	
		(나) 유료직업소 개사업자가 제 27조에 따른 보 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사업 정지 10일	사업 정지 2월	사업 정지 3월	
		(다) 유·무료직 업소개사업자 가 관계공무원 의 출입·검 사·질문등의 업무를 거부· 기피하거나 방 해한 때		사업 정지 1월	사업 정지 2월	유료: 등록 취소 무료: 사업 정지 6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10. 국 외 근 로 자 공 급 사 업 자 가 제 41 조의2 를 위 반 한 때	○ 근로자공급계 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 하거나 동조제 2항 각 호의 사 항을 누락한 때		경고	사업 정지 1월	허가 취소	
		○ 국외공급근로자 에게 동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때		경고	사업 정지 1월	허가 취소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 국외공급근로자에 대하여 왕복여비등 국외공급과 관련된 경비를 부담시킨 때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3월	허가 취소	

VII. 지정·허가·등록 결격 사유(대인적)

1. 현행 규정 예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비파괴검사 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4. 법 제 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법 제17조 제1항제4호	등록 취소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 제17조 제1항제 4호	등록 취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등록 취소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제11조 (비파괴 검사업의 등록)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파괴 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등록 취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등록 취소			
		6.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 검사업의 등록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등록 취소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등록 취소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별표6	바. 수로사업자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가운데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를 제외한다.	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등록 취소			
온천법 시행규칙 별표1의2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 7 조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②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인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1) 지질 및 지반기술사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부존량 조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응용지질·지구물리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부존량 조사업무에 박사학위의 경우 5년, 석사학위의 경우 7년, 학사학위의 경우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온천의 개발·이용과	법제7조 제3항 제3호	등록 취소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관련된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p> <p>나. 응용지질 또는 지구물리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공조사 또는 온천부존량 조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2인 이상</p> <p>다. 화학분야 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 또는 지하수 분석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1인 이상</p> <p>2. 장비</p> <p>가. 물리탐사 및 검층장비</p> <p>나. 수소이온농도, 수온, 전기전도도, 총용해물질(TDS, Total Desolve Solid)등의 검사를 위한 간이수질측정장비(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장비 이어야 한다)</p> <p>다. 수위측정장비</p> <p>라. 수량측정장비</p> <p>마. 야외수질분석장비</p>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1	<p>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p> <p>제45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춘 기관을 소음도</p>	법 제45조 제5항 제2호	지정 취소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음도 검사를 대행(代行)하게 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2	마. 보유 기술인력이 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 기준에 미달인 경우	1)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 제5호	경고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등록취소
		2)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비파괴검사 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8.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때 제13조 (비파괴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 ③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자(이하 “검사자”라 한다)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비파괴검사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법 제17조 제1항 제8호	업무정지 6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개정 1999.4.15>) 제		법 제83조 제2호	영업정지 6월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별표4	다.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지정요건을 갖추게 된 때를 제외한다. 제22조 (수로도서지의 판매 및 대행업자의 지정 등) ③대행업자는 판매망·기술인력·설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 제22조의3제1항 제3호	영업 정지 3월	영업 정지 6월	지정 취소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별표0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가. 선박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0조	영업 정지 180일	등록 취소	
		나. 기술인력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0조	영업 정지 90일	영업 정지 180일	등록 취소
	다. 자본금이	법	영업	영업	등록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20조	정지 90일	정지 180일	취소	
		라. 시설·장비가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0조	영업 정지 30일	영업 정지 90일	영업 정지 180일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2	다. 제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1) 제4조제3호에 따른 지방사무소를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2) 제4조제4호에 따른 인증사원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3) 제4조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경고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제 4 조 (산업표준심의회) ① 지식경제부에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개정</p> <p>2008.2.29></p> <p>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p> <p><개정</p> <p>2008.2.29></p> <p>1. 제5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하여 필요한사항</p> <p>2. 제10조에</p>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따 른 산 업 표 준 의 적 부(適否)확 인 에 관 하 여 필 요 한 사 항</p> <p>3. 제15 조 에 따 른 광 공 업 품 의 지 정 에 관 한 사 항</p> <p>4. 제16 조 에 따 른 서 비 스 의 지 정 에 관 한 사 항</p> <p>5. 제23 조 에 따 른 광 공 업 품 및 그</p>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품 등의 통 일화· 단순화 명령에 관 한 사항</p> <p>6. 그 밖 에 산 업 표 준 에 관 련 된 사 항 으 로 서 대 통 령 이 정 하 는 사 항</p> <p>③ 심 의 회 의 구 성 및 운 영 등 에 관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은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한다.</p>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11.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자가 제	○실연심사위원회 심사에 합격하지 아니		사업 정지 1월	사업 정지 3월	허가 취소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41조의3 을 위반 한 때	한 자를 국 외 공급연예 인으로 선 발한 때					
		○실연심사와 관 련 하 여 부정행위를 한 때		사업 정지 1월	사업 정지 3월	허가 취소	
		○만 20세가 되 지 아니한 자 를 국외공급대 상연예인으로 선발한 때		사업 정지 3월	허가 취소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7	(2) 법 제 18조제 2 항 의 규 정 에 의 한 지정기 준 에 미달한 경우	(가) 시설 및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법 제19조	지정 취소			
		(나) 시설 및 장비가 부 족 하 거 나 고장난 상 태로 7일 이상 방치 한 경우	법 제19조	경고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3월	지정 취소
		(다) 기술인력 이 전혀 없 는 경우	법 제19조	지정 취소			
		(라) 기술인력 이 부족한 경우	법 제19조	경고	업무 정지 15일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3월
토양환경보 전법 시행규칙 별표12	(6) 법 제 23조의 2제1항 에 따 른 지	(가) 지정기준 의 기술능력 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법 제23조 의6 제2항 제1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나) 지정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법 제23조의6 제2항 제1호	지정 취소			
		(다) 갖추어야 할 장비가 부족한 경우	법 제23조의6 제2항 제1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라) 갖추어야 할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법 제23조의6 제2항 제1호	지정 취소			
		(마) 갖추어야 할 실험실(사무실을 포함한다)이 1개월 이상 없는 경우	법 제23조의6 제2항 제1호	지정 취소			
		(바) 갖추어야 할 실험실(사무실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부족한 경우	법 제23조의6 제2항 제1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2	마. 보유 기술인력 이 법 제 38조제 2 항 에 따 른	1)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 인력이 부족 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 제5호	경고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등록 취소
		2)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등록 취소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등록요건기준에 미달인 경우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0	(5) 법 제 8 조 의 규 정 에 의 한 허가 의 결 격 사유 에 해당 하 게 된 때	(가) 제1호 내 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 하게 된 때		허가 취소			
		(나) 제6호의 규 정에 해당 하 게 된 때		경고	허가 취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4) 법 제68조제4항 및 이 규 칙 제99조에 따른 기술인력에 미달하는 경우 제68조 ④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규칙 제99조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기술능력)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는 별표 28과 같다.		법 제69조 제3호	업무 정지 1개월	지정 취소		
기상법 시행규칙 별표1	4.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 게 된 때		법 제28조	사업 정지 1월	사업 정지 2월	등록 취소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제26조 (기상사업의 등록)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상사업의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별표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춘 상근자 2인 이상을 확보할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8]	10.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조제하여 판매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 법 제44조 제1항	업무 정지 1개월	자격 정지 3개월	자격 정지 6개월	면허 취소	
	11.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	업무 정지 10일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자격 정지 3개월	
	12.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법 제23조 제2항	자격 정지 1개월	자격 정지 3개월	자격 정지 6개월	면허 취소	
근로자직업 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3	2. 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 한 지정요 건 에 미달하 게 된 경우	가. 법 제28조 제1항 각 호 (시설 및 장 비에 관한 요건을 제외 한다)의 규 정에 의한 제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시정 명령	훈련 정지 3개월	훈련 정지 6개월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나. 법 제28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 중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시정명령	훈련 정지 1개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5	2.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修業의 登錄을 하 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人力·資本金(개인인 경우	가 . 사무실 면적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 미달기준이 경미하여 영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보완명령		
			(2) 기준면적의 5분의 1 이하 부족의 경우				
			(3) 기준면	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금 500만원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에는 資 産評價額) 및 補修 設 備 를 갖추어야 한다.		적의 5 분 의 1 초과 3 분 의 1 이하 부족 의 경우					
			(4) 기 준면 적의 3 분 의 1 초과 부족 의 경우		영업정지 6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			
		나 . 자본 금(개 인의 경우 에는 자산 평가 액을 말한 대이 등록 기준 에 미달 하는	(1) 기 준자 본금 의 3 분의 1 미 만 부족 의 경우		영업정지 6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			
			(2) 기 준자 본금 의 3 분의		등록취소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경우	1 이 상 부족 의 경우				
		다 보수 설비 가 등록 기준 에 미달 되는 경우	(1) 경 미한 미달 로 보수 업을 영위 하는 데 지장 이 없다 고 판단 되는 경우			보완명령	
			(2) 기 준설 비 및 수량 의 5 분의 1 이 하부 족의 경우			영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200만원	
			(3) 기 준설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300만원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비 및 수량 의 5 분의 1 초 과 3 분의 1 이 하 부족 의 경우					
		(4) 기 준설 비 및 수량 의 3 분의 1 초 과 부족 의 경우				영업정지 6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	
	라 . 기술 인력 이 등록 기준 에 미달 되는 경우	(1) ① 등록 기준 중 기술 인력 부 족 기 간 이 1 월 이 하 의				보완명령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 1년 부 족 한 경 우	경우					
				② 부 족 기 간 이 1 월 초 과 3 월 이 하 의 경 우		영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200만원			
				③ 부 족 기 간 이 3 월 초 과 6 월 이 하 의 경 우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300만원			
				④ 부 족		영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400만원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기간이 6월 초과 1년 이하의 경우					
			⑤ 부족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				등록취소	
			(2) 등 록기 준중 기술 인력 이 2 인 부족 한 경우				영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400만원	
			(3) 등				등록취소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록기 준중 기술 인력 이 3 인이 상 부족 한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9) 법 제 28조제 1 항 에 따 른 허가기 준 에 미달하 게 된 경우	가) 기술능력 이 허가기준 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2조 제1항 제9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허가 취소	
		나) 사무실이 나 실험실이 없는 경우	법 제32조 제1항 제9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허가 취소	
		다) 갖추어야 할 실험기기 가 허가기준 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2조 제1항 제9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허가 취소	
		라) 흡인식 차 량이 허가기 준에 미달하 게 된 경우	법 제32조 제1항 제9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허가 취소	
		마)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허가기준에 미 달 하 게 된 경우	법 제32조 제1항 제9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1. 법 제6조제3항 또는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또는 상			법 제20조 제1항	경고	업무 정지 1월	시설 또는 상납소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담소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 6 조 (지원시설의 설치) ③지원시설의 설치기준 · 신고절차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1호			폐쇄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1	2)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제45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춘 기관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음도 검사를 대행(代行)하게 할 수 있다.	법 제45조 제5항 제2호	경고	경고	지정 취소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36	2. 법 제112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때(업무대행의 지정의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113조 제1항 제2호	경고	지정 취소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0	6) 법 제 45조제 1 항 에 따 른 허가기 준 에 미달하 게 된	가) 기술인력 이 허가기준 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49조 제1항 제6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허가 취소
		나) 사무실이 나 차고가 없는 경우	법 제49조 제1항 제6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허가 취소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경우	다) 흡인식 차 량이 허가기 준에 미달하 게 된 경우	법 제49조 제1항 제6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허가 취소

2. 정비사유

이는 주로 실무에 있어 지정·허가·등록 취득시의 문제가 아니라 등록 후 영업을 하던 중 일정 등록요건에 관계된 개인적 또는 일부시설 장비의 손망실 된 경우 등 대물적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결여한 경우에 일정기간 내에 이러한 결격사유에 대한 보완 또는 시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과도한 행정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집행공무원에게 구체적·개별적 상황에 따라 재량을 부여하고자 하는 행정처분기준 설정 시 입법자의 의도와 상치되는 것이다.

3. 정비 지침안

- ① 단기간 내에 결격사유에 대한 보완 또는 요건충족이 가능한 경우, 근거법률 또는 하위법령에서 이를 위한 일정기간을 우선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거나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5에서의 규정과 같은 형식으로 규정토록 한다. 다만, 지정·허가·등록 결격 사유가 공중의 생명, 신체 등 안전에 직접적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제1차 처분 시 영업정지를 규정함이 입법목적에 타당한 경우는 제외로 한다.

<정비 고려 대상법령 예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온천법 시행규칙 별표1의2	<p>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p> <p>제 7 조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②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전문인력</p> <p>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p> <p>(1) 지질 및 지반기술사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부존량 조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p> <p>(2) 응용지질·지구물리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부존량 조사업무에 박사학위의 경우 5년, 석사학위의 경우 7년, 학사학위의 경우 10년 이상 종사한 자</p> <p>(3) 온천의 개발·이용과 관련된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p> <p>나. 응용지질 또는 지구물리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부존량 조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2인 이상</p> <p>다. 화학분야 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p>	법제7조 제3항 제3호	등록 취소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또는 지하수 분석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1인 이상 2. 장비 가. 물리탐사 및 검층장비 나. 수소이온농도, 수온, 전기전도도, 총용해물질(TDS, Total Desolve Solid)등의 검사를 위한 간이수질측정장비(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장비이어야 한다) 다. 수위측정장비 라. 수량측정장비 마. 야외수질분석장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개정 1999.4.15>)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83조 제2호	영업 정지 6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별표0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가. 선박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0조	영업 정지 180일	등록 취소	
		나. 기술인력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0조	영업 정지 90일	영업 정지 180일	등록 취소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다. 자본금이 영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0조	영업 정지 90일	영업 정지 180일	등록 취소	
		라. 시설·장비가 영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0조	영업 정지 30일	영업 정지 90일	영업 정지 180일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2	다. 제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1) 제4조제3호에 따른 지방사무소를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2) 제4조제4호에 따른 인증심사원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3) 제4조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경고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2008.2.29>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p> <p>2008.2.29> 1. 제5조에 따른 산업표준제의 정·개정·폐지에 관하여 하필요한 사항</p>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2. 제10조 에 따른 산업표준의 적부(適否)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제15조 에 따른 광공업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6조 에 따른 서비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제23조 에 따른 광공업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그 부 등 의 일 화 · 단 순 명 에 령 에 관 한 사 항 6. 그 밖 에 산 업 표 준 에 관 련 된 사 항 으 로 서 대 령 이 정 하 는 사 항 ③ 심의 회 의 구 성 및 운 영 등 에 관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은 대 령 으 로 정 한다.						
직업안정법	11. 국외 근로자	○실연심사위원회 의 심사에 합격		사업 정지	사업 정지	허가 취소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시행규칙 별표2	공급사 업자가 제41조 의 3 을 위반한 때	하지 아니한 자 를 국외공급연 예인으로 선발 한 때		1월	3월		
		○실연심사와 관련 하여 부정행위 를 한 때		사업 정지 1월	사업 정지 3월	허가 취소	
		○만 20세가 되지 아니한 자를 국 외공급대상연 예인으로 선발한 때		사업 정지 3월	허가 취소		
대기환경보 전법 시행규칙 별표36	4) 법 제68조제4항 및 이 규 칙 제99조에 따른 기술인력 에 미달하는 경우		법 제69조 제3호	업무 정지 1개월	지정 취소		
	제68조 ④제1항에 따른 배출 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 기준, 지정절차 및 관리 등 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규칙 제99조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기술능력)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정 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는 별표 28과 같다.						
기상법 시행규칙 별표1	4.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 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26조 (기상사업의 등록) ②제 1항의 규정에 따른 기상사업 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법 제28조	사업 정지 1월	사업 정지 2월	등록 취소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별표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춘 상근자 2인 이상을 확보할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상 업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약사법시행규칙[별표8]	10.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조제하여 판매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 법 제44조 제1항	업무 정지 1개월	자격 정지 3개월	자격 정지 6개월	면허 취소
	11.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	업무 정지 10일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자격 정지 3개월
	12.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법 제23조 제2항	자격 정지 1개월	자격 정지 3개월	자격 정지 6개월	면허 취소

② 특히, 제1차 처분에 있어 영업정지 1개월, - 3개월을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처분으로 인한 의무위반자의 권익이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침해를 받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이하) 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을 규정하도록 한다.

<정비 고려 대상법령 예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어장관리법시행규칙 별표0	2.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가. 선박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0조	영업정지 180일	등록취소		
		나. 기술인력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0조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등록취소	
		다. 자본금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0조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등록취소	
		라. 시설·장비가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0조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별표2	다. 제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1) 제4조제3호에 따른 지방사무소를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2) 제4조제4호에 따른 인증심사원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3) 제4조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8.2.29></p> <p>1. 제5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p> <p>2. 제10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적부(適否)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p> <p>3. 제15조에 따른 광공업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p> <p>4. 제16조에 따른 서비스의 지정에 관한 사항</p> <p>5. 제23조에 따른 광공업품 및 그 부품 등의 통일화·단순화 명령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산업표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p>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약사법시행규칙 [별표8]	10.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조제하여 판매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 법 제44조 제1항	업무 정지 1개월	자격 정지 3개월	자격 정지 6개월	면허 취소
	11.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	업무 정지 10일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자격 정지 3개월
	12.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법 제23조 제2항	자격 정지 1개월	자격 정지 3개월	자격 정지 6개월	면허 취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11.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가 제41조의3을 위반한 때	○ 실연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를 국외공급연예인으로 선발한 때		사업 정지 1월	사업 정지 3월	허가 취소	
		○ 실연심사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3월	허가취소	
		○ 만 20세가 되지 아니한 자를 국외공급대상연예인으로 선발한 때		사업정지 3월	허가 취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4) 법 제68조제4항 및 이 규칙 제99조에 따른 기술인력에 미달하는 경우		법 제69조 제3호	업무 정지 1개월	지정 취소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제68조 ④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규칙 제99조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기술능력)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는 별표 28과 같다.					
기상법 시행규칙 별표1	4.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26조 (기상사업의 등록)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상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별표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춘 상근자 2인 이상을 확보할 것 2. 대통령이 정하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법 제28조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등록취소	

VIII. 준수사항위반, 금지행위위반

1. 현행 규정 예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1)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 제 8 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법 제27조 제8호	허가취소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①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p> <p>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하수도법 시행 규칙 별표10	<p>5) 법 제 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한 경우</p> <p>② 분뇨를 수집 또는 운반하는 자는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분뇨를 함부로 버리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수집</p>	<p>가) 분뇨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함부로 버린 경우</p>	<p>법 제49조제1항제5호</p>	<p>영업 정지 6개월</p>	<p>허가 취소</p>		
	<p>나) 그 밖의 수집·운반기준을 위반한 경우</p>	<p>법 제49조제1항제5호</p>	<p>경고</p>	<p>영업 정지 1개월</p>	<p>영업 정지 3개월</p>	<p>영업 정지 6개월</p>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10. 법 제28조제8호에 해당된 때 제 28 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취소·정지) 시·도지사는 제26조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은 자(이하 "건설기계 조종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가.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제28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취소·정지)	면허효력정지 60일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다가 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제28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취소·정지)	취소			
	다.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제28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취소·정지)	취소			
	라.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여 면허효력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제28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취소·정지)	취소			
마.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제28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취소·정지)	취소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p> <p>8. 제27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조종한 때</p>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7)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6조에 따른 검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법 제36조 제1항	사업정지 2월	유료: 등록취소 무료: 사업정지 6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5)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가) 18세 미만의 구직자에 대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지 아니하고 직업	법 제36조 제1항	사업정지 2월	유료: 등록취소 무료: 사업정지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제21조의3을 위반한 때	소개를 한 때 (나)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18세 미만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업소에 소개한 때 (다) 『청소년보호법』 제2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구직자를 같은 법 제2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한 때		유료: 등록취소 무료: 사업정지 6월	6월		
			유료: 등록취소 무료: 사업정지 6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9	라.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때	법 제38조 제2항제4호	정지1월	정지3월	정지6월	지정취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7) 법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법 제25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	영업정지6월	허가취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7)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때 제17조 (석유비축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비축의무자"라 한다)는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여야 한다. 1. 석유정제업자 2. 원유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의 석유수출업자 3.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석유비축의무자는 시설기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하 "석유비축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법 제13조제3항제7호	사업정지1월	사업정지3월	등록취소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자동차관리법제 21조제2항등의 규정에의한행정 처분의기준과절 차에 관한규칙 별표	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 히 한 때	법 제72조제 1항	사업정 지 또는 업무정 지 10일	사업 정지 또는 업무 정지 30일	사업 정지 또는 업무 정지 90일	
배타적 경제수 역에서의 외국 인어업 등에 대 한 주권적 권리 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15. 법 제10조 및 이 규칙 별표3 의 규정에 위반하여 포획·채취 금 지채장, 포획·채취금지구역과 기 간, 어구사용금지구과 기간, 특정어 구의 사용금지, 어망목 및 어구구 모의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어 업활동 등을 한 때	법 제13조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별 표3	11. 동물용 의약품제조 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준수 하지 아니한 때	가. 규칙 제22조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때	법 제47조, 『의료기기 법』 제12조제1 항·제14 조제5항· 제15조제4 항·제17 조, 규칙 제22조제1 항	업무 정지 1개월	허가 취소	
		나. 규칙 제 22조제 1항(제1 호를 제 외한 다) 및 제 22조 제 3 항 을 위 반 한 때	동물용 의약품 등 제조업자· 수입자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동물 용 의료기기수 리(판매·임대) 업자 동물약품, 동 물병원의 개설 자	업무 정지 15일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15일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응급의료에 관 한 법률 시행규 칩[별표18]	9. 응급의료기관이 법 제33조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비병상을 확 보하지 아니하거나 응급환자가 아 닌 자로 하여금 예비병상을 사용하 게 한 때 제33조 (예비병상의 확보) ①응급 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	법 제55조제2 항제1호	업무 정지 15일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2월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병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병상을 응급환자가 아닌 자가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15. 법 제10조 및 이 규칙 별표3의 규정에 위반하여 포획·채취 금지채장, 포획·채취금지구역과 기간, 어구사용금지구역과 기간, 특정어구의 사용금지, 어망목 및 어구규모의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어업활동 등을 한 때	법 제13조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수산물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16. 신고어업을 하는 자가 신고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46조	정지 10일	정지 20일	신고 증명서 회수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16) 유료 직업소개사업자가 영 제25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장기결근으로 인하여 근무를 소홀히 하고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극히 태만히 한 때	경 고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1월		
			법 제36조 제1항	경 고	사업정지1월	등록 취소	
				사업정지1월	사업정지2월	등록 취소	
				사업정지1월	사업정지2월	등록 취소	
		(나)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나 신고·등록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 그 허가나 신고·등록등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를 한 때					
		(다) 직업소개소의 명칭, 전화번호, 위치 및 신고·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광고를 한 때					
		(라) 근로계약 체결전에 소개요금등을 받은 때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마) 구직자에게 취직할 직업에 대한 업무의 내용·임금·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상세히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설명한 때 (바) 구인·구직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를 한 (사) 구직자의 주민등록증 및 물건등을 보관하거나 압류한 때 (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취업시킨 때(일용근로자를 소개한 경우를 제외한다) (자) 직업소개소 내부에 등록증·요금표등을 부착하지 아니한 때 (차) 간판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사업정지1월 사업정지1월 사업정지1월 사업정지1월 경 고 경 고	등록 취소 사업정지2월 사업정지2월 사업정지2월 사업정지1월 사업정지2월 사업정지10일	등록 취소 등록 취소 등록 취소 등록 취소 사업정지2월 사업정지1월	
안마사에 관한 규칙[별표2]	5. 제7조제1호·제2호·제4호·제6호·제7호 및 제8호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 7 조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할 것 2. 안마시술소 및 그 부대시설 또는 안마원을 안마시술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 4. 부대시설로 설치한 욕실의 욕수(욕수)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 법 제63조 및 법 제64조제1항제6호	경 고 또는 시정 명령 영 업 정지 1개월 이하	영 업 정지 2~3 개월	폐쇄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목욕장업의 욕조수 수질기준을 유지할 것</p> <p>6.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내부의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 놓을 것</p> <p>7. 종업원에게 『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설립한 대한안마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보수교육 및 소양교육을 받도록 할 것</p> <p>8. 그 밖에 시·도지사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p>						
	<p>6. 제7조제5호를 위반한 경우</p> <p>제 7 조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5.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내에서 퇴폐·음란행위 또는 도박을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 것</p>	<p>-퇴폐·음란행위를 한 경우</p> <p>-도박행위를 한 경우</p>	<p>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 법 제63조 및 법 제64조제1항제6호</p> <p>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 법 제63조 및 법 제64조제1항제6호</p>	경고	영업정지 2개월	폐쇄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7.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가 안마시술행위를 하거나 그에게 안마 시술행위를 하게 한 경우	법 제27조,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	영업 정지 1개월 이하	영업 정지 1~2 개월	영업 정지 2~3 개월	폐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마. 법 제2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법 제27조제1항제5호	경고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1월
		2)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법 제27조제1항제5호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등록 취소 영업 폐쇄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	법 제27조제1항제5호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등록 취소 영업 폐쇄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한 때	법 제27조제1항제5호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2월	등록 취소 영업 폐쇄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5) 청소년을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로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한 때	법 제27조제1항제5호				
		6) 호객행위를 한 때	법 제27조제1항제5호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2.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법 제27조제1항제5호				등록 취소 영업 폐쇄
		8)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	법 제27조제1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	항제5호	10일	20일	1월	3월
		9) 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한 때	법 제27조제1항제5호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3.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10)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때	법 제27조제1항제5호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11)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지 아니한 때	법 제27조제1항제5호	경고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1월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서 손님과 함 께 술을 마시 거나 노래 또 는 춤으로 손 님의 유흥을 돋우는接客행 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 여서는 아니 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3) 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준 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 3. 그 밖에 정비업무에 관 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 항을 위반하는 행위	법 제69조 제2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0	(10)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겸 업금지무리를 위반한 때		경 고	영업정 지2월	허가 취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령 별표 1	6.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제11조 (금지행위) ①방문판매자등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 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 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 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3. 가입비·판매보조물품·개인할 당 판매액·교육비 등 그 명칭 및	법 제42조 제4항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영업 정지 6월	영업 정지 12월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형태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원등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등에게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p> <p>4. 방문판매원등에게 다른 방문판매원등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p> <p>5. 청약철회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등을 변경하는 행위</p> <p>6.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p> <p>7.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p> <p>8.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p> <p>9.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의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p> <p>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1	6)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④소음도 검사기관은 검사방법 및 시설·시험장비의 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법 제45조 제5항 제3호	경 고	경 고	지정 취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14) 법 제5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②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법 제50조 제3항	경고	개선 명령	개선 명령	개선 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1) 법 제 32 조 제 1 항에 따른 측정 기 기 의 부착 등 의 조치 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측 정 기 기 의 부 착 등) ①사업자 는 배출 시설에서 나 오 는 오염물질	가) 적산전력계 미부착	법 제36조	경고	경고	경고	조업 정지 5일
		나) 사업장 안의 일부 굴뚝자동측정기기 미부착	법 제36조	경고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30일
		다) 사업장 안의 모든 굴뚝자동측정기기 미부착	법 제36조	경고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30일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라) 영 별표 3 제2호라 목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이 면제된 보일러로서 사용연료를 6월 이내에 청정 연료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경고	경고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30일
	마) 영 별표 3 제2호바 목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이 면제	법 제36조	경 고	경 고	폐 쇄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 제16조와 제29조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된 배출시설로서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비사유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위반사유는 15개 유사 의무위반사유에 있어 매우 다양하고 다수의 형태를 차지하고 있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 유형에 포함될 수 있는 위반행위는 그 성질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제제는 일률적이고 과도한 경우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3. 정비 지침안

- ① 고의·중과실을 제재처분의 기준으로 삼아 고의·중과실이 있는 위반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에 대한 가책성이 보다 중하기 때문에 행정제재처분 역시 중하게 적용되어야 하나, 이와는 반대로 단순·경미한 의무위반사유 또는 경과실로 인한 의무위반에 있어서는 법의 목적상 특별히 고의·중과실의 경우와 동등하게 처분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시에는 우선적으로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제1차 처분기준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정비 고려 대상법령 예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7)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6조에 따른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법 제36조 제1항	사업정지 2월	유료:등록취소 무료:사업정지 6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7) 법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법 제25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7)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때 제17조 (석유비축의무)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비축의무자"라 한다)는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여야 한다. 1. 석유정제업자 2. 원유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	법 제13조제3항제7호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3월	등록취소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유제품의 석유수출입업자</p> <p>3.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p> <p>②석유비축의무자는 시설기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하 “석유비축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 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	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때	법 제72조제1항	사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10일	사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30일	사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90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8]	9. 응급의료기관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 때 제33조 (예비병상의 확보) ①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병상을 응급환자가 아닌 자가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16. 신고어업을 하는 자가 신고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46조	정지 10일	정지 20일	신고증명서 회수	-

- ② 각 개별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한 위해를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의무위반행위의 성격이 유사한 경우, 법률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처분양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비 고려 대상법령 예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1)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 제 8 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7조제8호	허가 취소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0	5)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한 경우	가) 분뇨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함부로 버린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5호	영업정지 6개월	허가 취소		
	②분뇨를 수집 또는 운반하는 자는 분	나) 그 밖의 수집·운반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노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분노를 함부로 버리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수집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2]	<p>5. 제7조제1호·제2호·제4호·제6호·제7호 및 제8호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p> <p>제 7 조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1.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할 것</p> <p>2. 안마시술소 및 그 부대시설 또는 안마원을 안마시술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p> <p>4. 부대시설로 설치한 욕실의 욕수(욕수)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의 욕조수 수질기준을 유지할 것</p> <p>6.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내부의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 놓을 것</p> <p>7. 종업원에게 『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설립한 대한안마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보수교육 및 소양교육을 받</p>	<p>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 법 제63조 및 법 제64조제1항제6호</p>	경고 또는 시정 명령	영업 정지 1개월 이하	영업 정지 2~3 개월	폐쇄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도록 할 것</p> <p>8. 그 밖에 시·도지사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p>						
	<p>6. 제7조제5호를 위반한 경우</p> <p>제 7 조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5.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내에서 퇴폐·음란행위 또는 도박을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 것</p>	<p>퇴폐·음란행위를 한 경우</p>	<p>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 법 제63조 및 법 제64조제1항제6호</p>	경고	영업정지 2개월	폐쇄	
	<p>5.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내에서 퇴폐·음란행위 또는 도박을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 것</p>	<p>도박 행위를 한 경우</p>	<p>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 법 제63조 및 법 제64조제1항제6호</p>	경고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폐쇄
	<p>7.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가 안마시술행위를 하거나 그에게 안마시술행위를 하게 한 경우</p>		<p>법 제27조,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p>	영업정지 1개월 이하	영업정지 1~2개월	영업정지 2~3개월	폐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p>마. 법 제2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p>	<p>1) 영업소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p>	<p>법 제27조제1항 제5호</p>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p>제22조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2)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p>	<p>법 제27조제1항 제5호</p>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3)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	법 제27조제1항 제5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 취소 영업 폐쇄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한 때	법 제27조제1항 제5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등록 취소 영업 폐쇄	
	2.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 동의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청소년을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로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한 때	법 제27조제1항 제5호	등록 취소 영업 폐쇄			
		6) 호객행위를 한 때	법 제27조제1항 제5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3.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법 제27조제1항 제5호	등록 취소 영업 폐쇄			
		8)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	법 제27조제1항 제5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9) 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한 때	법 제27조제1항 제5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10)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때	법 제27조제1항 제5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11)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	법 제27조제1항 제5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接客 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 붙이지 아니한 때				

③ 행정제재처분의 절차(1차-,2차-,3차-,4차 처분)는 선행 처분시보다 중한 처분규정을 두도록 하며, 경고- 경고의 경우 경고- 시정명령 또는 경고- 영업(업무)정지 -개월의 형식에 따른다. 영업(업무)정지의 경우 일반적인 입법 규정형식에 따라 선행 처분(제2차)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규정을 두도록 조정한다(1-,3-,6개월).

<정비 고려 대상법령(예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별	6)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 제5항제3호	경 고	경 고	지정 취소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표21	④소음도 검사기관은 검사방법 및 시설·시험장비의 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14) 법 제5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②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법 제50조 제3항	경고	개선 명령	개선 명령	개선 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1)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와 제29조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적산전력계 미부착	법 제36조	경고	경고	경고	조업 정지 5일
		나) 사업장 안의 일부 굴뚝자동측정기기 미부착	법 제36조	경고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30일
		다) 사업장 안의 모든 굴뚝자동측정기기 미부착	법 제36조	경고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30일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라) 영 별표 3 제2호바목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이 면제된 보일러로서 사용연료를 6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경고	경고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30일
		마) 영 별표 3 제2호바목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이 면제된 배출시설로서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경고	경고	폐쇄	

IX. 기록보존의무 위반

1. 현행 규정 예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차.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때	법 제9조 제1항제7호	인증 취소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사.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제13조 (감리법인의 준수사항) ②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제1항 제7호	업무 정지 3개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바. 법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제14조 ⑤안전인증기관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행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1항제6호	인증 업무 일부 정지 3월	인증 업무 일부 정지 6월	지정 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15)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5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	4)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0	12) 법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2	바. 박제업자가 법 제4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0조제5항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마.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법 제9조 제1항제5호	개선명령	안전검사 표시 사용금지 2개월	안전인증 취소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0	(20)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건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5)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때 제18조 ③배출자,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1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가 검사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적거나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제41조 (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 ①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제품이	법 제48조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를 자가 검사(檢査)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4	(라) 저수조의 청소 또는 위생 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0일	사업장 폐쇄 명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7)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제2항제2호	경고	경고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2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9)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31조 ②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법 제36조	경고	경고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20일

2. 정비사유

현행 법규정 내용에 따라 기록보존의무에 관한 기록대상으로서 장부(관리대장, 서류, 관리기록), 검사기록(측정방법, 측정기록, 정비 점검확인서, 안전인증기록, 청소 또는 위생점검결과), 보고서(감리보고서,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화학물질에 관한 사항, 평가서)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록보존의무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이유는 행

정업무의 진척도 점검과 업무관리의 효율성 그리고 위험요소가 있는 업무의 단계적 안전성의 제고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을 비치, 기록, 보존하지 않았다 하여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과도한 제재적 처분을 하는 것은 문제시 되는 것이다. 때문에 각 개별 법률의 입법목적에 따른 행정업무의 성격에 따라 경·중으로 구분하여 경미한 경우 개선 또는 시정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3. 정비 지침안

- ① 기록보존의무위반에 관한 처분기준은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와 허위·거짓으로 한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별법률에서 입법자가 양자를 동일한 처분기준으로 규정할 의도가 명백한 경우, 동일한 처분기준으로 규정토록 한다.

<정비 고려 대상법령 예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바. 법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제14조 ⑤안전인증기관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행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1항 제6호	인증 업무 일부 정지 3월	인증 업무 일부 정지 6월	지정 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15)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 제15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0	12) 법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마.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법 제9조 제1항제5호	개선명령	안전검사 표시 사용 금지 2개월	안전인증 취소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0	(20)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건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1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가 검사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적거나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제41조 (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 ①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제품이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를 자가 검사(檢査)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법 제48조제1항 제5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4	(라) 저수조의 청소 또는 위생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사업장 폐쇄 명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7)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 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	법 제42조제2항 제2호	경고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9)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31조 ②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법 제36조	경 고	경 고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20일

② 기록보존의무는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계적-, 절차적 작위의무이므로, 이의 위반 있어서는 제1차적 처분에서 곧바로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을 규정 할 것이 아니라 시정을 요구하는 경고 (제1차 처분이 영업(업무)정지 1개월 이하인 경우) 또는 시정 명령 (제1차 처분이 영업(업무)정지 3개월 이상인 경우와 취소)을 우선적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정비 고려 대상법령 예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차.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때	법 제9조 제1항제7호	인증 취소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사.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제13조 (감리법인의 준수 사항) ②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제1항 제7호	업무 정지 3개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5)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때 제25조 (품질검사)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자체검사자로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확보할 것 2. 승인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자의 승인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법 제28조제2항 제5호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승인 취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바. 법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제14조 ⑤안전인증기관은	법 제13조제1항 제6호	인증 업무 일부 정지 3월	인증 업무 일부 정지 6월	지정 취소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행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15)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 제15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	4)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0	12) 법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법 제49조제1항 제12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야생동·식물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2	바. 박제업자가 법 제4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0조제5항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등록 취소

③ 행정제재처분의 절차(1차-,2차-,3차-,4차 처분)는 선행 처분시보다 중한 처분규정을 두도록 하며, 경고-, 경고 등의 경우 경고-, 시정 명령-, 영업정지 -개월로 규정토록 한다.

<정비 고려 대상법령 예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	법 제42조제2항 제2호	경고	경고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20일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행규칙 별표22	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9)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31조 ②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법 제36조	경 고	경 고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20일

X. 포괄금지조항

1. 현행 규정 예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2	2.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7.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9조제2항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 취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2.개별기준 63. 그 밖에 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에 위반한 때	법 제76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제1항	경 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월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2. 개별기준 36. 기타 마약류취급자가 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44조	취급업무 정지 15일	취급업무 정지 1월	취급업무 정지 3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11	2. 업종별 행정처분기준 나.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1) 사행기구제조업 (하)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지시·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26조	개선명령	영업정지 20일	허가 취소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	2. 개별기준 나.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9)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28조	자격정지 6월	자격정지 1년	자격 취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	2. 개별기준 4. 조리사 또는 영양사 6.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55조 및 제63조	시정명령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2. 개별기준 12.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30조제2항제6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2. 개별기준 2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2	2. 개별기준 (12)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8호	경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낙시어선업법 시행규칙 별 표2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3호	경 고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2월	영업정지3월

2. 정비사유

포괄금지조항은 행정기관의 재량의 측면에서는 그 기능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 등의 표현은 명령이 하위법령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행정기관의 시정명령 등을 의미하는 지가 분명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3. 정비 지침안

- ① 포괄금지조항에 관한 규정은 정비사유에서 논한 내용을 근거하여 삭제하도록 한다.

XI. 관리기준 위반

1. 현행 규정 예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별표	11. 법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도시철도차량을 운행하거나 도시철도시설을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때	법 제19조제1항제11호	사업정지120일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제22조의2 (도시철도차량의 안전기준) ①도시철도차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②도시철도차량의 안전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16)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때 제29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①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따라 당해 시설을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제1항제6호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영업 정지 6월	허가 취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17)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가) 바닥재의 강열감량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 제8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나) 가)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16)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독물이 누출된 경우	법 제27조제8호·제36조제8호	개선 명령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6월
		(나)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독물이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제27조제8호·제36조제8호	개선 명령	개선 명령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6월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다) 그 밖의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제36조제8호	개선 명령	개선 명령	개선 명령	영업 정지 1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5)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처리 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 한 경우 제17조 ③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법 제32조제1항제5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5) 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운 영 · 관 리 기 준 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굴뚝 자동측정 기기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경우 제 6 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유해성 등의 측정·분석·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법 제32조 제5항·제6항	경 고	조치 명령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30일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사유가 없는 한 그 규격에 따른다. <개정 2007.1.26, 2007.5.17, 2007.5.25></p> <p>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및 제1호의2의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p> <p>2.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제1호의 소음 및 제2호의 진동</p> <p>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오염물질</p> <p>4.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p> <p>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폐수 및 같은 조 제7호의 수질오염물질</p> <p>6.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p> <p>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p> <p>8.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p> <p>9.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p> <p>1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p> <p>의 운영·관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p>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나) 영 제19조에 따른 관제센터에 측정 자료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p> <p>제19조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가 부착한 굴뚝 자동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관제센터의 관할 사업장과 관제센터의 기능·운영 및 자동 측정자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법 제32조 제5항·제6항	경 고	조치 명령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30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5)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측정기기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부합하지 아니 하도록 한 경우	법 제38조의3 제2항	경 고	조치 명령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30일
		나)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측정 자료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8조의3 제2항	경 고	조치 명령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30일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3) 법 제34조 제 2 항, 규칙 제28	가) 규칙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도지사의 반출금지	법 제35조제2항제3호	경 고	지정 취소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조 제 8 항 및 별표 5 에 따른 규격·표시방법, 그 밖의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요청에도 불구하고 병마개를 반출한 경우 나) 규칙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병마개를 반출하고도 병마개반출통보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3호	경 고	지정 취소		
	제34조 ② 부담금 증명표지의 규격, 표시방법, 부담금 증명표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규칙 제28조 ⑧ 표시제조사 부담금 증명표지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모형을 새긴 인쇄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부담금 증명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별표	다) 규칙 제28조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모형을 새긴 인쇄판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별표 5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3호	경 고	지정 취소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5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2. 정비사유

관리기준의 유형에는 주로 시설물의 설치, 유지에 대한 관리기준의 위반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시설물의 설치, 유지에 관한 관리기준은 그 보호법익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달리해야 함에도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시설물의 설치운영자에 대해서 과도한 처분이 행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정비 지침안

- ① 시설물의 설치, 유지를 위한 관리의 하자로 인한 피해가 다수 공중의 생명, 신체 및 권익을 침해함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 단순 하자 등의 보수 시에는 곧바로 영업정지와 같은 중한 처분이 아닌 경고, 개선명령 또는 과징금 등의 다른 제재수단을 고려하도록 한다.

<정비 고려 대상법령 예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별표	11. 법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도시철도차량을 운행하거나 도시철도 시설을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	법 제19조제1항제11호	사업정지 120일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때</p> <p>제22조의2 (도시철도차량의 안전기준) ①도시철도차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p> <p>②도시철도차량의 안전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p>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p>	<p>(16)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때</p> <p>제29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①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따라 당해 시설을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법 제25조제1항제6호</p>	<p>영업정지 1월</p>	<p>영업정지 3월</p>	<p>영업정지 6월</p>	<p>허가 취소</p>

② 행정제재처분의 절차(1차-,2차-,3차-,4차 처분)는 선행 처분시보다 중한 처분규정을 두도록 하며, 개선명령-, 개선명령 등의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개월 로 규정토록 한다. 또한 제1차 처분이 경고인 경우 제2차 처분 시 곧바로 취소규정을 두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중한 영업정지규정을 두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취소를 규정토록 한다.

<정비 고려 대상법령 예시>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 칙 별표5	(16) 법 제 24조의 규 정에 따른 유독물의 관리 기준 을 위반한 경우	(가) 유독물의 관 리기준을 위반하여 유독물이 누출된 경 우	법 제27조제8 호·제36 조제8호	개선 명령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6월
		(나) 유독물의 관 리기준을 위반하여 유독물이 누출될 우 려가 있는 경우	법 제27조제8 호·제36 조제8호	개선 명령	개선 명령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6월
		(다) 그 밖의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제8 호·제36 조제8호	개선 명령	개선 명령	개선 명령	영업 정지 1월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3) 법 제34 조 제 2 항, 규칙 제28 조제8항 및 별표 5에 다른 규 격·표시방 법, 그 밖 의 관리기 준을 위반 한 경우	가) 규칙 제28조제2항 을 위반하여 시·도 지사의 반출금지 요 청에도 불구하고 병 마개를 반출한 경우	법 제35조제2 항제3호	경 고	지정 취소		
		나) 규칙 제28조제3 항을 위반하여 병마 개를 반출하고도 병 마개반출통보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제2 항제3호	경 고	지정 취소		
		다) 규칙 제28조제8항 을 위반하여 환경부장 관이 정하는 모형을 새긴 인쇄판을 사용하 지 아니하거나 별표 5 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제2 항제3호	경 고	지정 취소		
	제34조 ② 부담금증명 표지의 규 격, 표시방 법, 부담금 증명표지의 관리에 필 요한 사항 은 환경부 령으로 정 한다. 규칙 제28 조 ⑧ 표지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제 조 자 는 부담금증명 표지의 위 조 및 변조 를 방지하 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이 정하는 모형을 새 긴 인쇄판 을 사용하 여야 하며, 그 밖에 부 담금증명표 지의 관리 를 위하여 별표 5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 켜야 한다.					

XII. 표시기준 위반

1. 현행 규정 예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7	마. 종·묘생 산업자가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10퍼센트 미만을 표시하 지 아니한 때	법 제16조제 3항제5호	영업정지 1년	영업정지 2년	등록 취소	
		(2)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을 표시하	법 제16조제 3항제5호	영업정지 2년	등록 취소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종묘생산업자"라 한다)는 산림용 종자나 산림용 묘목을 출하(出荷)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종자나 묘목의 생산지 및 규격 등의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지 아니한 때 (3) 30퍼센트 이상 표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16조제3항제5호	등록 취소				
		(4) 품질표시를 허위로한 때	법 제16조제3항제5호	등록 취소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8.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13조(사료의 표시사항)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그 밖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인체 또는 동물 등에 해로운 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것을 제조 또는 수입한 때	법 제23조제4호	영업의 전 부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의 전 부정지 3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의 전 부정지 6월과 당해 제품폐기		
		나.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 잔류된 것을 제조 또는 수입한 때	법 제23조제4호	시정명령 당해 제품폐기	영업의 전 부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의 전 부정지 3월과 당해 제품폐기		
		다. 인체 또는 동물 등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부패 또는 변	법 제23조제4호	영업의 전 부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의 전 부정지 3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의 전 부정지 6월과 당해 제품폐기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질된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한 때					
	라. 동물 등의 건강유지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축산물의 생산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한 때	법 제23조제4호	영업의 일 부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의 전 부정지 3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의 전 부정지 6월과 당해 제품폐기	
	마.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료를 사용한 때	법 제23조제4호	영업의 일 부정지 6월과 당해 제품폐기	등록취소		
	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료를 사용한 때	법 제23조제4호	영업의 일 부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의 일 부정지 3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의 일 부정지 6월과 당해 제품폐기	
	사.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23조제4호	영업의 일 부정지 6월과 당해 제품폐기	등록취소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p>마.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p> <p>제20조의3 (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p> <p>2.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p>	법 제21조제1항 제5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시·광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10.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경우 제12조 (허위·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 ①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8조 제1항제10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국내: 영업정지 6월 국제: 등록취소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표3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조방법을 위반하거나 연근 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때 第15條 (人蔘類의 製造基準 등 <개정 2001.1.26>) ①인삼류를 제조하는 자는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연근별로 구분하여 제조하고 당해 제품이나 그 용기·포장 등에 해당 연근 및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산지의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16조 제1항제2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또는 영업폐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12.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시·광고한 때	법 제32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제22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⑤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시·광고 하여서는 아니된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10) 법 제4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이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가 먹는 샘물 및 수처리제, 정수기와 그 용기·포장 방법·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등록된 사항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 제5호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허가 또는 등록 취소
		(2) 제품 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 제5호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허가 또는 등록 취소
		(3)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을 표시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 제5호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허가 또는 등록 취소
		(4) 최고·특수 등의 표현이나	법 제48조제1항 제5호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허가 또는 등록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특수 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					취소
		(5)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 제5호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허가 또는 등록 취소
	나정수기의 경우	(1)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 제5호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2) 최고·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 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 제5호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3) 유효정수량을 표시할 때 실제정수량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 제5호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4) 실제정수기능과 다른 기능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 제5호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5) 비교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 제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 또는 다른 회사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를 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 제5호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카.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때 제 6 조 (안전인증의 표시 등)	법 제9조 제1항제8호	개선 명령	인증 표시 사용 금지 2월	인증 취소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인증의 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1.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의 표시와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p> <p>2.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는 안전인증의 면제표시</p> <p>3.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안전검사의 표시와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서 정하는 표시</p>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9조 제1항제6호	개선 명령	안전 검사 표시 사용 금지 2개월	안전 인증 취소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 제7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18)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 · 제36조 제8호	경고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2월

2. 정비사유

입법자가 표시기준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자신이 소비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선택대상이 소비자의 생명, 신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식품 등일 경우 중한 행정제재처분을 규정하고 엄격하게 유지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적으나, 단순표시의무위반에 대하여 표시의무위반자에게 위의 사유와 같은 중한 처분을 하는 것은 문제시 된다.

3. 정비 지침안

- ① 식품관련 법령의 경우에서와 같이 국민의 생명, 신체와 같은 국민권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표시의무위반의 경우가 아닌 영업상 허위·과장·미표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서는 제1차 처분 시 취소 또는 영업정지와 같은 중한 처분보다는 개선명령과 같은 행정제재처분을 일차적으로 고려하거나 영업정지사유인 경우에 있어서도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제재수단을 고려하도록 한다.

<정비 고려 대상법령 예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마. 종·묘생산업자가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종묘생산업자”라 한다)는 산림용 종자나 산림용	(1) 10퍼센트 미만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16조제3항제5호	영업정지 1년	영업정지 2년	등록 취소	
		(2)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16조제3항제5호	영업정지 2년	등록 취소		
		(3) 30퍼센트 이상 표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16조제3항제5호	등록 취소			
		(4) 품질표시를 허위로 한 때	법 제16조제3항제5호	등록 취소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묘목을 출하(出荷)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종자나 묘목의 생산지 및 규격 등의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10.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경우 제12조 (허위·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 ①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8조 제1항제10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국내: 영업정지 6월 국제: 등록취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12.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라는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시·광고한 때 제22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라는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시·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32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10) 법 제4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이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제40조 (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의 금지 등) ①먹는샘물, 수처리제, 정수기와 그 용기·포장의 명칭, 제조방법·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먹는샘물 및 수처리제의 경우	(1) 법 제2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 등록한 사항 또는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수입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 제5호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허가 또는 등록 취소
			(2) 제품 중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 제5호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허가 또는 등록 취소
			(3) 제조연월 일 이 나 유통기한을 표시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 제5호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허가 또는 등록 취소
			(4) 최고·특수 등의 표현 이 나 특수 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법 제48조제1항 제5호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허가 또는 등록 취소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					
		(5)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 제5호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허가 또는 등록 취소
	나 정 수 기 의 경 우	(1) 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 제5호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2) 최고·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 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 제5호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3) 유효정수량을 표시할 때 실제 정수량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 제5호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4) 실제 정수기능과 다른 기능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 제5호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5) 비교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 제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 또는 다른 회사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를 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 제5호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XIII 출입·조사 방해 및 거부

1. 현행 규정 예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0	13)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 제13호	허가 취소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	마.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거	법 제9조 제1항제4호	인증 취소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9	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라.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제14조 ⑥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의 안전인증대상공산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법 제18조제1항 제4호	인증 취소			
온천법 시행규칙 별표1의2	4. 정당한 사유없이 온천 전문검사를 기피·지연하는 경우	법 제 7 조 제 3 항 제 4 호	영업정지 6월	등록 취소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17)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 수거 또는 열람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제42조 (출입·검사·수거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샘플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를 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검사기관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샘플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물관련영업자 및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법 제48조제1항제10호	영업정지 3개월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는 것</p> <p>2.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장소·사무소·창고·제조소·저장소·판매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원재료·제품·용기·포장 또는 제조·영업시설 등을 검사하는 것</p> <p>3. 제2호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원재료, 제품, 용기·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收去)하는 것</p> <p>4. 관계 공무원이 영업관계의 장부, 서류, 검사와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게 하는 것</p>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p>(13)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때</p> <p>제38조 (보고 및 검사) 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등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등·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 또는 제21조제1항 각호·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p>	법 제13조제1항제13호	사업 정지 3월	사업 정지 6월	등록 취소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시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12)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13)에 해당한 때	법 제13조제2항제7호	사업 정지 3월	사업 정지 6월	등록 취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8. 건강진단 실시방법이 부적정하거나 그 밖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건강진단기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마.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업무를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제24조제1항제5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16. 법 제10조 및 이 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정선·승선·서류조사 등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	법 제13조	정지 60일	취소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바.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6호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영업 정지 6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1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조사나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제15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이 법	법 제18조 제1항제14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중개 사무소에 출입하여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대장,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별표2]	8. 관계 공무원의 지도·점검을 기피·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9조 및 법 제64조제1항제3호	영업 정지 1개월 이하	영업 정지 1~2 개월	영업 정지 2~3 개월	폐쇄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5	(3)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4조제3항(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때 제 4 조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 및 검사) ③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부품제조업자의 공장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법 제7조제3호	안전 인증 표시 사용 금지 1월	안전 인증 표시 사용 금지 3월	안전 인증 표시 사용 금지 6월	안전 인증 취소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등의 규정예외행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	나. 공무원의 장부 또는 서류 기타 사업에 관한 사항의 검사나 검사자료 요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때	법 제72조제 2항	사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30일	사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60일	사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90일	
삭도·레도법	4. 보고 나. 검사를 거	법	사업	사업	사업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시행규칙 별표1		부·방해·기피한 때	제16조제1항제10호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별표3	59.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자·동물약국, 동물병원의 개설자·동물용 의약품도매상,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수리업자가 법 제69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약사감시원의 검사, 질문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법 제69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28조	업무 정지 15일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의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법 제12조제3호	경 고	업무 정지 3월	상담소·교육 훈련 시설의 폐지 또는 보호 시설의 인가 취소	
석탄산업법시행규칙 별표1	5.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第25條 (品質維持 및 檢査) ①石炭鑛業者 또는 石炭加工業者는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石炭 또는 石炭		법 제21조 제1항제4호	경 고	과징금 부과 또는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5일	등록 취소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加工製品の 品質을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基準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石炭 및 石炭加工製品の 品質維持를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品質을 檢査할 수 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28.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법 82조 제2항제23호	경고	업무 정지 10일	업무 정지 1개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8)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통량 파악 또는 배출량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가) 당해 사업장에 출입·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법 제27조제8호·제36조제8호	경고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21. 어업감독 공무원의 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63조	경고	경고	취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3.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장부등의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제28조 (감독) ①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당	법 제29조제2호	경고	경고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폐쇄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정비사유

이는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청의 행정조사 내지 지도·감독에 대한 의무위반사유이다. 행정청이 출입·조사를 하는 목적이 관련 분야 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지도·감독적 성격을 가지는 일반적 정보의 수집인 경우와 구체적 영업의 규제권 발동을 위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를 구분하여 출입·조사의 방해 및 거부에 대한 제재처분도 일반적 행정조사와 개별적 영업활동 규제를 달리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즉, 행정목적의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행정작용에 대한 의무위반사유로서 출입·조사의 거부 및 기피는 각 개별법률에서 그 성격에 따라 행정제재처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 제1차 처분 시 과도한 제재처분을 다수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문제시 된다.

3. 정비 지침안

- ① 개별 법률에서 행정기관의 출입·조사의 목적이 관련 분야 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지도·감독적 성격을 가지는 일반적 정보의 수집인 경우, 제1차적 처분에서는 곧바로 영업정지 등의 중한 처분이 아닌 경고 또는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한 하위법령의 일반

기준에서 “집행기관 장의 권고”규정을 두는 것을 우선 고려한다.

<정비 고려 대상법령 예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16. 법 제10조 및 이 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정선·승선·서류조사 등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	법 제13조	정지 60일	취소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바.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 제6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1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조사나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제15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대장,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법 제18조 제1항제14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안마사에 관한 규칙[별표2]	8. 관계 공무원의 지도·점검을 기피·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9조 및 법 제64조제1항 제3호	영업정지 1개월 이하	영업정지 1~2개월	영업정지 2~3개월	폐쇄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5	(3)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4조제3항(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때 제 4 조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 및 검사) ③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부품제조업자의 공장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법 제7조제3호	안전인증 표시 사용 금지 1월	안전인증 표시 사용 금지 3월	안전인증 표시 사용 금지 6월	안전인증 취소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등의 규정예외행정부처분의기준과절차에 관한규칙 별표	나. 공무원의 장부 또는 서류 기타 사업에 관한 사항의 검사나 검사자료 요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때	법 제72조제2항	사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30일	사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60일	사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90일	
삭도·케도법 시행규칙 별표1	4. 보고 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때	법 제16조제1항 제10호	사업정지 30일	사업정지 60일	사업정지 90일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별표3	59.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자·동물약품, 동물병원의 개설자·동물용 의약품도매상, 동물용 의료가기 판매(임대)업자·수리업자가 법 제69조제1항 『의료가기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약사감시원의 검사, 질문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법 제69조제1항, 『의료가기법』 제28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기피한 때					

② 개별 법률에서 행정기관의 출입·조사의 목적이 구체적 영업의 규제권 발동을 위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제1차 처분 시 곧바로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중한 처분이 아닌, 시정명령을 규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제2차 처분에 있어 끝나는 제재의 최종적 수단인 취소 또는 폐쇄보다는 이보다 경한 영업정지·개월 등의 규정을 고려한다.

<정비 고려 대상법령 예시>

법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0	13)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 제13호	허가 취소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바.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법 제9조 제1항제4호	인증 취소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라.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14조 ⑥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	법 제18조제1항제4호	인증 취소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조업자의 안전인증대상공 산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온천법 시행규 칙 별표1의2	4. 정당한 사유없이 온천 전문검사를 기피·지연 하는 경우	법 제 7조 제 3 항 제 4호	영업정 지6월	등록 취소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17) 법 제42조에 따른 보 고, 출입, 검사, 수거 또 는 열람을 방해·거부 또 는 기피한 경우 제42조 (출입·검사·수 거 등) ①환경부장관 또 는 시·도지사는 샘플 개 발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 를 하거나 먹는물관련영 업으로 인한 국민건강상 의 위해를 방지하고 검사 기관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샘플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물관련영업자 및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 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 하는 것 2.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 장소·사무소·창고·제 조소·저장소·판매소(이 하 “사업장”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 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 는 원재료·제품·용기· 포장 또는 제조·영업시 설 등을 검사하는 것	법 제48조제1항제10호	영업 정지 3개월	허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3. 제2호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원재료, 제품, 용기·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收去)하는 것 4. 관계 공무원이 영업관계의 장부, 서류, 검사와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게 하는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13)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제38조 (보고 및 검사) ①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등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에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등·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 또는 제21조제1항 각호·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시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법 제13조제1항제1호	사업 정지 3월	사업 정지 6월	등록 취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12)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13)에 해당한 때	법 제13조제2항 제7호	사업 정지 3월	사업 정지 6월	등록 취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	8. 건강진단 실시방법이 부적정하거나 마.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업무를 방해·거부 또는 기	제24조제1항제5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행규칙 별표4	그 밖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건강진단기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한 경우				

③ 행정제재처분의 절차(1차-,2차-,3차-,4차 처분)는 선행 처분시보다 중한 처분규정을 두도록 하며, 경고- 경고의 경우 경고- 시정명령 또는 경고- 영업(업무)정지 -개월의 형식에 따른다. 영업(업무)정지의 경우 일반적인 입법 규정형식에 따라 선행 처분(2차 처분)의 2 배에 해당하는 처분규정을 두도록 조정한다(1-,3-,6개월).

<정비 고려 대상법령 예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1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조사나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제15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법 제18조 제1항제14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장부·대장,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28.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법 82조 제2항제23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XIV.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제출

1. 현행 규정 예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온천법 시행규칙 별표1의2	6.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 7 조 ④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 온천검사 실적 및 검사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법 제 7조 제 3항 제 5 호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3의2.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2호의2	영업정지 4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4. 건강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24조제1항제1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규칙 별표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8. 건강진단 실시 방법이 부적정하거나 그 밖에 지방노동관서의장이 건강진단기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누락한 경우	제24조제1항제5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다. 건강진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를 적지 아니하는 등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에 기재사항을 기입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사. 직업병의 소견이 있는 자의 발생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5	23. 법 제1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한 때	학원	법 제113조 제1항제9호	7일 이하 운영정지	7일초과 ~ 15일이하 운영정지	15일초과 ~ 1월이하 운영정지	1월초과 ~ 2월이하 운영정지
		전문학원	법 제113조 제1항제9호	7일 이하 운영정지	7일초과 ~ 15일이하 운영정지	15일초과 ~ 1월이하 운영정지	1월초과 ~ 2월이하 운영정지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제141조 (지도 및 감독 등) ②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시설·설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설비, 장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시설·설비의 개선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p> <p>1.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2. 학원등 설립·운영자</p>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3. 제10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학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16)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6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3) 법 제18조제3항·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폐기물인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14)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수위·수량 및 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22조 (먹는샘물 제조업자의 사후관리) ①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 제조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위, 수량, 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이하 “측정결과”라 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	법 제48조제1항제7호	경고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라 받은 측정결과를 분석하게 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측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먹는샘물이 제36조제1항에 따른 성분 규격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먹는샘물 제조업자의 취수를 제한하거나 중단하게 할 수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2	(14) 법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때	법 제23조의6 제3항제7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20일	업무정지 30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13) 반기별 처리실적 보고를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법 제64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8)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통량 파악 또는 배출량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법 제27조제8호·제36조제8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경고			

2. 정비사유

자료의 제출은 다수의 개별법에서 제출의무에 대한 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적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료의 제출은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자료의 미제출에 대한 제재적 처분으로서 취소, 정지 등의 과도한 처분을 규정하고 있어 문제시 되는 것이다.

3. 정비 지침안

- ① 자료의 제출은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절차적 작위의무이므로, 이의 미제출에 있어서는 제1차적 처분에서 곧바로 영업정지 등을 규정 할 것이 아니라 제출을 독촉하기 위한 경고 (제1차 처분이 영업(업무)정지 1개월 이하인 경우) 또는 시정명령 (제1차 처분이 영업(업무)정지 3개월 이상인 경우)을 우선적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정비 고려 대상법령 예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온천법 시행규칙 별표1의2	6.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 7 조 ④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 온천검사 실적 및 검사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법 제 7조 제 3항 제 5호	영업정지 6월	등록 취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3의2.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등을	법 제82조제1항 제2호의2	영업정지 4월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거짓으로 제출한 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4. 건강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24조제1항 제1호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8. 건강진단 실시 방법이 부적정하거나 그 밖에 지방노동관서의장이 건강진단기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4조제1항제5호	가.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누락한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다. 건강진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를 적지 아니하는 등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에 기재사항을 기입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라.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사. 직업병의 소견이 있는 자의 발생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5	23. 법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또는	학원	법 제113조 제1항제9호	7일 이하 운영 정지	7일초과 ~ 15일이하 운영정지	15일초과 ~ 1월이하 운영정지	1월초과 ~ 2월이하 운영정지
		전문학원	법 제113조 제1항제9호	7일 이하	7일초과 ~ 15일이하	15일초과 ~ 1월이하	1월초과 ~ 2월이하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보고한 때</p> <p>제141조 (지도 및 감독 등) ②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시설·설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설비, 장비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시설·설비의 개선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p> <p>1.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2. 학원등 설립·운영자 3. 제104조제</p>		운영 정지	운영정지	운영정지	운영정지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학감						

② 자료의 미제출과 허위·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하며, 일반 입법의 규정형식상 허위·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미제출의 경우 보다 중한 처분규정을 둔다. 다만 개별 법률에서 양자를 동일시하여 처분하여야 할 사유 또는 입법자의 의도가 명확할 시에는 이를 동일하게 처분한다.

<정비 고려 대상법령 예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5	23. 법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한 때	학원	법 제113조 제1항제9호	7일 이하 운영정지	7일초과 ~ 15일이하 운영정지	15일초과 ~ 1월이하 운영정지	1월초과 ~ 2월이하 운영정지
		전문학원	법 제113조 제1항제9호	7일 이하 운영정지	7일초과 ~ 15일이하 운영정지	15일초과 ~ 1월이하 운영정지	1월초과 ~ 2월이하 운영정지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설비, 장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시설·설비의 개선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p> <p>1.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2. 학원등 설립·운영자 3. 제10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학감</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16)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6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3) 법 제18조제3항·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인계서를 작성	법 제27조제8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폐기물인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p>14)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수위·수량 및 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p> <p>제22조 (먹는샘물 제조업자의 사후관리) ① 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 제조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위, 수량, 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이하 "측정결과"라 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②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라 받은 측정결과를 분석하게 할 수 있다.</p> <p>③시·도지사는 측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먹는샘물이 제36조제1항에 따른 성분 규격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먹는샘물 제조업자의 취수를 제한하거나 중단하게 할 수 있다.</p>	법 제48조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2	(14) 법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법 제23조의6 제3항제7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20일	업무정지 30일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자료를 제출한 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13) 반기별 처리실적 보고를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법 제64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8)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통량 파악 또는 배출량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법 제27조제8호·제36조제8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경고			

③ 행정제재처분의 절차(1차-,2차-,3차-,4차 처분)는 선행 처분시보다 중한 처분규정을 두도록 하며, 경고- 경고의 경우 경고- 시정명령 또는 경고- 영업(업무)정지 -개월의 형식에 따른다. 영업(업무)정지의 경우 일반적인 입법 규정형식에 따라 선행 처분(제2차)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규정을 두도록 조정한다(1-,3-,6개월).

<정비 고려 대상법령 예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2	(14) 법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때	법 제23조의6 제3항제7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20일	업무정지 30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13) 반기별 처리실적 보고를 지정한 기간 내에	법 제64조	경고	경고	영업정지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10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 칙 별표5	(8)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통량 파악 또는 배출량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법 제27조제8호·제36조제8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월

④ 행정제재처분절차가 제1차 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 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두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서 보다 구체화하는 입법형식에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 해당 의무위반자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바, 의무위반행위와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정비 고려 대상법령 예시>

법률명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3의2.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때	법 제82조제1항 제2호의2	영업정지 4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경고			

제 3 절 변형된 과징금제도의 문제점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소위 “변형된 과징금”제도에 있어 특히 과징금 부과금액과 관련하여 현행 변형된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는 총 90개의 법령을 통하여 고찰한다면,

번호	법령명	비고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 (과징금)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과징금 처분)	
3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영업정지등)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과징금의 처분 등)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과징금 부과)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의2 (과징금)	
7	공인회계사법 제52조의2 (과징금의 부과)	
8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과징금처분)	
9	관광진흥법 제37조 (과징금의 부과)	
10	관세법 제327조의2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11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2 (과징금)	
1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과징금)	
1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 (과징금 처분)	
1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과징금)	
15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3조 (과징금)	
16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과징금 처분)	
17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 (과징금)	
18	도시철도법	
1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과징금처분)	
20	먹는물관리법 제51조 (과징금 처분)	
21	모자보건법 제15조의11 (과징금)	
2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과징금)	
23	물류정책기본법 제67조 (과징금)	
2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과징금)	
25	방송법 제19조 (과징금 처분)	
2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 (과징금의 부과)	
27	비료관리법 제21조 (과징금처분)	
28	사료관리법 제26조(과징금처분)	
29	삭도·궤도법 제16조의2 (과징금처분)	
3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3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3 (과징금)	
32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43조 (과징금)	

제 2 편 행정처분기준의 실제

번호	법령명	비고
3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과징금), 제35조 (과징금)	
34	석탄산업법 제21조 (등록의 취소등)	
3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과징금처분)	
36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과징금처분)	
37	수산업법 제89조 (과징금 처분)	
38	수상레저안전법 제15조 (과징금)	
3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3조 (과징금 처분), 제66조 (과징금 처분)	
40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과징금)	
41	식품위생법 제65조 (과징금 처분)	
4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8조 (과징금)	
43	악취방지법 제12조 (과징금 처분)	
4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 (과징금)	
45	약사법 제81조 (과징금처분)	
4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과징금 처분)	
47	여신전통금융업법 제58조 (과징금처분)	
4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과징금)	
49	원양산업발전법 제29조 (과징금 처분)	
50	원자력법 제17조 (건설허가의 취소등), 제68조 (생산·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5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과징금의 부과 등)	
5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3조 (과징금처분)	
5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의2 (과징금 처분)	
5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9조 (과징금 처분)	
55	음약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과징금 부과)	
5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7조 (과징금)	
57	의료급여법 제29조 (과징금 등)	
58	의료기기법 제33조 (과징금처분)	
59	의료법 제67조 (과징금 처분)	
6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5조 (과징금)	
61	자동차관리법 제74조 (과징금의 부과)	
6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8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6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과징금 처분)	
64	저작권법 제111조 (과징금 처분)	
65	전기공사업법 제28조 (등록취소등)	
66	전기사업법 제12조 (사업허가의 취소 등)	
67	전기통신기본법 제24조 (과징금의 부과)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적용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번호	법령명	비고
68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과징금의 부과 등)	
69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5 (지정취소 및 과징금)	
70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 (과징금)	
71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정의 취소 등)	
7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과징금)	
73	전자서명법 제13조 (과징금의 부과)	
74	전파법 제73조 (과징금의 부과·징수)	
75	정신보건법 제12조의3 (과징금처분)	
76	주차장법 제24조 (영업정지등)	
77	주택법 제54조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7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5조 (사업허가의 취소등)	
79	철도사업법 제17조 (과징금처분)	
80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8조 (과징금처분)	
81	축산법 제41조 (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	
82	폐기물관리법 제28조 (과징금 처분), 제46조의2 (과징금 처분)	
83	하수도법 제50조 (과징금)	
84	항공법 제111조의6 (과징금의 부과), 제115조의4 (과징금의 부과), 제131조 (과징금의 부과), 제138조의3 (과징금의 부과)	
85	항만법 제37조 (과징금 처분)	
86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6 (과징금)	
8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과징금)	
88	해운법 제19조 (면허의 취소 등), 제35조 (등록의 취소 등)	
8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과징금의 부과)	
90	화장품법 제22조 (과징금처분)	

- 업무 정지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37개 법률)
 - 제재 대상 업체의 규모나 매출액을 고려하지 않은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등 24개 법률)
 - 1990년대 이후 과징금액을 수정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 법률 (『자동차관리법』등 35개 법률) 등으로 분류되어 질 수 있다. ([붙임-5] 변형된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불합리한 법률)
- 따라서 이와 같이 비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비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변형된 과징금제도의 개선을 위

하여서는 과징금부과기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입법모델을 마련하는 것이며, 과징금 부과금액과 관련하여서는 본래의 제도 취지에 상응하여 영업정지 기간, 대상기관의 규모 또는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¹²⁴⁾

124) 예시적으로, 조업정지기간 X 기간당 부과금액 (매출액 등에 따라 차등).

제 3 장 요약 및 결론

제2편에서는 제1편을 통하여 제시된 현행 행정처분기준의 운용현황과 문제점의 개선을 위하여 행정처분기준정비지침의 내용에 근거하여 그 개선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무엇보다 지침의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개별기준에 있어 처분양정의 문제와 유사의무위반행위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제재적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213개의 하위법령의 시행령·시행규칙상 개별기준을 변경신고의무위반 등 15개 유사의무위반행위로 구분하여 각각의 법리적 문제점과 정비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즉, 변경신고의무위반의 경우, 정비사유로서 신고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단체에 법률사실이나 어떤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하며, 실무상 신고라는 용어 대신 ‘보고’나 ‘명세서’ 등의 형식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신고를 하고자 하는 국민의 서류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업무는 수리이며 이는 준 법률적 행위이다. 국민의 정부시절 규제개혁의 관점에서 종전의 허가 또는 등록의 대상들이던 규정들이 다수 신고로 전환되어진 바 있으나, 단순히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중한 처분을 받거나 또는 그 의무위반에 대한 법적효과에 있어 변함없이 허가 등록규정 의무위반과 동일한 행정처분기준으로 처벌되어지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의무위반의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적인 허위·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와 단순 변경신고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제재처분의 양정을 달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단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소지의 변경 등과 같이 단순한 신고의무가 아닌 영업행위를 지속하거나 또는 물품의 제조 시에는 고의·과실적인 제재처분에

준하여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적 처분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리적으로 성격이 상이한 신고-, 등록-, 허가의무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을 달리 정비하여 법리적으로도 합당하게 행정제재처분절차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정비 지침으로서, 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는 이를 구분 하여 규정하도록 하며 이때 일반적 범형식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보다 중한 제재처분을 규정한다. 또한 주소지 이전 등의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무위반의 경우와 변경신고 없이 영업행위를 지속하거나 또는 물품을 제조하는 등의 의무위반행위는 달리 규정하도록 한다. ② 변경신고의무위반에 대한 제1차 처분 시 즉각적인 과도한 처분(영업정지, 등록·허가의 취소, 폐쇄 등)은 의무위반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야기하는 바, 자기시정의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기 위한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우선적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이때 의무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제1차 처분이 영업정지1개월 미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그 이상인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규정하도록 한다. 다만,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공중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개업-, 폐업-, 변경신고를 동일한 행정제재처분기준으로 규정하지 않고, 이를 개업-, 폐업신고와 변경신고로 구분하여 처분기준을 규정하도록 한다. 이때 영업권의 시작과 종결을 의미하는 개·폐업신고와 달리 영업자의 영업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경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보다 중한 처분을 규정하도록 한다. ④ 행정제재처분의 절차(1차-,2차-,3차-,4차 처분)는 선행 처분시보다 중한 처분규정을 두도록 하며, 경고-경고의 경우 경고-시정명령 또는 경고-영업(업무)정지-개월의 형식에 따른다. 영업(업무)정지의 경우 일반적인 입법 규정형식

에 따라 선행 처분(제2차)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규정을 두도록 조정한다(1-,3-,6개월). 또한 경고와 시정명령은 비록 실무상에 있어 사실적 구속력이 있는 동일한 처분기준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나, 양자는 법리적으로 명백히 구분되는 것인 바, 이를 동일처분기준으로 규정하지 않음을 제시하여 보았다.

유사의무위반행위별 분류에 따른 행정제재처분기준의 상이한 모습을 통하여 알 수 있듯 유사의무위반행위로 인해 제재처분을 받게 되는 위반행위자 간의 형평성은 유지 및 관련 법령간 체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유사 의무위반행위별 공통의 처분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개별 법률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법익의 특수성은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행정처분기준상 일반기준의 규정내용에 관한 문제에 있어, 첫 번째로 가중·감경 등 규정상 미비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현행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213개의 하위법령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147개의 가중·감경기준이 미비한 법령 중 가중·감경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5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4조 관련) 등 76개의 법령에서는 신속히 가중·감경기준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 그 적용사유에 있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최소한 위반의 동기·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야 함을 규정하여 집행공무원의 법규적용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의무위반상황에 상응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배려가 필요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법령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일정기간”의 개념 비통일에 관한 문제에 있어 213개의 법령상 차수산정의 기간규정이 결여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3]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허가취소등행정처분기준 등 총 27개의 법령에서는 신속히 이를 규정하여야 하며, 상이하게 규정된 기준은 위반의 실태와 의무의 중요성 등을 고

려하여 “최근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정비하여야 함을 제시하였으며,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의 제재기준 비 일원화 문제에 관하여 규정이 없는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의22관련) 등 총 26개 법령은 신속히 규정을 두도록 하여야 하며, 공통된 처분기준으로서 현행 과반수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입법자가 의도한 바와 같이, “보다 중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이상의 위반행위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다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의 1/2까지 가중”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변형된 과징금의 경우, 업무 정지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7개 법률), 제재 대상 업체의 규모나 매출액을 고려하지 않은 법률 (『산업안전 보건법』 등 24개 법률), 1990년대 이후 과징금액을 수정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 법률 (『자동차관리법』 등 35개 법률) 등으로 분류되어 질 수 있음을 제시하고 이와 같이 비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변형된 과징금제도의 개선을 위하여서는 과징금부과기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입법모델을 마련하는 것이며, 과징금 부과금액과 관련하여서는 본래의 제도 취지에 상응하여 영업정지 기간, 대상기관의 규모 또는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을 제시하여 보았다.

제 3 편 결 론

제1편에서는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법리적 성격에 근거한 법 이론적 연구와 주요국가의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법이론의 개관 및 현행 우리나라의 행정처분기준 운용현황과 문제점에 근거한 행정처분기준 정비 지침 정립의 중요성을 그 주요대상으로 하였다.

행정처분기준이란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량준칙을 의미하며, 특히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영업정지, 인·허가·등록 취소, 과징금 (특히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경고, 시정명령 등)을 적용하는 집행공무원에게 재량권이 인정된 취지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매우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합목적적이고 구체적 타당성 있는 행정권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행정제재처분기준은 집행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재량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그리고 처분의 객체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보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종래 꾸준히 그 법리적·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 왔다. 특히 행정제재처분기준의 입법형식(대통령령 또는 부령의 형식)에 따른 법규성 인정여부는 우리나라 행정법학에 있어 중대한 논의대상으로서 자리매김 해 온 바 있다.

이러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법리적 성격에 관하여 주요국가의 경우, 독일에서의 행정처분기준이라 함은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량준칙 (Ermessensrichtlinie)을 의미하며, 일부 학설에 의하면 재량준칙은 단지 행정내부의 실무만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해서도 재량행사의 적법성이 행정규칙에서 직접 나온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의 통설에 의하면 재량준칙은 “법규범적 성격 (Rechts- charakter)”을 가지지 않는다. 즉, 재량준칙에 있어서는 그 법적 대외적 효력은 행정의 자기구속을 매개로 하여 다만 간접적으로 발생한다. 재량영역에 있어서는 행정규칙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재량의 평등한 행사가 보장되도록 도와준다. 기본법 제3조 제1항 (평등 원칙)은 행정부가 그 재량을 평등원칙에 적합하게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 행정규칙에 미리 규정된 이 평등한 행정관행으로부터 행정부는 오직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벗어날 수 있다. 결국 재량준칙은 그것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외적으로 행정의 자기구속을 매개로 하여 법적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독일의 통설의 입장이라 하겠다. 독일에 있어 행정입법에 해당하는 법규형식으로서 법규명령, 조례 외에 행정규칙이라 함은, “행정조직 내부의 일반-추상적 규정으로서 상급관청 또는 상급자가 하급관청 또는 하급자에게 발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조직과 활동을 규정한 법규정”이라 할 것이다. 이는 법령, 처분, 지침, 업무규정, 지시등의 용어로 사용되어 지고 있으며 이러한 용어의 혼용에 대한 통일적인 용어의 정립은 다양한 규정형식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나 이의 법실체적인 필요성은 적은 것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규칙은 기능적인 관점에서 크게, ①조직법적인 행정규칙(Organisatorische Verwaltungsvorschriften), ②행정작용적 행정규칙(verhaltenslenkenden Verwaltungsvorschriften)으로 구분되어지며, 후자의 경우 다시, 법률에 근거한 행정규칙(Gesetzesakzessorische Verwaltungsvorschriften)과 법률의 영역으로부터 자유로운 법률대위적 행정규칙(Gesetzesvertretende Verwaltungsvorschriften)으로 구분되어 진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독일 행정규칙의 제정과 절차에 관한 규정과 각 개별 행정영역별 처분기준의 운용 현황을 검토하여 본다.

일본의 경우 행정법적인 재량이론에 대한 논의보다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심사에 보다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때문에 행정재량이 긍정되는 경우라도 그 행사는 무제약적인 것은 아니다. 우선 법률에 의한 수권이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그 한도에서 사법심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처분기준설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는 달리 법률에서

처분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형식이 아닌 주로 중앙행정기관의 통달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심사기준·처분기준의 형식으로 설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사인이 법령 또는 처분에 의해 부과된 법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다양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경우와는 달리, 행정청은 사인과 마찬가지로 자력집행력이 인정되지 않는 결과, 사인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의무의 강제집행은 행정청이 법원에 법집행에 관한 소송(law enforcement lawsuit)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왔다. 따라서 환경행정에 있어서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는 배출허용기준 등의 상세화를 위한 행정입법(rule-making)은 우리와 유사하게 존재하나, 제재처분의 기준은 법원의 판결에 필요한 양형기준으로 존재할 수는 있으나, 우리와 같이 직접 처분의 기준으로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고려되어 진다. 그러나 행정 실무에 있어서는 처분의 기준에 관한 몇 가지 범주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주내서 운용되어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범주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광범한 영역에서 대량의 집행이 요구되는 환경행정에 있어서 법원의 판결을 통한 집행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입법자가 행정청이 일정한 범위 내의 금전적 제재 등을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결과, 형성된 행정제재(administrative penalty)의 영역이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제재처분의 기준과 유사한 행정제재기준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 ② 행정청이 법원에 법집행소송을 제기할 때 어느 정도의 제재를 구형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광범한 영역에서 대량의 소제기가 있을 것이므로 각급 사건에서 구형할 형량이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필요에 따라 EPA는 소송 제기 시 구형할 벌금액 등을 산출할 때 적용할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③ 법집행소송의 제기를 전후하여 환경행정청과 피규제자가 제재 등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므로, 그 합의가 자의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등이며, 이와 같은 범주를 통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이 운용되어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무에 있어서는 위에서 언급한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적 문제보다는 현행 규정상 운용에 관한 의문과 오해에 따른 국민의 권익 침해가 날로 증가하여 왔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 집행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행정처분기준의 규정화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목적과 수단 간 합리성의 요구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2006년부터 수립·보완되어온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은 2008년도에 실무에 있어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와 실무가의 자문을 거쳐 정립되었다.

2008년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은, 행정처분기준의 일반원칙을, “① 공무원과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비한다. ② 행정법상 일반원칙을 처분기준의 정비원칙으로 활용한다. 특히, 의무위반행위와 제재수단간 비례의 원칙과 법령간 유사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간 평등의 원칙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일반적인 행정처분기준의 근거조항은 법률에 두되,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적당치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한다. ④ 포괄적 행정처분기준의 반복을 금지하도록 정비한다. ⑤ 상습위반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반횟수에 따라 처분기준을 차등화 하도록 한다. ⑥ 처분기준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비한다. ⑦ 행정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논리적이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그리고 행정처분기준에 있어 일반기준에 관한 정비지침을, “① 행정처분기준이 재량준칙으로

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속적 표현은 피하도록 정비한다. ②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가 합리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며, 최소한 동기 또는 의무위반횟수를 고려하여 규정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가중·감경기준은 2분의 1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무위반 행위와 제재내용 간의 비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는 가중·감경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의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사유는 영업정지처분사유와 일치시키도록 한다. ⑤ 영업활동에 따른 사소한 신고의무위반은 신고의 법리적 성격을 고려하여 허가취소사유로 하지 않는다. ⑥ 처분기준은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해서 정하되, 가급적 절대기준이 아닌 상한으로 제시하는 입법형식을 따른다. ⑦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기준이 아닌 직접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정비한다. ⑧ 행정쟁송결과 원고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그 처분이 과하다고 판결된 사건에 대하여 행정청이 당해 행정쟁송의 원인이 된 처분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일정한 정도 감하여 재처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정비한다.” 끝으로 개별기준을, “① 위반행위란과 근거 법령란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정비한다. 그리고 “위반행위”와 “근거법령”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정비한다. ② 경고처분을 두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③ 위반주체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위반주체별로 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④ 과징금 상한액을 다른 법령의 내용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정비 한다.”와 같이 수립되었다.

제2편에서는 제1편을 통하여 제시된 현행 행정처분기준의 운용현황과 문제점의 개선을 위하여 행정처분기준정비지침의 내용에 근거하여 그 개선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무엇보다 지침의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개별기준에 있어 처분양정의 문제와

유사의무위반행위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제재적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213개의 하위법령의 시행령·시행규칙상 개별기준을 변경신고의무위반 등 15개 유사의무위반행위 (변경신고, 준수사항위반, 지정·허가·등록기준 위반, 등록후 영업미개시 또는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명의대여, 일괄하도급,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지정·허가·등록 결격사유, 금지행위위반, 기록보존의무 위반, 포괄금지조항, 관리기준위반, 표시기준위반, 출입·조사 방해 및 거부,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로 구분하여 각각의 법리적 문제점과 정비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즉, 변경신고의무위반의 경우, 정비사유로서 신고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단체에 법률사실이나 어떤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하며, 실무상 신고라는 용어 대신 ‘보고’나 ‘명세서’ 등의 형식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신고를 하고자 하는 국민의 서류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업무는 수리이며 이는 준 법률적 행위이다. 국민의 정부시절 규제개혁의 관점에서 종전의 허가 또는 등록의 대상들이던 규정들이 다수 신고로 전환되어진 바 있으나, 단순히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중한 처분을 받거나 또는 그 의무위반에 대한 법적효과에 있어 변함없이 허가 등록규정 의무위반과 동일한 행정처분기준으로 처벌되어지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의무위반 의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적인 허위·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와 단순 변경신고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제재처분의 양정을 달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단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주소지의 변경 등과 같이 단순한 신고의무가 아닌 영업행위를 지속하거나 또는 물품의 제조 시에는 고의·과실적인 제재처분에 준하여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적 처분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리적

으로 성격이 상이한 신고-, 등록-, 허가 의무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을 달리 정비하여 법리적으로도 합당하게 행정제재처분절차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정비 지침으로서, 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는 이를 구분 하여 규정하도록 하며 이때 일반적 범형식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보다 중한 제재처분을 규정한다. 또한 주소지 이전 등의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무위반의 경우와 변경신고 없이 영업행위를 지속하거나 또는 물품을 제조하는 등의 의무위반행위는 달리 규정하도록 한다. ② 변경신고의무위반에 대한 제1차 처분 시 즉각적인 과도한 처분(영업정지, 등록·허가의 취소, 폐쇄 등)은 의무위반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야기하는 바, 자기시정의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기 위한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우선적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이때 의무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제1차 처분이 영업정지1개월 미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그 이상인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규정하도록 한다. 다만,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공중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개업-, 폐업-, 변경신고를 동일한 행정제재처분기준으로 규정하지 않고, 이를 개업-, 폐업신고와 변경신고로 구분하여 처분기준을 규정하도록 한다. 이때 영업권의 시작과 종결을 의미하는 개·폐업신고와 달리 영업자의 영업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경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보다 중한 처분을 규정하도록 한다. ④ 행정제재처분의 절차(1차-,2차-,3차-,4차 처분)는 선행 처분시보다 중한 처분규정을 두도록 하며, 경고-경고의 경우 경고-시정명령 또는 경고-영업(업무)정지-개월의 형식에 따른다. 영업(업무)정지의 경우 일반적인 입법 규정형식에 따라 선행 처분(제2차)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규정을 두도록 조정한다 (1-,3-,6개월). 또한 경고와 시정명령은 비록 실무상에 있어 사실

적 구속력이 있는 동일한 처분기준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나, 양자는 법리적으로 명백히 구분되는 것인 바, 이를 동일처분기준으로 규정하지 않음을 제시하여 보았다.

유사의무위반행위별 분류에 따른 행정제재처분기준의 상이한 모습을 통하여 알 수 있듯 유사의무위반행위로 인해 제재처분을 받게 되는 위반행위자 간의 형평성은 유지 및 관련 법령간 체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유사 의무위반행위별 공통의 처분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개별 법률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법익의 특수성은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행정처분기준상 일반기준의 규정내용에 관한 문제에 있어, 첫 번째로 가중·감경 등 규정상 미비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현행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213개의 하위법령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147개의 가중·감경기준이 미비한 법령 중 가중·감경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5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4조 관련) 등 76개의 법령에서는 신속히 가중·감경기준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 그 적용사유에 있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최소한 위반의 동기·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야 함을 규정하여 집행공무원의 법규적용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의무위반상황에 상응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배려가 필요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법령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일정기간”의 개념 비통일에 관한 문제에 있어 213개의 법령상 차수산정의 기간규정이 결여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3]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허가취소등행정처분기준 등 총 27개의 법령에서는 신속히 이를 규정하여야 하며, 상이하게 규정된 기준은 위반의 실태와 의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최근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정비하여야 함을 제시하였으며,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의 제재기준 비 일원화 문제에 관하여 규정

이 없는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의22관련) 등 총 26개 법령은 신속히 규정을 두도록 하여야 하며, 공통된 처분기준으로서 현행 과반수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입법자가 의도한 바와 같이, “보다 중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이상의 위반행위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다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의 1/2까지 가중”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변형된 과징금의 경우, 업무 정지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37개 법률), 제재 대상 업체의 규모나 매출액을 고려하지 않은 법률 (『산업안전 보건법』등 24개 법률), 1990년대 이후 과징금액을 수정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 법률 (『자동차관리법』등 35개 법률) 등으로 분류되어 질 수 있음을 제시하고 이와 같이 비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변형된 과징금제도의 개선을 위하여서는 과징금부과기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입법모델을 마련하는 것이며, 과징금 부과금액과 관련하여서는 본래의 제도 취지에 상응하여 영업정지 기간, 대상기관의 규모 또는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을 제시하여 보았다.

붙임 자료

[붙임-1] 시행령·시행규칙 별표상 행정처분기준(일반기준) 주요내용 현황표

번호	법령명	차수 적용 기준	타행위의 판단기준	경감 사유	경감 기준	2이상의 위반행위	위반 차수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상담소등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 (제15조 제1항 관련)	○	-	○	○	○	3차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	-	-	-	○	4차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9 행정처분기준(제31조 관련)	○	○	○	○	○	3차
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2]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취소·정지처분기준 (제79조 관련)	-	-	-	-	○	1차 (일반기준 무)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행정처분기준(제32조 제1항관련)	○	-	-	-	○	4차
6	건축사법 시행령[별표 1] 업무정지등처분기준(제29조의2관련)	-	-	○	○	○	1차

붙임 자료

번호	법령명	차수 적용 기준	타행위의 판단기준	경감 사유	경감 기준	2이상의 위반행위	위반 차수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행정처분의 기준(제26 조제1항 관련)	○	○	○	○	○	4차
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제12 조 관련)	○	-	○	○	○	3차
9	경비업법시행령[별표 4] 행정처분기준(제24 조관련)	○	-	○	○	○	3차
10	경비업법시행령[별표 5] 경비지도사 자격정 지처분 기준 (제25조 관련)	○	-	-	-	-	3차 (일반기 준 무)
11	계량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별표3 형식승인의 취소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	-	○	○	○	2차
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3의 2] 행정처분기준 (제 15조의3관련)	○	-	○	○	○	4차
13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1의2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제24조 관련)	○	-	○	○	-	1차
14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1의3 골재채취중지 처분의 기준(제32조의2 관련)	○	-	○	○	-	1차
15	공연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제7조관련)	○	-	-	-	○	3차

[붙임-1] 시행령·시행규칙 별표상 행정처분기준(일반기준) 주요내용 현황표

번호	법령명	차수 적용 기준	타행위의 판단기준	경감 사유	경감 기준	2이상의 위반행위	위반 차수
16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행정처분기준(제19조 관련)	○	-	○	○	○	4차
17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7 관광중사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57조 관련)	○	-	-	-	○	4차
18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제33조제1항 관련)	○	-	-	-	○	4차
19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9조 관련)	○	-	○	○	○	3차
20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 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 보안심사대행기관 및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48조제1항 및 제52조 관련)	○	-	○	○	○	3차
2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행정처분기준 (제6조관련)	-	-	○	○	○	1차
2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1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제6조제3항 관련)	○	-	○	○	○	1 차

붙임 자료

번호	법령명	차수 적용 기준	타행위의 판단기준	경감 사유	경감 기준	2이상의 위반행위	위반 차수
2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법 시행규칙 별표2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제9조 제3항관련)	○	-	○	○	○	1차
2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법 시행규칙 별표3 지정 직업훈련 시설의 지정취소 등의 조치 기준(제13조관련)	○	-	-	-	○	3차
25	금강수계물관리및주 민지원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5 행정처분기준(제24조 관련)	○	-	-	-	○	4차
26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0 행정처분기준(제18조 관련)	○	○	○	○	○	3차
27	기상법 시행규칙[별표 1] 기상사업자에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1조 제1항관련)	○	-	○	○	-	3차
28	낙동강수계물관리및 주민지원등에 관한법 률시행규칙 별표6 행정처분기준(제26조 관련)	○	-	-	-	○	4차
29	낙시어선업법 시행규 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제11조 제1항관련)	○	○	○	○	○	5차

[붙임-1] 시행령·시행규칙 별표상 행정처분기준(일반기준) 주요내용 현황표

번호	법령명	차수 적용 기준	타행위의 판단기준	경감 사유	경감 기준	2이상의 위반행위	위반 차수
30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허가의 취소 및 정지기준 (제12조 제1항관련)	-	-	-	-	○	3차
3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1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제1항 관련)	○	-	○	○	○	4차
32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5조 제1항관련)	○	-	○	○	○	3차
33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4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5조의6관련)	○	-	○	○	○	3차
34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6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제15조의8관련)	○	-	○	○	○	3차
35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39조제1항관련)	○	-	○	○	○	3차

붙임 자료

번호	법령명	차수 적용 기준	타행위의 판단기준	경감 사유	경감 기준	2이상의 위반행위	위반 차수
36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별표 1] 표시변경등의처분기준 (제19조관련)	○	○	○	○	○	3차
37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위반행위별처분기준 (제56조관련)	○	-	○	○	○	3차
38	농약관리법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제11조관련)	○	-	○	○	○	3차
39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4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등에 대한 처분 기준(제47조 관련)	○	-	○	○	○	4차
40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6 허가취소등의 처분기준(제55조 관련)	○	-	-	-	○	3차
4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3] 평가대행자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 (제20조관련)	○	-	○	○	○	4차
4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행정처분기준(제134조관련)	○	-	-	-	○	4차
4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기준(제91조제1항관련)	별점제.					

[붙임-1] 시행령·시행규칙 별표상 행정처분기준(일반기준) 주요내용 현황표

번호	법령명	차수 적용 기준	타행위의 판단기준	경감 사유	경감 기준	2이상의 위반행위	위반 차수
4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4] 강사·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정지의 기준(제123조제1항관련)	○	-	○	○	○	3차
4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5] 자동차운전학원·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129조제1항관련)	○	○	-	-	○	4차
46	도선법 시행규칙 별표2 도선사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제2항 관련)	○	-	○	○	○	3차
47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2 행정처분기준(제10조의2관련)	○	-	○	○	○	4차
48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조 관련)	○	-	○	○	○	3차
49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별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조관련)	-	-	○	○	○	1차
50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6 행정처분기준(제25조 관련)	○	-	○	○	○	3차
51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행정처분기준(제52조제1항 관련)	○	-	○	○	○	3차

붙임 자료

번호	법령명	차수 적용 기준	타행위의 판단기준	경감 사유	경감 기준	2이상의 위반행위	위반 차수
5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행정처분기준(제43조 관련)	○	○	○	○	○	4차
53	먹는물관리법 시행규 칙 별표9 행정처분기준(제39조 관련)	○	○	○	○	○	4차
54	모자보건법 시행령[별 표 1] 행정처분기준 (제17조관련)	○	-	○	○	○	3차
5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령[별표 1] 행정처 분기준(제18조 관련)	-	-	-	-	○	2차
56	문화재보호법 시행규 칙[별표 7]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제19조 관련)	○	-	○	○	○	3차
5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별표2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의 기준(제13조 관련)	-	-	○	○	○	2차
58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규칙 별표2 위반행위별 처분의 기준(제10조 관련)	-	-	○	○	○	2차
5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률 시행령[별표 1] 영 업정지및등록취소처분 기준기준(제50조관련)	○	-	-	-	○	4차

[붙임-1] 시행령·시행규칙 별표상 행정처분기준(일반기준) 주요내용 현황표

번호	법령명	차수 적용 기준	타행위의 판단기준	경감 사유	경감 기준	2이상의 위반행위	위반 차수
6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어업활동 또는 시험·연구 등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2조관련)	○	○	○	○	○	3차
6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영업정지처분의 세부 기준(제20조 관련)	○	-	○	○	-	1차
62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4 지정인증기관 및 지정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제37조관련)	○	-	○	○	○	3차
63	비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제16조 제2항관련)	○	○	○	○	○	3차
64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제7조제1항관련)	-	○	-	-	-	1차 (일반기준 무)
65	사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10 행정처분기준(제32조 관련)	○	○	○	○	○	3차

붙임 자료

번호	법령명	차수 적용 기준	타행위의 판단기준	경감 사유	경감 기준	2이상의 위반행위	위반 차수
66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1] 행정처분기준표(제26조관련)	○	-	-	-	○	3차
67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	-	○	○	○	3차
68	삭도·궤도법 시행규칙[별표 1]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관련)	○	-	○	○	○	3차
6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 중·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5조관련)	○	-	○	○	○	3차
7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0 행정처분기준(제143조의2관련)	○	-	○	○	○	3차
71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2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6조 관련)	○	-	○	○	○	4차
72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1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 기준(제28조 관련)	○	-	○	○	○	3차
73	상표법 시행규칙[별표 3]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3조의3관련)	○	-	○	○	○	4차

[붙임-1] 시행령·시행규칙 별표상 행정처분기준(일반기준) 주요내용 현황표

번호	법령명	차수 적용 기준	타행위의 판단기준	경감 사유	경감 기준	2이상의 위반행위	위반 차수
7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관련)	○	-	○	○	○	3차
7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기준(제34조관련)	○	-	○	○	○	3차
76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13조 관련)	○	-	-	-	-	4차 (일반기준 무)
77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제1항 관련)	○	-	○	○	○	3차
7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제1항관련)	○	-	○	○	○	3차
79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행정처분 기준(제7조관련)	-	-	○	○	-	3차
80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조제1항 관련)	○	○	○	○	○	3차

붙임 자료

번호	법령명	차수 적용 기준	타행위의 판단기준	경감 사유	경감 기준	2이상의 위반행위	위반 차수
8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6] 행정처분기준(제44조 관련)	○	○	○	○	○	3차
82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별표 8] 형식승인취소 등에 관한 처분기준 (제17조관련)	-	○	○	○	○	3차
83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1 행정처분기준(제73조 관련)	○	-	-	-	○	4차
84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표 4] 처분기준(제9조관련)	○	-	-	-	-	4차
85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별표 4] 대행업자의 지정취소및영업정지 처분의기준 (제15조 관련)	○	-	-	-	-	3차
86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별표 6] 수로사업의 등록취소및영업정지 처분의기준 (제24조제 1항 관련)	○	-	-	-	-	3차
87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제4조 관련)	○	-	○	○	○	3차

[붙임-1] 시행령·시행규칙 별표상 행정처분기준(일반기준) 주요내용 현황표

번호	법령명	차수 적용 기준	타행위의 판단기준	경감 사유	경감 기준	2이상의 위반행위	위반 차수
88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제16조 제1항관련)	○	-	○	○	○	3차
89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의 기준(제37조관련)	○	-	○	○	○	4차
90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54조제1항 관련)	○	-	○	○	○	3차
91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별표 1] 표시정지등의 처분기준(제21조관련)	○	○	○	○	○	3차
92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별표 3] 중지·개선·보수명령등및 등록취소의 기준(제32조관련)	○	○	○	○	○	3차
9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별표 11] 우수사업장인증취소·정지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제36조제1항 관련)	○	-	○	○	○	4차
94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별표 12] 형식승인의 취소·정지 처분 기준(제43조 관련)	○	-	○	○	○	4차

붙임 자료

번호	법령명	차수 적용 기준	타행위의 판단기준	경감 사유	경감 기준	2이상의 위반행위	위반 차수
95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규칙[별표 13] 수상레 저사업등록의 취소· 정지처분 기준 (제44 조 관련)	○	-	○	○	○	4차
96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규칙[별표 2] 조종면 허의 취소·정지처분 의 기준 (제9조제1항 관련)	○	○	○	○	○	4차
97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규칙[별표 4] 시험대 행기관의 지정취소·정 지처분에 관한 세부기 준(제12조제2항 관련)	○	-	○	○	○	4차
98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규칙[별표 9] 검사대 행자의 지정취소·정 지처분에 관한 세부기 준(제29조제3항 관련)	○	-	○	○	○	4차
99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제24조 관련)	○	-	○	○	○	3차
100	수질 및 수생태계 보 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22 행정처분기준(제105조 제1항 관련)	○	-	-	-	○	4차
101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별 표] 행정처분 세부기준 (제17조의2제1항 관련)	○	-	-	-	○	4차

[붙임-1] 시행령·시행규칙 별표상 행정처분기준(일반기준) 주요내용 현황표

번호	법령명	차수 적용 기준	타행위의 판단기준	경감 사유	경감 기준	2이상의 위반행위	위반 차수
102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5 안전인증의 취소 및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 기준 (제8조의4제1항관련)	○	-	○	○	○	4차
103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의4 검사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제24조관련)	○	-	○	○	○	3차
104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제5조관련)	○	-	○	○	○	4차
105	약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7 행정처분기준(제19조관련)	○	-	-	-	○	4차
10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0 행정처분기준(제17조관련)	○	-	○	○	○	4차
107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2 행정처분의 기준(제78조 관련)	○	-	○	○	-	4차

붙임 자료

번호	법령명	차수 적용 기준	타행위의 판단기준	경감 사유	경감 기준	2이상의 위반행위	위반 차수
108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제33 조제1항 관련)	-	-	○	○	-	1차
109	약사법 시행규칙 별 표8 행정처분의 기준(제96 조 관련)	○	○	○	○	○	4차
110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정부관리양곡의 매입 자격 제한기준(제1조 의4관련)	○	-	○	○	○	3차
111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조 관련)	○	-	○	○	○	3차
1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 리법 시행규칙 별표1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3조제1항 관련)	○	-	○	○	○	4차
11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 표4 안전인증의 취소 등 처분기준(제13조 관련)	○	-	○	○	○	3차
114	어장관리법시행규칙 별표0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취소 등에 대한 처분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	-	-	○	3차

[붙임-1] 시행령·시행규칙 별표상 행정처분기준(일반기준) 주요내용 현황표

번호	법령명	차수 적용 기준	타행위의 판단기준	경감 사유	경감 기준	2이상의 위반행위	위반 차수
1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 택시운전자격의취소 등의처분기준(제51조제1항관련)	○	-	○	○	-	1차
1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및사업정지등의처분기준(제31조제1항관련)	-	○	-	-	-	1차
117	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염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2조관련)	○	-	-	-	○	3차
11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5 행정처분기준(제26조관련)	○	-	-	-	○	4차
119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10]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세부기준(제39조제2항관련)	○	-	-	-	○	3차
120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9] 보육시설에 대한행정처분의세부기준(제38조제1항관련)	○	-	-	-	○	3차

붙임 자료

번호	법령명	차수 적용 기준	타행위의 판단기준	경감 사유	경감 기준	2이상의 위반행위	위반 차수
1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제26 조제1항관련)	○	-	○	○	○	4차
1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 행령[별표 1] 행정처 분의기준(제22조관련)	○	-	○	○	○	4차
123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 시행령[별표 3] 등 록취소및영업정지의 처분기준(제43조의2제 1항관련)	○	-	-	-	○	3차
124	온천법 시행규칙 별 표1의2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취소 및 영업정 지처분 기준(제5조제6 항 관련)	○	-	-	-	-	2차
125	원양산업발전법 시행 규칙 별표3 원양어업 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 행정 처분요구의 기준(제20 조제1항 관련)	○	-	○	○	○	3차
12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위치정 보사업자등의 허가취 소 등의 처분기준(제14 조제1항 관련)	-	-	-	-	○	1차

[붙임-1] 시행령·시행규칙 별표상 행정처분기준(일반기준) 주요내용 현황표

번호	법령명	차수 적용 기준	타행위의 판단기준	경감 사유	경감 기준	2이상의 위반행위	위반 차수
12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 "행정처분기준(제25조, 제58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관련)	○	○	○	○	○	3차
128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행정처분의 기준(제9조제1항관련)	○	-	○	○	○	4차
129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행정처분기준(제46조제1항관련)	○	-	-	-	○	4차
1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	-	○	○	○	4차
1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8 행정처분기준(제45조관련)	○	-	○	○	○	3차
132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관련)	○	○	○	○	○	1차
13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7 행정처분기준(제35조관련)	○	○	○	○	○	4차
134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표3 영업의 폐쇄명령·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17조 관련)	○	-	○	○	○	3차

붙임 자료

번호	법령명	차수 적용 기준	타행위의 판단기준	경감 사유	경감 기준	2이상의 위반행위	위반 차수
135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자체검사업체 행정처분기준(제21조제3항 관련)	○	-	-	-	○	3차
136	인체조직안전및관리 등에 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3 행정처분 기준(제14조 관련)	○	-	○	○	○	3차
13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품질인증표시의 변경 또는 사용정지처분의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	-	-	-	-	3차
13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품질인증표시품의 판매정지 또는 품질인증취소처분의 기준(제13조제2항 관련)	○	-	-	-	-	3차
139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제19조관련)	○	-	-	-	○	4차
140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등의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규칙 [별표] 행정처분의 기준 (제5조관련)	-	-	○	○	-	3차

[붙임-1] 시행령·시행규칙 별표상 행정처분기준(일반기준) 주요내용 현황표

번호	법령명	차수 적용 기준	타행위의 판단기준	경감 사유	경감 기준	2이상의 위반행위	위반 차수
14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관련)	○	-	○	○	○	4차
14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배출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조 관련)	○	-	-	-	-	4차
14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0] 행정처분기준(제 20조 관련)	○	-	-	-	-	3차
14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제15조 관련)	○	-	-	-	○	3차
14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제21조 제1항 및 제22조제2 항 관련)	○	-	○	○	○	4차
146	장애인복지법 시행규 칙 별표7 행정처분기준(제64조 관련)	-	-	○	○	-	2차
147	재해경감을 위한 기 업의 자율활동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계획 수립 대행자에 대한 행정 처분의 기준(제12조제 1항 관련)	○	-	○	○	○	4차

붙임 자료

번호	법령명	차수 적용 기준	타행위의 판단기준	경감 사유	경감 기준	2이상의 위반행위	위반 차수
14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제17조제1항 관련)	○	-	-	-	○	4차
149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6조의4 관련)	○	-	○	○	○	3차
150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안전인증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17조의2 관련)	○	-	○	○	○	3차
151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별표 1] 사용정지 처분의 기준(제20조 관련)	-	-	-	-	○	1차
152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7 행정처분기준(제20조의9관련)	○	-	○	○	○	3차
153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1조관련)	-	-	-	-	○	1차
15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제34조관련)	○	-	-	-	○	4차

[붙임-1] 시행령·시행규칙 별표상 행정처분기준(일반기준) 주요내용 현황표

번호	법령명	차수 적용 기준	타행위의 판단기준	경감 사유	경감 기준	2이상의 위반행위	위반 차수
155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별표 1] 인증업무의정지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제9조제1항관련)	-	-	-	-	○	1차
156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제6조제1항관련)	○	-	○	○	○	1차
157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표] 지정시험기관의 행정처분기준(제12조제1항관련)	○	○	-	-	○	3차
158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별표 8] 정보통신기기인증취소등의 행정처분기준(제13조제1항관련)	○	-	-	-	-	2차
159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규칙[별표 3]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처분기준(제11조관련)	-	-	-	-	○	1차
16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 업무정지및지정취소의 처분기준(제10조 관련)	-	-	-	-	○	1차

붙임 자료

번호	법령명	차수 적용 기준	타행위의 판단기준	경감 사유	경감 기준	2이상의 위반행위	위반 차수
16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의 처분기준(제54조 관련)	-	-	-	-	○	1차
162	정신보건법시행규칙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제1항관련)	○	○	○	○	○	3차
163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1 종자관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01조관련)	-	-	-	-	○	1차
164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3 종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12조제1항 관련)	○	-	○	○	○	3차
165	지적법 시행규칙 별표6의2 지적측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제62조의4관련)	○	-	○	○	○	3차
166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제42조 제1항관련)	○	-	-	-	○	3차
167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행정처분기준(제24조	○	-	○	○	○	3차

[붙임-1] 시행령·시행규칙 별표상 행정처분기준(일반기준) 주요내용 현황표

번호	법령명	차수 적용 기준	타행위의 판단기준	경감 사유	경감 기준	2이상의 위반행위	위반 차수
	제2항 관련)						
16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운전면허취소·효력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35조관련)	○	-	-	-	○	4차
169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6]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3조 제2항관련)	○	-	-	-	○	4차
170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8]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63조 제1항관련)	○	-	-	-	○	4차
17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69조 제1항관련)	○	-	-	-	○	4차
17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3]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74조 제1항관련)	○	-	-	-	○	4차
173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신체검사지정병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기준(제15조 제1항관련)	○	-	-	-	○	4차
174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6] 적상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9조	○	-	-	-	○	4차

붙임 자료

번호	법령명	차수 적용 기준	타행위의 판단기준	경감 사유	경감 기준	2이상의 위반행위	위반 차수
	제1항관련)						
175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9] 교육훈련기 관의 지정취소 및 업 무정지기준(제23조제1 항관련)	○	-	-	-	○	4차
176	청소년활동진흥법 시 행규칙 별표5 인증의 취소 등 행정 처분의 기준(제15조의 4제2항 관련)	○	-	○	○	○	3차
177	체육시설의 설치·이 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7 행정처분기준(제27조 제1항 관련)	○	-	○	○	○	4차
178	총포·도검·화약류 등단속법 시행규칙[별 표 17] 행정처분기준 (제52조관련)	○	○	-	-	○	4차
179	축산물가공처리법 시 행규칙 별표11 행정처분기준(제41조 및 제43조관련)	○	○	○	○	○	3차
180	축산물가공처리법 시 행규칙[별표 9의 2]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의 지정취소또는검사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제28조의4관련)	○	-	○	○	○	4차

[붙임-1] 시행령·시행규칙 별표상 행정처분기준(일반기준) 주요내용 현황표

번호	법령명	차수 적용 기준	타행위의 판단기준	경감 사유	경감 기준	2이상의 위반행위	위반 차수
181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	○	-	-	-	○	3차
182	축산법 시행령[별표 2] 축산업의등록취소 및영업정지기준(제15 조 관련)	○	-	-	-	-	3차
183	치과의사전문의의수 련및자격인정등에관 한규정시행규칙[별표 3] 행정처분기준(제10 조관련)	○	○	○	○	○	3차
184	친환경농업육성법 시 행규칙 별표7 인증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제20조관련)	○	-	○	○	○	3차
185	친환경농업육성법 시 행규칙 별표7의2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품 의 유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0조 제2항관련)	○	○	○	○	○	3차
186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별표12 행정처분의 기준(제36 조제1항 관련)	○	-	-	-	○	4차
187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령[별표 2] 불법감청 설비탐지업의 등록취 소 및 영업정지의 처 분기준(제36조 관련)	-	-	○	○	○	1차

붙임 자료

번호	법령명	차수 적용 기준	타행위의 판단기준	경감 사유	경감 기준	2이상의 위반행위	위반 차수
188	특허법 시행규칙[별표]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6조의2관련)	○	-	○	○	○	4차
189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0 행정처분기준(제7조관련)	○	-	○	○	○	3차
190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행정처분기준(제83조 제1항 관련)	○	-	-	-	○	4차
191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7조제1항 관련)	○	-	○	○	○	4차
192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안전인증의 취소 등 처분기준(제18조제1항 관련)	○	-	○	○	○	3차
193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0 분뇨수집·운반업자의 행정처분기준(제48조 관련)	○	-	-	-	○	4차
194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5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4조 관련)	○	-	-	-	○	4차

[붙임-1] 시행령·시행규칙 별표상 행정처분기준(일반기준) 주요내용 현황표

번호	법령명	차수 적용 기준	타행위의 판단기준	경감 사유	경감 기준	2이상의 위반행위	위반 차수
195	항공법 시행규칙[별표 15의 2] 항공중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9조제1항 관련)	○	○	○	○	○	3차
196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별표3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22조 관련)	○	-	○	○	○	3차
197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	-	-	-	-	○	1차
198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의22관련)	○	-	○	○	-	3차
19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1조제1항 관련)	○	○	○	○	○	4차
20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0조제1항 관련)	○	○	○	○	○	4차

붙임 자료

번호	법령명	차수 적용 기준	타행위의 판단기준	경감 사유	경감 기준	2이상의 위반행위	위반 차수
20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15 해양 환경 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 준(제44조 관련)	○	-	○	○	○	4차
20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21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57조 관련)	○	-	○	○	○	4차
203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별표] 행정처분의기 준(제9조의2관련)	○	○	-	-	○	3차
20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령[별표 1] 화 물 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등 행정처분 기준(제5조제1항관련)	○	○	-	-	○	1차
20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령[별표 3] 화 물 자동차 운송주선사 업의 허가취소등 행정 처분기준(제9조의2제1 항관련)	-	-	-	-	○	1차
20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령[별표 4] 화 물 자동차 운송가맹사 업의 허가취소등 행정 처분기준(제9조의4제1 항관련)	○	○	-	-	○	3차
207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제18 조관련)	○	○	○	○	○	4차

[붙임-1] 시행령·시행규칙 별표상 행정처분기준(일반기준) 주요내용 현황표

번호	법령명	차수 적용 기준	타행위의 판단기준	경감 사유	경감 기준	2이상의 위반행위	위반 차수
208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2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0조관련)	○	-	○	○	○	4차
209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조제1항 관련)	○	-	-	-	○	4차
210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 행정처분기준(제54조관련)	○	-	○	○	○	4차, 3차
21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0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6조제1항 관련)	○	-	○	○	○	4차
21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2 환경측정분석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	○	-	○	○	○	4차
21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 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2조관련)	○	-	○	○	○	4차

[붙임-2] 가중·감경기준 명시 대상 147개 법령 목록

(가중·감경기준 설치 법령 현황)

구분	가중·감경기준을 규정한 법령		가중·감경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법령	총계
	①	②		
건수	66	71	76	213

※ ① : 법령에서 가중·감경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와 범위를 적시하거나, 그 위반의 동기·내용·횟수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② : 법령에서 가중·감경기준에 범위를 결하고 있거나,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 가중·감경기준 명시 대상 147개 법령 목록

번호	부처명	법령명	비고
1	여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상담소등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④
2	환경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⑤
3	국토해양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취소·정지처분기준 (제79조 관련)	⑤
4	국토해양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행정처분기준(제32조제1항관련)	⑤
5	보건복지 가족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 관련)	①

붙임 자료

번호	부처명	법령명	비고
6	행정안전부	경비업법시행령[별표 4] 행정처분기준(제24조관련)	④
7	행정안전부	경비업법시행령[별표 5]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 (제25조관련)	⑤
8	지식경제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3의 2] 행정처분기준 (제15조의3관련)	①
9	문화체육 관광부	공연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제7조관련)	⑤
10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7	⑤
11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제33조제1항 관련)	⑤
12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9조 관련)	①
13	국방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행정처분기준 (제6조관련)	①
14	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1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제6조제3항관련)	①
15	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2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제9조제3항관련)	①
16	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3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제13조관련)	⑤
17	환경부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5 행정처분기준(제24조관련)	⑤
18	농림수산 식품부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0 행정처분기준(제18조관련)	②

[붙임-2] 가중·감경기준 명시 대상 147개 법령 목록

번호	부처명	법령명	비고
19	환경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6 행정처분기준(제26조관련)	⑤
20	외교통상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허가의 취소 및 정지기준 (제12조제1항관련)	⑤
21	농림수산 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 기준(제15조제1항관련)	④
22	농림수산 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4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5조의6관련)	④
23	농림수산 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6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제15조의8관련)	④
24	농림수산 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제39조제1항관련)	④
25	농림수산 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별표 1] 표시변경등의처분기준 (제19조관련)	④
26	농림수산 식품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 표 3] 위반행위별처분기준 (제56조관련)	④
27	농림수산 식품부	농약관리법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제11조관련)	④
28	농림수산 식품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4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등에 대한 처분기준(제47조 관련)	④
29	농림수산 식품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6 허가취소등의 처분기준(제55조 관련)	⑤
30	행정안전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평가대행자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 (제20조관련)	④

붙임 자료

번호	부처명	법령명	비고
31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행정처분기준(제134조 관련)	⑤
32	행정안전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35] 자동차운전학원·전문학원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 (제129조제1항관련)	⑤
33	지식경제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2 행정처분기준(제10조의2관련)	①
34	농림수산 식품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8조 관련)	①
35	농림수산 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6 행정처분기준(제25조 관련)	①
36	농림수산 식품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행정처분기준(제52조제1항 관련)	④
37	국토해양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행정처분기준(제18조 관련)	⑤
38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위반행위별 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 관련)	④
39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 위반행위별 처분의 기준(제10조 관련)	④
40	공정거래 위원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영업정지및등록취소처분기준기준(제50조관련)	⑤
41	농림수산 식품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 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어업활동 또는 시험·연구 등의 행위에대한 행정처 분의 기준(제22조관련)	④

[붙임-2] 가중·감경기준 명시 대상 147개 법령 목록

번호	부처명	법령명	비고
42	국토해양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영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20조 관련)	④
43	국토해양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영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20조 관련)	③
44	농림수산 식품부	비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제16조제2항관련)	③
45	농림수산 식품부	비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제16조제2항관련)	④
46	교육과학 기술부	비과과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별표] 위반행위별행정처분기준(제7조제1항관련)	⑤
47	행정안전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별표 11] 행정처분기준표(제26조관련)	⑤
48	국토해양부	삭도·궤도법 시행규칙[별표 1] 행정처분의기준(제11조관련)	④
49	농림수산 식품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 종·묘생산업자에대한행정처분의세부기준(제15조관련)	④
50	지식경제부	상표법 시행규칙[별표 3] 전문조사기관의지정취소및업무정지의기준(제13조의3관련)	①
51	지식경제부	석탄산업법 시행규칙[별표 1]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13조 관련)	⑤
52	여성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제1항관련)	①
53	여성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행정처분 기준(제7조관련)	①

붙임 자료

번호	부처명	법령명	비고
54	환경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1 행정처분기준(제73조 관련)	⑤
55	환경부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표 4] 처분기준(제9조관련)	⑤
56	국토해양부	수로업무법 시행규칙[별표 4] 대행업자의지정취소및영업정지처분의기준 (제15조 관련)	⑤
57	국토해양부	수로업무법 시행규칙[별표 6] 수로사업의등록취소및영업정지처분의기준 (제24조제 1항 관련)	⑤
58	농림수산 식품부	수산물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 (제4조 관련)	④
59	농림수산 식품부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제16조제1항관련)	①
60	농림수산 식품부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의 기준(제37조관련)	②
61	농림수산 식품부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제54조제1항관련)	④
62	농림수산 식품부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별표 1] 표시정지등의처분기준(제21조관련)	④
63	농림수산 식품부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별표 3] 중지·개선·보수명령등및등록취소의기준(제32조관련)	④
64	농림수산 식품부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제24조관련)	②
65	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행정처분기준(제105조제1항 관련)	⑤

[붙임-2] 가중·감경기준 명시 대상 147개 법령 목록

번호	부처명	법령명	비고
66	국토해양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별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17조의2제1항 관련)	⑤
67	지식경제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5 안전인증의 취소 및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 기준 (제8조의4제1항관련)	①
68	지식경제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의4 검사기관의 행정처분기준(제24조관련)	①
69	지식경제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 (제5조관련)	①
70	환경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7 행정처분기준(제19조관련)	⑤
71	지식경제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0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①
72	환경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2 행정처분의 기준(제78조 관련)	①
73	환경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제33조제1항 관련)	①
74	농림수산 식품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제1조의4관련)	④
75	농림수산 식품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조 관련)	④
76	농림수산 식품부	어장관리법시행규칙 별표0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취소 등에 대한 처분기준 (제12조제1항 관련)	⑤
77	국토해양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및사업정지등의처분기준 (제31조제1항관련)	⑤

붙임 자료

번호	부처명	법령명	비고
78	지식경제부	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염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2조관련)	⑤
79	환경부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 행규칙 별표5 행정처분기준(제26조관련)	⑤
80	보건복지 가족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10]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세부기 준(제39조제2항관련)	⑤
81	보건복지 가족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9] 보육시설에대한행정처분의세부기준(제38조제1항관련)	⑤
82	문화체육 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행정처분의기준(제22조관련)	①
83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별표 3] 등록취소및영업정지의처분기준(제43조의2제1항관련)	⑤
84	행정안전부	온천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제5조제6항 관련)	⑤
85	농림수산 식품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3 원양어업 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 행정처분요구의 기준(제20조제1항 관련)	④
86	방송통신 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위치정보사업자등의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14조 제1항 관련)	⑤
87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행정처분기준(제46조제1항관련)	⑤
88	문화체육 관광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①
89	농림수산 식품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표3 영업의 폐쇄명령·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17조 관련)	④

[붙임-2] 가중·감경기준 명시 대상 147개 법령 목록

번호	부처명	법령명	비고
90	농림수산 식품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별표 4] 자체검사업체 행정처분기준(제21조제3항 관련)	⑤
91	농림수산 식품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품질인증표시의 변경 또는 사용정지처분의 기준(제 13조제1항 관련)	⑤
92	농림수산 식품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품질인증표시품의 판매정지 또는 품질인증취소처분 의 기준(제13조제2항 관련)	⑤
93	보건복지 가족부	임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제19조관련)	⑤
94	환경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배출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조 관련)	⑤
95	환경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0] 행정처분기준(제20조 관련)	⑤
96	보건복지 가족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제15조관련)	⑤
97	환경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제17조제1항 관련)	⑤
98	지식경제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안전인증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17조의2관련)	①
99	방송통신 위원회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별표 1] 사용정지처분의 기준(제20조 관련)	⑤
100	지식경제부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제11조관련)	⑤
101	공정거래 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령 [별표 1] 영업정지처분의기준(제34조관련)	⑤

붙임 자료

번호	부처명	법령명	비고
102	행정안전부	전자서명법 시행규칙[별표 1] 인증업무의정지및지정취소의기준 (제9조제1항관련)	⑤
103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표] 지정시험기관의행정처분기준(제12조제1항관련)	⑤
104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기기 인증 규칙[별표 8] 정보통신기기인증취소등의행정처분기준(제13조제1항관련)	⑤
105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규칙[별표 3]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처분기준(제11조관련)	⑤
106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 업무정지및지정취소의처분기준(제10조 관련)	⑤
107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54조 관련)	⑤
108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1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01조관련)	⑤
109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3 종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12조제1항 관련)	④
110	국토해양부	지적법 시행규칙 별표6의2 지적측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제62조 의4관련)	①
111	노동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제42조제1항관련)	⑤
112	노동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행정처분기준(제24조제2항 관련)	①
113	국토해양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별표 11] 운전면허취소·효력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35조관련)	⑤

[붙임-2] 가중·감경기준 명시 대상 147개 법령 목록

번호	부처명	법령명	비고
114	국토해양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별표 16]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3조제2항관련)	⑤
115	국토해양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별표 18]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63조제1항관련)	⑤
116	국토해양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별표 20]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69조제1항관련)	⑤
117	국토해양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별표 23]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74조제1항관련)	⑤
118	국토해양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별표 3] 신체검사지정병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기준(제15조제1항관련)	⑤
119	국토해양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별표 6] 적상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9조제1항관련)	⑤
120	국토해양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별표 9]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기준(제23조제1항관련)	⑤
121	보건복지 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의4제2항 관련)	④
122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행정처분기준(제27조제1항 관련)	①
123	행정안전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별표 17] 행정처분기준(제52조관련)	⑤
124	농림수산 식품부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	⑤

붙임 자료

번호	부처명	법령명	비고
125	농림수산 식품부	축산법 시행령[별표 2] 축산업의등록취소및영업정지 기준(제15조 관련)	⑤
126	농림수산 식품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7의2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0조제2항관련)	①
127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2 행정처분의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⑤
128	지식경제부	특허법 시행규칙[별표] 전문기관인지정취소및업무정지의기준(제36조의2관련)	①
129	노동부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0 행정처분기준(제7조관련)	①
130	노동부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행정처분기준(제7조관련)	①
131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⑤
132	환경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0 분뇨수집·운반업자의 행정처분기준(제48조 관련)	⑤
133	환경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5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 분기준(제64조 관련)	⑤
134	국토해양부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별표3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22조 관련)	①
135	국토해양부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별표1 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	⑤
136	국토해양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4조 관련)	①
137	국토해양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57조 관련)	④

[붙임-2] 가중·감경기준 명시 대상 147개 법령 목록

번호	부처명	법령명	비고
138	외교통상부	해외이주법 시행규칙[별표] 행정처분의기준(제9조의2관련)	⑤
139	국토해양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허가취소등행정처분기준(제5조제1항관련)	⑤
140	국토해양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3]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허가취소등행정처분기준(제9조의2제1항관련)	⑤
141	국토해양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4]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허가취소등행정처분기준(제9조의4제1항관련)	⑤
142	환경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2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0조관련)	④
143	환경부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조제1항 관련)	⑤
144	환경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 행정처분기준(제54조관련)	④
145	환경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0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6조제1항 관련)	④
146	환경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2 환경측정분석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	④
147	환경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 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2조 관련)	④

- ※ ① : 경미 또는 특별한 사유
 ② :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유
 ③ : 천재지변, 부득이한 사유
 ④ : 가중·감경기준의 범위 없이 선언적으로 규정한 법령
 ⑤ : 가중·감경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법령

[붙임-3] 법령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일정기간’의 개념 통일

[붙임-3] 법령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일정기간’의 개념 통일

(위반행위 차수 산정기준 법제현황)

구분	일정기간=1년	일정기간=2년	일정기간=3년	기타	규정없음	총계
법령 건수	100	63	22	1	27	213

※ 기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별표 7] 등록취소등의 처분기준- “최근 5년간”

▣ 위반행위 차수 산정의 기간기준 명시대상 86개 법령 목록

번호	소관부처명	법령명	비고
1	여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상담소등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①
2	환경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
3	보건복지 가족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9 행정처분기준(제31조관련)	○
4	국토해양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제79조 관련)	③
5	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 표3 행정처분기준(제32조제1항관련)	○
6	국토해양부	건축사법 시행령[별표 1] 업무정지등처분기준(제29조의2관련)	③
7	문화관광체육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

붙임 자료

번호	소관부처명	법령명	비고
8	보건복지가족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 관련)	○
9	행정안전부	경비업법시행령[별표 4] 행정처분기준(제24조관련)	①
10	행정안전부	경비업법시행령[별표 5]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 (제25조관련)	①
11	지식경제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형식승인의 취소기준(제15조제1항 관련)	②
12	지식경제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3의 2] 행정처분기준 (제15조의3관련)	○
13	국토해양부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1의2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제24조 관련)	○
14	국토해양부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1의3 골재채취중지처분의 기준(제32조의2 관련)	○
15	문화관광체육부	공연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제7조관련)	○
16	보건복지가족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행정처분기준(제19조관련)	○
17	문화관광체육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7 관광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57조 관련)	○
18	문화관광체육부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제33조제1항 관련)	○
19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9조 관련)	①
20	국토해양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6 보안심사대행기관 및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48조제1항 및 제52조 관련)	②

[붙임-3] 법령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일정기간’의 개념 통일

번호	소관부처명	법령명	비고
21	국방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행정처분기준(제6조관련)	③
22	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1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제6조제3항관련)	○
23	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2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제9조제3항관련)	○
24	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3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제13조관련)	○
25	환경부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5 행정처분기준(제24조관련)	①
26	농림수산식품부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0 행정처분기준(제18조관련)	①
27	환경부	기상법 시행규칙[별표 1] 기상사업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 (제11조제1항관련)	○
28	환경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6 행정처분기준(제26조관련)	①
29	농림수산식품부	남시어선업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제11조제1항관련)	○
30	외교통상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허가의 취소 및 정지기준(제12조제1항관련)	③
31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1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제1항 관련)	①
32	농림수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 기준(제15조제1항관련)	①
33	농림수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4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5조의6관련)	①

붙임 자료

번호	소관부처명	법령명	비고
34	농림수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6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제15조의8관련)	①
35	농림수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제39조제1항관련)	①
36	농림수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별표 1] 표시변경등의처분기준 (제19조관련)	○
37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위반행위별처분기준 (제56조관련)	○
38	농림수산식품부	농약관리법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제11조관련)	①
39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4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등에 대한 처분기준(제47조 관련)	○
40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6 허가취소등의 처분기준(제55조 관련)	③
41	행정안전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 표 3] 평가대행자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 (제20조관련)	①
42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행정처분기준(제134조 관련)	○
43	국토해양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관련)	③
44	국토해양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34] 강사·기능검정원의자격취소·정지의기준(제123조제1 항관련)	①
45	국토해양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35] 자동차운전학원·전문학원에 대한행정처분의기준 (제 129조제1항관련)	①

[붙임-3] 법령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일정기간’의 개념 통일

번호	소관부처명	법령명	비고
46	국토해양부	도선법 시행규칙 별표2 도선사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제2항 관련)	①
47	지식경제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2 행정처분기준(제10조의2관련)	○
48	농림수산식품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조 관련)	○
49	국토해양부	도시철도법 시행규칙[별표] 행정처분의세부기준(제2조관련)	③
50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6 행정처분기준(제25조 관련)	①
51	농림수산식품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행정처분기준(제52조제1항 관련)	○
52	보건복지가족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행정처분기준(제43조관련)	①
53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행정처분기준(제39조 관련)	○
54	보건복지가족부	모자보건법 시행령[별표 1] 행정처분기준(제17조관련)	○
55	국토해양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행정처분기준(제18조 관련)	③
56	문화관광체육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별표 7] 등록취소등의처분기준(제19조관련)	기타
57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위반행위별 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 관련)	③
58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 위반행위별 처분의 기준(제10조 관련)	③

붙임 자료

번호	소관부처명	법령명	비고
59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영업정지및등록취소처분기준기준(제50조관련)	○
60	농림수산식품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어업활동 또는 시험·연구 등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2조관련)	②
61	국토해양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영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20조 관련)	②
62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4 지정인증기관 및 지정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제37조관련)	○
63	농림수산식품부	비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제16조제2항관련)	○
64	교육과학기술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위반행위별행정처분기준(제7조제1항관련)	③
65	농림수산식품부	사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10 행정처분기준(제32조관련)	○
66	행정안전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별표 11] 행정처분기준표(제26조관련)	○
67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①
68	국토해양부	삭도·궤도법 시행규칙[별표 1] 행정처분의기준(제11조관련)	○
69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 중·묘생산업자에대한행정처분의세부기준(제15조관련)	①

[붙임-3] 법령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일정기간’의 개념 통일

번호	소관부처명	법령명	비고
70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0 행정처분기준(제143조의2관련)	①
71	지식경제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2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제6조 관련)	○
72	지식경제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1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 기준(제28조 관련)	①
73	지식경제부	상표법 시행규칙[별표 3]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및업무정지의기준(제13조의3 관련)	①
74	지식경제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관련)	○
75	지식경제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제34조관련)	①
76	지식경제부	석탄산업법 시행규칙[별표 1]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13조 관련)	○
77	국토해양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제1항 관련)	①
78	여성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제1항관련)	①
79	여성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행정처분 기준(제7조관련)	③
80	행정안전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조제1항관련)	○
81	행정안전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별표 6] 행정처분기준(제44조관련)	○

붙임 자료

번호	소관부처명	법령명	비고
82	행정안전부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별표 8] 형식승인취소 등에 관한 처분기준 (제17조관련)	③
83	환경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1 행정처분기준(제73조 관련)	○
84	환경부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표 4] 처분기준(제9조관련)	○
85	국토해양부	수로업무법 시행규칙[별표 4] 대행업자의지정취소및영업정지처분의기준 (제15조 관련)	○
86	국토해양부	수로업무법 시행규칙[별표 6] 수로사업의등록취소및영업정지처분의기준 (제24조제1 항 관련)	○
87	농림수산식품부	수산물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 (제4조 관련)	②
88	농림수산식품부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제16조제1항관련)	①
89	농림수산식품부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의 기준(제37조관련)	②
90	농림수산식품부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제54조제1항관련)	①
91	농림수산식품부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별표 1] 표시정지등의처분기준(제21조관련)	○
92	농림수산식품부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별표 3] 중지·개선·보수명령등및등록취소의기준(제32조관련)	○

[붙임-3] 법령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일정기간’의 개념 통일

번호	소관부처명	법령명	비고
93	국토해양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별표 11] 우수사업장인증취소·정지처분에 관한세부기준(제36조제1항 관련)	○
94	국토해양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별표 12] 형식승인의취소·정지처분기준 (제43조 관련)	○
95	국토해양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별표 13] 수상레저사업등록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제44조 관련)	○
96	국토해양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별표 2] 조종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의 기준 (제9조제1항 관련)	○
97	국토해양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별표 4] 시험대행기관의지정취소·정지처분에 관한 세부기준 (제12조제2항 관련)	○
98	국토해양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별표 9] 검사대행자의지정취소·정지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제29조제3항 관련)	○
99	농림수산식품부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제24조관련)	①
100	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행정처분기준(제105조제1항 관련)	○
101	국토해양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별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17조의2제1항 관련)	○
102	지식경제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5 안전인증의 취소 및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 기준(제8조의4제1항관련)	○
103	지식경제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의4 검사기관의 행정처분기준(제24조관련)	○
104	지식경제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 (제5조관련)	○

붙임 자료

번호	소관부처명	법령명	비고
105	환경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7 행정처분기준(제19조관련)	①
106	지식경제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0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
107	환경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2 행정처분의 기준(제78조 관련)	○
108	환경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제33조제1항 관련)	③
109	보건복지가족부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제96조 관련)	○
110	농림수산식품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제1조의4관련)	○
111	농림수산식품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조 관련)	○
112	지식경제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3조제1항 관련)	②
113	지식경제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안전인증의 취소 등 처분기준(제13조 관련)	②
114	농림수산식품부	어장관리법시행규칙 별표0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취소 등에 대한 처분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115	국토해양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 택시운전자격의취소등의처분기준(제51조제1항관련)	○
116	국토해양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및사업정지등의 처분기준(제31조제1항관련)	○
117	지식경제부	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염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2조관련)	○

[붙임-3] 법령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일정기간’의 개념 통일

번호	소관부처명	법령명	비고
118	환경부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5 행정처분기준(제26조관련)	①
119	보건복지가족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10]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세부기준(제39조제2항관련)	②
120	보건복지가족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9] 보육시설에대한행정처분의세부기준(제38조제1항관련)	②
121	문화관광체육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관련)	○
122	문화관광체육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행정처분의기준(제22조관련)	○
123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별표 3] 등록취소및영업정지의처분기준(제43조의2제1항관련)	○
124	행정안전부	온천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제5조제6항 관련)	○
125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3 원양어업 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 행정처분요구의 기준(제20조제1항 관련)	②
126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위치정보사업자등의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14조제1항 관련)	③
127	행정안전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 행정처분기준(제25조, 제58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관련)	①
128	행정안전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행정처분의 기준(제9조제1항관련)	○
129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행정처분기준(제46조제1항관련)	①

붙임 자료

번호	소관부처명	법령명	비고
130	문화관광체육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
131	보건복지가족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8 행정처분기준(제45조관련)	○
132	보건복지가족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관련)	○
133	보건복지가족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7 행정처분기준(제35조관련)	○
134	농림수산식품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표3 영업의 폐쇄명령·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17조 관련)	①
135	농림수산식품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별표 4] 자체검사업체 행정처분기준(제21조제3항 관련)	○
136	보건복지가족부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3 행정처분 기준(제14조관련)	○
137	농림수산식품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품질인증표시의 변경 또는 사용정지처분의 기준(제13 조제1항 관련)	○
138	농림수산식품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품질인증표시품의 판매정지 또는 품질인증취소처분 의 기준(제13조제2항 관련)	②
139	보건복지가족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제19조관련)	①
140	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 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별표] 행정처분의기준 (제5조관련)	③
141	행정안전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관련)	①
142	환경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배출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조 관련)	①

[붙임-3] 법령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일정기간’의 개념 통일

번호	소관부처명	법령명	비고
143	환경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0] 행정처분기준(제20조 관련)	①
144	보건복지가족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제15조관련)	○
145	보건복지가족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①
146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7 행정처분기준(제64조 관련)	③
147	소방방재청 (행정안전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계획 수립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제1 항 관련)	①
148	환경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제17조제1항 관련)	○
149	지식경제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6조의4 관련)	②
150	지식경제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안전인증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17조의2관련)	②
151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별표 1] 사용정지처분의 기준(제20조 관련)	③
152	보건복지가족부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7 행정처분기준(제20조의9관련)	○
153	지식경제부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제11조관련)	③

붙임 자료

번호	소관부처명	법령명	비고
154	공정거래 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영업정지처분의기준(제34조관련)	○
155	행정안전부	전자서명법 시행규칙[별표 1] 인증업무의정지및지정취소의기준 (제9조제1항관련)	③
156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제6조제1항관련)	○
157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표] 지정시험기관의행정처분기준(제12조제1항관련)	①
158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기기 인증 규칙[별표 8] 정보통신기기인증취소등의행정처분기준(제13조제1항관련)	②
159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규칙[별표 3]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처분기준(제11조관련)	③
160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 업무정지및지정취소의처분기준(제10조 관련)	③
161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54조 관련)	③
162	보건복지가족부	정신보건법시행규칙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제1항관련)	①
163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1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01조관련)	③
164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3 종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12조제1항관련)	①

[붙임-3] 법령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일정기간’의 개념 통일

번호	소관부처명	법령명	비고
165	국토해양부	지적법 시행규칙 별표6의2 지적측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제62조의4관련)	①
166	노동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제42조제1항관련)	○
167	노동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행정처분기준(제24조제2항 관련)	○
168	국토해양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별표 11] 운전면허취소·효력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35조관련)	①
169	국토해양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별표 16]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3조제2항관련)	①
170	국토해양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별표 18]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63조제1항관련)	①
171	국토해양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별표 20]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69조제1항관련)	①
172	국토해양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별표 23]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74조제1항관련)	①
173	국토해양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별표 3] 신체검사지정병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기준(제15조제1항관련)	①
174	국토해양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별표 6] 적상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9조제1항관련)	①

붙임 자료

번호	소관부처명	법령명	비고
175	국토해양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별표 9]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기준(제23조제1항관련)	①
176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의4제2항 관련)	①
177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행정처분기준(제27조제1항 관련)	○
178	행정안전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별표 17] 행정처분기준(제52조관련)	②
179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1 행정처분기준(제41조 및 제43조관련)	○
180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별표 9의 2]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또는검사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28조의4관련)	②
181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	②
182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법 시행령[별표 2] 축산업의등록취소및영업정지기준(제15조 관련)	②
183	보건복지가족부	치과의사전문회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 칙[별표 3] 행정처분기준(제10조관련)	①
184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7 인증기관의 행정처분기준(제20조관련)	○
185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7의2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0조제2항관련)	①
186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2 행정처분의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

[붙임-3] 법령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일정기간’의 개념 통일

번호	소관부처명	법령명	비고
187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별표 2]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 기준(제36조 관련)	③
188	지식경제부	특허법 시행규칙[별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6조의2 관련)	①
189	노동부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0 행정처분기준(제7조 관련)	○
190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
191	지식경제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 7조제1항 관련)	②
192	지식경제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안전인증의 취소 등 처분기준(제18조제1항 관련)	②
193	환경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0 분뇨수집·운반업자의 행정처분기준(제48조 관련)	○
194	환경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5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 분기준(제64조 관련)	○
195	국토해양부	항공법 시행규칙[별표 15의 2]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9조제1항 관련)	①
196	국토해양부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별표3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22조 관련)	○
197	국토해양부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별표1 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	③
198	국토해양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의22 관련)	①

붙임 자료

번호	소관부처명	법령명	비고
199	국토해양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1조제1항 관련)	○
200	국토해양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30조제1항 관련)	○
201	국토해양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4조 관련)	○
202	국토해양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57조 관련)	①
203	외교통상부	해외이주법 시행규칙[별표] 행정처분의기준(제9조의2관련)	②
204	국토해양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허가취소등행정처분기준(제5조 제1항관련)	○
205	국토해양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3]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허가취소등행정처분기준(제 9조의2제1항관련)	③
206	국토해양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4]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허가취소등행정처분기준(제 9조의4제1항관련)	○
207	보건복지가족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제18조관련)	①
208	환경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2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0조관련)	①

[붙임-3] 법령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일정기간’의 개념 통일

번호	소관부처명	법령명	비고
209	환경부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조제1항 관련)	①
210	환경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 행정처분기준(제54조관련)	○
211	환경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0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6조제1항 관련)	○
212	환경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2 환경측정분석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	○
213	환경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 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2조 관련)	○

- ※ ○ : 일정기간 1년
 ① : 일정기간 2년
 ② : 일정기간 3년
 ③ : 규정 없음

[붙임-4]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의 제재기준 일원화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에 관한 법령현황)

구 분	각 위반행위마다 처벌	중한 위반행위만 처벌	가중처분	정의없음	총계
법령 건수	41	14	132	26	213

■ 복수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정비대상

번호	부처명	법령명	비고
1	환경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①
2	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행정처분기준(제32조제1항관련)	①
3	행정안전부	경비업법시행령 [별표 5]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 (제25조관련)	③
4	지식경제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형식승인의 취소기준(제15조제1항 관련)	①
5	국토해양부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1의2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제24조 관련)	③
6	국토해양부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1의3 골재채취중지처분의 기준(제32조의2 관련)	③
7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9조 관련)	②
8	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1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제6조제3항관련)	①

붙임 자료

번호	부처명	법령명	비고
9	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2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제9조제3항관련)	①
10	환경부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5 행정처분기준(제24조관련)	①
11	환경부	기상법 시행규칙 [별표 1] 기상사업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 (제11조제1항관련)	③
12	환경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6 행정처분기준(제26조관련)	①
13	외교통상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허가의 취소 및 정지기준 (제12조제1항관련)	②
14	농림수산 식품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6 허가취소등의 처분기준(제55조 관련)	②
15	행정안전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 표 3] 평가대행자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 (제20조관련)	①
16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행정처분기준(제134조 관련)	①
17	국토해양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관련)	③
18	국토해양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행정처분기준(제18조 관련)	①
19	국토해양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영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20조 관련)	③
20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 행령 별표4 지정인증기관 및 지정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 기준(제37조관련)	①

[붙임-4]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의 제재기준 일원화

번호	부처명	법령명	비고
21	교육과학기술부	비과과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제7조제1항관련)	③
22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②
23	국토해양부	삭도·케도법 시행규칙 [별표 1] 행정처분의기준(제11조관련)	①
24	지식경제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2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6조 관련)	①
25	지식경제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1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 기준(제28조 관련)	②
26	지식경제부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13조 관련)	③
27	여성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행정처분 기준(제7조관련)	③
28	환경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1 행정처분기준(제73조 관련)	①
29	환경부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 처분기준(제9조관련)	③
30	국토해양부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별표 4] 대행업자의지정취소및영업정지처분의기준 (제15조 관련)	③
31	국토해양부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별표 6] 수로사업의등록취소및영업정지처분의기준 (제24조제1항 관련)	③
32	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행정처분기준(제105조제1항 관련)	①

붙임 자료

번호	부처명	법령명	비고
33	국토해양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17조의2제1항 관련)	①
34	환경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7 행정처분기준(제19조관련)	①
35	환경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2 행정처분의 기준(제78조 관련)	③
36	환경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제33조제1항 관련)	③
37	지식경제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3 조제1항 관련)	①
38	지식경제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안전인증의 취소 등 처분기준(제13조 관련)	①
39	농림수산 식품부	어장관리법시행규칙 별표0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취소 등에 대한 처분기준(제12 조제1항 관련)	②
40	국토해양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택시운전자격의취소등의처분기준(제51조제1항관련)	③
41	국토해양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및사업정지등의처분기준(제 31조제1항관련)	③
42	환경부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 규칙 별표5 행정처분기준(제26조관련)	①
43	행정안전부	온천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제 5조제6항 관련)	③

[붙임-4]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의 제재기준 일원화

번호	부처명	법령명	비고
44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위치정보사업자들의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14조제1항 관련)	①
45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행정처분기준(제46조제1항관련)	①
46	농림수산식품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자체검사업체 행정처분기준(제21조제3항 관련)	①
47	농림수산식품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품질인증표시의 변경 또는 사용정지처분의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③
48	농림수산식품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품질인증표시품의 판매정지 또는 품질인증취소처분의 기준(제13조제2항 관련)	③
49	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별표] 행정처분의기준 (제5조관련)	③
50	환경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행정처분기준(제20조 관련)	③
51	환경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배출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조 관련)	③
52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7 행정처분기준(제64조 관련)	③
53	환경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제17조제1항 관련)	①
54	지식경제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안전인증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17조의2관련)	①
55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사용정지처분의 기준(제20조 관련)	②

붙임 자료

번호	부처명	법령명	비고
56	보건복지 가족부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7 행정처분기준(제20조의9관련)	②
57	지식경제부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1조관련)	②
58	방송통신 위원회	정보통신기기 인증 규칙 [별표 8] 정보통신기기인증취소등의행정처분기준(제13조제1항관련)	③
59	보건복지 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의4제2항 관련)	②
60	행정안전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별표 17] 행정처 분기준(제52조관련)	②
61	농림수산 식품부	축산법 시행령 [별표 2] 축산업의등록취소및영업정지기준(제15조 관련)	③
62	농림수산 식품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7의2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 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0조제2항관련)	②
63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2 행정처분의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①
64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①
65	지식경제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7 조제1항 관련)	①
66	지식경제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안전인증의 취소 등 처분기준(제18조제1항 관련)	①
67	환경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0 분뇨수집·운반업자의 행정처분기준(제48조 관련)	①

[붙임-4]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의 제재기준 일원화

번호	부처명	법령명	비고
68	환경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5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64조 관련)	①
69	국토해양부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9조제1항 관련)	②
70	국토해양부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별표3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22조 관련)	①
71	국토해양부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1 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	①
72	국토해양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의22관련)	③
73	국토해양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4조 관련)	①
74	국토해양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57조 관련)	①
75	외교통상부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별표 행정처분의 기준(제9조의 2관련)	②
76	환경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2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0조관련)	①
77	환경부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조제1항 관련)	①
78	환경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 행정처분기준(제54조관련)	①
79	환경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0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6조제1항 관련)	①
80	환경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2 환경측정분석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	①

붙임 자료

번호	부처명	법령명	비고
81	환경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 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2조 관련)	①

- ※ ① : 각 위반행위마다 처벌
 ② : 중한 위반행위만 처벌
 ③ : 정의 없음

[붙임-5] 변형된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불합리한 법률

■ 업무 정지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법령(37개)

번호	부처명	법령명	비고
1	환경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과징금의 부과 등)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기준)	
3	국토 해양부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9조의3 (과징금의 부과·징수)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5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52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6		삭도·궤도법 시행령 제3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7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3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8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5조(과징금의 부과·징수)	
9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10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9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11		항공법 시행령 제44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제44조의6(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49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54조의2(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12		항만법 시행령 제32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13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붙임 자료

번호	부처명	법령명	비고
14		해운법 시행령 제24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조(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금액 등)	
16	행정 안전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17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4조의2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 등)	
18	공정 거래 위원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과징금부과를 위한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산정)	
1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과징금부과를 위한 위반행위 관련매출액 산정)	
20	금융위 원회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22	문화 체육 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4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23	관세청	관세법 시행령 제285조의5(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24	지식 경제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 (과징금 처분)	
2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제42조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26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27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6(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28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과징금의 부과)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붙임-5] 변형된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불합리한 법률

번호	부처명	법령명	비고
30	식품 의약품 안전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8조(과징금)	
31	교육 과학 기술부	원자력법 시행령 제323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32	방송 통신 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제70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3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3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5조(과징금)	
35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21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등)	
3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37		전파법 시행령 제121조(과징금이 부과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 제재받는 업체의 규모나 매출액을 고려하지 않은 법령(24개)

번호	부처명	법령명	비고
1	환경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과징금의 부과 등)	
2		약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2조(과징금의 금액 등)	
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4		하수도법 시행령 제30조(과징금의 부과 등)	
5	금융 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1조(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6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6조(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번호	부처명	법령명	비고
7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과징금의 금액 산정기준 등)	
8		저작권법 시행령 제53조(과징금의 금액 산정기준 등)	
9	지식경제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과징금 처분)	
10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11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6(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1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13	행정안전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14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4조의2(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 등)	
15	국토해양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3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16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17		주택법 시행령 제70조(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18		항만법 시행령 제32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19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20	농림수산물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1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의6(과징금의 산정기준)	
22	식품의약품안전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8조(과징금)	
2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제70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24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21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등)	

[붙임-5] 변형된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불합리한 법률

번호	부처명	법령명	비고
----	-----	-----	----

■ 1990년대 이후 과징금액을 수정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 법

번호	부처명	법령명	비고
1	환경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3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9조(과징금 산정기준)	1995. 5. 1. 제정 후 현재까지 변화 없음.
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5	농림수산식품부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6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1996. 12. 5. 전부개정으로 [별표 3] 제정 후 1999. 6. 30. 일부개정 후 현재까지 금액변화 없음.
6		수산업법 시행령 제6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1997. 12. 31. [별표 5]로 제정 후 2004. 1. 29. 일부개정되면서 소폭 증가하다 현재 [별표 4]로 되기까지 변화 없음.
7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5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기준)	1998. 6. 20. [별표 3]으로 전부개정이후 현재까지 변화 없음
8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법 시행령 제323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999. 5. 24. [별표 3]으로 일부개정 이후 현재까지 금액변화 거의 없음.
9	국토해양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1997. 7. 10. 제정 후 현재까지 변화 없음
10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9조의3(과징금의 부과·징수)	1996. 7. 19. 일부개정으로 [별표 3] 제정 후 현재까지 금액

붙임 자료

번호	부처명	법령명	비고
			변화 없음
11		삭도·궤도법 시행령 제3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1999. 7. 29. 일부개정 후 현재까지 금액변화 거의 없음.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13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5조(과징금의 부과·징수)	1987. 7. 1. [별표 1]로 전부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거의 변화 없음
14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1984. 6. 2. [별표]로 일부개정 이후 현재까지 [별표 2]로 거의 변화 없음.
15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16	보건복지가족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1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과징금등 행정처분기준)	
18		약사법 시행령 제33조(과징금의 산정기준)	1992. 6. 2. 전부개정으로 [별표] 로 제정 후 현재까지 변화 없음.
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과징금의 부과)	1994. 12. 31. [별표 2]에서 2003. 1. 7.[별표 1]로 전부개정되면서 변화있다가 현재까지는 변화 없음.
20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22		화장품법 시행령 제11조(과징금의 산정기준)	
23		식품의약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붙임-5] 변형된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불합리한 법률

번호	부처명	법령명	비고
	품안전청	15조(과징금의 산정기준)	
24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1조(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등)	1997. 12. 31. [별표] 제정 이후 현재까지 금액변화 없음.
25	관세청	관세법 시행령 제285조의5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26	지식경제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7조(과징금 부과 등)	1999. 6. 30. [별표 2]로 수정된 후 현재까지 금액 변화 없음.
27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과징금 부과기준)	
28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1987. 1. 31. [별표 1] 제정, 1999. 9. 9. [별표 1의2]로 일부개정 후 현재까지 금액변화 거의 없음.
29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4(사업정지, 보완명령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1997. 8. 7. [별표 3의2]로 제정 후 개정을 거치며 현재 [별표 3]에 이르기까지 금액 변화 거의 없음.
30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1999. 7. 16. [별표 1]로 전부개정 이후 현재까지 변화 없음.
3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	1999. 7. 18. [별표 2의3]으로 일부개정 이후 현재까지 [별표 2]로 거의 변화 없음.
3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1999. 9. 3. [별표 3의2]로 일부 개정이후 현재까지 변화 없음.
33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과징금부과를 위한 위반행위 관련 출액 산정)	
3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과징금부과	

붙임 자료

번호	부처명	법령명	비고
		를 위한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산정)	
35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제70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 강구철, “과징금제도에 관한 약간의 고찰”, 고시연구 1997년 10월호
- 강문수, “독일의 건축행정법상 행정처분기준의 현황과 시사점” 『프랑스와 독일의 행정제재의 현황과 시사점』 워크샵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06. 6
-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I』, 법문사, 2006
-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I』, 법문사, 2006
- 김남진,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월간고시, 1989. 11
- 김남진, “이행강제금과 권리구제”, 고시연구, 2001
- 김남진,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의 이동 및 상호관계”, 법률신문, 2004. 6. 28
- 권오승, □□경제법□□, 제5판, 법문사, 2005
- 롤프 스토버(저)최송화·이원우(공역), □□독일경제행정법□□, 1996, 법문사
- 김남철, “독일 경찰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의 현황과 시사점” 『경찰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자료집 2006. 5. 26
-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06
- 김성수, 『일반행정법』, 법문사, 2004
- 김용섭, “법규명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 『판례월보』 제340호

참 고 문 헌

- 김연태,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 처리체계, 환경법연구, 제25권, 2003
- 김재광·최철호·강문수,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연구(I)』, 한국법제연구원, 2006. 10
- 김재광, “2006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정립과 법적 함의”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연구(II) 1차 워크샵』, 한국법제연구원, 2007. 3. 30
- 김재광, “교육·문화 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의 정비방향”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연구(II) 3차 워크샵』, 한국법제연구원, 2007. 4. 19
- 김재광, “경제행정분야의 법적 행위형식과 내용에 관한 고찰”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연구(II) 4차 워크샵』, 한국법제연구원, 2007. 4. 25
- 김재광, “경제행정법령상 과징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연구(II) 11차 워크샵』, 한국법제연구원, 2007. 6. 22
- 김재광·박영도, 『재량행위 투명화에 따른 법령정비 효과분석기법 연구』,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5
- 김창범, “법령심사과정에서 본 경제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의 현황과 문제점”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연구(II) 4차 워크샵』, 한국법제연구원, 2007. 4. 25
- 김종보, 『건축행정법』, 학우, 2005
- 김해룡, “현행 건축허가절차의 문제점”, 『토지공법연구』, 1996
- 김향기, “행정규칙의 유형과 외부효과”, 『월간고시』, 1994. 3

- 고문헌, 환경보호의 법적과제, 울산대학교 출판부, 2005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법인설립허가 및 대학설립인가 신청 요령, 미간행자료, 2006
- 교육인적자원부, 사립학교 관계법령, 미간행자료, 2006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설립·운영 개정 관련 내부자료, 2005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특성화 추진방안,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2005. 11.29
- 교육인적자원부,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대학 구현을 위한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2004. 12
-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6
- 문병효, “독일의 교육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연구(II) 6차 워크샵』, 한국법제연구원, 2007. 5. 25
- 문병효, “독일의 문화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연구(II) 10차 워크샵』, 한국법제연구원, 2007. 6. 22
- 민동기, “현행 과태료제도에 관한 소고”, 『입법연구논문집(상)』, 국회사무처
- 박균성,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6
-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6
- 박영도, 『독일연방정부의 입법절차개혁 -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3
- 박영도, 『입법기술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1997
- 박영도·김호정, 『과징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2

참 고 문 헌

- 박영도·박수현, 『과징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 1993
- 박용하 외2인, 토양오염지역의 책임에 관한 우리나라, 미국, 영국, 네델란드, 독일, 덴마크 법과 제도의 비교분석 및 우리나라 정책개선방향, 환경정책연구, 제3권, 2004
- 박윤훈,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4
- 박 인, “우리나라 보건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의 특징과 문제점”, 『보건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자료집(2006. 5. 19)
- 박 인, “우리나라의 문화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의 정비방향”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연구(II) 10차 워크샵』, 한국법제연구원, 2007. 6. 22
- 박종수, 『약사법령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2
- 박종수, 『화장품법령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의 선진모델 개발』, 한국법제연구원, 2003
- 박종수, “우리나라 보건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의 특징과 문제점”, 『보건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자료집 토론문 (2006. 5. 19)
- 박혜식,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법적 성격”, 『경쟁법연구』 제8권, 2002
-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2005
- 선정원, “시행규칙의 법적 성질과 부수적 통제의 실효성 강화” 『행정법판례 연구VIII』,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성선제, “미국의 교육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연구(Ⅱ) 6차 워크샵』, 한국법제연구원, 2007. 5. 25
- 신봉기, “경제규제법상 과징금제도”, 『법조』, 1992. 9
- 신봉기, “우리나라의 건축행정분야에 있어서의 수익적 행정처분기준”,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자료집, 2006. 9. 28
- 오준근, “재량행위의 판단기준과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법제』 2005. 6(통권 제570호)
- 우성만, 수질오염, 해양오염과 환경소송, 재판자료, 제95집, 법원도서관, 2002
- 유상현, “행정처분기준의 법규성” 『공법연구』 제31집제1호
- 장교식, “일본의 경제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연구(Ⅱ) 11차 워크샵』, 한국법제연구원, 2007. 6. 22
- 전 훈, “프랑스의 교육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연구(Ⅱ) 3차 워크샵』, 한국법제연구원, 2007. 4. 19
- 정기혜 · 광노성 · 김영래 · 윤시문 · 이충환 · 김정선, 『식품안전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조사연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02-2
- 정기혜 · 윤시문 · 최무현 · 김정선, 『식품분야 규제개혁 정책에 관한 평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 2003-48
- 정남철,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 소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헌법논총』, 제16집
- 정남철, “독일의 경제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연구(Ⅱ) 11차 워크샵』, 한국법제연구원, 2007. 6. 22

참 고 문 헌

- 정명운, “일본의 문화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연구(Ⅱ) 10차 워크샵』, 한국법제연구원, 2007. 6. 22
- 정하중, 『행정법총론』(제3판), 법문사
- 정하중, “한국의 행정법상 강제집행제도의 개선방향”, 『김영훈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5
- 조정찬,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문제-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의 법적 성질을 중심으로-”, 『법제』, 1998. 8
- 윤영선, “행정소송과 재량준칙” 『공법연구』 제28집 제1호, 1999
- 이기우, 지방교육행정제도 개선방안, 국회지방자치발전연구회의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전국 순회토론회”, 2005년 5월 13일
- 이무근외, 대학설립제도 개선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3
- 이상철, “과징금법제연구”, 법제처 법제연구총서(법제개선자료 제4집), 1997
- 임병수·고낙훈, “2006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연구(Ⅱ) 1차 워크샵』, 한국법제연구원, 2007. 3. 30
- 임재홍,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 『행정법연구』, 1999
- 임재홍, 『행정절차법상의 처분기준에 관한 연구』, 인하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8
- 조태제, “독일에서의 행정입법절차에 관한 논의” 『현대행정법학이론(우제이명구박사화갑기념논문집 Ⅱ)』, 1996
- 채우석, “과징금 제도에 관한 일고찰”, 『토지공법연구』, 2002

- 최정일, “법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효력”, 『판례일보』 264호
- 최호열, “실무에서 본 교육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 훈령상 행정처분기준을 중심으로 -”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연구(II) 3차 워크샵』, 한국법제연구원, 2007. 4. 19
- 채우석, “일본의 교육행정분야 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연구(II) 6차 워크샵』, 한국법제연구원, 2007. 5. 25
- Romarc Gaeguen, “프랑스의 교육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의 현황과 특징”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연구(II) 8차 워크샵』, 한국법제연구원, 2007. 6. 7
- 하용득, “법규형식을 취하는 재량준칙의 법적 성질” 『법제연구총서 법제개선자료2집』(법제처, 1995. 12)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6
- 홍준형·김성수·김유환, 『행정절차법제정연구』, 1996
- 홍준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법제』 1998. 8
- 홍준형, 환경법, 제2판, 박영사, 2005
- 한화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및 배출거래제도시행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02
- 환경부, 보도자료,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05

【 국외문헌 】

- Beckmann, B, Die gerichtliche Überprüfung von Verwaltungsvorschriften im Wege der verwaltungsgerichtlichen Normenkontrolle, DVBl. 1987, S. 617 f.

참 고 문 헌

- Beckermann, Martin, Die gerichtliche Überprüfung von Verwaltungsvorschriften im Wege der verwaltungsgerichtlichen Normenkontrolle, DVBl. 1987, 611- 618
- Bachof, Otto, Beurteilungsspielraum, Ermessen und unbestimmter Rechtsbegriff im Verwaltungsrecht, JZ 1995, 97-102
- Battis, Ulrich/Gusy, Christoph, Technische Normen im Baurecht, Düsseldorf, 1988
- Battis, Ulrich/Krautzberger, Michael/Löhr, Rolf-Peter, Baugesetzbuch, München, 1999
- Birgitte Zypries/Cornelia Peters, Eine neue Gemeinsame Geschäftsordnung für die Bundesministerien, ZG 2000, S. 316 f.
- Brohm, Winfried, Öffentliches Baurecht, 1997, München, S. 433 ff.
- Die Bundesregierung, Moderner Staat- Moderner Verwaltung. Das Programm der Bundesregierung(<http://www.staat-modern.de/infos/daten/leitbild.pdf>)
- Die neue TA Luft, NVwZ 2003, 266-274
- Enste, Rainer, Der Umfang des verwaltungsgerichtlichen Rechtsschutzes im Beamtenverhältnis, JA 1979, 423-427
- Erichsen, Hans-Uwe/Klüsche, Charlotte, Verwaltungsvorschriften, Jura 2000, 540-548
- Ferner, Hilmar/Kröniger, Holger, Baugesetzbuch, Nomos, 2005
- Giesberts, Ludger/Hilf, Juliane, EG-rechtliche und verfassungsrechtliche Zulässigkeit normkonkretisierender Verwaltungsvorschriften, Kie LAGA-Abfallliste auf dem Prüfstand, UPR 1999, 168-172

- Hans D. Jarass, Bindungswirkung von Verwaltungsvorschriften, JuS 1999, S. 108.
- Hendler, Reinhard, Verwaltungsvorschriften zur Konkretisierung technischer Standards im Umweltrecht, UTR 40 (1997), 55-82
- Hill, Hermann, Einführung in die Gesetzgebungslehre, Heidelberg, 1982
- Hoppenberg, Michael (Hrsg.), Handbuch des öffentlichen Baurechts, München, 1997
- Jachmann, Monika, Die Bindungswirkung normkonkretisierender Verwaltungsvorschriften, Die Verwaltung 28 (1995), 17-31
- Koch, Hans-Joachim, Die gerichtliche Kontrolle technischer Regelwerke im Umweltrecht, ZUR 1993, 103-108
- Köderitzsch, Lorenz, Die Rolle der Verwaltungsvorschriften im japanischen Verwaltungsrecht, Baden-Baden, 1995
-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5. Aufl., § 7 Rz. 13, 14.
- Ossenbühl, Fritz, Der verfassungsrechtliche Rahmen offener Gesetzgebung und konkretisierender Rechtsetzung, DVBl. 1999, 1-7
- Rogmann, Achim, Die Bindungswirkung von Verwaltungsvorschriften, Köln et al 1998
- Rudisile, Richard, Verwaltungsvorschriften in der Rechtsprechung von Bundesverwaltungs- und Bundesverfassungsgericht, Diss. Freiburg 1987
- Schenke, Wolf-Rüdiger, Der Rechtsschutz des Bürgers gegen Verwaltungsvorschriften, DÖV 1979, 622-632

참 고 문 헌

Schlichter, Otto/Stich, Rudolf, Berliner Kommentar zum Baugesetzbuch,
Köln 2. Aufl. 1995

Sterken, Peter, Bedeutung von Verwaltungsvorschriften, VR 1996, 380-
382

Stich, Rudolf, Handlungs- und Entscheidungsspielräume des Landes bei
der Bundesauftragsverwaltung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Ausführung des Atomgesetzes, in: AöR 110 (1985), 419-446

S. Reinhard/v.K. Alexis, Die neue TA Lärm in der Anwendung, in: V
BIBW 2000, 348

S. Walter, Die Gleichheitsbindung an Verwaltungsvorschriften- BVerwGE
34, 278, in: JuS 1971, 184-188

Tettinger, Peter J, Überlegungen zu einem administrativen Prognosespiel
raum, DVBl. 1982, 421-433

Wolf, Joachim, Die Kompetenz der Verwaltung zur Normsetzung durch
Verwaltungsvorschriften, DÖV 1992, 849-860

Battis,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3. Aufl.

H.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5. Aufl.

Hans D. Jarass, Bindungswirkung von Verwaltungsvorschriften, JuS 1999

Ossenbühl, in: Erichsen/Ehlers,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2. Aufl.

Badura, in: Schmidt-Aßmann(Hrsg.), Besonderes Verwaltungsrecht, 11.
Aufl.

Jarass/Pieroth, Grundgesetz, Kommentar, 5. Aufl., München 2000

Thomas Oppermann, Europarecht, 3. Aufl, 2005, § 13 Rdn. 3.

- Thomas Sauerland, Die Verwaltungsvorschrift im System der Rechtsquellen, Berlin 2005
- R. Stober, Allgemeines Wirtschaftsverwaltungsrecht, 15. Aufl., Stuttgart 2006
- Streinz, Lebensmittel- und Gesundheitsrecht, in: Achterberg/Püttner/Würtenerger(Hg.), Besonderes Verwaltungsrecht, Band II, 2. Aufl., Heidelberg 2000
- Cass R. Sunstein, 'Problems with Rules', 83 Cal. L. Rev. 953, 1995
- Ch. Illig, Das Vorsorgeprinzip im Abfallrecht, 1992
- Epiney, Umweltrecht in der EU, 2005
- Dietrich/ Kahle, Leben mit Laerm?, DVBl. 2005
- F. Ossenbuhl, Staatshaftungsrecht, 5. Aufl., 1998
- H. Jarass, Bundes- Immissionsschutzgesetz, C.H.Beck, 2000
- H.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6. Aufl., München 2006
- M. Kloepfer, Umweltschutz als Verfassungsrecht, DVBl. 1996., Umweltrecht, 3. Aufl., 2004
- Kopp/Ramsauer, VwVfG, 7. Aufl., § 40 Rdn. 51.
- Kropp, Die behoerdliche Lenkung von Abfallstroemen im Binnenmarkt, Berlin 2003
- Weidemann/Neun, Zum Ende der Abfalleigenschaft von Bauteilen aus Altgeraeten dund Altrahrzeugen, NuR 2004
- Jacques-Henri STAHL, LA DIRECTIVE DE LA JURISPRUDENCE <<CREDIT FONCIER>>, Droit administratif, Fevrier 1998

참 고 문 헌

<http://www.westlaw.com> - “discretionary directives /s guidelines” of Federal and States Statutes 검색자료

Carter, Lief H. (1983), “Administrative Law and Politics: Cases and Comments”, Little, Brown and Company

Cooper, Frank E. (1965), “State Administrative Law”, American Bar Foundation, The Bobbs-Merrill Company

Elliott, Mark. (1999), “The Ultra Vires Doctrine in a Constitutional Setting: still the Central Principle of Administrative Law”, Cambridge Law Journal : 58, 129 -158

Legislative Council, State of Michigan (2007), <http://www.legislature.mi.gov>

Reigel, Stanley A. and P. John Owen (1982), “Administrative Law: The Law of Government Agencies”, Ann Arbor Science Publishers

福井秀夫, 権利の配分・裁量の統制とコースの定理, 鹽野古希(上)、(有斐閣, 2001, 425-430頁

經濟法學會編, 獨占禁止法講座 VII, 商社法務研究會, 1995, 275면 이하

宮田三郎, 「行政裁量とその統制密度」, 1994

田村悦一, “裁量權の逸脫と濫用” 「行政法の爭點(新版)」,

宇賀克也, 「國家報償法」, 1997

塩野宏, “審査基準について” 「憲法裁判と行政訴訟」, 1999

木佐茂男編, 自治體法務入門(第2版), ぎょうせい, 2000호

阿部泰隆, 行政裁量と行政救済, 三省堂, 1987

- 阿部泰隆, 行政の法システム(下), 有斐閣, 2002
- 小早川光郎, 行政手続法逐条研究, ジュリスト増刊, 1996
- 小早川光郎, 基・準・法律・条例, 塩野宏古希紀念論文集行政法の発展と変革(下), 有斐閣, 2001
- 小早川光郎, 行政法講義9(下), 弘文堂, 2002
- 松永邦男, 要綱行政, 條例と規則(岩崎忠夫編), 實務地方自治法講座2, ぎょうせい, 1997
- 塩野宏, 行政法 I (第Ⅲ版), 有斐閣, 2003
- 宇賀克也, 行政手続法の理論, 東京大學出版會, 1995
- 原田尚彦, 行政法要論, 學陽書房, 2004
- 田中二郎, 新版行政法(上卷), 有斐閣, 1987
- 田村悦一, 行政訴訟における国民の権利保護, 有斐閣, 1975
- 芝池義一, 行政法總論講義(第4版), 有斐閣, 2002
- 日本教育法學會, 『教育法學の課題と方法』, eidel研究所, 2005
- 佐藤 司, 『現代教育法の諸問題』, 勁草書房, 2004
- 北村喜宣, 『自治体環境行政法』, 良書普及会, 1997
- _____, 『えっ、入っちゃだめなの? ; 不法投棄現場への行政立ち入り権限』自治実務セミナー39巻2号, 2000
- _____, 『産業廃棄物の不法投棄をめぐる環境行政と環境警察の活動』□□行政執行過程と自治体□□, 日本評論社, 1997
- 佐藤正夫, 『環境犯罪対策の新たな展開』警察時報第55巻7号, 2000年
- 山村恒年, □□環境法入門□□, 昭和堂, 1999